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447-01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서울

2013. 4.10.(수) 14:00~17:30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광주

2013. 4.11.(목) 14:00~17:00
광주광역시의회 3층 소회의실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 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대전

2013. 4.16.(화) 14:00~17:30
대전 하나은행 10층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광역시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구

2013. 4.17.(수) 14:00~17:30
대구경북디자인센터 5층 컨벤션홀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장애인직능단체협의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주 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산

2013. 4.18.(목) 14:00~16:30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사)열린네트워크
주 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제주

2013. 4.25.(목) 14:00~16:40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다목적실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토론회의 공동개최를 위해 노고를 다해 주신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차별금지연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토론자 여러분과 모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매우 의미 있는 법률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입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오랜 요구와 많은 이들의 지지 속에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 8월, 청와대와 관계부처, 장애단체, 국가인권위원회로 구성된 민관공동기획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였고, 국회는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결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동안 눌러있던 장애인들의 설움을 한번에 쏟아내기라도 하듯 장애인들로 하여금 수많은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정부와 장애단체는 법률의 안정적인 이행과 파급력 있는 효과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우리 위원회도 장애차별 개선 및 실효적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진정 처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차별 문제, 혹은 집단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정책권고, 의견표명 등을 병행하여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고위험률이 높을 것이라는 편견만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업무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직업유형과는 전혀 상관없이 고용이 회피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분리되어 교육받아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장애인은 인격을 가진 주체가 아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편견들을 우리 사회가 깨지 않으면 장애차별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5년 간의 성과와 그 한계를 되짚어보고, 향후 더 의미 있는 법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장애인의 인권 증진은 물론, 향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한 모범적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기꺼이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전면 개정해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었는데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장애인 삶의 전반에 걸쳐 차별과 억압은 여전히 매우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24시간 활동보조지원제도의 미시행으로 인한 중증장애인들의 연이은 참사, ‘수원 노숙노녀’ 살인 혐의로 5년 옥살이한 지적장애인 정모(33)씨의 무죄선고, 시설 및 마을에서의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장기간의 상습적 집단성폭행, 4.11총선에서의 시설장애인들의 무더기 대리투표 등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정도가 더욱 극심해진 해가 2012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보다는 차별금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효적인 구제책의 마련을 위해서 해마다 수많은 지적과 심도 깊은 토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시정권고가 권리구제의 주된 업무영역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 인신구속보다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솜방망이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불식되기는커녕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권리구제사항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내는 올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된 차별사건을 처리하기에 급급하여 구제기간이 3개월이나 소요될 정도로 처리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갖춘 인력이 지역사무소에 상주하지 않음으로 인해, 장애인 차별에 대한 판단 또한 매우 보수적으로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를 피해 상황 또는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보복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사무소에 장애인의 특성과 감수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를 조사관으로 배치하고, 간단하게 조치할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는 지역사

무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조사 및 권리구제에 관한 권한을 지역사무소로 넓혀내는 최소한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 유엔 에스캅(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에 관한 장관 선언문 및 아태지역 '장애인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해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의 국내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나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의정서에 서명·비준하도록 국내법을 고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장애인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권센터에 조사권과 소송권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와 3개의 지역사무소의 구조로는 지역별로도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해 줄 인권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민간단체인 인권센터에 인권침해에 대한 실지조사권, 관련기록 및 시설에 대한 접근권, 장애인을 대신하여 민간단체 스스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는데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시금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았을 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장애인 권리 실천의 첫걸음이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개정운동을 통해 장애인에게 주어진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보호·보장하는데 정부와 민간단체,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5주년 토론회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국가인권위원회의 임직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소중한 토론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신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변 경 택**

- 일시 및 장소 : 2013. 4. 10(수) 14: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사회 : 최재경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 좌장 :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제1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 및 평가	
구 분	내 용	시 간
개회 및 공동축사	❖ 개회선언	14:00~14:05
	❖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05~14:10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4:10~14:15
	❖ 변경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14:15~14:20
당사자 자유발언 및 발제	[자유발언1] 장차법 제정 이전과 이후 그리고 희망 김신지	14:20~14:30
	[자유발언2] 청각장애인이 느끼는 장차법 시행 이전과 이후 함효숙	14:30~14:40
	[발제1] 권리옹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5년 째 서재경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14:40~15:00
	[발제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확보를 위한 정책추진 및 향후과제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15:00~15:20
	[발제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15:20~15:40
	휴 식	15:40~16:00
제2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발제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적 이행과 장애인 고용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00~16:15
	[발제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16:15~16:30
	[발제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6:30~16:45
	[발제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평가 및 제언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16:45~17:00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00~17:25
	폐 회	17:25~17:30

서울

◆ 제1부 자유발언

- 장차법 제정 이전과 이후 그리고 희망 3
김신지
- 청각장애인이 느끼는 장차법 시행 이전과 이후 9
함효숙

◆ 제1부 발제

- 권리옹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5년 째 15
서재경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확보를 위한 정책추진 및 향후과제 37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61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 제2부 발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적 이행과 장애인 고용 111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129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159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김연주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평가 및 제언 179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광 주

◆ 제1부 발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207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기획팀장)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평가 211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제2부 발제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제언 225
차정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광주지사 취업지원부장)
-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교육영역 평가 및 제언 259
김동복 (광주세광학교 교사)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차별개선방안 265
권순국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과장)
- 사법·행정서비스 및 참정권 영역 271
김상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대 전

◆ 제1부 발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287
이지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책 추진 및 향후계획 291
전우광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실효적 이행을 위한 평가 및 제언 313
 두오균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제2부 발제

-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편의제공과 접근권 향상을 위한 과제 333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 351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제2부 토론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성년후견제와 사회복지의 관계 369
 김명희 (시립장애인복지관 과장)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377
 박흥기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주시설 383
 김순영 (대전여성연대 사무국장)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및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제도의 장애인차별 389
 이종준 (합동법률사무소 행복 변호사)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과 성년후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395
 조금주 (상명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편의제공과 접근권 향상을 위한 과제 399
 김다현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대구

◆ 제1부 발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407
최재경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411
정남수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 복지정책관실 정책관)

◆ 제1부 토론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의 평가와 제언 425
김시형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활동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간의 이행 현황 평가 443
임은자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제2부 발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연구 451
최승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권익증진연구부장)

◆ 제2부 토론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논의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제언 473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학대학 학장)
- 법 개정 논의에 대한 당사자 관점의 평가 및 제언 1 481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 법 개정 논의에 대한 당사자 관점의 평가 및 제언 2 489
서준호 (대구장애인연맹 사무국장)

부 산

◆ 제1부 발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497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 501
김호상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 장차법의 실효적이행을 위한 법개정방향 513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2부 발제 및 토론

-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527
이경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 사법·행정절차 영역의 장애인 차별 539
송정문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대표)
- 교육영역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대하여 553
임애정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전임연구원)
-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575
신수현 ((사)열린네트워크 부산지부장)

제 주

◆ 제1부 발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595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정책 및 성과 599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제2부 토론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인권조례를 통해 본 장애인인권보장 제도적 개선책 627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 제주지역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635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 645
 강기탁 (변호사)

제 1 부
서 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자유발언 1] 장차법 제정 이전과 이후 그리고 희망

- 김신지

[자유발언 2] 청각장애인이 느끼는 장차법 시행 이전과 이후

- 함효숙

[발제 1] 권리옹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5년 째

- 서재경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확보를 위한 정책추진 및 향후과제

-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발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자유발언 1

장차법 제정 이전과 이후 그리고 희망

김신지



장차법 제정 이전과 이후 그리고 희망

김신지

04학번인 나는 2008년 2월 대학을 졸업했다. 장차법 제정이전의 나의 삶 대부분은 교육기관에 속해있었다. 학교에서는 사회만큼 치열하지는 않았기에 장차법 시행 이전의 차별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몇 가지 생각나는 경험은 있다. 나를 바꾼, 아니 내 삶의 응원군으로서의 장차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 제정 이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다.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걱정이 생겼다.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에 실패하고 집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선배는 공부를 꼭 하고 싶어서 대학에 꼭 가야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배가 그렇게 된 것에는 학교의 문제가 컸다. 저시력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 다녔지만 시력이 나쁜 편이었던 선배는 그 안에서도 배려를 받지 못했다. 학습 방식에서의 소외는 자연히 학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것이다. 나도 다르지 않았다. 같이 공부하는 다른 저시력 학생에 비해서도 읽는 속도가 느렸던 것. 일반학교에서 겪었던 것을 거의 같은 수준에서 겪어야 했다. 적어도 내가 체감하는 정도는 그랬다. 시험을 볼 때 읽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처음에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낳고 결국은 시험이란 것을 당연히 포기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런데 그 선배가 수능시험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나 자신의 미래를 보는 듯 아팠다. 그래서 뭔가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니란 생각에 닿았던 것 같다. 관할 교육청에 문의를 했다.

시 수능에서의 시각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조치는 저시력인의 경우 20분의 추가시험 시간과 확대시험지, 전맹인의 경우 1.5배의 시험시간과 점자시험지와 음성자료 등이 주어졌다. 내게는 맞는 제도가 아니었다. 읽기가 느리지만 점자를 모르니 전맹 수험생 기준으로 볼 수가 없었고 확대시험

지로는 수능시험을 본다는 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였다. 음성자료와 확대시험지를 요청해야했다. 있는 자료를 내게도 달라는 것인데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고등학교 2학년이기에 당장은 해당이 아니고 3학년이 되어서 다시 문의를 하라는 대답을 듣고 기다렸다. 고등학교 3학년 봄에 다시 문의를 했고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이례적인 경우니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의식을 못하는 학생인 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듯 일을 복잡하게 진행했다. 의사의 소견과 친구들의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담임교사의 소견서 등 고등학교 3학년 봄에 시작한 일이 지루하고 길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지금에야 생각 하지만 그렇게 쏟는 에너지를 공부하는 데에 썼담 뭔가 달랐으려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당시 담임선생님이 열심히 도와 주셨기에 그나마도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절반의 성공이란 음성 테이프는 제공하지만 시험 시간은 저시력인 기준으로 20분을 더 받아보는 것이었다. 음성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영어나 수학은 어떻게 하라는 해결책이 없었다.

이후 장애학생을 위한 배려가 거의 없는 대학에 진학해 선수강제도를 만들고 대독대필을 요청하는 등 ‘절반의 성공’이 경험이 되어 열심히 ‘들이대 보는’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서두에 언급했지만 학교는 학생에게 온정적이다. 적어도 사회에 비해서는 그렇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간간한 국가 기관 중에 그래도, 아니 적어도 나는 비행기도 멈춰 세운다는 그 엄청난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피나 친절하다. 사립대학도 비슷하다. ‘못해 줄 것이 아니면 해 준다.’ 이 당시의 내 수준도 그러했다. 나는 ‘못해줄 것’을 요청한 적은 없다. 고등학교 때의 ‘절반의 성공’도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로 착하고 착했다. 기관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 다른 사람의 심리적 부담. 이런 것이 절대로 내가 지켜줘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 제정 이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피해까지 감수하랄 수가...’ - 사고의 전환.

많은 사람들, 장애인들이 참 착하다. 자기가 불편하면서 ‘내가 덜 불편하려고 남이 심적 물적 부담을 가져 불편할까봐’ 걱정이다. 나도 그랬다. ‘충분히’ 요청할 만하고, 상대방의 부담이 전혀 없거나 적다고 여겨지는 정도가 아니라면 요청할 엄두를 쉽게 못내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억압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를 비롯한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아무리 잡아떼도 강한 피해의식과 자격지심과 함께 성장한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타고난 내향성향이 더해져 피해의식보다는 자격지심이 커졌던 것 같다. 누군가와 나의 불편을 이야기하며 대 서는 것이 우선 더 큰 불편을 낳는 듯 했다. 개인 성향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청소년기를 한참 지내면서도 교우들 간의 소통 속에서 우리의 권리나 장애인권에 대한 뚜렷한 지향성조차 찾아내지 못했던 것을 보면 나 개인의 성향탓만은 아니었고 장애 일반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다.

장차법의 제정은 내게 사고의 전환을 선물했다. 기관이나 시설에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다. 나의 어려움을 상대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정당함’이라는 것의 기준과 무게를 다시 잡게 된 것이다. 근래 진행하고 있는 체육시설 관련 소송 과정에서 느낀 바가 있다. 장차법이 버티고 있어 이제 나의 권리를 찾고자 내가 기관과 시설에 내 불편을 호소하고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법을 준수, 이행하지 못한 시설이 오히려 내게 이행할 수 없었던 어려움, 사정 등에 대해 호소하려는 움직임은 본 것이다.

당사자로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실무에 있으며 느끼는 점을 이야기 하며 마치려 한다. 많은 장애 당사자들이 아직도 장차법의 존재를 잘 모른다. 우리나라의 사회분위기는 특별히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소수자로서 살기가 참 어렵고 자연히 심적 억압을 받기가 쉽기에 명문화 된 법령을 보거나 알지 못 하면 소수자로서 내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젊은 장애인들 중에도 안타까운 사고방식 속에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채로 살아가는 사례도 많다. 많은 장애 당사자들이 장차법에 대해 잘 알고 이 법을 응원군 삼아 자신과 동료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나아가 통합된 사회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질감 없이 자연스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멋진 이웃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길 바라본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한다. 이 법이 존재 자체보다 실정법으로서 활성화되고 장애 비장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나와 같은 당사자들이 권리에 대한 민감함을 갖게 되고 또 새롭게 사회적 의식의 성장 속에서 더욱 섬세하고 공고해진 장차법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이 사회의 새로운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최소한의 도덕’이 성장하는 모습을 꿈 꾀 본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자유발언 2

청각장애인이 느끼는 장차법 시행 이전과 이후

함효숙



청각장애인이 느끼는 장차법 시행 이전과 이후

함효숙

1. 시작하며

저는 장애인의 정보와 문화, 교육 등 소통에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소속원인 함효숙입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제 딸 또한 저와 같은 청각장애인입니다. 저를 소개하면서 가족의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는, 시행된 지 5년째를 맞는 장차법이 저나 제 동료 그리고 제 딸과 같은 청각장애인 청소년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해서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듣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비장애인과 대화를 할 수 없고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수화를 한다고,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하지만 장차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이후부터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장차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청각장애인 겪는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 장차법 시행 이전의 차별들

-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수화로 대화할 때 불편하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고, 가끔 수화하는 모습을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화로 얘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수화로 대화해야 제대로 대화를 하는데도 자신감이 떨어져서 수화로 대화를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겼던 것입니다.
- 비장애인이 저에게 청각장애인도 공부를 할 수 있느냐는 등 청각장애인을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불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능력이 없거나,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 초등학교 시절에 통합교육으로 일주일간 일반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화를 할 줄 몰라서 저는 수업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일반학교에서 일주일 간 수업을 듣는 내내 답답해 한 적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일반학생들이 수화를 할 줄 몰라 의사소통이 늘 수 없어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기는 등 외로운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나 행사 때 수화통역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멍하니 있다가 남들이 가면 그냥 따라간 적이 많았습니다. 수화통역을 요구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해서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 주변인들의 경험을 본 적이 있는데, 제 주변의 청각장애인들이 법원과 경찰서에서 조사, 진술을 했을 때 수화통역사가 없어서 의사소통이 잘 안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 TV를 자주 보는데(특히 드라마) 자막이 없어서 드라마 내용이 뭔지 몰라서 답답해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살 때는 했고 엄마에게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드라마를 봤는데, 대강의 내용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 주변 청각장애인들의 하소연인데, 수영, 스케이트, 태권도 등 배우고 싶은데 학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 실력이 있어도 무조건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례가 있지만 줄이기로 합니다. 하여간 장차법 시행 이전에는 불편해도 불편하다고 못했고, 권리가 침해를 받아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차법 시행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 변했느냐고 통계를 보여 달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자도 그렇고 제 주변 청각장애인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장차법 시행 이후의 변화들

- 대중교통을 타고 청각장애인의 지인들과 수화를 할 때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언어가 수화라는 것을 동의해주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수화로 소통한다는 것을 수긍하고 긍정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직장생활에서 소소한 것에 대한 통역이 없어서 여전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회의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을 요구할 수 있고, 지원해주어 예전 같은 답답함은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소통보조가 가능하여 농인근무자가 많은 (7명이상) 회사에는 수화통역사가 배치 되면 좋겠습니다.

- TV자막이 활성화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드라마를 볼 때 자막이 제공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아도 자막을 통해 드라마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편안 하게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 수화통역서비스를 잘 해주는 관공서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멀어도 그 관공서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차법으로 인하여 달라진 모습입니다. 앞으로 수화통역사가 배치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화상통역이라도 원활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법원이나 경찰서에 청각장애인이 조사를 받을 때 수화통역사를 불러주어 덕분에 의사소통이 잘 되어 의사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자기의 의견을 전달 못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들이 사라졌습니다.
-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 자막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편해졌습니다. 문자서비스가 제공되어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어떤 버스를 타야하는지,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 쉽게 알 수 있어서 편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버스가 안 오면 비장애인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발만 동동 굴렀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 얼마 전 고궁을 갔는데 수화통역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하여간 배치된 수화통역사가 고궁의 역사나 안내를 수화로 해줘서 기분 좋은 나들이를 했습니다.

장차법이 청각장애인의 차별을 제거하는데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위에 열거한 것처럼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분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차법의 역할이 더 커져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차법 역할이 불편함, 차별로 남아있는 청각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고쳤으면 하는 것을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적어보겠습니다.

4. 개선되어야 할 점들

-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는 수화가 모국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학교에서도 수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비장애인 학생들도 기본적인 수화를 배워 외로운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청각장애인들이 대학교에 진학해서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청각장애 아동이나 성인 할 것 없이 영어, 미술, 체육(수영) 등 특별교육을 받거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자막이 있는 외국 영화 뿐만이 아닌, 한국영화에 자막이 있어서 청각장애인이 한국영화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연극이나 뮤지컬, 미술관, 전시회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서 청각장애인이 어릴 때부터 문화 예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TV에 자막이 제공되고는 있지만,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드라마에는 자막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자막이 있어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방송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비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언어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로 활용되도록 수화영상도서가 일반 도서관에도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원이나 관공서의 특별강좌(자녀교육 등)에 청각장애인이 참여를 하고 싶을 때 1주일 전에 신청해야 수화통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강좌 하루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관공서의 행정사항의 경우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놓는데, 청각장애인이 문장으로 확실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내용은 수화통역영상을 만들면 어려운 행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보건소 무료접종, 장애인 할인 세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특별교육 등)

5. 정리하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장차법 전과 후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인 제가, 청각장애 딸을 둔 주부로서 장차법으로 인한 변화를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잠시 언급했듯이 비장애인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해졌다는 것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으로 여전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는 것, 저와 같은 청각장애인의 권리 침해 줄이는 것 그것이 장차법의 제정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도 많은 역할을 해주십시오. 제가 속해 있는 장애인 정보문화누리도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 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1

권리옹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5년 째

서재경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권리옹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5년 째

서재경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I. 들어가는 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매년마다 상담전화 사례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상담전화를 통해, 사람들은 말한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바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이런 경우, 차별이라고 되어 있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다른 곳에 전화하니 까, 여기 번호를 알려줬어요. 여기서는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요”, “내 일은 아닌데,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고 싶어요”

5년동안, 이러한 차별상담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차별상담 사례는 왜 계속 증가할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자신이 처한 차별적 상황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응하려는 권리의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바로 이 지점,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이 처한 차별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개인의 권리옹호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를 근절하거나 시정, 예방함으로써 타인의 권리까지 향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차별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차별상담은 권리옹호의 출발이 되고, 그 출발에서 권리옹호의 길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상담 사례 못지않게,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이 바로 모니터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에 대하여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법이란 문서에 명시된 것일 뿐, 그러한 법안이 세상에서 인권법으로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법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내는 권리옹호 운동의 역동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010년부터 매년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모니터링에서 나온 실태자료를 토대로 정부와 정부 산하단체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삼거나, 보건복지부에 시정권고를 하며, 인권위는 집단진정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 부처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장추련은 장애인 단체들과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사회 내 ‘정당한 편의’를 구축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장추련과 모니터링 연대활동을 통하여 모니터링의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정당한 편의를 모니터링하여 지역사회를 장애물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권리옹호 성과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되물으며, 권리옹호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장추련의 지난 5년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평지와 권리옹호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순수한 자원과 조직을 바탕으로 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평지를 출범하였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즉각적으로 차별상담전화를 운영하면서, 전국적인 상담전화운영단체를 조직화하여,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차별사례 대응을 위한 활동에 힘을 결집시켰다. 2012년 현재 상담전화는 전국적으로 41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차별상담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상담이 접수된 지역의 상담전화운영단체 활동가가 지원하고, 중앙 사무국에서는 법률적 지원 및 정보 지원 및 상담 대응에 필요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7월 15일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평지는 개통식을 가졌고, 2012년 10월 30일까지 장추련에 접수된 상담은 총558건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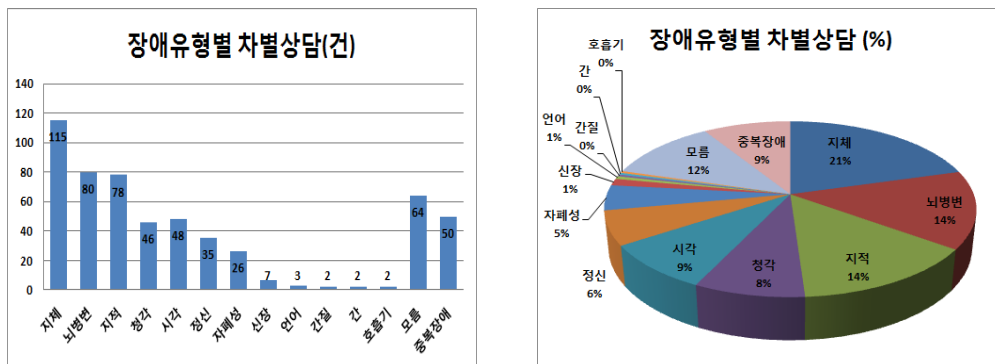
1. 장애유형별 차별상담

장애유형별 차별상담건수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의 경우 115건(20.6%)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2, 『장애인차별상담을 통해 권리옹호의 길을 만든다』 pp. 25-40.

으로는 뇌병변장애의 경우 80건(14%), 지적장애의 경우 78건(14%)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발달장애의 경우 지적장애의 경우는 78건, 자폐성장애는 26건(5%)을 합하면, 전체 총 104건(19%)으로 지적장애인의 차별상담 건수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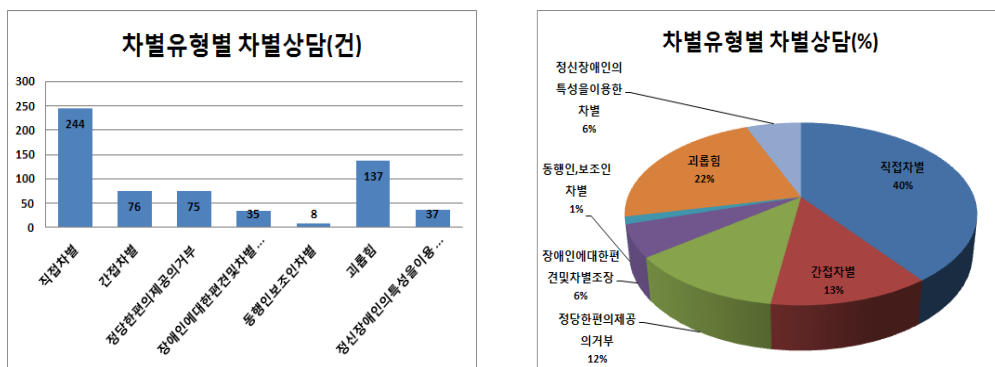
〈표 1〉 장애유형별 차별상담



2. 차별유형별 차별상담

차별유형별 차별상담 접수를 살펴보면, 직접차별이 244건(40%), 괴롭힘이 137건(19%), 간접차별이 76건(13%),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75건(1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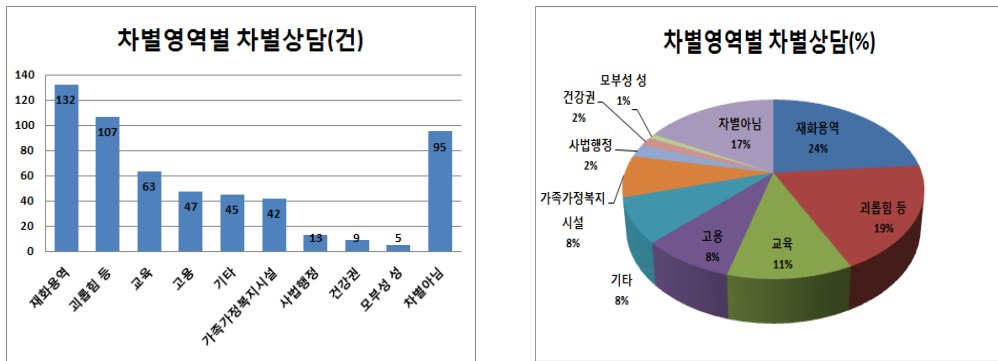
〈표 2〉 차별유형별 차별상담



3. 차별영역별 차별상담

차별영역별 차별상담 접수를 살펴보면, 재화용역이 132건(24%), 괴롭힘 등이 107건(19%), 교육 차별이 63건(11%), 고용차별이 47건(8%) 등으로 접수되었다. 괴롭힘과 교육차별을 합하면 총 170건(30%)로 재화용역에서의 차별보다 앞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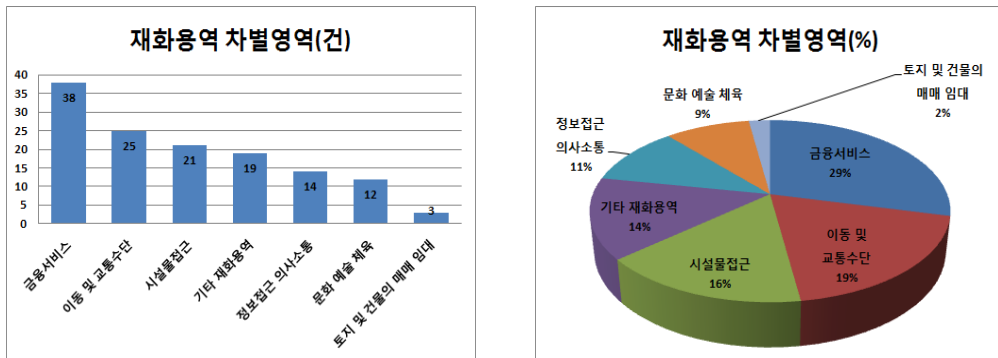
〈표 3〉 차별영역별 차별상담 건수



1) 차별영역별 차별상담 - 재화용역

차별영역별 차별상담 중에서 재화용역에서의 차별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금융서비스영역이 38건(29%), 이동 및 교통수단영역이 25건(19%), 시설물접근영역이 21건(16%), 정보접근의사소통이 14건(11%)로 접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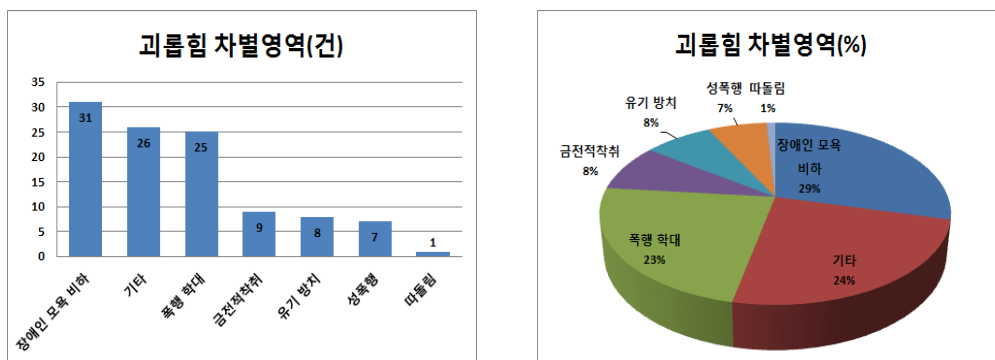
〈표 4〉 재화용역 차별영역 건수



2) 차별영역별 차별상담 - 괴롭힘

차별영역별 차별상담 중에서 괴롭힘 등에서의 차별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장애인 모욕비하가 31건(29%), 폭행학대가 25건(23%), 금전적 착취가 9건(8%), 성폭행 7건(7%) 등으로 접수되었다. 기타 차별영역으로 26건이 접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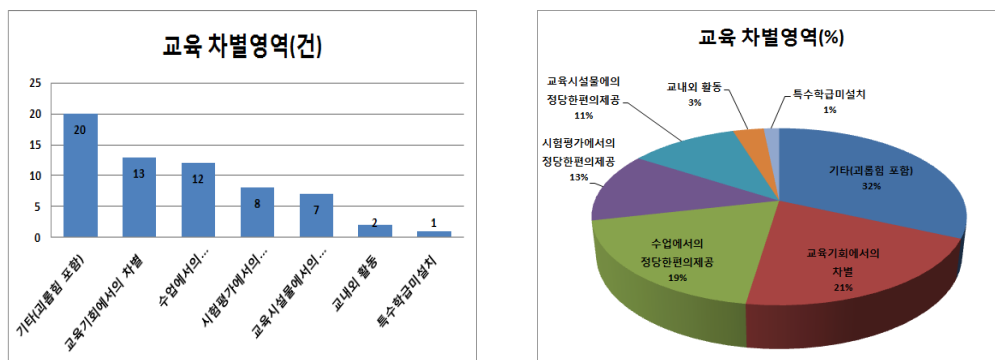
〈표 5〉 괴롭힘 차별영역 건수



3) 차별영역별 차별상담 - 교육

차별영역별 차별상담 중에서 교육에서의 차별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괴롭힘(32%), 교육기회에서의 차별(21%), 수업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19%), 시험평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13%) 등으로 접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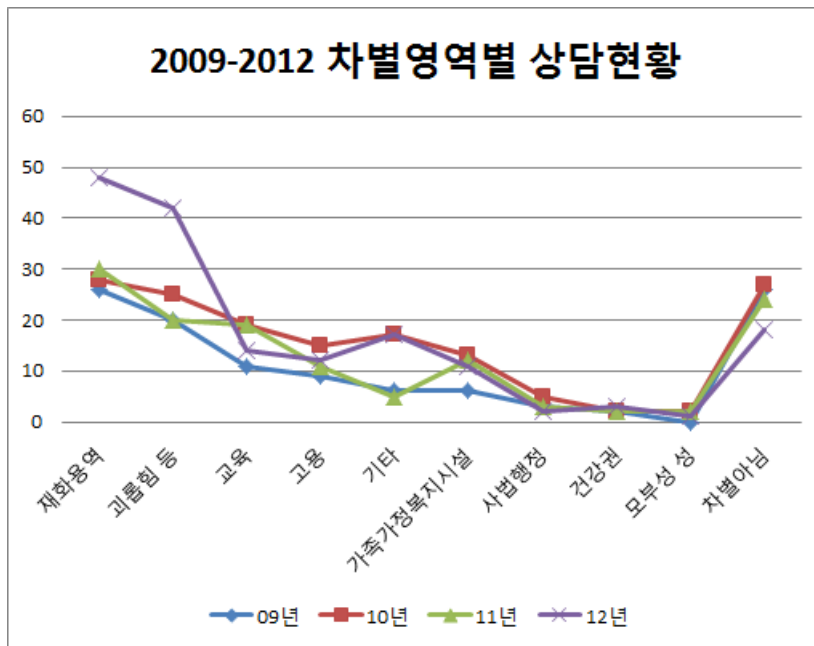
〈표 6〉 교육 차별영역 건수



4. 차별영역별 4년간(2009~2012) 상담 현황

2009년부터 2012년 4년동안 차별영역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재화용역에서의 차별이 4년동안 제일 많이 접수되고 있다. 괴롭힘에서의 차별 상담의 경우에는 올해가 전년도에 비하여 2배 넘는 차별상담이 접수되었으며, 교육차별 및 고용차별 이외에도 기타 차별영역의 경우는 꾸준히 차별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차별 아닌 상담이 올해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줄어들었다.

〈표 7〉 2009~2012년 차별영역별 상담현황



5. 2012년도 차별영역별 상담사례

-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 사례 -00시 교통정책
 - 충남 00군에서 대전시로 매일 출·퇴근을 하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여성, 저상버스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였음. 그런데 00시와 대전시가 업무협약에 의한 조치로, 대전

시 소속버스가 충남 00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함. 이러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이 여성은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차별상황에 직면하게 됨.

장추련은 곧장 00시 교통과에 공문을 발송,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동 및 교통수단등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즉각 차별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촉구함. 이후, 00시는 저상버스 도입을 2013년 2~3월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함(저상버스 제작 소요기간), 그 시기 또한 버스정류소까지 장꼴을 배치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확답을 받음.

□ 장애특성을 악용한 차별 사례- 발달장애여학생 동영상 유포/ 서울

- 초등학교5학년 발달장애여학생이 카카오톡을 통해 비장애인 남자고등학교 오빠를 알게 됨. 이후,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음. 남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발달장애여학생의 인지, 행동 등에서 다름을 눈치채고, 이를 악용하여 나체사진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협박, 강요함. 장애의 특성상 억박지르고 협박, 강요를 하자, 여학생은 몹시 두려움과 초조함에 찍어서 보냄. 이후,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고, 어머니는 즉각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함. 사이버수사대는 곧장 조사에 착수함. 이 사건은 청소년이동성폭-음란물제작,배포 및 강간죄 죄목으로 00지방검찰청 00지청이 수사에 착수함.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악용한 차별사례 중, 앞으로도 발생가능성이 높은 핸드폰 관련 차별사례를 사회 범죄로 인식하는 사건임.

□ 성폭행 차별 사례 - 발달장애여성 성폭행

- 발달장애여성(만21세)이 10년 전 초등학교 때, 친구 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했던 사실을 털어놓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즉각 경찰에 신고함. 이 사건은 원스톱서비스와 장애인단체가 연대하여 지원함.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해여성의 어머니에게 최근 도입된 법률조력인 신청을 통한 지원을 권유함. 어머니가 법률조력인 신청을 하여, 현재 법률조력인과 함께 사건에 대응하고 있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최근 공소시효가 소멸된 개정법과 법률조력인 지원 등의 현행 제도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반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 사례 - 여수국제박람회 저상버스

-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여수국제박람회를 구경하기 위해 여수국제박람회 이동 등 접근권이 가능한지 알아봄. 알아본 결과, 저상버스 등이 지원되지 않아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여수국제박람회를 구경할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상담소에 즉각 전화함.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즉각 인권위에 진정을 함. 이후, 인권위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함. 7/2부터 엑스포 정문과 후문에 저상버스를 배치하였고, 여분으로 장애인 콜택시 1대를 배치하였다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음.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권리옹호의 결과라는 성과를 거둠.

□ 교육영역에서의 차별 사례 - 200%확대 수능시험지 미제공

- 수능을 앞둔 저시력장애학생이 9월1일, 중부교육지원청이 확대시험지 제공 관련 서류를 요청함. 교육청이 요청한 서류를 일체 준비하여 제출함. 그런데, 수능시험, 당일날 200% 확대시험지를 제공받지 못함: 11월 29일 중부교육청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함. 이후, 장추련이 언론에 이 사건을 노출시켜, 언론에 보도되자, 교육청이 즉각 긴급 대책 회의를 제안해옴. 12월 10일 대책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장애학생의 경우,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수능을 치루고, 보조기구와 보조인력 제공' 등을 할 것에 대하여 약속을 이끌어냄.

□ 교육영역에서의 차별 사례 - 2013년 사회복지사 1급시험, 뇌병변장애인 의사소견서 제출

- 뇌병변장애여성이 2013년 사회복지사 1급시험을 치루기 위해 제출서류를 준비하던 중, 작년과 달리 사회복지사 1급 응시서류 중 뇌병변장애인은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하라는 점을 발견하고 상담 문의함. 시험 주관측에 알아보니, 이미 10월에 시험에 관한 고지를 내린 상황이어서 번복할 수 없으며, 내년 시험에는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만 표명함. 이에 장추련과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는 반드시 내년 시험에는 육안으로도 장애가 드러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의사소견서와 같은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올해 시험은 개인의 구제조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함.

□ 직권조사 - 인권위 직권조사 의뢰, 양봉원사건

- 지적장애남성이 전라도 지역, 양봉원에서 일하면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받음. 제3자의 제보에 의하여 접수됨. 전라도 지역 상담전화운영단체 활동가가 직접 양봉원을 찾아가 감. 인근 주민들을 통해, 제보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함. 실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장애인 단체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의뢰함. 인권위는 기초조사결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결정함. 직권조사 결과, 양봉업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에 대해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지적장애인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함.

□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사례

- 한눈 시각장애인이 운전면허 1종을 취득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상담전화가 옴. 한눈 시각장애를 가진 경우, 운전면허 1급자격증 취득은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직업선택에서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직업상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9인승차량과 10인승 차량의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많은 차량 보조장치 등의 개발로 인하여, 보완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아예 차단,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판단, 현재 태평양동천, 희망법,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 등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 모니터링과 권리옹호

2010년 모니터링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공공근린시설 종사자들은 "정당한 편의가 무엇이야?, 발달장애가 뭐냐"고 되물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잘 몰랐다. 그러나 2010년 1차년도 모니터링 이후, 정당한 편의를 이행하지 않는 조사장소를 대상으로 인권위 집단진정을 한 이후부터, 공공근린시설 종사자들의 많은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발달장애 이해교육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느냐?,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매뉴얼은 어디서 구해야 하

느냐?” 등 많은 문의전화를 받았다.

• 장추련은 2010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09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10년도에는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우체국, 우편취급국, 주민센터, 구청, 지하철역사, 버스정류장, 국공립종합병원, 보건소, 세무서, 국공립 체육시설, 경찰서, 파출소, 구민센터, 공공도서관, 공원) 15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였다. 9개 단체가 연대하여 지체장애영역 200곳, 시각장애영역 212곳, 청각장애영역 213곳, 발달장애영역 266곳, 총 891곳을 모니터링하였다.

2011년도에는 학교에서의 정당한 편의 실태를 알기 위해서 서울지역 학교(유치원, 초,중, 고, 특수학교, 대학)를 조사대상으로 정당한 편의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였다. 11개 단체가 연대하여 1차 학교모니터링은 발달장애영역 279곳, 지체장애영역 129곳, 시각장애영역 42곳, 청각장애영역 35곳, 대학 10곳을 조사, 총495곳을 조사하였다. 여름방학이 끝난 후, 9월부터 다시 2차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다. 발달장애영역 108곳, 지체장애영역 40곳, 시각장애영역 8곳, 청각장애영역 82곳, 대학 16곳, 총254곳을 조사하였다. 1, 2차 학교모니터링을 통해 총 749곳을 모니터링하였다.

2012년도에는 모니터링 지역을 경기지역으로 확대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금융, 문화·예술, 체육시설을 조사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였다. 2012년도에는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9개 지부가 참여, 총12개 단체가 연대하였다. 지체장애영역 303곳, 시각장애영역 80곳, 청각장애영역 79곳, 발달장애영역 138곳, 총 600곳을 모니터링하였다.

• 모니터링 이후의 성과들을 중앙정부와 정부산하기관, 정책측면에서 살펴보면

2010년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모니터링을 한 이후, 2011년 1월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구축 및 이행을 촉구하는 집단진정을 하였다. 그 이후, 보건복지부는 관공서에 의사소통 보조 그림판 및 의사소통 매뉴얼 개발 및 보급추진을 명시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 현재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매뉴얼 제작을 추진 중에 있다.

2011년 인권위에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구축 및 이행을 촉구하는 집단진정을 할 당시, 인권위 측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법 적용이 어렵다”는 난처한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구체적 매뉴얼을 내놓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시정권고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조사관도 있었다. 하지만,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인권위는 2012년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2013년 정책 사업으로 공고하였다.

2012년 11월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담당과에서도 장추련에 연락이 왔다. <장애인의 남녀구분 화장실> 정당한 편의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민간단체의 조사실태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자료를 요청하였다. 그 다음 달, 2012년 12월에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남녀구분 화장실 설치>를 권고조치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시각장애인이 공원 같은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 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등 유도신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측은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 민간단체가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실태를 모니터링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해, 2012년 11월에는 국무총리 평가실에서 2012년도 문화·예술시설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모니터링 실태자료를 요청해왔다. 국무총리 평가실 담당자는 문화·예술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 자료를 토대로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 모니터링은 왜 권리옹호일까? 이것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것은

첫째, 인권위에서 장애차별로 인한 진정 건수가 많아짐으로써, 사회적으로 장애차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장애인의 인권을 재조명하는 인식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장애유형별, 장애특성별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필요성을 공공근린시설 종사자들에게 알리고, 공공근린시설 종사자들은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실시하거나 수립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공공근린시설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이해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의 특성과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발달장애의 특성을 몰라서, 차별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게 되었다.

넷째, 민간단체가 시작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실태조사는, 중앙정부나 국민권익위가 장애인의 인권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단체로 참여하여, 모니터링 전 과정을 함께 함으로써, 이러한 경험을 축적하여, 지자체에 사업제안을 하여, 지역사회의 정당한 편의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조치하는 권리운동으로 연동시키고 있다.

여섯째,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 수 없다는 인식을 확장시킨 점이다.

• 집단진정과 권리옹호

장추련은 장애인차별이 반복적, 지속적, 악의적인 행태로 드러나고 있는 개별적 차별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모니터링 실태자료를 토대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집단진정을 하고 있다.

집단진정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우선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사로, 턱없앰, 엘리베이터설치, 장애인 남녀화장실 설치, 점자유도블럭 설치, 수화통역사 배치, 안내인 배치 등 정당한 편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급속하게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 2008. 4. 21. 집단진정 156건
- 2008. 7. 30. 장추련 출범 및 제2차 집단진정 225건
- 2009. 2. 25. 시각장애인 보장구 의안사용을 힘쓰럽게 표현한 방송국 대상, 의안사용자 차별시정 촉구 집단진정 85건
- 2009. 12. 8. 장애인보험차별금지를 위한 증언대회 26건
- 2010. 2. 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집단진정 30건
- 2010. 6. 25.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기관 중, 정당한 편의 미제공 기관 대상 집단 진정 597건
- 2010. 9. 2. 방송3사(KBS, MBC, SBS) 홈페이지 웹접근성 차별시정을 위한 집단진정 97건
- 2011. 1. 21.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구축 및 이행 촉구 집단진정 170건
- 2012. 7. 25. 보험차별 시정촉구 집단진정 53건
- 2012. 8. 24. 금융, 문화·예술, 체육시설 정당한 편의 촉구 집단진정 335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장추련이 인권위에 집단진정한 건수는 총 1774건에 이르고 있다. 인권위가 2001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 5,230건 중, 무려 전체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3분의 1 이상을 진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진정은 단순히 인권위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상의 수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집단진정으로 인하여 정책을 만들고,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권리옹호의 동력임을 알 수 있다.

• **집단진정 이후, 인권위 시정권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지체장애 영역의 경우, 공공근린시설의 편의시설 중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하여 설치, 지하철 환승구간에 리프트만 있고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 점검 및 설치 등 세부계획 수립을 권고하였다. 청각장애영역의 경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등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강화 등을 권고하였고, 시각장애영역의 경우에는 진정한 서울의 7개 종합병원에 시각장애인이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시,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를 생성하여 사본과 함께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발달장애영역의 경우,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경우 현재 배포되고 있는 관람안내서에서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글 등을 향후 수정하여,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관람안내서 제작, 배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진정대상 00공원의 경우,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회복지사를 안내인으로 배치하였음을 통보받았으며, 진정대상 우체국의 경우 발달장애인 안내자료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우편물 접수방법』 등에 대한 안내판을 일괄 제작하여 비치하였음을 통보받았다.

그리고, 2010년 방송3사 홈페이지 웹접근성 보장촉구 집단진정 이후, 방송3사(MBC, SBS, KBS) 홈페이지 웹접근성 시정 권고를 이끌어냈다. 방송3사는 웹접근성 보장 계획을 수립, 약속을 하였다.

시정권고를 받은 사안들은 공익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2010년 인권위 시정권고 내용 중, 지하철 환승역의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은, 다른 장애인 단체와 변호사집단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금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장추련과 장애인 단체가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모니터링을 한 체육시설의 경우, 특히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겪고 있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와 법무법인 지평지성,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각장애인 체육시설 차별시정 촉구 구제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참정권과 권리옹호**

2012년도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무엇보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이 중요하였다. 2012년 4월 초, 서울과 대구(사람센터, 대구여장연, 장애인지역공동체), 포천II과

오산 IL 단체, 충남중증장애인IL센터 등과 연대하여 국회의원 선거시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을 하였다. 참정권 모니터링 이후, 대구 지역네트워크 단체는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차별상황을 접수,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이후, 진선미의원실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소수자 참정권 관련 질의사항 의견수렴을 위해 장추련을 방문하였으며,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산IL센터에서 모니터링한 실태자료를 근거로 질의하였으며, 이후 장애인참정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해 12월에는 14개 단체가 연대하여, 대선시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을 하였다. 참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 투표소가 2층인데 전동휠체어가 접근이 안 되는 점, 투표소 출입구에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는 임시판막이를 설치되어 있는 점,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선거공보물 내용이 비장애인에게 보내는 정보량과 동일하게 제공되지 않는 점, 손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투표용지를 고정시켜 주지 않는 점 등 여전히 차별적 상황이 시정되지 않고 있었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사람들 중 선거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42명이 자신의 차별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집단진정에 참여, 총 42건의 집단진정을 하였다.

이후,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구체적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 사법·행정절차 영역과 권리옹호

장추련은 2011년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여성이 구걸을 통한 노숙생활을 하면서 방화사건으로 형사사건을 받게 되자, 이 사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사법행정절차에서의 권리를 법정에 요청하여, 이 사건을 지원하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의사소통조력인’을 법정에 최초로 요청하였고, 피의자신분이었지만 장애여성은 의사소통조력인을 배치받은 상황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다.

이 재판이 갖는 의미는 제1심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은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는 점이다. 또한 가족과 사회가 그녀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녀가 분노조절훈련이 되지 않아 분노를 방화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표

출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그녀의 문제행동이 단순히 개인적 책임만으로 탓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였다. 또한 제2심에서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심 재판부다 판결한 치료보호감호조건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내렸다. 즉, 치료보호감호소가 개별맞춤치료를 할 상황이 아니므로,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판결>로 항소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제6항 의사소통조력인> 제도를 이끌어냄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 ▲법정에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침해를 예방하였다는 점, ▲지적장애여성의 재판에서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등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의 사법행정절차에서의 권리를 옹호하였다는 점이다.

• 이후, 장주련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매뉴얼의 필요성을 위기장애인 솔루션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안하였고, 이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다. 복지부는 ▲신뢰관계있는 동석자 배치 의무화, 즉 장차법제26조 범이행을 위하여, 법무부,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지침 등을 통해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임을 밝힘. 또한 ▲의사소통 조력인의 양성 및 파견기구 지정, 동 내용과 전국 수화통역센터 현황을 법무부, 대법원,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에 통보하여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과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매뉴얼 마련, 형사사법기관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공문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법무부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연구」를 프로젝트로 추진함으로써, 사법지원에서의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장애유형, 장애특성별 정당한 편의제공 필요,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의 경우도 장애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별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지원’이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공익소송과 권리옹호

2012년 발달장애영역 29곳, 시각장애영역 20곳, 지체장애영역 63곳, 청각장애영역 23곳 체육시설 총 135곳을 모니터링하였다. 그런데 모니터링 조사결과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보조인력이 제

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시각장애영역은 95%, 발달장애영역은 89.7%, 지체장애영역은 73%, 청각장애영역은 82.6%로 조사되었다.

시각장애인이 직장 근처 관할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찾아가자, 체육시설측은 “여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센터이므로,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할 수 없다, 관련 전문기관을 찾아가라”는 말과 함께 “보호자를 동반해야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추련은 현재 법무법인 지평지성,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각장애인 체육시설 차별시정을 위한 구제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수화언어공대위 권리옹호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중심이 되어 수화를 언어로 인정, 채택하여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서의 차별을 시정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구화만을 가르치고 있는 농유치부에 수화를 함께 가르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농학교 조기교육에 수화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농학생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를 구화와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농 문제는 크게 언어문제와 교육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언어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내에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밝혔다.

•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과 권리옹호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2015년부터 법률이 시행된다. 하지만 시행범위가 300석 이상 상영관(단일스크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국내 극장 가운데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92.8%를 차지하고 있어서 법적용의 실효성이 없다.

이러한 차별적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정보문화누리를 중심으로 장애인단체가 대책위를 결성하였다. 2011년 11월 15일부터 2012년 6월 12일까지, 대학로CGV, 영등포타임스퀘어CGV,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100일동안 펼쳤다. 이러한 1인 시위와 함께 영화진흥위원

회와 영화관람기술개발(폐쇄자막시스템 등),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실태조사 방법, 장애인정책사업 개발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장애인영화관람데이를 영진위, CJ CGV, CJ E&M 상호협력 MOU체결하였고, 매주 셋째주 화요일 저녁7시에 CJ CGV 등 11개 극장서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상영,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DVD작품당 800개 제작, 전국에 무료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권리옹호운동의 목적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에 규정된 영화사업자에 대한 임의조항을 개정하여 정당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5조 1항에 규정된 2015년 시행일자와 300석이상의 영화관 제한에 대한 법 개정을 하기 위함이며, 모든 장애영역의 영화관 접근과 원활한 영화관람을 위해 한국영화상영시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을 의무적으로 서비스 하고, 이동식 장애인용 좌석을 설치 및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재, 김윤덕의원(민주통합당) 등 14명이 공동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법안내용은 한국영화에 수화와 자막, 화면해설을 일정기간 의무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 관람 서비스를 하는 한국영화를 연간 30% 이상 상영하는 상영관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인권교육과 권리옹호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인권교육 의무화에 힘입어 학교에서 인권교육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처음 의뢰가 들어올 당시만 하더라도 전교생 대상 영상교육을 1회만 해달라는 경우가 많았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와 특수교사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학교가 인권교육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 수업시간을 확보하여 통합학급에 한해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과 모둠별 토론과 발표를 하고, 장애인해교육을 요청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에 장애인해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경기지역의 학교에서 상반기 인권교육(교사, 학생 대상)에 대한 많은 의뢰가 들어왔는데, 특수교사 대상 교육 의뢰도 작년도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2012년도 하반기에는 서울 중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대상의 인권교육 의뢰가 작년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복지관) 대상 인권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의뢰가 작년에 비하여 많이 들어왔다. 특히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의 교육의뢰가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요청에 의한 교육뿐만 아니라 장추련은 2012년도에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에 소재한 청각장애 특수학교들을 직접 찾아가서, 종사자와 학생 대상 인권교육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경우, 단순청각장애학생과 지적장애와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진 중복장애학생이 함께 다니고 있는데, 특히 중복장애학생들의 교육매뉴얼이나, 교육방식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법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절실히 인식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장애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아직도 법조계의 경우, 장애인 민간단체가 교육기회를 갖는 경우가 넓혀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의 장애특성 이해부족으로 인한 부당한 재판 판결(대표적 사례가 지적장애여성의 성폭행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 부족으로 증인진술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 경찰집단의 장애특성 이해부족으로 인한 수사과정에서의 차별적 상황 발생(지적장애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고,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예”라는 수사진술을 유도해내는 경우)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더 장애인 민간단체에서 경험한 현장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II. 향후 과제

최근 장애인의 차별에 즉각적 대응을 위한 장애인권센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장애인권센터 설립을 위하여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 또한 신나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가 장애인권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법인이 아닌 단체,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곳곳하게 활동하는 단체들의 재정자립도, 사무실과 상담회의실의 공간여부 등을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는 권리옹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보다는 겉가죽만 더 중요하게 여기고 판단하는 것이다. 실상, 중요한 것은 그동안 차별사안에 대하여 얼마나 대응해왔고, 그러한 대응을 통해 무엇을 변화시켰는가를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줄곧 정·경유착의 고리를 도출해내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으며, 한국자본주의를 독립적 자본주의 방식으로 성장시키지 못하였다. 매관자본주의의 불행한 성장방식은 정·경유착과 더욱 밀착되어, 부정부패와 독재를 키우고 도왔다.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장애인 단체와 정부나 지자체의 관계가 이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메이저 장애인 단체, 정·재계의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로비, 재정적 자

립도를 갖춘 단체 등 이러한 변수와 외적 자격요건 등을 앞세워서 장애인의 차별에 가장 역동적 대응을 갖춰나갈 수 있는 장애인권센터의 기반을 흐려놓지 않아야 한다. 지금 현재 우리 모두의 이념으로 되새기고 과제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장애인 민간단체의 역동성과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로 일궈내는 모니터링의 경우, 앞으로의 과제, 풀어야 할 숙원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 현재 장애인 민간단체는 민간기업체와 정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개인의 정보보호. 개인의 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장애인 민간단체는 민간기업체 조사 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장애인 고용 차별은 매우 심각하고, 회사 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객관적인 실태자료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통해 들어오는 상담 대부분, 강제해고를 당하였지만, 명목적으로는 자발적 해고로 되어 있고, 실제 회사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는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대응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늘 차별상담에서 답답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고용차별에서의 대응’이었다.

차별상담에서도 이렇듯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에서조차 장애인의 고용에서의 정당한 편의 실태, 현재 민간기업체와 정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과, 장애정도, 장애유형별 어느 정도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장애인 민간단체가 고용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민간단체가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의료영역에서의 장애차별 상황은 어떨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장애인의 의료차별 역시 심각하다. 장애인들과 만나서 얘기해보면, 병원에서 장애로 인하여 차별받은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의료차별을 입증할 증거확보도 어렵고, 오래전 의료차별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점, 의료차별인가 의료행위인가에 대한 법률가의 관점과 활동가의 관점이 다른 점, 무료 공익소송을 지원해줄 의료전문 변호사와 대응할 공익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여러 복합적 요인 때문일 것이다.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의료차별 행위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옹호할 것인가에 대한 공익소송 혹은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개정운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편의증진법의 경우, 작년에 복지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근본적 취지와 어긋나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면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운동이 추진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발달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하는 법개정 운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교육을 포함한 장애인인권교육의 경우에도, 의료인 집단과 법률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권교육이 실질적인 차별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이러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 진취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조력인 교육을 받는 변호사들의 경우,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교육을 좀더 깊이 있게 접하는 커리큘럼과 장애인 단체에서의 현장실습 의무화 등으로 강화되어야 좀더 장애인의 법률조력인으로서의 역할수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재 장애인 단체들은 서비스제공과 시혜적 차원의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법안, 즉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다.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현재 장애계의 이슈인,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달체계 개편 등 장애인 관련 주요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 한편에서는 권리옹호제도화(P&A)를 추진하려는 연대회의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장애인의 권리를 좀더 당당하고 하고, 인권침해로부터 즉각적 권리옹호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어떻게 연동되어 가야 할 것인가는 향후 풀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확보를 위한 정책추진 및 향후과제

-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확보를 위한 정책추진 및 향후과제 -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I. 들어가기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683천명으로 추정되어, 전체 인구 중 5.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은 '00년 3.1%, '05년 4.6%로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의 발생률 증가 등으로 인해 장애발생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장애인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법 시행 5주년을 맞아 그간의 법 이행 상황을 되돌아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올해 4월 11일부터는 모든 법인이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편의 제공기관이 대폭 증가하게 되며, 시각·청각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각종 정보제공과 수화통역 등 의사소통 수단 제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용 분야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까지 확대되어 중소기업도 사업장에서도 장애인의 직무수행 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분야의 경우 사립 유치원 및 법인 설치 어린이집까지 편의제공 의무가 확대되어 장애 영유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시 학습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간의 경험과 권리 구제 절차의 우회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 시행 이후 의무기관이 실제 편의제공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법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신규 의무기관을 중심으로 법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있으며,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 이행 정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재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여전히 이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개선을 상담·안내하고 있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는 궁극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비장애인의 의식과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주체로서의 인식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12.9)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조사

○ 장애인 차별의 정도에 대한 인식 조사

- 응답자 10명 중 6명(61.8%)은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7.7%였는데, 상당수의 응답자가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차별시정기구에 대한 인지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2명 중 1명

(55.8%)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을 알고 있거나 들어는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64.1%(233명)로 나타났다.

○ 영역별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

- 7개의 장애차별 영역별 이해도를 살펴본 결과, ‘광고·방송·통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영역’ 그리고 ‘고용영역’에서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영역별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

영역별 차별	평균*	순위
광고·방송·통신에서의 차별	2.03	1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1.91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서의 차별	1.76	6
모·부성권·성 영역 차별	1.65	7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영역 차별	2.00	2
고용현장에서의 차별	1.93	3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1.81	5

* 평균치가 클수록 차별에 대한 이해도(차별을 차별로 인식하는 정도)가 더 낮은 것을 의미.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의무 기관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표 2〉에서 보듯이 2011년 4월 11일부로 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법 이행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실태조사에서는 해당 기관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포함한 여러 차별 금지 의무와 그 밖의 다른 의무 사항들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표 2〉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모니터링 대상 기관

구분	고용	교육	정보통신·의사소통
'11.4.11부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적용되는 기관	- 상시 100인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작업장	- 국·공립 유치원 - 국·공립·사립학교 -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중 영유아 100인 이상시설	- 국·공립유치원 - 국·공·사립학교 -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작업장

1. 초·중·고·대학교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모니터링 결과

○ 설문조사 결과

- 조사 대상 초·중·고교의 12.4%(74개소)에서 장애학생이 입학할 지원했으나 입학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학교는 장애학생이 입학하지 못한 이유를 〈표 3〉과 같이 제시했다. 이 중 '특수학급 부족', '교실이나 교원 부족' 등은 개별 학교가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적 사안이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급기관에 교원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아닐 소지가 있다. 한편 '학교 편의시설에 비해 장애가 너무 중증'이라는 미입학 사유는 해당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거나 해당 학생에게 적절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정당하지 못하다.

〈표 3〉 입학하지 못한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하지 못한 이유	입학정원을 초과해서	6 (12.8)	2 (20.0)	4 (33.3)
	장애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특급학급 부족	6 (12.8)	5 (50.0)	1 (8.3)
	특수학급은 있지만 교실이나 교원 부족	2 (4.2)	-	2 (16.7)
	학교 편의시설에 비해 장애가 너무 중증	3 (6.4)	-	-
	학교의 정책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 (6.4)	-	-
	장애학생의 안전을 고려	2 (4.2)	-	-
	기타	25 (53.2)	3 (30.0)	5 (41.7)
	계	47(100.0)	10(100.0)	12(100.0)

주) 복수응답

- 조사 대상 초·중·고교의 3.3%(128개소)가 장애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요청받은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편의제공을 못한 이유로는 '예산의 부족'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는 해당 학교가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를 전혀 또는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관련 예산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보했으나 요구된 편의가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만 정당할 소지가 있다.

〈표 4〉 편의제공을 하지 못한 이유

(단위: 개소, %)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편의제공 못한 이유	예산 부족	43 (40.9)	21(36.2)	21 (53.8)
	인력 부족	26 (24.8)	16(27.6)	7 (18.0)
	구체적인 제공방법을 몰라서	9 (8.6)	5(8.6)	3 (7.7)
	기타	27 (25.7)	16(27.6)	8 (20.5)
	계	105 (100.0)	58(100.0)	39 (100.0)

주) 복수응답

- 일부 초·중·고교는 장애학생이 수업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학교에 대해 수업활동 미참여 이유를 알아본 결과, 그 이유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이 중 빈도가 높은 '수업활동을 하기에 장애가 너무 중중이어서' 및 '학업진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도 수업을 따라갈 수 없고, 이들 학생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내 주거나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당할 수 있는 이유로 보인다.

〈표 5〉 수업활동 미참여 이유

(단위: 개소, %)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활동 미 참여 이유	학업진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	11 (10.3)	10 (11.5)	3 (6.4)
	다른 학생들의 수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12 (11.2)	11 (12.7)	3 (6.4)
	학교편의시설에 비해 장애가 너무 중중이어서	3 (2.8)	3 (3.4)	1 (2.1)
	수업활동을 하기에 장애가 너무 중중이어서	35 (32.7)	26 (30.0)	14 (29.8)
	학교의 정책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 (0.9)	1 (1.2)	2 (4.3)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애학생의 안전을 고려	23 (21.5)	20 (22.9)	14 (29.8)
	기타	22 (20.6)	16 (18.3)	10 (21.2)
	계	107(100.0)	87(100.0)	47(100.0)

주) 복수응답

○ 현장방문 조사결과

- 조사원이 초·중·고·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편의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 조사하였다.
-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개·증축된 학교가 의무적으로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46.2%, 초등학교 43.0%, 중학교41.0%, 대학교 34.4%로 나타났다.

〈표 6〉 초·중·고·대학교 편의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구분	유형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미설치	비해당
편의시설 설치 현황	초등학교	43.0	36.0	18.5	2.5
	중학교	41.0	36.7	19.2	3.1
	고등학교	46.2	33.0	17.8	3.0
	대학교	34.4	34.9	14.2	16.5

* 미설치율 = 100 - (적정 설치율 + 부적정 설치율)

* 단순 설치율 = 적정 설치율 + 부적정 설치율

2. 국·공립 유치원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모니터링 결과

○ 설문조사 결과

- 조사 대상 유치원의 34.6%(134개소)가 장애아동이 입학을 지원했으나 입학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유치원에 대해 미입학 이유를 알아본 결과, 이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이 중 빈도가 높은 '장애가 심해 유치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도 그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만 정당할 소지가 있다.

‘정원을 초과하여서’와 ‘다른 원생의 보호자들의 반대가 심해서’라는 이유는 정당하지 않다. 특히 후자의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에 대한 불호에 근거한 불리한 대우는 그 자체로 차별이다.

〈표 7〉 입학이 되지 않은 이유

구 분	빈도(개소)	비율(%)
장애원생이 입학을 포기하여서	19	32.8
장애가 심하여 유치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14	24.1
장애원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가 없어서	13	22.4
정원을 초과하여서	7	12.1
내부 방침(운영위원회 결정 포함)에 따라서	3	5.2
원생의 장애와 관계없이 입학기준에 미달하여서	1	1.7
다른 원생의 보호자들의 반대가 심해서	1	1.7
계	58	100.0

주) 복수응답

- 조사 대상 유치원의 42.7%(199개소)가 장애원생이 입학·전입할 때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절차를 밟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추가 서류 및 절차를 요구한 이유는 〈표 8〉과 같이 조사되었다. 이들 이유 중 ‘장애 특성에 맞춘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는 정당한 이유다. ‘건강상태가 학업 수행에 적합한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해’라는 이유는 그 파악이 입학이나 전학 거부의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정당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표 8〉 추가 서류나 절차 요구 이유

구 분	빈도(개소)	비율(%)
장애특성에 맞춘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5	50.7
건강상태가 학업 수행에 적합한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해	49	21.6
건강상태를 고려한 반 배정, 생활지도 등을 위해	47	20.7
기타 용도 (정원 외 입학(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확인)	16	7.0
계	227	100.0

주) 복수응답

- 장애인생의 원외 활동을 제한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유치원의 12.8%(10개소)가 제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유치원은 그 제한 이유로 '수업(활동)을 위한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 등을 제시했는데, 이 이유는 해당 원생에게 이동보장구나 보조인력 등의 편의를 제공해도 여전히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표 9〉 원외 활동 불참 이유

구 분	빈도(개소)	비율(%)
장애인생 및 부모가 불참을 원하여서	3	50.0
수업(활동)을 위한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2	33.3
언어치료실 교육으로 인하여 불참	1	16.7
계	6	100.0

주) 무응답 4개소 제외

○ 현장방문 조사결과

-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 또는 개축된 53개소 국·공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과 기타시설 등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은 47.0%, 부적정 설치율은 42.5% 수준이었다.

3. 영유아 100인 이상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결과

○ 설문조사 결과

-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34.6%(134개소)가 입학을 지원한 장애 영유아 중 입학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표 10〉에서처럼 미입학 이유를 제시했다. 이들 이유 중 상당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정당하고 '다른 영유아 보호자들의 반대가 심해서'는 그 자체로 정당하지 못한 이유다.

〈표 10〉 입학이 되지 않은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정원을 초과하여서		73	17.5
장애 영유아가 입학을 포기하여서		45	10.8
장애영유아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가 없어서		32	7.7
장애가 심하여 어린이집 생활에 어려움 예상		24	5.8
영유아의 장애와 관계없이 입학기준에 미달하여서		8	1.9
다른 비장애 영유아 보호자들의 반대가 심해서		3	0.7
내부방침(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1	0.2
기 타	지원자가 없어서	100	24.0
	주변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있어서	14	3.4
	해당없음	15	3.6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6	1.4
	편의시설 미비	1	0.2
	기 타	21	5.0
무응답		73	17.5
총 계		416	100.0

주) 복수응답

- 장애 영유아가 원내 활동에 불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은 조사 대상 기관의 7.5%(29개소)였다. 이들 기관은 그 불참 이유를 〈표 11〉과 같이 제시했는데, 이 중 ‘보조기구 또는 기타 편의 제공이 되지 않아서’는 그러한 편의 제공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야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른 학생의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그 ‘지장’이 특정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지장’을 해소할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될 수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는 그것이 원내 활동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하지 않다.

〈표 11〉 원내 활동 불참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장애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불참		13	7.6	
장애원생 및 부모가 불참을 원하여서		7	4.1	
수업(활동)에 적합한 보조기구 또는 편의제공이 되지 않아서		4	2.4	
다른 학생의 수업(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3	1.8	
내부 방침(운영위원회 결정 포함)에 따라서		1	0.6	
기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해서	2	83.5	1.2
	타기관 치료수업으로 인해서	1		0.6
	한시적 장애통합수업으로 이뤄짐	1		0.6
	장애 영유아가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1		0.6
	무응답	2		1.2
해당 없음(장애 영유아가 없어서)		135	79.4	
계		170	100.0	

주) 복수응답

- 장애 영유아의 생활 및 학습 지도를 위한 전담(보조)인력의 배치 여부를 알아본 결과, 조사 대상 기관의 28.9%(111개소)가 이를 배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장애 영유아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표 12〉와 같이 조사되었다. 이들 이유 중 ‘예산 부족’, ‘인력 부족’ 등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만 정당할 이유가 될 수 있다.

〈표 12〉 전담(보조)인력 미배치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서		26	9.4	
장애가 심하지 않아 전담(보조)인력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서		61	22.1	
적합한 전담(보조)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9	3.3	
내부 방침(운영위원회 결정 포함)에 따라서		3	1.1	
기 타	장애영유아가 없어서(해당 없음)	147	167	55.3
	전담인력 계획이 없음	5		1.9
				60.5

구분		빈도		비율	
	장애영유아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되어서	5		1.9	
	장애인통합시설이 아니어서	4		1.5	
	예산 및 인력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4		1.5	
	학부모가 원하지 않음	2		0.8	
무응답		10		3.6	
계		276		100.0	

주) 복수응답

○ 현장방문 조사결과

-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개·증축된 60개소의 어린이집의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은 54.3%, 부적정 설치율은 24.4%로 나타났다.

4.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모니터링 결과

○ 설문조사 결과

- 조사 대상 병원이 보조건을 진료실 내부까지 동반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조사한 결과, 31.8%(167개소)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들은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표 13>와 같이 제시했는데, 이 중 ‘병원 이용자들이 거부감을 느껴서’는 개인의 선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적 선호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진료에 방해가 되어서’라는 이유는 그 ‘방해’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표 13> 보조건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개소, %)

사유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다른 환자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37	24.0	10	31.3	4	22.2	16	30.8	67	26.2
병원 이용인들이 거부감을 느껴서	35	22.7	10	31.3	5	27.8	10	19.2	60	23.4
진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19	12.3	7	21.9	4	22.2	9	17.3	39	15.2
병원 내부 진료실 외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20	13.0	1	3.1	4	22.2	8	15.4	33	12.9
기타 이유 ¹⁾	43	27.9	4	12.5	1	5.6	9	17.3	57	22.3
계	154	100.0	32	100.0	18	100.0	52	100.0	256	100.0

주: 복수응답

- 병원이 장애인 환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6.7%(35개소)가 이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요구 이유를 <표 14>와 같이 제시했다. 이 중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정당할 수 있다. '해당 장애인의 입·퇴원 또는 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라는 이유는, 만약 입·퇴원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해 장애인에게만 추가 서류를 요구한 것이라면 정당하지 않다.

<표 14> 추가 서류 요구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15	88.2	1	50.0	1	100.0	11	91.7	28	87.5
해당 장애인의 입·퇴원 또는 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	11.8	1	50.0	0	0.0	1	8.3	4	12.5
그 동안 병원관행으로 추가 서류를 받아왔기 때문에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17	100.0	2	100.0	1	100.0	12	100.0	32	100.0

주: 복수응답

- 병원이 수화통역사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요청받은 수화통역사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병원은 10.5%(55개소)였다. 요청을 받고도 제공하지 못한 이유는 <표 15>와 같이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들 중 '방법을 모른다'거나 '진료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유는 정당하지 못하다.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이유는, 수화통역사를 필요할 때에만 외부에서 호출하는 경우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 '일반진료에는 수화통역사를 제공했으나 응급진료에는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도 정당하기 어렵다.

1) 기타 이유: (정신병원 특성상)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 때문에 허용하지 못함 /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 군인병원 / 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대기실 또는 밖에서 대기 / 동물 진입 금지 규정 때문에 / 병원직원의 안내 / 보조견 방문 사례 없음 / 보조견이 무섭다 /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보조견 없이 휠체어나 보조인 동반 / 소아과 환아들이 너무 많아 주로 외부대기 / 수술전문병원으로 case가 없었으며 1인실을 사용할 경우 가능 / 입원환자들의 면역력이 약하며, 진료시에는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 / 정신과전문병원으로 상담 위주의 치료 때문에 의해 환자 일대일 진료가 필요함 / 치과진료상 기계의 예민한 소리의 반응할 수도 있어서 위험 / 치료감호소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등 수용·치료하는 곳이기 때문 / 허용한다 안한다 할 수 없고 알레르기 질환 환자시 허용 안 됨

응급진료 때에도 필요할 경우 청각장애인 환자에게 수화통역사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인 바, 응급 시 수화통역사를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해야 한다.

〈표 15〉 수화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화통역사 섭의 방법을 몰라서	13	34.2	3	50.0	0	0.0	5	35.7	21	34.4
수화통역사 배치시, 추가 비용이 들어서	2	5.3	1	16.7	0	0.0	0	0.0	3	4.9
일반진료에는 활용하였으나 응급진료에는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1	2.6	0	0.0	0	0.0	1	7.1	2	3.3
수화통역사 대신 통신 중계 서비스를 활용했기 때문에	1	2.6	0	0.0	0	0.0	0	0.0	1	1.6
진료에 방해가 되어서	1	2.6	0	0.0	0	0.0	0	0.0	1	1.6
진료 당일 청각장애 환자가 갑자기 수화통역사 배치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1	2.6	0	0.0	0	0.0	0	0.0	1	1.6
기타 이유 ²⁾	19	50.0	2	33.3	3	100.0	8	57.1	32	52.5
계	38	100.0	6	100.0	3	100.0	14	100.0	61	100.0

주: 복수응답

- 홈페이지가 있는 병원들의 웹 접근성 보장 정도를 조사한 결과, 중요한 웹 접근성 인증기준 12가지 중에서 단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병원은 44.4%(233개소), 1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병원은 9.5%(50개소)로 나타나 상당수의 병원의 웹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병원들은 웹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표 16〉와 같이 제시했는데, 이 중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서’라는 이유는 병원 경영이 아주 특별하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정당하기 어렵다.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웹사이트 이용이 적어서’는 정당하지 않다. 공중에게 개방된 웹사이트는 불특정 수의 장애인의 접근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접근성은 실제 장애인 이용자 수와는 무관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2) 수화통역사와 함께 내원하거나 입원한 경우 필요한 의사소통은 몸짓으로 가능 / 실제 동원중인 청각장애인과 직접 필답으로 소통하여 진료하고 있음 / 구내매점 주인이 수화능통

〈표 16〉 웹 접근성 미보장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13	27.7	3	50.0	4	57.1	4	22.2	24	30.8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웹 사이트 이용이 적어서	19	40.4	2	33.3	2	28.6	7	38.9	30	38.5
내부규정(방침)이 없어서	2	4.3	0	0.0	0	0.0	1	5.6	3	3.8
기타 이유 ³⁾	13	27.7	1	16.7	1	14.3	6	33.3	21	26.9
계	47	100.0	6	100.0	7	100.0	18	100.0	78	100.0

주: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음 360개소, 홈페이지 미구축 87개소 제외

○ 현장방문 조사결과

-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중·개축한 병원 102개소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60.2%, 부적정 설치율은 29.6%였다.

5. 상시 100인 이상 근로사업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모니터링 결과

○ 설문조사 결과

- 조사 대상 근로사업장 중 장애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이 채용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93.7%(194개소)가 채용된 사례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들 사업장은 장애인이 채용되지 못한 이유를 〈표 17〉와 같이 제시했다. 이 이유들 중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는 장애가 해당 직무의 핵심적 부분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되고 만약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도 여전히 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3) 일반적인 신체장애보다는 정신장애인이 많음 / 간단하게 하기위해 / 환자가 없음 / 홈페이지 관리부분에 추가 인력이 있어야 해서 / 구축 중 / 장애인 이용 관련 인식 부족 / 관리비용 및 관리가 힘들

〈표 17〉 장애인이 채용되지 못한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와 무관하게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	19	36.5	0	0.0	2	100.0	4	33.3	25	36.8
지난 1년간 장애인 직원 채용이 법정비율(의무고용률)을 넘었기 때문에	6	11.5	0	0.0	0	0.0	0	0.0	6	8.8
오래 일하지 못하고 퇴사할 것 같아서	1	1.9	0	0.0	0	0.0	0	0.0	1	1.5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	5	9.6	0	0.0	0	0.0	3	25.0	8	11.8
편의제공이나 시설, 설비 개조 비용이 과도하게 들 것 같아서	1	1.9	0	0.0	0	0.0	0	0.0	1	1.5
고객이 장애인을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서	0	0.0	0	0.0	0	0.0	0	0.0	0	0.0
동료들이 장애인 직원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0	0.0	0	0.0	0	0.0	0	0.0	0	0.0
장애로 인해 직장 내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지 못할 것 같아서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⁴⁾	20	38.5	2	100.0	0	0.0	5	41.7	27	39.7
계	52	100.0	2	100.0	2	100.0	12	100.0	68	100.0

주: 복수응답

- 장애인근로자가 해고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의 1.6%(8개소)가 해고 사례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사업장은 해고 이유를 〈표 18〉와 같이 제시했는데, 이 중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서’는 근무평정에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는 경우에 정당할 수 있다. 단,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것이 장애 때문인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면 근무태도 문제가 해소된다면 이 이유는 정당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장애 때문에 직무 수행 능력이 낮아서’는 장애가 해당 직무의 핵심적 부분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어 그 핵심적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리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도 여전히 직무의 핵심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당할 수 있다.

4) 업무내용과 관련 수행을 하기 어려움 / 미화원으로 입사를 요구했으나 본인이 거절 / 상호조건불일치 / 채용인원충원 / 인원과잉으로 일부채용 / 장애인 무단결근 / 면접 후 고용형태에 부적절함 / 해당 근무부서 업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 / 장애증상의 재발로 인하여 / 필요인력만 채용, 직무상 미화 및 원무과에 국한됨 / 직무특성상 / 서류전형 탈락, 자격증 미충족

〈표 18〉 장애인 직원 해고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서	0	0.0	0	0.0	0	0.0	1	100.0	1	50.0
직원의 이직	1	100.0	0	0.0	0	0.0	0	0.0	1	50.0
계	1	100.0	0	-	0	-	1	100.0	2	100.0

주: 해당없음 523 사례 제외

○ 현장방문 조사결과

-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중·개축한 근로사업장 20개소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8.3%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에 맞게 적정 설치한 적정 설치율은 37.3%, 설치는 하였으나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비적정 설치율은 41.0%로 나타났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개선 상담·안내

○ 이행 개선 상담·안내 취지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4년 이상이 지났지만 동법을 이행해야 하는 기관들이 아직도 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법이 잘 이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이러한 문제점 해소의 일환으로 법 이행이 미진한 기관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이행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상담하는 이행 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단순한 이행 실태조사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행을 개선하는 데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다.

○ 이행 개선 상담·안내 방법

- 지난 2010년 이행 모니터링 당시 조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시·군·구청(21개소)을 대상으로,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 27개 이행 의무 사항 각각에 대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게 하고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 계획을 제출하게 했다. 상담안내만은 제출된 미이행 사항에 대한 사유나 향후 이행 계획의 내용이 정당하거나 적절한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안내서를 작성했다. 상담안내서에서는 어떤 이행 의

무 사항에 대한 미이행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왜 정당하지 않은지 설명을 달았고 해당 사항을 적법하게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의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상담안내반은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상담안내서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실무자로부터 향후 이행을 개선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 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지난 2010년 이행 모니터링 당시 1,016개소의 문화·예술시설 중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99개 시설을 이행 개선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했다. 상담안내반 요원들은 대상 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상담안내 활동을 실시했다. 상담안내반은 먼저 지난 모니터링 이후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편의시설 항목별로 조사를 실시한 다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에 의거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개축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상담하고 그 결과를 상담안내서로 작성하여 해당 시설의 확인을 받았다.

○ 시·군·구청에 대한 상담·안내 내용

- 상담·안내 대상 시·군·구청이 지난 2010년 이행 모니터링 당시 가장 많이 이행하지 못한 의무 사항은 장애 차별 인식 교육을 실시할 의무, 장애인 민원인의 의사소통과 시·군·구청에 의해 생산·배포된 정보에의 접근을 위한 수화통역사·점자자료 등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이다.
- 일부 시·군·구청은 접근 가능한 민원 접수대 설치, 민원실 주변에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등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표 19〉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주요 이행 의무 사항

미이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주요 이행 의무 사항		기관수
서면 자체 평가	청각장애인의 정보습득을 위한 수화·구화 교육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8
	시각장애인의 정보습득을 위한 점자교육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7
	기관 소식지에 음성프로그램 삽입 및 소식지의 점자 인쇄	18
	구민의 날 및 체육대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1
	지역 생활실태조사에 장애여성 내용 포함	2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차별인식 교육 실시	19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권리 구제 교육 실시	20

미이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주요 이행 의무 사항		기관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별인식 교육 실시	18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차별인식 교육 내용에 장애여성 내용 포함	1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차별인식교육 내용에 정신장애 내용 포함	1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차별인식교육 내용에 장애아동 괴롭힘 금지 내용 포함	1
	장애인 공무원 자녀에게 직장보육시설 우선 이용권 제공	1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이용 안내책자 제공	3
현장 방문 평가	민원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3
	민원실에 확대경 비치	6
	민원실에 영상전화기 설치	15
	민원실에 수화통역사 배치	19
	민원실에 점자자료 비치	15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민원 접수대 설치	6
	민원실에 안내도우미 배치	9
	민원실에 경사로 및 리프트 설치	2
	민원실에 경사로 및 리프트 안내표지 설치	7
	민원실 주변에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6
	민원실 주변 장애인용 화장실 이용 편리	2
	점자자료 제공 약속 제시	12
	점자자료 제공 시점 제시(요청받은 후 7일 이내)	4

- 시·군·구청은 장애 차별 인식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로 교육 대상자 모으기의 어려움, 교육교재 구하기의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상담안내반은 이 교육이 의무라는 것, 장애인의 날 행사나 직원 월례조회 등을 교육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 관내 복지관 등 장애인 단체가 당해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 요건으로 하여 이들 단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안내하였다.
- 시·군·구청은 수화통역사·점자자료 등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인력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상담안내반은 예산 부족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 편의 제공 의무는 다른 조치들이 함께 취해져야 적법하게 이행된다는 점 등을 안내하였다. 그 예로, 민원처리가 복잡한 의사소통을 요할 때 수화통역사를 제공하되 적시에 이를

- 호출하기 위한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것, 청각장애인 민원인이 수화통역사를 요청하더라도 의사소통 사안이 단순하면 필담 등 다른 대체 수단을 제공해도 된다는 점을 담당자에게 숙지시키는 것, 이러한 점들을 적시한 지침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안내하였다.
- 장애인용 화장실,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사항의 경우, 시·군·구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많아 상담안내반은 '적정 설치'를 강조하였다.

○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상담·안내 내용

- 상담·안내 대상 문화·예술 시설(99개소)이 지난 2010년 이행 모니터링 이후 편의시설을 개선했는지 점검한 결과, 매개시설 및 내부시설은 비교적 개선율이 높지만 개조가 어려운 위생시설 및 안내시설의 개선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편의시설 종류별 개선율

(단위 : 개소, %)

항 목	2010년				2011년				개선율
	적 정	부적정	미설치	비해당	적 정	부적정	미설치	비해당	
매개시설	4	252	32	21	48	209	31	21	15.0
내부시설	26	264	61	61	82	210	59	61	16.0
위생시설	13	382	111	215	55	347	105	214	8.0
안내시설	9	149	547	16	33	142	530	16	3.0
기타시설	25	167	27	811	67	131	21	811	19.0
정당한편의	58	82	1120	594	134	81	1048	591	6.0
계 (평균)	135	1,296	1,898	1,718	419	1,120	1,794	1,714	9.0

- 상담안내반은 아직 개선되지 않은 편의시설에 대해 그 개선비용을 추계하였다. 시설당 평균 개선비용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경우 소요비용이 큰 승강기가 개선 항목에 포함되어 평균 개선비용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상담안내반은 편의시설 항목별로 개선 안내를 하였으며, 많은 개선을 요하는 시설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생시설, 안내시설로 나타났다.
- 정당한 편의 제공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설관리자가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임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던바, 상담안내반은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필요성 등을 안내하였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지속적 실시
 - 일부 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의무 사항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교육 및 홍보 자료의 생산·배포와 교육 시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표준 매뉴얼 또는 지침 개발 필요
 - 조사 대상 기관들은 정당한 편의 제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 세부 사항을 정리한 표준 매뉴얼 또는 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 관련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들이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매뉴얼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개축과 일부 정당한 편의 제공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상당수의 조사 대상 기관들은 예산이 부족하여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호소하였다. 관련 예산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관이 의회 등에 예산을 요구하는 등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지방의회 등은 그러한 예산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Ⅲ. 나가기

지금까지 2011년 시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및 이행 개선 상담·안내 결과를 위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기기입식 조사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조사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차별 및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율의 경우 여전히 상당한 개선이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인 만큼,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 부처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며 법의 이행을 위한 기본적 계획안을 가

지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 10월말에 ‘유엔 에스캅 정부간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전략(‘인친전략)’을 주도적으로 결의한 바 있으므로, 아태 지역의 장애인 정책 선도국가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앞으로 장애인의 자립,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익보호,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의 권익 증진,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범정부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향후에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부처로서 타부처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 고용, 경제활동, 문화예술, 정보통신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기획팀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기획팀장)

1. 들어가며

장애계를 중심으로 2001년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정 운동은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공포되고, 2008년 4월 11일 시행됨으로 그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오는 2013년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째 되는 해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5,230건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접수되었고, 그 중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된 사건은 2,385건이었다. 그 중 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사건은 291건, 조사중 해결된 사건은 1,168건, 합의종결된 사건은 166건으로, 모두 1,626건(68.2%)의 차별시정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시정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이를 제도적·정책적으로 개선하여 사회적인 변화를 견인하는데는 일정정도 한계가 있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의무이행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과 관련이 있다.

특히, 관련 법령의 정비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함에 있어 불가피한 요소로서, 예를 들어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증진을 위해서는 「건축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장애인의 실질적이고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차별의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서는 직접차별에 대

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차별에 대한 내용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실무상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적·발달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및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지적·발달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된 정당한 편의가 지원되어야 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규정 및 지침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동법의 목적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11.25.) 이후 2012.12.31.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사건은 총 14,095건이며, 이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은 5,883건으로 전체 차별사건의 41.7%에 해당된다(〈표 1〉 참조).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2008.4.11.) 이후 5년간 추이로 살펴보면, 2008년은 전체 차별사건 1,111건 중 장애차별사건이 585건(52.7%), 2009년은 1,685건 중 725건(43.0%), 2010년은 2,680건 중 1,695건(63.2%), 2011년은 1,804건 중 886건(49.1%), 2012년은 2,546건 중 1,339건(52.6%)으로 평균 53.2%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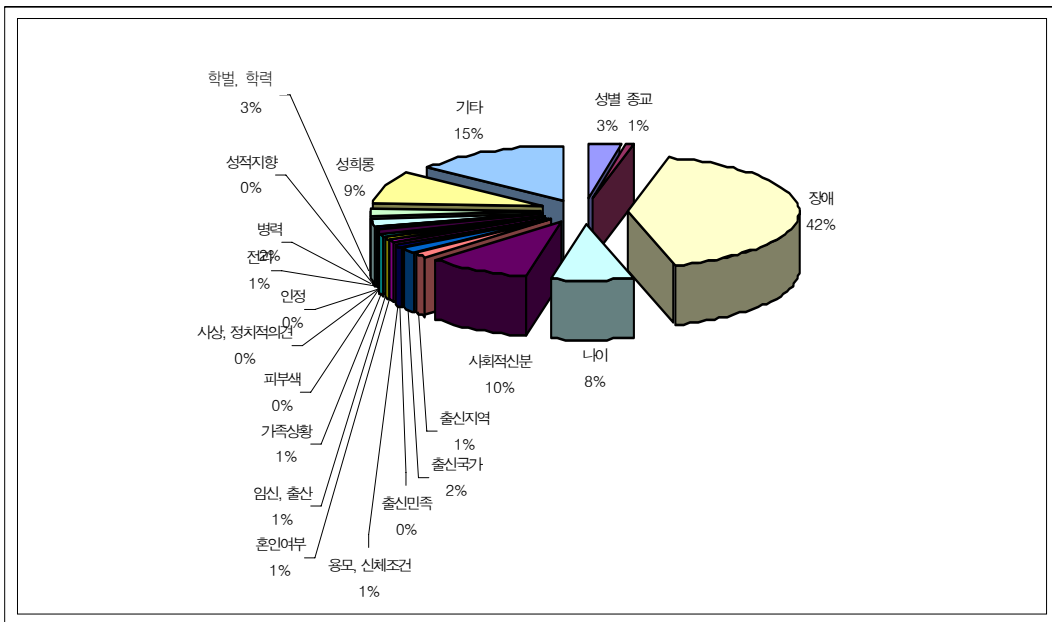
장애차별 사건 비중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까지 20.4%였다가 법률 시행 이후 53.2%로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인권의식을 제고시키고 신장시키는데 큰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 2012.12.)

(단위: 건, %)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총계	2001. 11.~ 2012. 12.	진정건수	14,095	8,212	5,883
		비율(%)	100.0	58.3	41.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 25.~ 2008. 4. 10.	진정건수	4,269	3,616	653
		비율(%)	100.0	79.6	20.4

구 분			차 별 사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4.11~ 2012.12.	진정건수	9,826	4,596	5,230
		비율(%)	100.0	46.8	53.2
	2008. 4. 11~ 2008. 12.	진정건수	1,111	526	585
		비율(%)	100.0	47.3	52.7
	2009. 1.~ 2009. 12.	진정건수	1,685	960	725
		비율(%)	100.0	57.0	43.0
	2010. 1.~ 2010. 12.	진정건수	2,680	985	1,695
		비율(%)	100.0	36.8	63.2
	2011. 1.~ 2011. 12.	진정건수	1,804	918	886
		비율(%)	100.0	50.9	49.1
	2012. 1.~ 2012. 12.	진정건수	2,546	1,207	1,339
		비율(%)	100.0	47.4	52.6



[그림 1]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 2012.12.)

나.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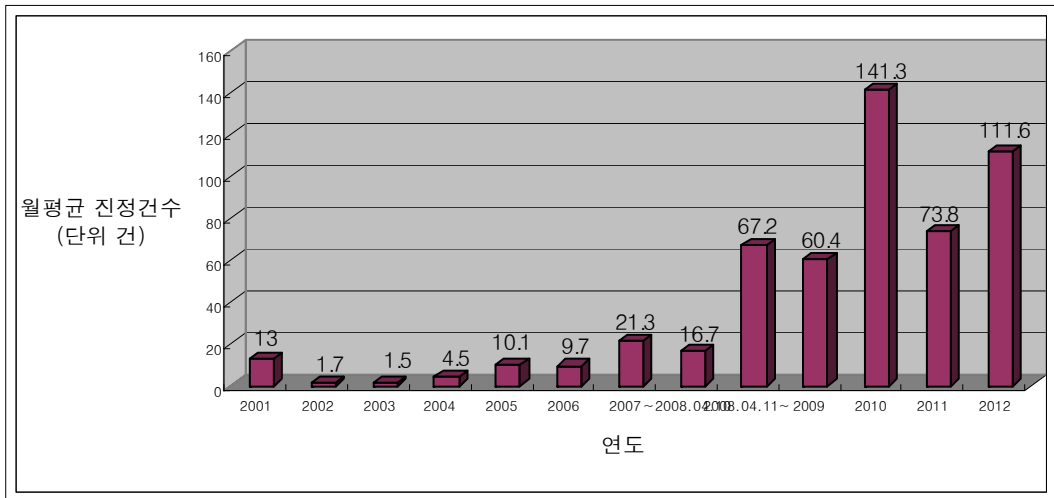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 10배 증가

200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5,883건이며, 그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5,230건이다(〈표 1〉 참조). 이를 월 평균 접수 건수로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월 평균 8.5건이 접수되었으나, 법 시행 이후는 월평균 92.2건이 접수되어, 법 시행 이후 10배 가량 사건 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2.12.)

(단위: 건)

연도 (년 구분)	합계	2001 (11~ 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4.1~ 4.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2008 (4.11~ 12월)	2009	2010	2011	2012	
장애 진정 건수	연도별	5,883	13	20	18	54	121	116	256	55	585	725	1,695	886	1,339
	월평균	44.2	13	1.7	1.5	4.5	10.1	9.7	21.3	16.7	67.2	60.4	141.3	73.8	111.6



[그림 2] 연도별 및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2.12.)

다.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시각·청각장애 및 지적·발달장애 관련 진정사건이 전체사건의 4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간 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을 장애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지체 장애인이 1,657건(31.7%), 시각장애인이 937건(17.9%), 지적·발달장애인이 72건(13.9%), 청각장애인이 580건(11.1%), 뇌병변장애인이 384건(7.3%), 기타 장애유형(내부기관장애, 안면장애 등)이 679건(13.0%)으로, 지체장애인과 관련한 사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시·청각 및 지적·발달장애인의 사건 비율은 43%였다(〈표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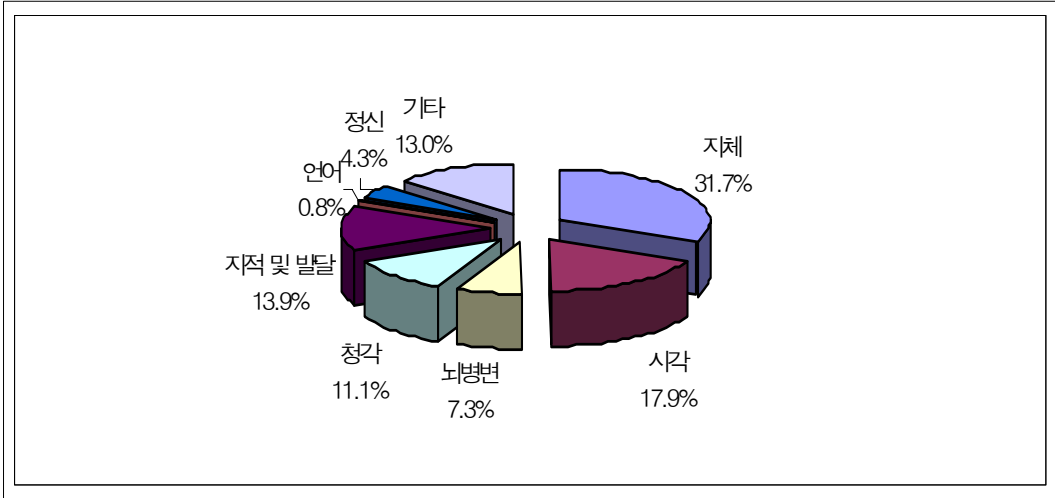
지적·발달장애인 사건의 경우, 전체 장애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9%(725건)에 불과하나, 2008년도 29건, 2009년도 70건, 2010년도 181건, 2011년도 214건, 2012년도 2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2.12.31.)

(단위: 건, %)

구 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 및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전체	계	5,230	1,657	937	384	580	725	41	227	679
	비율	100.0	31.7	17.9	7.3	11.1	13.9	0.8	4.3	13.0
2008	건수	585	72	85	35	45	29	1	15	303
	비율	100.0	12.3	14.5	6.0	7.7	4.9	0.2	2.6	51.8
2009	건수	725	288	91	69	46	70	11	44	106
	비율	100.0	39.7	12.6	9.5	6.3	9.7	1.5	6.1	14.6
2010	건수	1,695	508	427	136	275	181	8	73	87
	비율	100.0	30.0	25.2	8.0	16.2	10.7	0.5	4.3	5.1
2011	건수	886	297	142	57	72	214	8	48	48
	비율	100.0	33.5	16.0	6.5	8.1	24.2	0.9	5.4	5.4
2012	건수	1,339	492	192	87	142	231	13	47	135
	비율	100.0	36.7	14.3	6.5	10.6	17.3	1.0	3.5	10.1
등록 장애인 구성비 ¹⁾	인원 (천명)	2,519	1,333	251	261	261	167	17	95	134
	비율	100.0	52.9	10.0	10.4	10.4	6.6	0.7	3.8	5.2

1)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11. 12.(보건복지부)



[그림 3] 장애유형별 사건접수 현황(2008.4.11.~ 2012.12.31)

라.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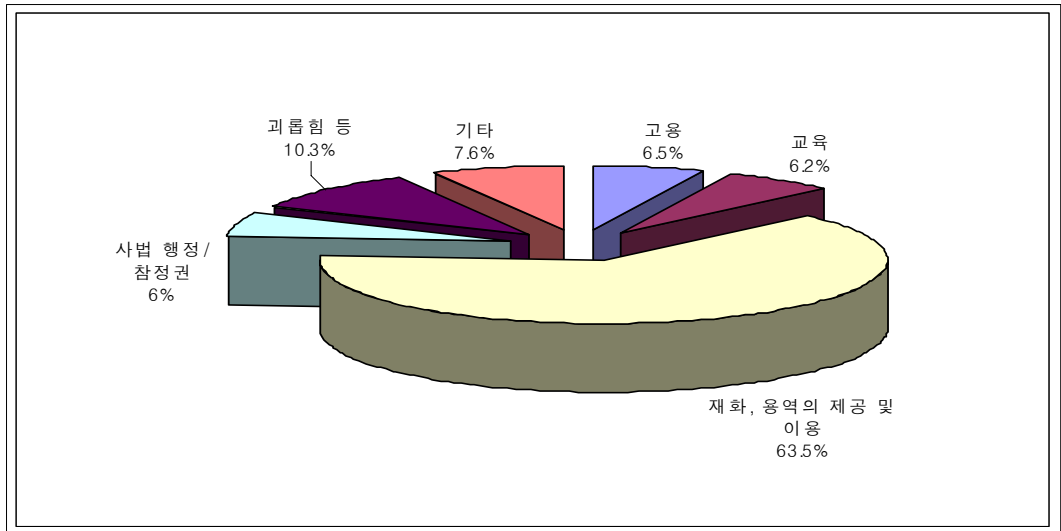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간 가장 많이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63.5%)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서비스,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의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역별 사건비율은 재화·용역 일반이 16.3%, 시설물 접근이 14.4%,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이 12.2%, 보험·금융서비스가 8.2%, 이동 및 교통수단이 7.4%, 문화·예술·체육이 5.0%로 나타났다. ‘재화·용역 일반’ 영역의 사건으로는 식당이용 거부, 놀이기구 이용 제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스마트폰 요금제 부과, 교통카드 이용 시 편의 미제공 등이 있다.

[표 4]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2.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 접근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전체	접수	5,230	338	323	3,322	851	429	753	387	641	261	309	539	399
	비율	100.0	6.5	6.2	63.5	16.3	8.2	14.4	7.4	12.2	5.0	5.9	10.3	7.6

구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 접근 의사 소통	문화 예술 체육			
2008 (4~12)	접수	585	41	61	347	37	49	78	128	35	20	55	42	39
	비율	100.0	7.0	10.4	59.3	6.3	8.4	13.3	21.9	6.0	3.4	9.4	7.2	6.7
2009	접수	725	69	49	412	153	91	93	49	13	13	42	105	48
	비율	100.0	9.5	6.8	56.8	21.1	12.5	12.8	6.8	1.8	1.8	5.8	14.5	6.6
2010	접수	1,695	82	55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176	74
	비율	100.0	4.8	3.2	74.9	17.5	3.8	15.5	6.1	29.9	2.1	2.3	10.4	4.4
2011	접수	886	64	62	487	179	70	67	67	45	59	80	105	88
	비율	100.0	7.2	7.0	55.0	20.2	7.9	7.6	7.6	5.1	6.6	9.0	11.9	9.9
2012	접수	1,339	82	96	807	186	154	252	40	42	133	93	111	150
	비율	100.0	6.1	7.2	60.3	13.9	11.5	18.9	3.0	3.1	9.9	6.9	8.3	11.2



[그림 4]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2.12.31)

이를 장애차별 영역별 월평균 사건수로 살펴보면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이 58.6건, ‘괴롭힘 및 기타’영역이 16.5건, ‘고용’영역이 5.9건, ‘교육’영역이 5.7건, ‘사법·행정 및 참정권’영역이 5.4건으로, 월평균접수건수가 92.2건에 이른다.

〈표 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영역별 월평균 진정사건 증감 추이

(단위: 건)

구 분		2001.11.25. ~ 2008. 4.10.	2008. 4.11. ~ 2008.12.31.	2009. 1. 1. ~ 2009.12.31.	2010. 1. 1. ~ 2010.12.31.	2011. 1. 1. ~ 2011.12.31.	2012. 1. 1. ~ 2012.12.31.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5년 (2008. 4.~ 2012. 12.)
합계	전체건수	653	585	725	1,695	886	1,339	5,230
	월평균	8.5	67.2	80.6	188.3	98.4	148.8	92.2
고용	전체건수	153	41	69	82	64	82	338
	월평균	2	4.7	5.8	6.8	5.3	6.8	6.0
교육	전체건수	122	61	49	55	62	96	323
	월평균	1.6	7.0	4.1	4.6	5.2	8.0	5.7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전체건수	207	347	412	1,269	487	807	3,322
	월평균	2.7	39.9	34.3	105.8	40.6	67.3	58.6
사법·행정 /참정권	전체건수	-	55	42	39	80	93	309
	월평균	-	6.3	3.5	3.3	6.7	7.8	5.4
괴롭힘, 기타	전체건수	171	81	153	250	193	261	938
	월평균	2.2	9.3	12.8	20.8	16.1	21.8	16.5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과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간동안(2001.11.25.~2008.4.10.)의 사건 접수 건수를 모두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포함함.

마.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지체장애인은 ‘시설물 접근’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 뇌병변 및 지적·발달장애인은 ‘재화·용역 일반’에서, 정신장애인은 ‘괴롭힘 등’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차별 경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간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 상 버스 및 철도 이용, 도로 및 지하상가 이동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과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사례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웹 접근성 및 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뇌병변장애인 및 지적·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거나 놀이시설이나 식당 등 특정 시설의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주변인 및 시설종사자로부터 비하적 발언, 폭행, 욕설 등을 당했다는 사례가 많았다.

〈표 6〉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2.12.31.)

(단위: 건)

사건유형	총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발달	언어	정신	기타	
소계	5,230	1,657	937	384	580	725	41	227	679	
고용	338	119	36	26	48	25	5	22	57	
교육	323	43	57	23	41	104	3	7	45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용역 일반	851	276	105	113	54	172	8	34	89
	시설물 접근	753	514	122	37	2	10	-	2	66
	이동 및 교통수단	387	167	58	31	14	29	3	2	83
	정보통신·의사소통	641	26	337	4	230	22	2	1	19
	보험·금융	429	115	63	39	71	72	5	35	29
	문화·예술·체육	261	42	19	12	50	111	-	7	20
사법·행정	222	40	40	8	25	56	4	9	40	
참정권	87	10	18	-	2	1	-	1	55	
괴롭힘 등	539	152	39	64	27	97	8	81	71	
기타	399	153	43	27	16	26	3	26	105	

3.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세부 유형 및 주요 진정 사례

가. 고용 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간 접수된 고용차별 사건 338건 중에서는 ‘모집 및 채용’(39.1%) 분야의 진정 접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퇴직 및 해고’(22.5%), ‘임금·복지·후생’(14.5%)의 순으로 높았다(〈표 7〉참조). 이는 장애인이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해고 등의 위협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고용영역의 진정접수 유형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공공영역은 116건, 민간영역은 222건으로, 민간영역이 공공영역에 비해 높았고(〈표 7〉 참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6〉참조).

〈표 7〉 고용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세부유형(2008.4.11.~2012.12.31.)

(단위: 건, %)

구 분	고용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해고	교육	기타	
계	합계	338	132	49	34	8	9	76	3	27
	비율	100.0	39.1	14.5	10.1	2.4	2.7	22.5	0.9	8.0
	공공	116	59	5	17	6	3	13	2	11
	민간	222	73	44	17	2	6	63	1	16
2008	합계	41	19	5	6	1	-	8	1	1
	비율	100.0	46.3	12.2	14.6	2.4	-	19.5	2.4	2.4
	공공	18	11	1	2	1	-	1	1	1
	민간	23	8	4	4	-	-	7	-	-
2009	합계	69	30	12	6	2	1	16	1	1
	비율	100.0	43.5	17.4	8.7	2.9	1.4	23.2	1.4	1.4
	공공	20	11	-	5	1	-	2	-	1
	민간	49	19	12	1	1	1	14	1	-
2010	합계	82	27	12	13	3	3	15	-	9
	비율	100.0	32.9	14.6	15.9	3.7	3.7	18.3	-	11.0
	공공	30	11	-	8	3	1	4	-	3
	민간	52	16	12	5	-	2	11	-	6
2011	합계	64	23	10	4	1	-	17	1	8
	비율	100.0	35.9	15.6	6.3	1.6	-	26.6	1.6	12.5
	공공	14	8	-	-	-	-	2	1	3
	민간	50	15	10	4	1	-	15	-	5
2012	합계	82	33	10	5	1	5	20	-	8
	비율	100.0	40.2	12.2	6.1	1.2	6.1	24.4	-	9.8
	공공	34	18	4	2	1	2	4	-	3
	민간	48	15	6	3	-	3	16	-	5

[주요 진정 및 결정 사례 : 고용영역]

〈사례1: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진정인은 청각장애2급 장애인으로, ○○회사가 신입사원 채용 시 토익점수 600점 이상의 지원자격을 명시하여 차별을 당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해시험에 전

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독해시험에서 만점(495점)을 받는다하더라도, 600점 이상을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직무특성 상 외국인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어점수자격 요건이 필수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기관이 채용하고자 하는 신입사원의 핵심직무는 IT사업 등의 기획 및 서비스 발굴, 신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운영으로, 영어 소통은 이를 원활하게 하는 부가적 기능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피진정기관과 유사업종인 ○○전자 주식회사의 경우, 건청인과는 별도로 청각장애인용 TEPS 시험점수(380점)만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경우, 5급 공채(행정직, 기술직, 외무직) 모집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점수를 제시하고 있는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지원자격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신입사원 채용 시 토익점수 600점 이상의 지원자격을 명시한 것은 피진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 신입사원 지원 자격에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적용할 것과, 인사 관련 부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피진정기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 2 :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진정인은 지체장애2급 장애인으로, ○○○공단이 일반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을 직권 면직 시켰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내용의 판단 등과 같은 진정인의 직무감당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순히 타 직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위원회가 실시하는 장애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 하였으나, 추후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받고 수용하였다.

나. 교육 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간 접수된 교육차별 사건은 총 323건이다. 그 중 ‘특수학급 설치 거부’(20.1%)에 관한 사건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를 제외하면 ‘수업·시험평가 편의 미제공’(16.7%), ‘전·입학 거부 제한’(14.9%),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제한’(10.5%),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9.3%), ‘괴롭힘(4.6%)’ 등의 순서로 접수율이 높았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적·발달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6〉참조).

〈표 8〉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세부유형(2008.4.11.~2012.12.31.)

(단위: 건, %)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계	합계	323	48	34	54	30	65	15	77
	비율	100.0	14.9	10.5	16.7	9.3	20.1	4.6	23.8
	공공	219	22	16	25	20	64	12	60
	민간	104	26	18	29	10	1	3	17
2008	합계	61	9	14	14	7	6	3	8
	비율	100.0	14.8	23.0	23.0	11.5	9.8	4.9	13.1
	공공	34	6	7	5	5	5	1	5
	민간	27	3	7	9	2	1	2	3
2009	합계	49	16	2	8	13	1	3	6
	비율	100.0	32.7	4.1	16.3	26.5	2.0	6.1	12.2
	공공	28	7	2	4	8	1	2	4
	민간	21	9	-	4	5	-	1	2
2010	합계	55	4	10	12	6	4	7	12
	비율	100.0	7.3	18.2	21.8	10.9	7.3	12.7	21.8
	공공	35	-	1	6	5	4	7	12
	민간	20	4	9	6	1	-	-	-
2011	합계	62	10	6	7	1	3	-	35
	비율	100.0	16.1	9.7	11.3	1.6	4.8	-	56.5
	공공	43	6	5	1	-	3	-	28
	민간	19	4	1	6	1	-	-	7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2012	합계	96	9	2	13	3	51	2	16
	비율	100.0	9.4	2.1	13.5	3.1	53.1	2.1	16.7
	공공	79	3	1	9	2	51	2	11
	민간	17	6	1	4	1	-	-	5

【주요 진정 및 결정 사례 : 교육영역】

〈사례1 :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진정인은 뇌병변1급 장애인으로, ○○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입학전형에 단독으로 응시하였으나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되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당시 전형위원회 위원장은 구술시험 시 진정인의 장애로 인해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서류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전형위원 중 한 명이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새로운 자료 발굴을 해야 하나 진정인의 경우 언어장애로 인해 용이할 것 같지 않아 불합격 처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대학교가 구술시험 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평가방식을 운용함으로써 진정인이 구술시험에서 자신의 지적능력, 사고능력, 가치관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설령 신체적인 장애가 자료의 수집 및 발굴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보조인 등의 활용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기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학교 총장에게, 진정인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여 진정인이 재심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피진정인들에게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학교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2 :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 배제〉

피해자의 부모인 진정인은,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에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가 피해자의 의사를 시종일관 무시했을 뿐만 아니

라, 피해자에게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며 집에서 쉬라고 하는 등 장애학생을 차별하였다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은 동료 학생에 의한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매주 4시간 순회수업만 받도록 하고, 현장견학 및 외부활동 등에서 피해자를 배제시킨 후 임의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학업시수를 임의로 위반한 바, 위원회는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 및 제8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학교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교육감에게, 피진정인과 피진정인 소속한 학교의 장을 조사 및 징계위원회 회부할 것, 상기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학교 및 교직원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장애인차별예방 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에서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다. 재화·용역 및 사범·행정 서비스 영역

‘재화·용역 영역’은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이용,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서비스 이용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접수율 또한 가장 높다. 세부 유형별로는 ‘재화·용역 일반’이 25.6%로 사건 접수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시설물 접근’이 22.7%,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이 19.3%, ‘보험·금융’이 12.9%의 순서로 높았다(〈표 9〉참조).

‘재화·용역 영역’과 ‘장애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시설물 접근 및 이동’영역에서는 지체장애인이,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영역에서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재화·용역 일반’영역에서는 지적·발달장애인의 진정 비율이 높았다(〈표 6〉참조).

한편 ‘사범·행정·참정권’영역은 주민센터, 우체국, 경찰서, 투표소 등에서의 장애인 편의 미제공과 관련된 사건으로, 5년 간 진정접수 건수는 309건이었다.

〈표 9〉 재화·용역 및 사법·행정 서비스 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세부유형
(2008.4.11.~2012.12.31.)

(단위: 건, %)

구 분	재화·용역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사법·행정 /참정권	
계	합계	3,322	851	429	753	387	641	261	309
	비율	100.0	25.6	12.9	22.7	11.6	19.3	7.9	100.0
	공공	1,619	447	31	382	251	323	185	-
	민간	1,703	404	398	371	136	318	76	-
2008	합계	347	37	49	78	128	35	20	55
	비율	100.0	10.7	14.1	22.5	36.9	10.1	5.8	100.0
	공공	140	9	5	26	83	9	8	-
	민간	207	28	44	52	45	26	12	-
2009	합계	412	153	91	93	49	13	13	42
	비율	100.0	37.1	22.1	22.6	11.9	3.2	3.2	100.0
	공공	154	66	7	33	36	4	8	-
	민간	258	87	84	60	13	9	5	-
2010	합계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비율	100.0	23.3	5.1	20.7	8.1	39.9	2.8	100.0
	공공	762	211	6	181	71	269	24	-
	민간	507	85	59	82	32	237	12	-
2011	합계	487	179	70	67	67	45	59	80
	비율	100.0	36.8	14.4	13.8	13.8	9.2	12.1	100.0
	공공	212	80	4	23	34	26	45	-
	민간	275	99	66	44	33	19	14	-
2012	합계	807	186	154	252	40	42	133	93
	비율	100.0	23.0	19.1	31.2	5.0	5.2	16.5	100.0
	공공	351	81	9	119	27	15	100	-
	민간	456	105	145	133	13	27	33	-

【주요 진정 및 결정 사례 : 재화·용역 및 사법·행정서비스 영역】

■ 재화·용역 일반 영역

〈사례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정당한 편의 미제공〉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5명은 8개 종합병원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환자 인쇄본만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결과, 위원회는 상기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알 수 있도록 사본 발급과 함께 그 내용을 점자자료화 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8개 종합병원장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사본 발급 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또는 점자자료, 녹음파일 등을 함께 제공할 것, 진료기록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상기 권고 이행을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며, 피권고기관들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2 : 홈페이지 웹접근성 미보장〉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피진정기관이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기준에 미달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할 수 없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이 신체적·기술적 여건에 관계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기관이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이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예 : 주차이용신청, 주택가격이의신청) 등을 이용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등에 명시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기관에게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 등을 참고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사례3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거부〉

진정인은 지적장애2급인 피해자의 어머니로, 자녀를 위해 상해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보험가입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 매뉴얼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동 매뉴얼에 적시된 치료 경과에 대한 치료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심사하고, 과잉행동장애(ADHD)에 따른 약물 복용 중인 경우에는 전문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운용 지침조차 따르지 않은 채, 월 1회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 대해 인수 불가 판정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와 판단을 거치지 않고, 단지 장애 및 정신과 약 복용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장애차별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위자료 지급을 포함하여 위원회 권고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사례4 : 장애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미운영 등〉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수영 등록을 원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은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비장애인에겐 다양한 수영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장애인에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다른 대안과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위한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의 체육활동의 기회 자체를 막는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명시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수영장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운영체계 및 시설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 계획이라고 답변하는 등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영역

〈사례1 : 장애인등록증 점자 미표기에 의한 차별〉

진정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에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카드와도 구별이 어렵다며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장애인등록증은 다른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와 재질, 규격이 동일하여 촉각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여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기를 하여 관리를 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존재하는 등 결과적으로 중증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여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장애인등록증에 점자 표기를 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는 1~3급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스티커를 제작·교부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2 :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피해자의 지인인 진정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집회 참가 후 체포되어 세 차례 가량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 스스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뢰관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해서 이를 절차상 그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호자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청권의 행사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장과 피진정기관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정신적 장애인 또는 언어 장애인을 수사 및 심문함에 있어 의사소통가능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은 생활안전·수사·형사·경비교통과 등 수사 관련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권고 내용을 주지시킬 계획이라고 답변하는 등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 참정권 영역

〈사례 : 선거 시 점자투표용구 미제공〉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를 위해 투표소를 방문하였으나, 투표보조용구가 제공되지 않아 가족이 대리투표를 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은 당시 투표관리관에게 시각장애인임을 밝히고 투표보조용구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투표소에 투표보조용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부득이하게 동행했던 가족에게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며, 피진정인은 「헌법」 제24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7항에 따라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도는 비장애인의 선거권 행사가 보장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하는 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밀선거원칙에 반하여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라. 괴롭힘 등 영역

‘괴롭힘 등’ 영역은 매년 ‘채화·용역’ 영역 다음으로 진정접수 비율이 높은 영역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간 괴롭힘으로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539건이었으며, 주요 피해자는 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지적·발달장애인이었다(〈표 6〉참조). 세부유형별로는 모욕 및 비하(256건), 폭행 및 학대(107건), 금전적 착취(80건)의 순서로 접수율이 높았고, 민간영역이 피진정기관이 된 경우(451건)가 공공영역이 피진정기관이 된 경우(88건)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표 10〉참조). 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이 주로 친구나 가족, 지인, 고용주, 시설주 등 주변인들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괴롭힘 등 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세부유형(2008.4.11.~2012.12.31.)

(단위: 건, %)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계	합계	539	12	22	12	107	80	256	49
	비율	100.0	2.2	4.1	2.2	20.0	14.8	47.5	9.1
	공공	88	3	2	0	16	3	53	11
	민간	451	9	20	12	92	77	203	38
2008	합계	42	-	-	3	5	7	26	1
	비율	100.0	-	-	7.1	11.9	16.7	61.9	2.4
	공공	2	-	-	-	-	1	-	1
	민간	40	-	-	3	5	6	26	-
2009	합계	105	1	4	6	19	16	53	6
	비율	100.0	1.0	3.8	5.7	18.1	15.2	50.5	5.7
	공공	18	1	-	-	4	-	12	1
	민간	87	-	4	6	15	16	41	5
2010	합계	176	3	10	2	40	23	77	21
	비율	100.0	1.7	5.7	1.1	22.7	13.1	43.8	11.9
	공공	32	1	1	-	6	1	16	7
	민간	144	2	9	2	34	22	61	14
2011	합계	105	4	4	-	22	16	50	9
	비율	100.0	3.8	3.8	-	21.0	15.2	47.6	8.6
	공공	19	-	1	-	4	1	12	1
	민간	86	4	3	-	18	15	38	8
2012	합계	111	4	4	1	22	18	50	12
	비율	100.0	3.6	3.6	0.9	19.8	16.2	45.0	10.8
	공공	17	1	-	-	2	-	13	1
	민간	94	3	4	1	20	18	37	11

[주요 진정 및 결정 사례 : 괴롭힘 등 영역]

〈사례1 : 장애인시설에서의 장애인 수급비 횡령 등〉

시각장애1급 장애인인 진정인은 피진정시설 입소 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월 5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퇴소 시 피진정인에게 받은 실수령액은 월 8만원에 불과하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입소생활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와 장애수당을 매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1인당 25만원씩을 생활비 명목으로 시설통장이 입금하고, 생활인들에게는 용돈으로 8만원씩을 지급한 후, 잔금은 현금으로 보관하며 회계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이와 같이 생활인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수급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 배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을 수사의뢰하는 동시에 피진정인에게 2008. 4.부터 2011. 3.까지 미지급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할 것, 해당 시장 및 구청장에게 피진정시설의 폐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하였고, 이후 해당 구청은 피진정시설에 행정처분 후 시설 회계업무 담당자를 교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례2 : 장애인시설에서의 예배참석 및 현금강요 등〉

피진정시설의 전직 직원인 진정인은, 시설장인 피진정인이 생활인들에게 예배참석, 십일조 및 현금, 후원 등을 강요하고, 외출을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예배참석을 이유로 생활인에게 외출을 제한하고 쉼기대회에 생활인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등 예배참석을 반강제적으로 강요하는 한편, 생활인들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십일조, 현금, 후원금 등을 내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상기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침해는 물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행사 제한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해당시설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후 지자체와 시설에서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간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된 2,385건(51.6%) 중 시정권고 291건, 조사중 해결 1,168건, 합의종결 166건 등 모두 1,626건(68.2%) 차별 시정

위원회 설립 이후 11년간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총 5,883건이며(〈표 2〉 참조), 그 중 위원회는 총 5,271건(89.6%)을 처리하였다(〈표 11〉 참조).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로 살펴보면, 지난 5년 간 접수된 사건은 5,230건이며(〈표 3〉 참조), 그 중 위원회는 총 4,626건(88.5%)을 처리하였다(〈표 12〉 참조).

4,626건의 처리 사건 중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2,385건(51.6%)이고, 나머지 2,241건(48.4%)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²⁾에 따라 각하된 경우(2,202건, 47.6%), 조사중지된 경우(13건, 0.3%), 타 기관으로 사건이 이송된 경우(26건, 0.6%)이다.

2,385건의 ‘조사대상’ 사건 중, 291건은 조사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행위로 판단되어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의 자발적 수용 등을 통해 조사 중 해결된 사건은 1,168건,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 합의하여 종결된 사건은 166건,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건으로, 총 1,626건(68.2%)의 사건이 차별시정되었다. 그 외 759건은 조사 결과, 차별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처리되었다(〈표 12〉 참조).

〈표 11〉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2.12.31.)

(단위: 건)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5,271	22	18	39	116	90	255	455	716	1,101	952	1,507

2) ‘진정 내용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과 같이 각하 대상인 경우

〈표 12〉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04.11.~2012.12.31.)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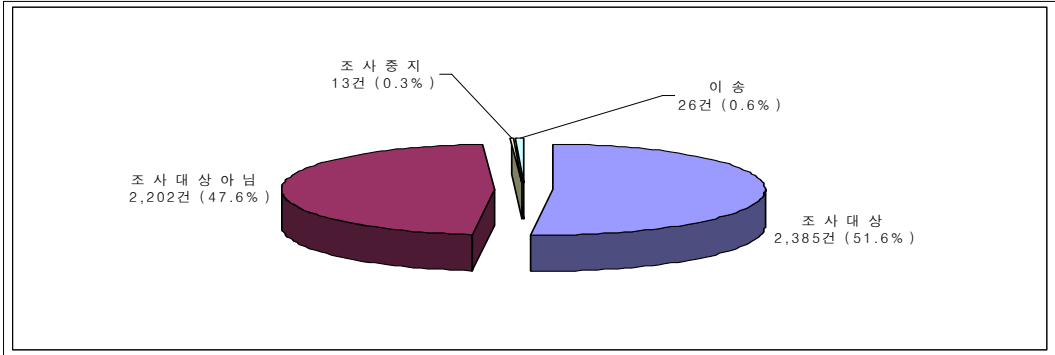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4,626	2,385	1,626	291	1	166	1,168	759	2,202 (1,444)	13	26
구성비 (%)	100.0	100.0	100.0	17.9	0.1	10.2	71.8				
			68.2						31.8		
		51.6							47.6	0.3	0.6
2008년	350	157	93	15		11	67	64	192 (117)	1	
구성비 (%)	100.0	100.0	100.0	16.1	0.0	11.8	72.0				
			59.2						40.8		
		44.9							54.9	0.3	0.0
2009년	716	355	209	8		47	154	146	351 (236)	4	6
구성비 (%)	100.0	100.0	100.0	3.8	0.0	22.5	73.7				
			58.9						41.1		
		49.6							49.0	0.6	0.8
2010년	1,101	417	262	28	1	56	177	155	663 (369)	6	15
구성비 (%)	100.0	100.0	100.0	10.7	0.4	21.4	67.6				
			62.8						37.2		
		37.9							60.2	0.5	1.4
2011년	952	566	361	124		32	205	205	381 (228)	1	4
구성비 (%)	100.0	100.0	100.0	34.3	0.0	8.9	56.8				
			63.8						36.2		
		59.5							40.0	0.1	0.4
2012년	1,507	890	701	116		20	565	189	615 (494)	1	1
구성비 (%)	100.0	100.0	100.0	16.5	0.0	2.9	80.6				
			78.8						21.2		
		59.1							40.8	0.1	0.1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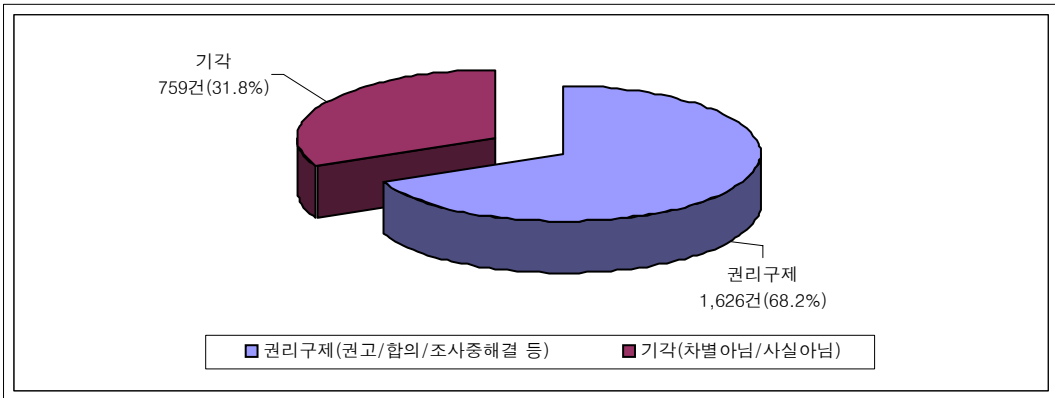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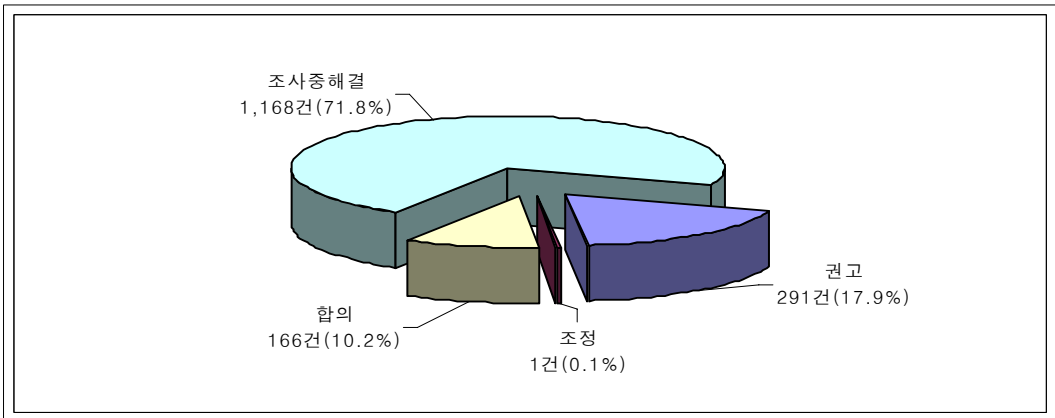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그림 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사건의 조사대상 여부



[그림 6]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조사대상 사건 중 권리구제대상 현황



[그림 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권리구제 대상사건 처리 결과

나.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간 처리한 조사대상 사건 중 고용 40.9%, 교육 72.2%,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74.2%, 사법·행정·참정권 75.6%, 괴롭힘 등 35.9%가 차별 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 중 권고, 조정성립, 합의종결, 조사 중 해결 등을 통해 차별이 시정된 비율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고용영역이 40.9%, 교육영역이 72.2%,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이 74.2%, 사법·행정·참정권영역이 75.6%, 괴롭힘 등 영역이 35.9%였다(〈표 13〉 참조).

지난 5년 간 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한 영역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이었고(240건, 이는 전체 인용(권고) 건수(291건)의 82.5%에 해당된다(〈표 13〉 참조).

〈표 13〉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8.04.11.~2012.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건수	4,626	291	1	166	1,168	759	2,202 (1,444)	13	26
	비율(%)	100	68.2				31.8			
			51.6					47.6	0.3	0.6
고용	건수	320	7	-	23	15	65	207 (161)	3	-
	비율(%)	100	40.9				59.1			
			34.4					64.7	0.9	0.0
교육	건수	268	11	-	22	45	30	157 (127)	-	3
	비율(%)	100	72.2				27.8			
			40.3					58.6	0.0	1.1
재화·용역	건수	2,883	240	1	82	977	451	1,123 (718)	6	3
	비율(%)	100	74.2				25.8			
			60.7					39.0	0.2	0.1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사법·행정 /참정권	건수	294	23	-	2	77	33	158 (93)	-	1
	비율(%)	100	75.6				24.4			
			45.9					53.7	0.0	0.3
괴롭힘 등	건수	861	10	-	37	54	180	557 (345)	4	19
	비율(%)	100	35.9				64.1			
			32.6					64.7	0.5	2.2

-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다. 장애차별사건 시정권고 및 이행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위원회 권고 291건 중 이행은 262건, 일부이행은 20건으로, 권고이행률 94.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차별행위로 판단한 사건은 모두 291건이다. 이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한 사건은 274건(94.2%)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한 사건은 17건(5.8%)이다(〈표 14〉 참조).

〈표 14〉 적용법률에 따른 인용(권고) 사건 현황(2008.4.11.~2012.12.31.)

(단위: 건)

구 분	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권고 사건 수	291	7	11	240	23	10
국가인권위원회법	17	2	3	9	2	1
장애인차별금지법	274	5	8	231	21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간 위원회가 권고한 291건의 사건 중, 권고가 이행된 사건은 262건, 일부이행된 사건은 20건으로, 총 272건(94.4%)의 진정사건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졌다 (<표 14> 참조).

이때, ‘일부수용’은 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결정 중 피진정인이 권고의 일부만 수용하고 일부는 불수용하겠다고 답변한 사건을 의미하며, 주로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예산 마련 등 제도적·정책적 권고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한편, 위원회의 권고가 ‘불이행’된 사건은 고용영역에서 2건, 이동권영역에서 1건, 사법절차에서 3건으로, 총 6건이다. 이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시정 권고를 불이행한 사건은 모두 2건이며, 한 건은 시정명령에 의하여 이행되었고, 나머지 한 건은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권고의 이행을 원치 않았다. 나머지 4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시정권고를 불이행한 사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횡단보도의 설치, 경찰의 진압 업무 수행 시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분리 및 제재(병합 3건)와 관련한 사건이다.

<표 15> 각 부문별 권고이행률 비교(2008.4.11.~2012.12.31.)

(단위: 건)

구 분	총계 (권고건수)	권 고 이 행 상 황				권고이행률 (%)	
		이행	일부이행	미이행	검토중		
합계	합계	291	262	20	6	3	94.4%
	공공부문	115	103	6	5	1	93.0%
	민간부문	176	159	14	1	2	95.4%

* 권고이행률 산정식 = {이행+(일부이행×0.5) / (전체권고건수-검토중)} × 100

**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국공립학교, 민간부문은 주식회사 등 법인 및 단체, 사립학교, 개인을 의미함.

*** 이행: 위원회에 정식 통보되지 않았으나,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용처리함.

**** 검토중 : 권고수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진행 중.

5. 장애 관련 직권조사 처리 현황

우리 위원회는 언론 모니터링 및 장애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현안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기초조사에 착수하여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였다. 기초조사 시, 즉각적인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에서 개선을 유도하여 즉각적인 구

제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로부터 직권조사를 의뢰받아 사건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을 면담·조사하는 경우, 그림카드를 활용하거나, 신뢰보호자 동석 및 시간적 간격을 두고 2~3차례 객관적 질문을 반복하는 등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포함한 비공개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견인하기도 하였다. 위원회 설립 이후 장애와 관련한 직권조사는 총 13건이다.

〈표 16〉 직권조사 현황

연번	사건번호	사 건 명
1	10-직권-0001300	○○농아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	11-직권-0000200	○○학교 교사의 시각장애여학생 안마강요 등에 대한 직권조사
3	11-직권-0000700	선주의 지적장애인 괴롭힘(금전착취 등)에 대한 직권조사
4	11-직권-0001500	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에 대한 직권조사
5	11-직권-00017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6	11-직권-00023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7	12-직권-0000700	중증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8	12-직권-0000800	○○특수학교에 대한 직권조사
9	12-직권-00009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10	12-직권-00010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1	12-직권-0001100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2	12-직권-0001400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3	12-직권-0001700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조사중)

가. 시각장애 여학생에 대한 맹학교 교사의 안마 강요 직권조사 실시(11직권200)

2010년 12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맹학교 사감 교사는 2010년 10월 여학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남학생이 보는 앞에서 안마를 하게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학부모회가 대책회의를 열어 2010년 12월 해당 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11년 1월 6일 이와 같은 맹학교 교사의 행위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관계에서 발생

한 고질적 병폐일 수 있고, 해당 행위가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1년 1월 현장조사와 함께 2011년 1월~3월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가해자 ○○○가 피해자 ○○○에게 안마를 강요한 행위가 인정되었고, 이에 위원회는 상기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모욕감 내지 괴롭힘에 해당하며, 가해자 ○○○의 피해자 ○○○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는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학교장에게 안마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 피진정인을 징계조치 및 전보시킬 것,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로 인해 여학생에게 안마를 강요한 피진정인은 견책 및 전보조치 되었고, 교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생의 안마시술은 금지되었으며,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및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되었다.

나. 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11직권1500)

2011년 6월, ○○광역시시는 민관합동으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 2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던 중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되어 우리 위원회에 합동점검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원회는 2011년, 9월 상기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이 3년 가깝게 장애아동 ○○○를 감금하고, 여타 생활인들을 체벌하고, 여교사들에게 남성 생활인의 몸을 씻게 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원회는 상기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2조, 제35조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을 3년 가깝게 동물 우리 같은 구조물에 감금한 피조사자○○○에 대해 학대 및 감금 혐의로 검찰고발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조치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시설은 2012년 4월 폐쇄조치되고, 거주생활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타시설로 전원조치되었다.

다. 중증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장애인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11직권2300)

2011년 11월 사회복지법인 ○○에서 생활교사에 의한 시설생활인의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익명 제보가 위원회에 접수됨에 따라, 2011년 11월 제보자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 12월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시설 생활지도원 5인이 시설생활인 4인을 상대로 상해 및 폭행, 성희롱 등을 한 사실과, 피해 사실의 상당부분을 인지하고 있던 시설생활장과 관리·감독공무원이 생활인에 대한 보호의무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무를 해태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주요 가해자 4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피해자에 대해 향후 적절한 치료조치를 취할 것, 가해자 1인 및 생활지도원 팀장을 징계조치할 것,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관할 구청장에게, 생활인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해태한 피조사기관에 대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 지도·감독 의무를 해태한 피조사자 담당공무원 ○○○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였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시설의 시설장 교체를 명령하고, 인권침해 종사자에 대해 해고 및 중징계 처분을 권고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비 170백만원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에게는 감봉 1개월을 결정하였다. 또한 해당 시설 가해자는 자진퇴사를 하거나 감봉 3개월 등을 명령받고, 피해자는 시설로부터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게 되었다.

라. ○○특수학교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12직권800)

정서·행동장애, 자폐장애 등 발달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특수학교에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소속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지속적 폭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기초조사 실시 후 2012년 6월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2007년부터 해당 학교 전·현직교사 6명이 장애학생 20명을 체벌하거나 과도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비닐봉지로 의자에 묶어 두거나 수업시간 중 교실 외 장소에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학교장은 가해교사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타학교 전보를 추진하거나, 공식적인 조사 없이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상기 행위가 「초·중등교육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체벌행위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하며, 동법 제13조의 장애인의 수업참여 배제로 인한 차별행위라 판단하였고, 특히 학교장이 교사들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한 것은, 학교장으로서 지도·감독 의무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의무에 반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체벌, 물리력행사에 대하여 학부모는 폭력행사로, 교사들은 문제행동

에 대한 중재행위로 주장하는 등 교사와 학부모간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과 국가수준에서 요청되는 일반적 교육과정의 구조적 충돌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에게 가해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관할 교육감에게 전보조치된 교사에 대한 엄중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장애학생의 인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립특수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강화와 ‘장애유형별 행동 중재 지침’의 개발과 보급, 학부모와 교사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갈등 중재 제도 도입’,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개별화교육계획 수립과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개별화교육과 국가수준의 일반교육과정 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화교육과 관련한 전국적인 ‘개별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마. 입양된 지적장애아동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12직권1100)

강원도에 거주하는 피진정인○○○이 1960년대 후반부터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해 친자로 출생 신고를 하고 이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행 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방영된 후, 보건복지부는 우리 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기초조사 후 2012. 7. 직권조사에 착수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길을 잃을 위험이 있다며 양 팔에 문신을 새기고, 자신의 친자로 등록한 장애인들에게 외출을 금지하며 노동을 강요하고,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피해자들 이외의 나머지 장애인들이 행방불명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 2명은 병원에서 사망하였음에도 10년이 넘도록 병원에 방치하는 등 피해자들을 양육할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장애인을 친자로 등록하여 감금, 폭행, 유기한 점이 인정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피해자들을 폭행, 상해 및 감금한 행위 등에 대해 피진정인을 수사 의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피조사자와 피해자들의 형식적 친생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에게 관내 다수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 관련 사업 및 정책 권고·의견표명 (2008년~2013년)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 기념 토론회 개최 (2009~201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법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실시 (2009~2012)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차별영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모니터링기관에 송부하여 즉각적인 개선 유도 및 정책과제 발굴
3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2009~2012)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이용, 사법·행정절차, 인적서비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4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독점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2008)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독점권 부여제도는 현존하는 차별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이고, 위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안마사업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
5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간 및 정책권고 (2009)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및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6	시각장애인 참정권 차별개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2010)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의견 표명
7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개념 명시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할 것,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인정시간을 확대하고 장애등급 심사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견 표명
8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박은수의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의 주체 및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9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기술 내용이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의 법적능력, 자립생활지원, 접근성 제고, 고용과 노동, 교육 등에 통계자료를 추가하고, 협약 이행의 문제점과 장애요소 등을 추가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10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1)	시설물 건축에 대한 건축절차와, 편의증진법과 건축 간의 관계 검토를 통하여 현행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등을 제공하고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보완점 등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1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정책권고 (2011)	은행 시설물, 금융자동화기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10개 은행장에게 권고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2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권고 (2012)	장애인 관련 주요 정부정책 및 법령 분석,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시정을 위한 분야별 정책 의제 발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차별 행동 계획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3	장애차별 보험 가이드라인 작성 및 권고 (2012)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가입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
14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연구 (2013 예정)	2013년 7월부터 시행될 성년후견제도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에 권고 예정
15	장애인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작성 (2013 예정)	국내 장애인시설의 인권상황 및 실태,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현행 자립생활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지역사회로의 통합 촉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권고 예정
16	장애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 실시 (2009-2012)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2009),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실태조사(2010),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2011),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201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인적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분류를 기준으로 한 외국판례 연구(2011),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2012),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2012),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2),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2012),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사례 및 정책 연구를 통한 선진모델 구축(2012), 정신장애인 차별·편견해소를 위한 실태조사(2012) 그 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 장애인 고용보장 지원체계 연구,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제품의 확산 연구 등 실시 예정(2013)
17	각종 토론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 개최 (2009-201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권리협약 한·일 국제심포지엄(2009), 아·태지역의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10), 장애인권리협약 정보접근권 관련 국제심포지엄(201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 및 편견해소 캠페인(2009-2012)

붙임2. 장애자별 진정사건 관련 위원회 권고현황(2008~2012년)

□ 고용 영역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위원회법)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계약 차별 (07진차0000647)	- 피진정인과 관련 보직교수에게 장애인 차별 관련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 권고	2008.8.18.	불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08진차0000945)	-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직권면직일부터 복직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 권고	2009.8.28.	불수용 (시정명령 수용)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로 인한 채용차별 (08진차0001213)	- 진정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할 것 권고	2009.11.6.	수용
4	권고 (위원회법)	채용면접시험 편의 미제공 (08진차0001093)	- 00청장애게, 향후 면접시험에서 장애응시자에게 편의가 제공된다는 점과 편의신청 절차를 사전고시하고 장애응시자가 자신의 장애특성에 맞게 편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권고	2010.2.5.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09진차0000490)	- 000000공사 사장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킬 것 권고	2010.4.9.	불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군청의 부당인사로 인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173300)	-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해당 과장 및 담당자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0.9.10.	수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10진정0480200)	- 피진정인에게,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그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적용할 것과, 인사 관련 부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2011.9.27.	수용

□ 교육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	권고 (위원회법)	특수학급 설치거부에 의한 장애인 차별 (08진차0000116 등 2건)	-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특수학급을 조속히 설치할 것 권고 - 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 교직원을 대 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2008.5.2.	일부 수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23 등 2건)	- 불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 할 것 권고 -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 권고	2008.12.22.	수용
10	권고 (위원회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연수교육 차별 (08진차0000104)	-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격교육 콘텐츠를 보 완할 것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파일형태의 보조 교재를 제공할 것 권고 - 감독기관에게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e-러닝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권고	2009.2.5.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572400)	- 000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0.11.15.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시 장애인 차별 (09진차0000938)	- 000시장에게, 향후 교육 시행 시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권고	2010.12.17.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수업배제 등의 차별 (10진정0710700)	- 피진정인의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 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관리·감독 기관인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향후 관내 학교에 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2012.1.10.	수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75100 등 3건)	-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시설의 재배치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마련할 것 권고	2012.6.13.	수용

□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로 인한 현금인출기 사용 제한 (08진차0000416 등 2건)	- 기존 ATM 은 업그레이드하고 향후 ATM 구입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갖춘 ATM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마다 최소1 대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ATM을 배치할 것 권고	2008.12.3.	수용
16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화장실의 남여공용설치로 인한 이용 차별 (07진차0000962)	- 장애인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권고	2009.5.26.	수용
1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거부에 의한 차별 (10진정0004600)	- 피해자에게 대출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받기를 원 할 경우 대출심사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 권고 - 피진정인 감독기관인 00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회사를 포함한 금융회 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 을 수립 및 시행할 것 권고	2010.7.19.	수용
1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차별 (09진차0001012 등 2건)	- 00은행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과 재발방지대 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시중은행에서 시각장애인 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조 속히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0.8.9.	수용
1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건물 임대시 장애차별 (10진정0351700)	- 0000대표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 록 할 것 권고 - 00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권고	2010.8.9.	수용
2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청각장애인 차별 (10진정0291000 등 2건)	- 대표이사에게 진정인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 족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즉시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줄 것, 신용카드 발급동의 확인 시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 한 방법을 이용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행 할 것 권고	2010.8.25.	수용
2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에 의한 차별 (09진차0001023)	- 00000위원장에게,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도 신용카 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 권고	2010.10.20.	수용
2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수영시설 이용 제한 (09진차0001175)	- 00000청장에게, 당해 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청소년 수 련관등의 수영장 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 권고	2011.1.6.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 거부 및 인격권 침해 (10진정0532200)	- 00 대표이사에게, 『00중앙회 여신업무방법』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여신취급 시 유의사항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 00000장애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00중앙회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한다.	2011.4.26.	수용
2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10진정0470000)	- 00시립 00도서관장·00시장·00교육감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0000시립00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 설치할 것 권고	2011.4.26.	수용
2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접근권 침해 (10진정0140200)	- 00지사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권고	2011.4.26.	수용
2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철거 (10진정07653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대상건물 주출입구에 설치되었던 경사로를 철거 전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00000 상가변영호 운영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리단의 건물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 권고 - 00000구청장에게, 대상건물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편의시설로 완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5.17.	일부 수용
2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8400 등 8건)	-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할 시에는 사본에 인쇄물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의 내용을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을 사본과 함께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 00000장관에게, 전국의 종합병원이 위에 제시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 권고	2011.5.17.	수용
2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66100 등 25건)	- 피진정인에게, 00동 등 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이 즉시 비치되도록 할 것과, 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치되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도록 할 것,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6.30.	수용
2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 불편 등 (10진정0370410 등 9건)	- 피진정인들에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것과, 실태 점검 후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역사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설치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권고 - 국토해양부 장관과 0000시장에게,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것 권고	2011.7.22.	수용
30	권고 (위원회법)	음식점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출입 제한 (09진차0001267)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을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할 것 권고 - 0000청장에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편의시설 설치·점검 누락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진정인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권고	2011.7.22.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3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 불편 등 (10진정0371600 등 2건)	- 서울000사장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 철 역사 내 환승통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경 사로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관할하는 모든 역사 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 000시장에게, 지하철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	2011.8.22.	수용
32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에 따른 이동권 제한 (11진정0074900)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시 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 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권고	2011.8.22.	수용
3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미비로 인한 차별 (10진정0794800 등 2건)	- 00시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단속 취약시간대에도 신고 및 단 속이 가능하도록 할 것,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권고 - 피진정 백화점 및 대형마트 관리자에게,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 들에 대한 안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장 에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발견 시 관할 행정기 관에 적극 신고할 것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 히 할 것,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민간에 의한 불법주차 차량 신고제 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권고	2011.11.10.	수용
3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법당 출입거부 (11진정0310100)	- 00사 주지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찰 내 시설물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과, 사찰 내 전체 스님 및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 대한불교00종 총무원장에게, 종단 소속 사찰에 대해 관 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편 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법당 등 사찰 시설물에 승강기,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과,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 차 별받는 일이 없도록 종교계와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권고	2011.11.28.	수용
3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11진정353900)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00상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 가 내 각 층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구조물 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승객용승강기를 이용 한 화물운반을 금지하기 위해 별도 대책을 수립·운영 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권고	2011.12.19.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3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용제한에 따른 차별 (11진정0586500)	- 00000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관리사무소)장에게, 장애 인 전용주차장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 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토록 당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 제12조를 개정할 것 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00000 아파트를 포함하여 관내 아파트 입 주민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이용에 대 한 홍보와 위반 차량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2.1.10.	수용
3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홈페이지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 (10진정0608110 등 2건)	- 00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 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 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을 권고	2012.3.23.	수용
3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방송 웹사이트 장애인편의 제공 미흡 (10진정0563400 등 93건)	- 해당방송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 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 권고	2012.5.1.	수용 (90건) 일부 수용 (2건)
3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5400)	- 00시가 소유·지원하는 수련관의 수영장시설에 장애인 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 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권고	2012.5.25.	수용
4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정당한편의제공 미흡 (11진정0074901)	- 00시장 및 00도시공사 사장에게, 00기념관 실내수영장 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와 입수보조시설을 조속히 설치 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6조 [별표5] 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4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 차등 부과 장애인 차별 (11진정0555300)	- 003단지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타 세대에 비해 부당부과된 금액 총 47,990원을 진정인에게 환급 조치할 것과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승강기전기료를 동 일하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피진정아파트 공동주 택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할 것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동주택 저층(2층 및 3층)에 거주 하는 휠체어이용 장애인 세대에게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공동주택관 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권고	2012.5.25.	수용
4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승강기 등 미설치로 인한 도서관 이용 제한 (11진정0371500)	- 00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의 자료실, 열 람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권고	2012.5.25.	수용
4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과제빵 실기시험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11진정0699900)	- 00000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18 조를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에 장애상태를 확인 후, 수 화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2012.8.22.	검토중
44	권고 (위원회법)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이동권침해 (12진정0012500)	- 0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아파트 주출입구 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할 것 권고	2012.11.29.	검토중

□ 보험에서의 가입차별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4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08진차0000281)	- 진정인의 보험청약 심사 개시 권고 - 상법 제732조가 삭제될 때 가지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권고	2008.7.23.	일부 수용
46	권고 (장애인차별 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44)	- 장애인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시 금지된 차별행위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 권고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6.12.	수용
4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86)	- 피해자의 보험청약 재심사, 직원 인권교육, 심신상실·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등 마련 권고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8.7.	수용
4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등 (09진차0001552 등 6건)	- 피진정인 000 대표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들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00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0.9.10.	일부 수용
4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3)		2010.10.20.	수용
5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0)	-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장애인의 보험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0.10.20.	일부 수용
5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55)		2010.10.20.	일부 수용
5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10진정0377600)	- 피진정인 00 대표이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1.3.8.	수용
5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736800)	- 피진정인 00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향후 장애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2011.4.26.	수용
5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2313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 00000장에게, 향후 보험회사가 진정인과 같은 청각장애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함에 있어 「상법」 제644조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험청약자의 장	2011.6.3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에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여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5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거부 (11진정0194800)	- 00우체국에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재심사 할 것과,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각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할 것 권고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권고	2012.5.1.	수용
5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12진정0222500)	- (주)00보증보험 대표이사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권고 -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 이동권 · 교통수단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7	권고 (위원회법)	시각장애인용 음성 촉각정보 미제공으로 교통수단이용 차별 (08진차0000392)	- 버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편의내용을 연구 검토하여 '00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할 것 권고	2008.10.1.	수용
58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의 이동권 차별 (07진차0001084)	- 휠체어 장애인이 지하상가를 접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할 것 권고	2008.12.26.	수용
59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08진차0000353)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구역 네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권고	2009.7.3.	불수용
60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08진차0000529)	-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것 권고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권고	2009.9.18.	수용
6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09진차0000231 등 2건)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00지하도'에 승강기를 새로 설치할 것 권고	2010.8.9.	수용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하나뿐인 장애인 대형면허 시험장 운영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245700)	-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 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권고	2010.8.9.	수용
6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버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문자 안내판 제공 (10진정0373100 등 13건)	- 000장관에게 2009. 3. 1. 이전부터 운행해 온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내부에도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의 [별표1] 및 [별표2]를 개정하고, 마을버스 운송업체들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권고	2011.4.26.	수용
6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76701 등 39건)	- 00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즉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 권고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00시 관내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권고	2011.7.22.	수용
6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따른 장애인 차별 (10진정03716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역사 내 환승통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에는 경사로를, 000역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관할하는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 권고 -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교통행정기관인 00시장에게, 지하철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 권고	2011.8.22.	수용
64	권고 (위원회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11진정0317900)	- 000구청장에게 장애인이 00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권고	2012.7.18.	수용
6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527400)	- 000항공 대표이사에게, 공항 여건상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2]를 개정하여 항공기 탑승편의 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할 것과, 저비용항공사가 장애인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권고	2012.7.18.	수용
6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티투어버스 장애인탑승편의미 제공 (11진정0188500)	- 00광역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00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탑승편의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것 권고	2012.8.22.	수용

□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이용 차별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9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등록증 점자 미표기에 의한 차별 (07진차0000838)	- 중증 시각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하고 사 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 권고	2008.7.23.	수용
7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728)	-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진정인 에게 즉시 송부할 것 권고 -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 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2008.8.8.	수용
7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26)	-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 자문자안내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것 권고	2008.8.27.	수용
7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54)			
73	권고 (위원회법)	주민등록증 점자 미표기 차별 (07진차0000834)	- 중증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하고 사 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 권고	2008.12.3.	수용
7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부고시에 규정에서의 특수학교 차별 (08진차0000469)	- 공공교육기관이 특수학교를 고시규정의 지역주민 공공 복지시설에 포함시킬 것 권고	2008.12.26.	수용
75	권고 (위원회법)	진압시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분리 (08진차0000874 등 3건)	-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하는 진압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 권고	2009.8.31.	불수용
7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09진차0000664)	-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의 조력을 신 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조치할 것 권고	2010.1.15.	수용
7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행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10진정0071400)	- 과도한 경찰장비 사용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 제공 등과 관련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 으로 직무 관련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 예방교육을 실 시할 것 권고	2010.11.15.	수용
7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권 침해 등 (10진정0187800 등 4건)	- 00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000경비과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 권고 - 00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 육을 실시할 것 권고	2011.5.4.	일부 수용
7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11진정0063900)	- 시각장애인이 00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 및 서비스 등을 접근·이용하는 데 있어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 도록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11.28.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피해보상금 산정에 있어 장애인 차별 (10진정0621700)	- 00광역시 0000공제회 이사장 예게, 진정인에 대한 공제 급여 심사과정에서의 하자과 90일 이내의 불복신청을 하 지 못한 사정을 수용하고 제심사를 할 것, 담당자 인권 교육 권고 - 교육과학기술부 및 00광역시교육감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2012.3.23.	수용
8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활동도우미 부당해고 관련 감사결과 미이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677100)	- 0000지사에게, 특별감사결과를 이행할 것과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의 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운영규정(조례·규칙 포함) 등 제·개정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4.9.	수용
8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사범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10진정0484500)	- 00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에 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권고	2012.7.4.	수용

□ 장애인 참정권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7)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 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 설 및 설비를 갖추어 권고	2008.12.3.	수용
8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9)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8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920)	-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할 투표소의 선 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 할 것 권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선거구의 선 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08.12.3.	수용
8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21)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 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 설 및 설비를 갖추어 권고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 괴롭힘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환경 열악 등에 의한 차별 (10진정0102600)	- 피진정인에게, 횡령한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을 즉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것 권고 -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검찰 고발 - 0000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0000시장과 00구청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 0000시장 및 00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 권고	2010.6.3.	수용
8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611700)	- 피진정인 학대혐의로 검찰 고발 - 0000복지회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 등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2010.11.15.	수용
8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괴롭힘 (10진정0568000)	- 00시장에게, 피진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00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엄중 경고조치할 것 등 권고	2011.1.6.	수용
9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생활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노동 강요 등 (10진정0341700)	-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 검찰고발 - 00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 00장관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1.6.	수용
91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 등 (10진정0728000)	- 피진정인 폭행혐의로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 - 00시장에게, 피진정시설 000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 0000지사에게, 피진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00재단'에 대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2.14.	일부 수용
9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횡령 등 (11진정0099000)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 00시장 및 00시 00청장에게, 회계업무 담당자 교체를 포함하여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피진정 시설을 포함하여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 피진정인에게,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 각각 000씩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조치 할 것 권고	2011.6.7.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9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장의 장애인 폭행 및 학대 (11진정0440300)	- 검찰총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피진정인 고발 - 00구청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이 폭행과 학대를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000를 포함한 관내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 00시장에게, 사회복지법인 000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 사회복지법인 000 및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11.10.	수용
9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11진정0170100)	-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의 임금 및 재산을 횡령한 피진정인 고발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대로 사용한 60,244,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속히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 피해자의 통장, 도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 권고	2011.11.10.	수용
9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예배 참석 및 현금 강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11진정0306100)	- 사회복지법인 00이사장에게 거주 생활인들의 의사에 반한 종교 활동 참석 강요, 현금, 후원금 등의 납부 강요, 종교 활동 참석과 관련하여 외출을 제한하는 행위, 식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 권고	2012.2.13.	수용
9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교사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586400)	- 시설장에게 직원인권교육수강, 법인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수립, 00구청장 및 00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12.5.25.	검토중

제 2 부 서 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적 이행과 장애인 고용

-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발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김연주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발제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평가 및 제언

-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적 이행과 장애인 고용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적 이행과 장애인 고용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 제10조 제1항은 고용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를 선언한 일반 규정으로, 사용자에게 노동시장 진입 단계(모집·채용), 노동시장 진입 후 노동과정에서의 단계(임금 등 근로조건), 노동시장 퇴출 단계(정년·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등 포괄적인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영역에서 매우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선언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고용과 관련된 차별이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34.0%의 장애인이 취업시 차별을 경험했으며, 20.7%는 임금, 14.2%는 승진상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문화, 의료 등 타 영역에 비해 차별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성희 외, 2012). 특히 취업시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이 임금이나 승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보다 높아, 장애인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이 주로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 현황에서도 드러나는데, 장차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총 338건의 고용상 장애차별 진정사건 중에서 모집·채용(132건, 39.1%), 퇴직·해고(76건, 22.5%)순으로 진정사건 접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모집·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사실 장애인차별은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미국 ADA와 영국 및 호주의 DDA에서도 고용이 독립적인 장을 차지하면서 가장 자세한 규정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스웨덴과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장애인 고용차별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간단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장차법의 고용차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단히 지적해보고자 한다.

2. 장애인 고용차별에 관한 이론

1) 취향가설

취향가설은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이 고용주의 선입견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가설이다. Becker에 따르면 차별은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고용주의 선호(preference) 및 선입견(prejudice)에 의해 발생한다. 즉, 고용주가 소수 집단과 접촉하기 싫어하는 선입견에 의해 차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차별을 하는 사람은 차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감수할 정도의 선입견 및 선호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입견을 심하게 받는 인구집단일수록 고용 기회도 낮고 임금수준도 낮다(Becker, 1957). 고용주의 선입견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선입견의 대상인 소수 집단의 고용과 임금수준은 더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차별적인 취향을 지니고 있는 고용주가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소수 집단은 다수 집단과 경쟁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게 되고 이는 다시 소수 집단 노동자의 낮은 임금으로 귀결되게 된다.

Becker의 이론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경우 차별을 당하지 않는 다수 노동자 집단이나 고용주는 소득의 감소를 겪는다. 고용주의 경우 소수 집단을 차별함으로써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이 높은 다수 집단의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고용주가 임금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몫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몫의 총임금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차별로 인해 의중임금이 높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분배가 일어날 경우, 의중임금이 낮은 소수 집단의 노동자가 있을 때보다 더 작은 비율의 임금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면 차별 행위가 고용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차별적 취향이 있는 고용주는 이윤(profits)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감을 높이는 효용(utility)의 극대화를 선택하기 때문에 차별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은 어떤 경제행위주체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으며, 차별하는 주체는 다만 심리적인 만족만이 충족될 뿐이다.

한편,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은 시장의 경쟁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독점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다(Ehrenberg, 1998; 548). 독점업체는 독점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입견에 의한 선호를 만족시키며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도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들도 중소기업보다 독점적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규모업체나 전문업종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규모별 장애인 고용율이 장애인 의무고용업체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체보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면제되어 있는 300인 미만의 사업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율이 높다(민경희, 1994; 35). 이는 독점이윤이 차별의 가능성을 높게 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6)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능력을 갖춘 장애인이라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취업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응답과 '어려운 편이다'라는 응답을 한 직장인이 응답자의 8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장애인의 고용상황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 준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Doyle은 장애인 실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고용주의 태도와 선입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Doyle, 1995: 19).

2) 통계적 차별론

Phelps(1972), Aigner와 Cain(1977)은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라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 이론은 앞의 선별이론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적 차별론은 한 개인이 그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 아닌 소속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에 근거해서 처우를 받을 때 차별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고용주가 고용이나 임금수준을 결정할 때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성(sex)이나 인종, 장애 등으로 구분된 집단에서 추정되는 평균적인 생산성을 사용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Phelps, 1972).

통계적 차별론에 의하면 고용주는 선입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과 연관되어 있다(Ehrenberg et al., 1998). 만일 소수 집단의 특성이 실질적인 생산성과 큰 연관이 없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선입견에 기인한 차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을 고용한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적은 고용주들이 장애인 집단으로부터 추정되는 평균적인 생산성을 적용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결정한다면 이는 선입견에 기인한 차별로 귀결될 것이다.

통계적 차별론에 따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소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해당 소수 집단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특성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적용한다면 이것 또한 차별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기술이나 경력 면에서 매우 다양하며, 더욱이 같은 유형의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편차가 커서 생산성의 수준이 다

를 수 있다. 고용과정에서 적용하는 평균적인 정보가 장애인 집단의 평균적인 생산성을 잘 반영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용이 된 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집단 스티그마 때문에 소수 집단의 임금 수준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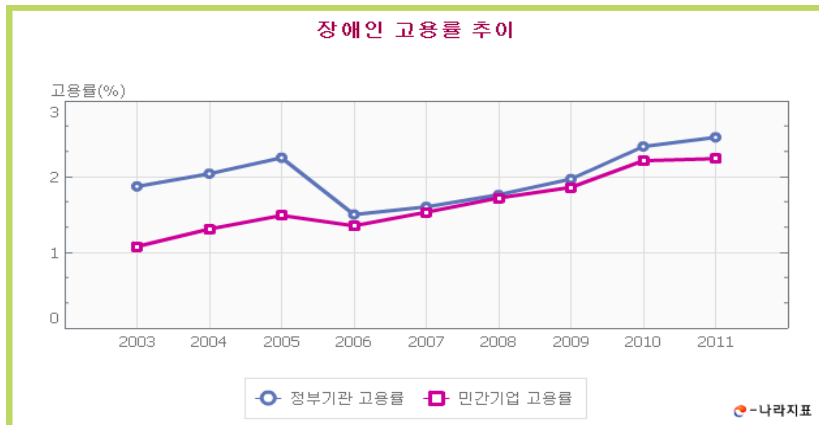
그런데 통계적 차별론에 의하면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은 개별적인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소멸될 것이라고 한다. 소수 집단에 대한 정보의 증가는 통계적 차별의 근거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 집단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정보의 증가는 장애인의 직접적인 고용경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Zadny(1979)에 의하면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 본 고용주일수록 장애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한다(Doyle, 1995에서 재인용).

그러나 통계적 차별의 근거가 주관적 평가에 크게 의존한다면 정보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차별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3. 장애인고용 및 차별 진정사건의 추이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율의 추이는 다음 [그림1]과 같다. 전반적으로 2%대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장애인고용율의 추이를 그림이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 장애인의 무고용제도의 확대에 따라 분모가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고용율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장차법의 영향이라고 단정짓긴 어렵다.



[그림 1] 장애인고용율의 추이

장차법상 고용영역이 핵심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에 대한 차별진정비율이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증감추이

(단위: 건)

합 계		2001.11.25. ~ 2008. 4.10.	2008. 4.11. ~ 2008.12.31.	2009. 1. 1. ~ 2009.12.31.	2010. 1. 1. ~ 2010.12.31.	2011. 1. 1. ~ 2011.12.31.	2012. 1. 1. ~ 2012.12.31.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5년 (2008. 4.~ 2012. 12.)
합계	전체건수	653	585	725	1,695	886	1,339	5,230
	월평균	8.5	67.2	80.6	188.3	98.4	148.8	92.2
고용	전체건수	153	41	69	82	64	82	338
	월평균	2	4.7	5.8	6.8	5.3	6.8	6.0
교육	전체건수	122	61	49	55	62	96	323
	월평균	1.6	7.0	4.1	4.6	5.2	8.0	5.7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전체건수	207	347	412	1,269	487	807	3,322
	월평균	2.7	39.9	34.3	105.8	40.6	67.3	58.6
사법·행정 /참정권	전체건수	-	55	42	39	80	93	309
	월평균	-	6.3	3.5	3.3	6.7	7.8	5.4
괴롭힘, 기타	전체건수	171	81	153	250	193	261	938
	월평균	2.2	9.3	12.8	20.8	16.1	21.8	16.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3).

고용 영역의 진정사건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집·채용(132건, 39.1%), 퇴직·해고(76건, 22.5%)순으로 진정사건 접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채용영역은 2010년, 2011년 연속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다가 2012년에는 다시 상승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여전히 고용의 첫 관문에서 장애인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퇴직·해고 영역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장애인이 채용이 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퇴직·해고 등에 있어 열악한 제도 및 환경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영역은 전반적으로 공공에 비해 민간사업장에서의 차별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차별금지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에 따른 요인도 있을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영역의 차별금지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에 따라 2009년 4월 1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영역에 있어 장

애인 차별금지 의무 사업장으로 적용되었으며, 2011년 4월부터는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상시 30인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3년 4월 11부터 적용대상이 된다.

〈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고용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유형

(단위: 건, %)

구 분	고용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해고	교육	기타	
계	합계	338	132	49	34	8	9	76	3	27
	비율	100.0	39.1	14.5	10.1	2.4	2.7	22.5	0.9	8.0
	공공	116	59	5	17	6	3	13	2	11
	민간	222	73	44	17	2	6	63	1	16
2008	합계	41	19	5	6	1	-	8	1	1
	비율	100.0	46.3	12.2	14.6	2.4	-	19.5	2.4	2.4
	공공	18	11	1	2	1	-	1	1	1
	민간	23	8	4	4	-	-	7	-	-
2009	합계	69	30	12	6	2	1	16	1	1
	비율	100.0	43.5	17.4	8.7	2.9	1.4	23.2	1.4	1.4
	공공	20	11	-	5	1	-	2	-	1
	민간	49	19	12	1	1	1	14	1	-
2010	합계	82	27	12	13	3	3	15	-	9
	비율	100.0	32.9	14.6	15.9	3.7	3.7	18.3	-	11.0
	공공	30	11	-	8	3	1	4	-	3
	민간	52	16	12	5	-	2	11	-	6
2011	합계	64	23	10	4	1	-	17	1	8
	비율	100.0	35.9	15.6	6.3	1.6	-	26.6	1.6	12.5
	공공	14	8	-	-	-	-	2	1	3
	민간	50	15	10	4	1	-	15	-	5
2012	합계	82	33	10	5	1	5	20	-	8
	비율	100.0	40.2	12.2	6.1	1.2	6.1	24.4	-	9.8
	공공	34	18	4	2	1	2	4	-	3
	민간	48	15	6	3	-	3	16	-	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3).

4. 장차법상의 고용차별의 현황과 과제

1) 장차법상의 고용차별 개요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의해 여섯 가지 차별로 나누어지므로 고용과정에서 여섯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광고에 의한 차별은 상업적 광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고용관련 영역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고용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 유형은 다음의 다섯 가지라고 볼 수 있다.

〈표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고용차별 유형¹⁾

차별 분류	내 용
① 직접차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모집·채용, 근로조건, 근로관계종결 등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간접차별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모집·채용, 근로조건, 근로관계종결 과정 등에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의 고용과정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④ 장애인 대리·동행자에 대한 차별 ²⁾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1~3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⑤ 보조조건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차별	보조조건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행위

이상의 차별유형을 노동시장의 진입, 근로, 퇴직의 과정별로 구분하여 유형화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 ④와 ⑤는 큰 범주에 따라 분류해 보면 경우에 따라 ①, ②, ③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고용차별 유형은 위의 세 가지에 한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 미국 장애인법은 장애인과 친족관계 또는 특정관계가 있는 비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동등한 직무내지 급여를 배제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동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2112조(b)(4)). 비록 차별 대상자가 비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가 장애인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고용차별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을 연관차별(associational discrimination)이라고 한다. 예컨대, 사용자나 채용지원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비장애인은 합리적 편의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장애인인 근로자가 장애인인 자식이나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근로시간의 변경 등과 같은 편의조치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Gold, 2002: 63).

〈표 4〉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차별 유형화

구분	주요 내용
모집 및 채용단계	- 채용 공고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문구나 신체 또는 외모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응시자격이나 기회를 제한 - 지원서와 기타양식을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구인활동이나 사업설명회 개최, 장애에 적합한 시험환경의 부재
배치 및 직무조정	- 직무배치나 직무변경 시 정당한 편의제공 부재 - 근로시간, 편의시설, 작업설비·공간, 출퇴근 차량 등의 배려 부재
교육 및 훈련	-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나 교육에 대한 적절한 배려 부재
업무수행 및 의사소통	- 장애인근로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부재 - 비장애인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장애인근로자에게도 동등하게 전달될 수 있는 편의제공 부재
시험 및 평가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시험 및 평가 실시
임금 및 복리후생	- 각종 복리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승진	- 장애인근로자가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 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 제공 부재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2) 적용대상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을 해서는 안되는 주체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다. 여기서 사용자의 개념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그리고 동법 제32조에서 모든 사람에게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직장 동료들은 괴롭힘 등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
제10조 (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차법에서는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소개소나 직업알선기관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차법 제6조(차별금지)에서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소개소나 직업알선기관도 고용영역에서의 차별금지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직업소개소나 직업알선기관도 고용영역에서의 차별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진정직업자격

진정직업자격(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s)이라 함은 적절한 배려의 유·무에 관계없이 장애인이 희망하는 본질적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여기서 본질적인 직무라는 것은 채용과정에서 고려된 핵심적인 업무를 말하는데, 고용주가 구인 광고할 때 또는 지원자를 면접할 때 기술한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제4조(차별행위)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장차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직업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직업에는 본질적 직무와 부수적 직무가 있다.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업이 존재하거나 소수의 근로자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직무는 본질적이다. 예컨대, 비서는 타이핑과 전화 받기가 본질적 직무이고, 가구를 옮기거나 상사의 부인을 위한 생일선물을 구입하는 것은 부수적인 직무이다. 장애인이 본질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비록 몇 가지 부수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차별할 수는 없다(Plater, 1992: 158).

거꾸로 말하면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 고용을 거부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장애인이 본질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에 의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의해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장애인은 유자격 장애인에 해당하게 된다.

예컨대, 걷는 것이 불편한 장애여성이 비서직에 지원하였는데 심부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용이 거부된 경우, 해당 직업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심부름하는 것을 요하고 다른 근로자들이 이를 할 수 있다면 해당 여성은 유자격 장애인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그 여성을 차별한 것이 된다. 반면에 해당 직업이 매일 심부름하는 것을 요한다면, 심부름은 해당 직업의 본질적 직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별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진정직업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직무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조건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직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이라고 볼 수 있다.

직무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조건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편의제공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조건은 극복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당한 편의제공에 의해서도 신체적·정신적 조건이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정직업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직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 또한 진정직업자격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본질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일정한 자격기준(예컨대, 교육, 경험, 기능수준 등)이 필요로 되는 경우,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유자격 장애인에 해당하게 된다.

다른 한편, 근로자의 장애가 장애인 자신이나 다른 동료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재산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합리적인 편의조치에 의해 이러한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은 유자격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해당 직업의 본질적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직무가 본질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근로자에게 배당함으로써 장애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Gold, 2001: 61).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정직업자격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진정직업자격을 명시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직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은 직원 채용 공고 시에 명시된 기술이나 자격에 한정한다든지, 직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든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정당한 편의제공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신체적·정신적 기능 제약을 극복하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조정 조치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 지원자 또는 근로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적극적인 조치이다. 여성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정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장애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은 ①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③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④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⑤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⑥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등을 말한다(장차법 제11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p>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p>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p>제5조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제6조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또한 장차법 시행령 제5조에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②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③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④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⑤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⑥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등이다.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면 차별이 된다. 물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런데 현행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빠져 있다.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는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의사소통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의사소통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이나 만화 등을 통해 이들에게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정당한 편의가 될 것이다. 다만, 정당한 편의제공은 요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지적장애인이 이를 독자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면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주 지원제도는 과도한 부담을 경

감해주는 좋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EEOC는 편의제공의 구체적 절차를 적시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고시 →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 정당한 편의제공 필요성 제시 → 편의제공 요청자와의 논의 → 직무분석과 가능한 편의제공 방법 리스트 작성 → 과도한 부담에 대한 조사 → 편의제공 결정 → 편의제공 등의 순서에 따라 합리적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5) 과도한 부담

어떤 행위자에게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에게 지나친 부담을 초래케 하여 이러한 기대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이는 차별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과도한 부담(undue hardship)이라 하는데, 이 역시 주로 고용영역에 적용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한 외국의 경우 이를 주로 고용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용과 관련하여 과도한 부담이 문제가 될 때 그것은 주로 경제적 비용과 관련되어 문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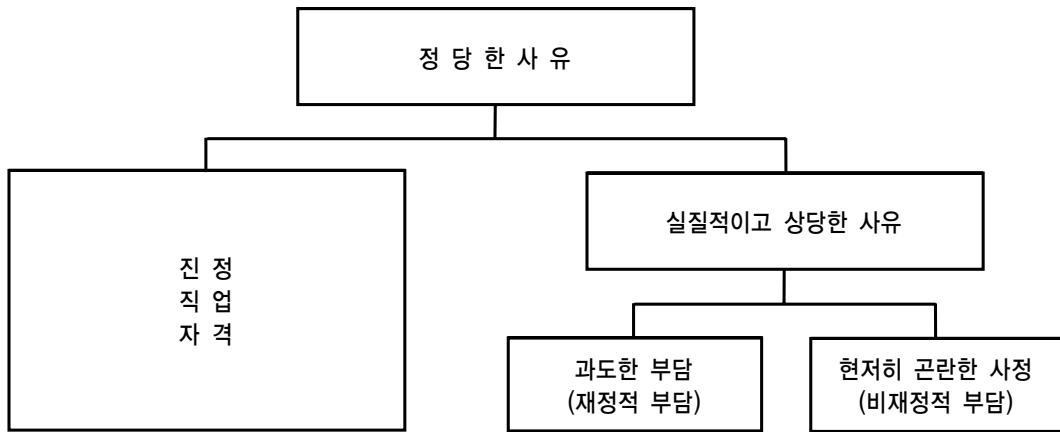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4조 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법 제4조 제3항 제1호)과 진정직업자격(법 제4조 제3항 제2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4조 (차별행위) ①~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생략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과도한 부담과 현저히 곤란한 사정의 두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외국 입법례에서 과도한 부담 등은 재정적 부담과 비재정적 부담을 모두 의미하고 있으므로, 설사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결국은 외국 입법례에서 말하는 과도한 부담 등과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전혀 실익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용어선택에서의 차이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여기서는 이 두 용어의 의미를 구분해 보기로 한다(그림 2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2008).



[그림 2]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의 구조

이 구분에 있어서는 외국 입법례에서 과도한 부담 등이 재정적 부담과 비재정적 부담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과도한 부담은 재정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비재정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도한 부담은 주로 정당한 편의의 제공과 연관되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물론, 과도한 부담이 정당한 편의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정당한 편의가 원천적으로 비용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미국 장애인법의 과도한 부담(undue hardship)이란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때 현저한 어려움 내지는 비용(significant difficulty or expense)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요소에는 ① 필요한 편의의 종류와 비용, ② 합리적 편의제공과 관련된 시설 또는 설비의 전반적 재원, 시설에 고용된 자의 숫자, 비용 및 재원에 미치는 효과, 그러한 편의가 시설운영에 미치는 영향, ③ 사업체의 전반적 재원, 사업의 규모, 시설의 수와 유형 및 위치, ④ 노동력의 구성·조직·기능을 포함한 사업의 운영 형태, 해당 사업체 시설의 지리적 분리 여부 또는 행정·재정적 관계가 포함된다(제12111조 (10)).

편의제공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편의제공이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지원자 또는 복지기관의 의지를

고려하여야 한다(Player, 1992: 160).

영국 장애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제6조 제1항 (b)). 합리성 여부의 판단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행하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이다. 장애차별금지법 제6조 제4항은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 해당 조치가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효과를 방지하는 정도, ② 사용자에게 의한 해당 조치의 실행 가능성, ③ 해당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 및 기타 비용과 그에 따른 사업활동의 저해 정도, ④ 사용자의 재정 및 기타 재원의 규모, ⑤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금전적 지원 또는 기타 지원의 이용 가능성 등이 합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다.

호주 장애차별금지법에서 과도한 부담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과도한 부담이란 고용주에게 합리적이지 못한 배려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 대한 판단은 HREOC에서 하는데 동위원회는 적절한 적응을 통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익이나 손실의 성격, 장애의 특성, 비용의 평가금액이나 재정상황, 이와 관련된 계획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며 본질적인 직무의 요구사항 변경이나 폐지, 다른 종업원에게 본질적인 임무의 위임, 다른 직무의 형성이나 인사와 같은 사항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과도한 부담과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큰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정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주 지원제도는 과도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좋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통상 과도한 부담의 초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또한, 정당한 편의는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 제공토록 노력해야 하며, 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품질로 제공되어야 하고 과도한 비용의 경계선 내에서는 비용을 이유로 정당한 편의의 품질을 차선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5. 마치며

장차법은 의무고용제도의 한계와 인권 중심 접근 방법에서 시작되었다. 의무고용제도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첫째, 고용주들은 부담금을 많은 세금 중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집합적 책임이라는 원칙은 잊혀지고 부담금에 대한 저항만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율이 떨어지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체하

는 경향이 크다는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둘째, 고용주가 의무고용율을 지키고 나면 유능한 장애인 구직자를 취직시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개인에 대한 적절한 기회 부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고용할당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의 실질적인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부문이 고용부담금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정부부문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차별금지규정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이 원칙이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시키는 데는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원조 국가인 미국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장애인 고용율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채용시에 장애인에 비해 더 나은 능력을 지닌 비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합법적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만 대상이 되므로 중증장애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별은 자격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므로 중증장애인은 차별금지의 효과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차별에 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장애인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담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이나 소송이 제기되어도 장애인의 승소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넷째, 장애인들의 고용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차별금지제도만 시행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차별받은 장애인의 진정이나 소송을 도와줄 수 있는 P&A(Protection & Advocacy)제도 등을 제도화하는 한편 기존의 보호고용제도 특히 지원고용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평등전략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고용평등전략은 공공부문이나 기업이 ①장애인의 고용현황 분석 및 고용평등계획 수립 ② 고용평등계획의 이행 ③ 고용평등 이행실적 제출을 하면, 정부는 ④ 고용평등계획 및 이행실적 적정성 평가 ⑤ 평가결과 행·재정적 인센티브 활용 등 일련의 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고용평등 전략은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여성계에서는 2006년 3월 처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며 2008년 3월부터 민간기업 500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고용평등 프로그램은 고용주의 자발적 계획과 평가에 의해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적극적인 시책을 사회적으로 강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우며 보완적 조치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이 글에서는 입법평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교육 관련 조항이 장애인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었고, 법 조항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문제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조항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입법평가제도는 법률의 규정이 낳는 모든 차원의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법률의 질을 개선하고 법률의 빈번한 개정에 따른 불안정성을 치유하며,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5년 동안 시행된 이후 과연 좋은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평가 방법의 활용

입법평가란 일반적으로 입법적 성격을 지닌 국가적 조치에 대한 평가, 즉 실질적 의미에서의 법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법 형식을 구비한 규범’이 전체 적용영역에 대하여 미치는 재정적 및 비재정적, 의도적 및 비의도적 영향 전반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사전적, 병행적 및 사후적 평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박영도, 2002). 입법평가제도 역시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영향을 사전 및 사후에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홍완식, 2007). 따라서 입법평가는 입법의 전 과정 즉, 법안의 작성 이전 시점에서부터 입안과정, 작성된 법률 그리고 그 법률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 등에 있어서 동 입법이 좋은 규범으로써 작용하는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청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황준성, 2011).

이러한 입법평가는 교육입법 분야(황준성, 2012; 황준성, 2011; 이덕난, 2009), 사회복지입법 분야(김광병, 2012; 이호웅, 2012)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할 때에도 이러한 입법평가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교육 부문 조항만을 발췌하여 이 조항의 법적 타당성, 안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사전적 또는 병행적 단계의 평가보다는 실제 법률 시행 이후의 변화된 상황을 효과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후평가를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사후적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 실제로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당 법의 개정, 폐지 또는 대안 법률의 마련 등을 위해 수행된다(황준성, 2011). 특히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만 5년이 되고, 각종 유예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는 시점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각종 정책이 안정화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난 5년 동안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 및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조항도 발견되고,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최승철 외, 2012; 위계출, 2012; 신옥주, 2011; 남찬섭, 2009; 김진우, 2008)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위계출(2012)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의 체계성 확립, 정당성 확보, 규범성 강화, 장애인차별전담기구의 독립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당초 법률 제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결과를 분석,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헤치거나 장애인 관련 현장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조항을 수정, 보완하여 '좋은 법률'로서의 기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법평가 중 사후적 입법평가는 현존하는 법의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입법자가 입법 목표의 달성여부 등 효과성, 효율성, 부작용 등을 판단하여 향후 법의 존치 또는 개정 등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후적 입법평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분석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는 첫째, 현행 법규정이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둘째,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중요한가; 셋째, 부담가중과 부담경감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했는가; 넷째, 법규정이 실용적이고 준수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다섯째, 개정의 필요성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등을 중심으로 분석되는 평가방법이다(박영도, 2008). 이 글에서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분석 기준과 방법을 활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교육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법률의 실효성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분석 대상 법 조항

김주영(2009)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교육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 크게 7개 조항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교육 관련 조항

법 조항 번호			조항 내용
장	절	조	
제1장 총칙		제3조 정의	<p>6.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p>
제2장 차별 금지	제2절 교육	제13조 차별금지	<p>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의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상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습·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상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법 조항 번호			조항 내용	
장	절	조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모부성권 등	제28조 모부성권 차별금지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자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		제33조 장애여성 차별금지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제35조 장애아동 차별금지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김주영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권의 변화와 향후 과제. 장애인 교육권 현황 및 향후 과제 - 장애인 교육권 보장방안 토론회 자료집(7-41).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법률 조항으로는 총칙에 해당되는 정의에 관한 조항(제2조), 차별금지의 주요 영역 중 교육 분야에 관한 조항(제13조 및 제14조), 모부성권 영역의 모부성권 차별금지 조항(제28조),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영역의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등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제30조),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의 장애여성 차별금지 조항(제33조) 및 장애아동 차별금지 조항(제35조)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김주영(2009)이 제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교육관련 조항 중 실제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분석이 가능한 제13조 및 제14조에 제시된 조항을 중심으로 분석 대상 조항을 선정하였다.

3. 사후적 입법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마련

사후적 입법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교육 관련 조항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1) 평가기준1: “현행 법규정이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법률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에 있다. 이러한 목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과 부합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의 효과적 구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백종인, 2008).

이상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과 수단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로 인해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교육 관련 조항의 목표는 교육 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로 인해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관련 조항이 의도하는 목표는 첫째, 교

육 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한다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평가 기준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표에 따른 평가기준

목표	기준
교육 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1. 현행 장차법의 교육관련 조항들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요소를 반영하고 있는가?
교육 현장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한다.	1. 현행 장차법의 교육관련 조항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해 그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능하고 있는가? 2. 진정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 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목표의 경우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교육 관련 조항들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로 인한 차별 요소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와 같은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실제 법률의 규정과 현실과의 불일치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현장 적합성을 알아볼 수 있다.

2) 평가기준2: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중요한가?”

두 번째 평가기준인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중요한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정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발생한 부작용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이 장애인 차별금지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당초 취지를 담보할 수 없을 가능성을 알아보는 기준이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표 3>과 같이 평가기준을 제시해 볼 수 있다.

<표 3> 평가기준2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1. 법률 시행에 따라 발생한 부작용이 있는가? 2. 발생한 부작용은 장애인 교육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부 평가기준은 첫째, 법률 시행에 따라 발생된 부작용이 있는가, 둘째, 발생된 부작용은 장애인 교육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이다.

3) 평가기준3: “부담가중과 부담경감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했는가?”

세 번째 평가기준인 “부담가중과 부담경감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했는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행, 재정적 부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 부담 등의 수준과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평가기준3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1. 법률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교육 현장에 어떠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되었는가?
2. 발생된 추가적인 부담은 장애인 교육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3. 법률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교육 현장에 어떠한 부담이 경감되었는가?
4. 경감된 부담은 장애인 교육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가기준3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첫째, 법률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교육 현장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되었는가, 둘째, 발생된 추가적인 부담은 장애인 교육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셋째, 법률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교육 현장에 어떠한 부담이 경감되었는가, 넷째, 경감된 부담은 장애인 교육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등이다.

4) 평가기준4: “법규정이 실용적이고 준수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네 번째 평가기준인 “법규정이 실용적이고 준수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는가?”는 법률의 실효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준을 말하는데, 법률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평가기준4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1. 법률의 각 조항이 실제 집행이 가능한 실용적인 조항들인가?
2. 법률의 각 조항이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가?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가기준4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첫째, 법률의 각 조항이 실제 집행이 가능한 실용적인 조항들인가, 둘째, 법률의 각 조항이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가 등이다.

5) 평가기준5: “개정 필요성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다섯 번째 평가기준인 “개정 필요성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가?”는 위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조항 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평가기준5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1. 법률의 각 조항 중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 있는가?
2. 법률의 각 조항 중 폐지가 필요한 조항이 있는가?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가기준4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첫째, 법률의 각 조항 중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 있는가, 둘째, 법률의 각 조항 중 폐지가 필요한 조항이 있는가 등이다.

4. 세부 평가기준 적용 결과

사후적 입법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기존의 문헌자료,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교육 관련 조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평가기준1: “현행 법규정이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평가기준1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5년간의 진정사건,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서 보고된 모니터링 자료 등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차별 금지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기준1에 따라 법률이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특수학급 신, 증설 요구시 이를 각급학교의 장이나 교육감이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이를 장애인 차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5년간 교육 영역에서의 진정 사건 총 323건 중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진정이 65건으로 전

체의 2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특수학급 설치 문제에 대한 진정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에서는 이를 차별로 볼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없어 다툼의 여지를 갖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에 박모씨가 충청남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특수학급 증설의 무 이행청구 소송에서 각하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 사건 역시 특수학급 신청권이 학교장에 있으므로 비록 장애를 이유로 특수학급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학부모가 이를 요구할 수 없고, 학교장이 설치를 거부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판결이었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10).

둘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4조의 차별금지 조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별 행위 중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에서의 학부모 차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차별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두 종류의 법률에서 같은 유형의 차별을 반복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으나, <표 7>과 같은 조항의 경우 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두 동일한 사항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경우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표 7> 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조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의 활동 참여 배제	제13조(차별금지)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② (생략)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제13조(차별금지)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학 및 전학 거부 금지(제4조 제1항), 수업 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제4조 제2항 제2호), 입학전형과정에서의 차별 금지(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각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어떤 조항은 두 개의 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조항은 하나의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어 통합 조정될 필요는 있다. 다만, 특수교육법의 경우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지원, 통학지원, 기숙사지원, 정보접근지원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하는 경우 차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가족지원, 치료지원, 기숙사지원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치료지원의 경우 2012년 현재 2만여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중 하나이고, 이 서비스의 제공 과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사항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 특수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조사 결과 대부분 주5일 중 1일내지 2일은 재택방문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수업일수는 가정학습 또는 방송통신학습 등의 방법으로 교사가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하지 않고 수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8항의 경우 학업시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제시하여 위의 학습권 침해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가정학습이나 방송통신학습을 통해 부족한 수업일수 또는 학업시수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순회교육을 제공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한된 장애학생을 위해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분리교육의 일환인데, 교사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대체한다는 것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차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1년 또는 2년 과정의 전공과를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을 설치한 일반학교에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공과는 2곳을 제외하고 모두 특수학교에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이에 따라 특수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학업 연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일반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설치된 전공과에 진학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발달장애(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학생의 경우 학교 졸업 시기가 되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전공과와 같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는 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공과가 운영되고 있어 일반학교 졸업생들에게는 진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이 전공과에 진학하고 싶어도 정원 문제, 원거리 통학 문제 등으로 인해 전공과에 다닐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에 대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전공과 설치 요구시 거부하는 경우, 전공과 진학 요구시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장애인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의 종류로는 국가 또는 교육청 단위 학력평가시험에 검사조정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사례, 통합학급에 입학되어 있지만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통합학급 출석부에 등재하지 않고 특수학급 출석부에 등재함으로써 행정적으로 통합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사례, 현장체험학습시 학부모 동행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사례, 통합학급 수업 참여 또는 교내 행사 및 활동 참여 시 학부모 대기 또는 참여를 요구하는 사례, 장애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폭력을 당하는 경우 일반학생과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사건이 처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학생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가중된 사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유아가 적절한 교육적 요구를 요구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각급학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이를 제공받지 못한 사례 등 수많은 교육 차별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12). 그러나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는 간접차별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지 않는 한, 이러한 차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명백히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2) 평가기준2: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중요한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장애인 교육 현장에서는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까?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진정 사건을 접수하는 일이 발생되고, 이에 대해 진정을 접수한 당사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다든지, 교묘하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진정 당사자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거나,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을 때 이를 과도한 부담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정당화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직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되어 충돌이 발생한 사례를 들은 바 없지만, 이러한 상황은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작용들이라 할 수 있겠다.

3) 평가기준3: “부담가중과 부담경감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했는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약 1조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2009). 이는 현행 전체 장애인 교육 예산 2조 1천 3백여억원(교육과학기술부, 2012)의 절반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집행하기 위한 소요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된 바 없으며, 이를 집행할 계획도 제시되지 않아 부담가중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평가기준4: “법규정이 실용적이고 준수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법규정의 실용성 및 준수가능성의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각 조항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가와 법률의 취지대로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제13조의 경우 차별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실제 경험하게 되는 차별에 대해 권리구제 절차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확인한다면 제13조의 실용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조항별 차별 경험 정도를 알아본 권희순(2013)의 논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5년간 진정 사례 현황 자료를 활용해 볼 수 있다.

권희순(2013)은 지난 2012년에 부산에 위치한 초·중·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 및 부모 21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교육 영역 모니터링 결과(제13조 관련)

조사 항목	응답 빈도(%)		근거 조항
	예	아니오	
장애를 이유로 학교 입학에 거부하지 않았다.	182(89.2)	22(10.8)	제13조 제1항 전·입학 거부
장애를 이유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강요하지 않았다.	185(90.7)	19(9.3)	
학교에서 장애를 이유로 교육 참여 기회를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지 않는다.	160(78.4)	43(21.1)	제13조 제4항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 금지
장애를 이유로 현장학습 등 원외 활동 참여를 직접적으로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177(86.8)	27(13.2)	

조사 항목	응답 빈도(%)		근거 조항
	예	아니오	
야외행사 시 장애학생의 부모동반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	47(23.0)	156(76.5)	
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교직원으로부터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	18(8.8)	185(90.7)	제13조 제6항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모욕 또는 비하 금지
장애학생 부모는 (학교) 실무자로부터 언어적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	21(10.3)	180(88.2)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163(79.9)	37(18.1)	제13조 제7항 입학 지원 시 추가 서류 또는 시험 요구 금지

※ 해당없음 또는 무응답 빈도(%) 수 제외.

권희순(2013)의 연구에서는 제13조 제1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중심으로 차별 경험 정도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장애학생 또는 부모 중 일부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 시간 등 학교 내 일상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교육 참여 기회를 제한, 배제, 분리,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장애학생 또는 부모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21.1%인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면접이나 추가시험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학생 또는 부모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8.1%인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장애학생들이 이러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12년 장애 차별 진정 접수 현황 중 교육 분야만 발췌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교육영역에서의 장애차별 진정 사건 유형별 현황

구 분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시험평가 편의제공	수업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합계	96	9	2	13	3	51	2	16
비율	100.0	9.4	2.1	13.5	3.1	53.1	2.1	16.7
공공	79	3	1	9	2	51	2	11
민간	17	6	1	4	1	-	-	5

〈표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난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접수한 장애차별 진정 사건 중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를 이유로 진정서를 접수한 사례는 3건, 전입학 거부제한의 경우 9건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제13조의 차별금지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특수학급 설치 거부 또는 기타의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학생 또는 부모가 교육 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험은 상당한데 비해,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그 권리를 구제받는데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차별을 당한 사람이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차별 사건을 해결하거나 차별 상황이 제거 또는 종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는 제한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차별을 당한 사람은 상당수 존재하지만 차별당한 사람이 권리를 구제받는데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은 현재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권리구제 절차가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제14조의 정당한 편의제공 조항의 경우, 권희순(2013)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교육 영역 모니터링 결과(제14조 관련)

조사 항목	응답 빈도(%)		근거 조항
	예	아니오	
장애학생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휠체어 등 이동용 기자재를 대여해 준다.	43(21.1)	125(61.3)	제14조 제1항 제1호 장애인의 통학 지원 및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학교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에게 교육보조인력을 제공한다.	148(72.5)	46(22.5)	제14조 제1항 제2호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야외행사가 있을 때마다 보조인력을 제공한다.	138(67.6)	58(28.4)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보조수단(높낮이 조절용 책상, 자세유지 보조기기, 특수키보드 등)을 제공한다.	33(16.2)	111(54.4)	제14조 제1항 제3호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 대여 및 휠체어 접근 공간 확보
학교에서 제출하는 모든 자료(교과서 등)는 장애학생이 요청할 경우 장애학생이 선호하는 형식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변환하여 제공된다.	103(50.5)	64(31.4)	제14조 제1항 제4호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등을 포함한 각종 의사소통 수단

조사 항목	응답 빈도(%)		근거 조항
	예	아니오	
학교에서는 시험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시험방식의 변경)을 운용하여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18(57.8)	79(38.7)	제14조 제1항 제5호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구비, 제공하고 있다.	137(67.2)	63(30.9)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통학차량에는 통학보조인력이 제공되고 있다.	42(20.6)	89(43.6)	제1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장애학생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53(26.0)	129(63.2)	
학교 내에는 계단 외에 각 층을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137(67.2)	54(26.5)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교실, 음악실, 미술실, 어학실 등 학교 내 모든 시설은 장애학생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45(71.1)	49(24.0)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 접근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교내에 장애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가 있다.	94(46.1)	96(47.1)	제14조 제2항 장애학생지원 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 배치

※ 해당없음 또는 무응답 빈도(%) 수 제외.

〈표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14조의 경우 제13조와는 달리 정당한 편의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비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동용 기자재의 대여 및 수리(61.3%),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적절한 보조기기의 제공(54.4%),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38.7%), 제1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 따른 통학보조인력의 제공(43.6%)과 교통수단 제공(63.2%),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별도의 지원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 배치(47.1%) 등의 경우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고 있음에 반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구제 요구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9〉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와 관련한 장애 차별 진정 건수는 2012년 한 해 시설물 접근 및 이용 분야에서 2건, 수업·시험평가 편의제공 분야에서 13건 등 총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기준 1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와 제14조의 경우, 교육 현장

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권리구제 수단을 사용하는데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13조와 제14조는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인 접근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세부평가기준 2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준수 정도의 경우, 권희순(2013)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제14조와 관련된 조항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연구 이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발표하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및 국정감사 보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의 규정에 대한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제1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

지난 2008년과 2012년의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초, 중, 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2008년과 2012년 비교)

(단위 : 교, %)

시·도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교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2008	4,834	4,575	94.6	4,604	95.2	4,452	92.1	4,216	87.2	3,709	76.7	2,663	55.1	4,571	94.6	85.1
2012	6,290	6,084	96.7	6,190	98.4	6,102	97.0	5,961	94.8	5,683	90.3	5,228	83.1	6,183	98.3	90.6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자료 재구성.

<표 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8년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평균 85.1%인데 반해, 2012년의 경우 90.6%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매개시설보다는 내부시설의 확충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승강기 또는 경사로 설치가 2008년 55.1%에서 2012년 83.1%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제1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

지난 2008년과 2012년의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2008년과 2012년 비교)

(단위 : 교, %)

연도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교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2008	6,751	4,721	69.9	5,317	78.8	4,405	65.2	4,242	62.8	2,889	42.8	1,676	24.8	4,765	70.6	59.3
2012	5,146	4,544	88.3	4,927	95.7	4,563	88.7	4,389	85.3	3,504	68.1	2,941	57.2	4,547	88.4	77.0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자료 재구성.

<표 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8년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평균 59.3%인데 반해, 2012년의 경우 77.0%로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설치비율 상승 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승강기 또는 경사로 설치의 경우 2008년 24.8%에서 2012년 57.2%로 두 배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는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에 비해 대체로 편의시설 확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적절한 평가방법의 제공(제14조 제1항 제5호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장애학생에게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절한 평가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시행하는 학력평가시험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제도가 지난 2008년 이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평가조정제도는 크게 일반교과 적용이 가능한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일반교과를 적용하기 어려운 장애학생에게는 별도의 평가조정제도에 따라 평가 내용과 평가 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학교 자체의 대안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평가조정 또는 대안평가는 일반교과의 적용이 어려운 지적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지

적장애학생 재학 학교의 학력평가시 평가방법 적용 현황 및 평가조정 관련 근거 학칙 마련 학교 수에 대한 연도별(2008년과 2012년) 비교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지적장애학생 재학 학교의 학력평가시 평가방법 적용 현황 및 평가조정 근거 학칙 마련 학교 수(2008년과 2012년 비교)

(단위 : 교, %)

연도	지적장애학생이 재학중인 학교	학력평가 실시 현황								평가조정의 근거를 학칙에 마련한 학교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		대안평가를 실시하는 학교		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		정신지체학생에 대한 평가조정 실시 학교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2008	5,432	3,855	71.0	1,070	19.7	599	11.0	1,086	20.0	531	9.8
2012	6,980	3,409	48.8	3,050	43.7	449	6.4	1,217	17.4	1,755	25.1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자료 재구성.

<표 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난 2008년도의 경우 대안평가 또는 평가조정에 따라 별도로 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비율이 전체 학교의 39.7%인데 반해, 2012년도의 경우 61.1%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학교와 동등하게 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비율은 2008년도의 경우 71.0%, 2012년도의 경우 48.8%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 5년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교육보조인력의 배치(제14조 제1항 제2호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002년부터 통합교육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보조인력이 각급학교에 배치되기 시작하였고, 2012년 현재 약 1만여명의 교육보조인력이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수준이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형태별 보조원 수, 보조원 1인당 학생수, 1학급당 보조원 수 등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학교형태별 교육보조인력 배치 현황(2008년과 2012년의 비교)

(단위: 명)

연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보조원 수	보조원 1인당 학생 수	1학급당 보조원수	보조원 수	보조원 1인당 학생 수	1학급당 보조원수	보조원 수	보조원 1인당 학생 수	1학급당 보조원수	보조원 수	보조원 1인당 학생 수	1학급당 보조원수
2008	1,775	13.18	0.51	4,464	8.48	0.70	614	16.66	0.07	6,853	10.43	0.37
2012	2,820	8.76	0.69	6,439	6.90	0.72	634	24.67	0.04	9,893	8.59	0.35

※ 자료: 김은주, 권택환, 김기룡, 김의정 등 (2012).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3~'17) 기초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자료 재구성.

〈표 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난 2008년의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수가 6,853명이었는데 2012년의 경우 9,893명으로 약 3천여명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71,484명(2008년)에서 85,012명(2012년)으로 13,528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보조인력 1인당 학생수는 2008년 8.59명에서 10.43명으로 교육보조인력 1인이 담당하는 장애학생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학급당 배치된 교육보조인력 수의 경우 2008년 0.35명에서 2012년 0.37명으로 소폭 상승되었지만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5) 통학지원 이용 현황(시행령 제8조 제2호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통학지원에 필요한 이동용 보장기 대여 또는 수리, 교통편의 제공 등을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통학지원의 경우 특수교육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통학차량 지원, 통학보조인력 지원 및 통학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15〉는 2008년과 2012년의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학버스 이용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15〉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이용 현황(2008년과 2012년의 비교)

(단위: 명, 대, %)

연도	전체학생수	통학버스수	이용학생수	이용비율
2008	23,400	497	14,322	61.2
2012	24,720	564	15,783	63.8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자료 재구성.

〈표 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이용 비율은 지난 5년간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특수학교의 경우 통학버스를 특수학교 설립 당시부터 지

속적으로 제공해 왔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통학지원과 관련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2010)의 부모 권리 옹호 가이드북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통학지원으로 인한 차별 사례로 통학버스의 탑승시간, 운행 경로, 소요시간 등에서 장애아동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통학비 지급의 적절한 기준에 대해 학교의 일방적인 조치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6) 보조기기 지원(제14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등을 정당한 편의제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으나 이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난 2009년도에 이상민 의원실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자료와 김남진(2011)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기기 제공 현황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체계를 갖추고 필요할 경우 대여 또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행·재정적 지원 미비로 인한 보조공학기기 부족, 전문가 부족 및 인식 부족 등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김남진, 2011). 특히 G시도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조공학기기 품목의 종류가 특수교육지원센터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공학기기 대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기능평가 미 실시, 관리 부실, 지원 규정 미비 등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별, 기관별 보조공학기기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은 서울과 전북의 보조기기 비치 현황을 비교한 결과이다.

〈표 16〉 일부 지역의 기관별 보조공학기기 유형별 비치 현황

(단위: 개소)

시도	구분	기관 수	이동보조 기구 비치 기관 수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 기관 수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구 지원 기관 수	장애유형별 학습보조기 지원 기관 수	기타 보조기구 지원 기관 수
서울	특수교육지원센터	11	7	7	5	7	1
	특수학교	29	14	16	15	13	8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17	15	17	7	16	9
	특수학교	9	4	6	5	6	5

자료: 이상민 의원실 (2009). 국정감사 요구자료. 자료 재구성.

〈표 16〉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대다수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유형별 보조기기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서울의 경우 상당수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유형별 보조기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 조사한 자료이므로 2012년의 변화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보조기기의 경우 다른 교육적 조치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마다 지원되어야 하며 보조기기의 특성에 따라 학생마다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므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평가기준5: “개정 필요성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평가기준 1부터 평가기준4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의 목표를 달성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률의 개정 문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이해당사자 등과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조항별 개정 사항 및 추가로 제안해 볼 수 있는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평가기준1에서 제시한 결과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규정이 특수교육법 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별금지 규정과 중복된 규정이 있고, 특수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별금지 규정 중 일부 조항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조항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통합 적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기준 1에서 제시한 결과 중 실제 발생되고 있는 교육 차별 상황을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와 같은 사항을 조문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기준 4에서 제시한 결과 중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조항의 경우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항 내용이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

〈표 17〉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개정안 비교표

기존	개정안	비고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에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에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3.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 4.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5.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 기존의 제1항, 제4항 및 제7항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의 규정을 하나의 조항으로 재구성하여 법령의 체계성 강화 및 간소화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배치를 요구 받은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제2항의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령 해석의 모호함 해소 ○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을 교육책임자로 통일 시킴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항을 제3항으로 이동

기존	개정안	비고
<p>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교육책임자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일수 및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교육책임자로 변경하고, 학업시수 위반 뿐만 아니라 수업일수를 추가하였음. ○ 제8항을 제4항으로 이동
<p>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통합교육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교육을 저해하는 행·재정적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학교 차원에서 발생될 수 있는 통합교육 저해요인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 신설.
<p>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항의 경우 편의제공 중 하나로 간주하여 제14조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3항을 제6항으로 이동. ○ 법률의 체계상 직접차별에 해당하는 조항을 먼저 제시하고 간접차별에 해당하는 제6항을 맨 아래에 위치시킴.
<p>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항은 제1항의 제5호로 이동
<p>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항은 제4항으로 이동
<p>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p> <p>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p>	<p>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p> <p>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기존의 법령에서 정당한 편의로 규정하지 않았던 내용을 조항으로 새롭게 규정함 ○ 제13조 제5항의 경우 제14조 제1항 제10호와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기존	개정안	비고
<p>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p> <p>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p> <p>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림,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p> <p>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p> <p>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 인력 또는 의사소통 보조 인력의 배치</p> <p>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p> <p>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림,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p> <p>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p> <p>6.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제공</p> <p>7.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제공</p> <p>8.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p> <p>9. 장애인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학급의 설치 및 특수교사의 배치</p> <p>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제공, 관련 시설·설비의 마련, 전문인력의 배치</p> <p>11.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 제1항 제2호와 같이 교육 보조 인력 이외에 학교 생활에 필요한 별도의 의사소통 보조인력 요구 근거 마련</p>
<p>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p>	<p>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p>	<p>○ 제2항과 제3항 통합</p>
<p>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3항의 전단의 내용은 이미 단계적 적용 범위 기간이 2013년 4월부터 종료되기 때문에 삭제할 수 있음.</p>

이상의 개정 방향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교육 관련 조항 제13조 및 제14조에 대한 개정을 그 사유를 <표 17>과 같이 제안하였다.

<표 1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13조의 경우, 기존의 특수교육법에서 차별로 규정하였던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되어 왔던 차별적 사항을 조항으로 추가하여 조항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조문의 배열을 직접차별, 간접차별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제14조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로 이관시키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존재했던 특수학급 설치 요구 및 전공과 설치 요구 등을 추가하여 그 내용을 대폭 확장시켰다. 이를 통해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 현장에서 교육책임자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교육적 지원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5. 제언

이 글에서는 입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교육영역 조항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한 것이기에 이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는 제한적이지만, 지난 5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교육 현장에서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법률의 목표를 구현해 내고 있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교육 관련 조항은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 또는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차별적 상황에 대해 이것이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차별받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차별금지의 종류를 추가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개정안은 보다 심도있는 입법평가를 통해 법적 실효성 및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 현장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모니터링이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이 도구를 활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조항별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

성 등을 가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교육기관의 경우 최소한의 표집으로만 모니터링이 진행되었거나, 모니터링이 아닌 설문조사 또는 심층면담의 형식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지각 또는 인식 수준을 알아보는 정도의 연구만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의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교육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활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제한된 자료로 인해 입법평가의 모든 차원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지 못했는데, 향후 입법평가의 사전적, 병행적 및 사후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입법평가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기존의 입법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는데,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표와 취지 등이 반영되고 장애인 관련 입법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를 확장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러한 의무를 부과받는 교육책임자 등은 이를 과도하고 부당한 부담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이 그러한 의무를 부과 받은 자에게 과도하고 부당한 부담이 된다면 편의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허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나 특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에게 재하나 용역 또는 시설이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장애인을 위하여 제공해야 하는 편의나 특혜는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부당한 부담'(unjustifiable hardship)을 주지 않는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정영선, 2011). 만약에 부당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을 추가로 제공하여 부당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추진되기 어렵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제4차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견 수렴 중인 계획안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에 필요한 관련 예산 확보 등의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2013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에서는 편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한 계획만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교육 현장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고, 각 시·도교육청이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저자.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특수교육통계. 서울: 저자.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저자.
- 김은주, 권택환, 김기룡, 김의정, 박은혜, 박희찬, 오영석, 이대식, 정민호 (2012).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3~'17) 기초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9). 사건번호 10-00364, 특수학급 증설의무 이행청구.
- 권희순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특성 및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광병 (2012). 지역사회복지 규범으로서 사회복지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조례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남진 (2011). 경남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 및 문제점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3), 19-40.
- 김주영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권의 변화와 향후 과제. 장애인 교육권 현황 및 향후 과제 - 장애인 교육권 보장방안 토론회 자료집(7-41).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진우 (2008). 지적장애인 관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35, 169-195.
- 남찬섭 (2009). 사회적 모델의 실현을 위한 장애정의 고찰: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정의의 수정을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학, 61(2), 161-187.
- 박영도 (2008). 입법학 입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박영도 (2002). 입법학 용어해설집.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백종인 (2007). 한국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내용에 대한 일고찰. 동북아법연구, 1(1), 341-373.
- 신옥주 (2011).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토지공법연구, 53, 501-524.
- 위계출 (201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덕난 (2009). 사전적 교육입법평가의 기준 설정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7(3), 185-204.
- 이상민 의원실 (2009). 국정감사 요구자료. 미간행 자료.
- 이호용 (2012).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역할과 과제 - 경기도 지역의 사회복지조례 입법 현황과 평가. 법학논총, 36(1), 171-206.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소요 예산 추계 내역. 미간행 자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12).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사례워크숍 세미나 자료집. 미간행 자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10). 학교 현장에서의 장애인 부모 권리 옹호 안내 자료. 미간행 자료.
- 정영선 (2011). 장애 차별 및 장애인 권리구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22(1), 131-180.
- 최승철, 박종운, 우주형, 유경민, 백정연 (2012).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홍완식 (2007).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문. 입법평가와 입법계획 그리로 정책평가 자료집(pp. 219-232).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황준성 (2011). 교육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23(1), 259-288.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의 통계 및 사례를 중심으로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연주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의 통계 및 사례를 중심으로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연주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1. 들어가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편의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정 이후 장애인 차별행위 진정사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충돌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기관에게 해당 차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장애인 차별사건 시정권고 및 그 이행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2년까지 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291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기관의 권고 이행률은 96.9%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충돌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 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가져온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행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영역 중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재화·용역’ 부분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가깝고 빈번하게 접

하게 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특히나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에 따른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기존에 분석된 각종 자료와 진정·소송 등 실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평가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에 관한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5조에서 재화·용역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 재화·용역의 이용 및 제공에 관련한 세부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조는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20조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2조는 개인정보보호, 제23조는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4조는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는 체육활동의 차별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다.

3.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에 관한 통계¹⁾

가. 차별영역별 진정 접수 비율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²⁾〉

구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 ·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 접근의사 소통	문화 예술 체육				
전체	접수	5,230	338	323	3,322	851	429	753	387	641	261	309	539	399
	비율	100.0	6.5	6.2	63.5	16.3	8.2	14.4	7.4	12.2	5.0	5.9	10.3	7.6
2008	접수	585	41	61	347	37	49	78	128	35	20	55	42	39
	비율	100.0	7.0	10.4	59.3	6.3	8.3	13.3	21.8	5.9	3.4	9.4	7.2	6.7
2009	접수	725	69	49	412	153	91	93	49	13	13	42	105	48
	비율	100.0	9.5	6.8	56.8	21.1	12.5	12.8	6.8	1.8	1.8	5.8	14.5	6.6
2010	접수	1,695	82	55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176	74
	비율	100.0	4.8	3.2	74.9	17.5	3.8	15.5	6.1	29.9	2.1	2.3	10.4	4.4
2011	접수	886	64	62	487	179	70	67	67	45	59	80	105	88
	비율	100.0	7.2	7.0	55.0	20.2	7.9	7.6	7.6	5.1	6.6	9.0	11.9	9.9
2012	접수	1,339	82	96	807	186	154	252	40	42	133	93	111	150
	비율	100.0	6.1	7.2	60.3	13.9	11.5	18.9	3.0	3.1	9.9	6.9	8.3	11.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 후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증감 추이〉

합계		2001.11. 25. ~ 2008. 4. 10.	2008. 4. 11. ~ 2008.12. 31.	2009. 1. 1. ~ 2009.12. 31.	2010. 1. 1 ~ 2010.12. 31.	2011. 1. 1. ~ 2011.12. 31.	2012. 1. 1. ~ 2012. 12. 31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5년 (2008. 4.~ 2012.12.)
합계	전체건수	653	585	725	1,695	886	1,339	5,230
	월평균	8.5	67.2	80.6	188.3	98.4	148.8	92.2
고용	전체건수	153	41	69	82	64	82	338
	월평균	2	4.7	5.8	6.8	5.3	6.8	6.0
교육	전체건수	122	61	49	55	62	96	323
	월평균	1.6	7.0	4.1	4.6	5.2	8.0	5.7

1) 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5주년의 성과 및 평가」에서 재화·용역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2) 기간 2008. 4. 11. - 2012. 12. 31.

합계		2001.11. 25. ~ 2008. 4. 10.	2008. 4. 11. ~ 2008.12. 31.	2009. 1. 1. ~ 2009.12. 31.	2010. 1. 1 ~ 2010.12. 31.	2011. 1. 1. ~ 2011.12. 31.	2012. 1. 1. ~ 2012. 12. 31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5년 (2008. 4.~ 2012.12.)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전체건수	207	347	412	1,269	487	807	3,322
	월평균	2.7	39.9	34.3	105.8	40.6	67.3	58.6
사법·행정/참정권	전체 건수	-	55	42	39	80	93	309
	월평균	-	39.9	34.3	105.8	40.6	67.3	58.6
괴롭힘, 기타	전체건수	171	81	153	250	193	261	938
	월평균	2.2	9.3	12.8	20.8	16.1	21.8	16.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간 차별영역별 접수비율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이 6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괴롭힘 영역(10.3%)과 기타영역(7.6%), 고용 영역(6.5%), 교육 영역(6.2%),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5.9%)의 순서로 높았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 내에 재화 및 용역, 보험·금융, 시설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을 다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일반) 재화·용역이 1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설물 접근이 14.4%,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이 12.2%, 보험·금융이 8.2%, 이동·교통수단이 7.4%, 문화·예술·체육이 5.0%로 높았다. (일반) 재화·용역 영역은 식당 이용 거부, 놀이기구이용 제한 등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되었다.

이를 차별영역별 월평균 진정사건 수로 살펴보면 2001. 11. 25.부터 2008. 4. 10.까지는 207건, 2008. 4. 11.부터 2008. 12. 31.까지는 347건,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는 412건,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1,269건,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487건,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807건의 증감 추이를 보였다.

나.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³⁾

사건유형	합계	지체 장애	시각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발달	언어	정신 장애	기타 장애	
고용	338	119	36	26	48	25	5	22	57	
교육	323	43	57	23	41	104	3	7	45	
재화와 영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용역	851	276	105	113	54	172	8	34	89
	시설물 접근	753	514	122	37	2	10	-	2	66
	이동 및 교통수단	387	167	58	31	14	29	3	2	83
	정보통신·의사소통	641	26	337	4	230	22	2	1	19
	보험·금융	429	115	63	39	71	72	5	35	29
	문화·예술·체육	261	42	19	12	50	111	-	7	20
사법·행정	222	40	40	8	25	56	4	9	40	
참정권	87	10	18	-	2	1	-	1	55	
괴롭힘 등	539	152	39	64	27	97	8	81	71	
기타	399	153	43	27	16	26	3	26	105	
소계	5,230	1,657	937	384	580	725	41	227	67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간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상 버스 및 철도 이용, 도로 및 지하상가 이동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과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사례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웹 접근성 및 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를 제공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많았으며, 뇌병변 장애인 및 지적·발달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거나 놀이시설이나 식당 등 특정 시설의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많았다.

3) 기간 : 2008. 4. 11. - 2012. 12. 31.

다.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구 분		재화·용역						
		합계	재화 용역	보험·금융	시설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계	합계	3,222	851	429	753	387	641	261
	비율	100.0	25.6	12.9	22.7	11.6	19.3	7.9
	공공	1,619	447	31	382	251	323	185
	민간	1,703	404	398	371	136	318	76
2008	합계	347	37	49	78	128	35	20
	비율	100.0	10.7	14.1	22.5	36.9	10.1	5.8
	공공	140	9	5	26	83	9	8
	민간	207	28	44	52	45	26	12
2009	합계	412	153	91	93	49	13	13
	비율	100.0	37.1	22.1	22.6	11.9	3.2	3.2
	공공	154	66	7	33	36	4	8
	민간	258	87	84	60	13	9	5
2010	합계	1,269	296	65	263	103	506	36
	비율	100.0	23.3	5.1	20.7	8.1	39.9	2.8
	공공	762	211	6	181	71	269	24
	민간	507	85	59	82	32	237	12
2011	합계	487	179	70	67	67	45	59
	비율	100.0	36.8	14.4	13.8	13.8	9.2	12.1
	공공	212	80	4	23	34	26	45
	민간	275	99	66	44	33	19	14
2012	합계	807	186	154	252	40	42	133
	비율	100.0	23.0	19.1	31.2	5.0	5.2	16.5
	공공	351	81	9	119	27	15	100
	민간	456	105	145	133	13	27	33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에서의 진정사건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민간부문의 경우, '일반 재화 및 용역',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영역에서, 공공부문의 경우, '일반 재화 및 용역', '시설물 접근',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영역에서 접수율이 높았다.

라. 진정사건의 처리 현황4)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⁵⁾	조사 중지	이송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 (권고)	조정 성립 ⁶⁾	합의 종결 ⁷⁾	조사 중 해결 ⁸⁾ (기각)	기각 (차별 아님, 사실 아님)				
합계	건수	4,626	291	1	166	1,168	759	2,202 (1444)	13	26
	비율	100	68.2				31.8			
고용	건수	320	7	-	23	15	65	207 (161)	3	-
	비율	100	40.9				59.1			
교육	건수	268	11	-	22	45	30	157 (127)	-	3
	비율	100	72.2				27.8			
재화·용역	건수	2,883	240	1	82	977	451	1,123 (718)	6	3
	비율	100	74.2				25.8			
피로힘 등	건수	861	10	-	37	54	180	557 (345)	4	19
	비율	100	35.9				64.1			
			32.6					64.7	0.5	2.2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세부영역별 구제 비율은 고용영역이 40.9%, 교육영역이 72.2%,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이 74.2%, 피로힘 등 영역이 35.9%로 나타나, 재화·용역의 제공 및

- 4) 기간 : 2008. 4. 11. - 2012. 12. 31.
- 5)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임.
- 6)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7)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8)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기각 처리한 경우임.

이용 영역의 구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40건으로 전체 인용(권고) 건수의 82.5%에 해당된다.

마. 참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현장수범자인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기관 등의 종사자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해 복수응답을 받았다. 1순위만 살펴보면, ‘이동 및 교통 수단’이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17.4%, ‘교육’17.4%, ‘시설물 접근/이용’13.0%, ‘재화/용역 제공’8.7%,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4.3%, ‘정보통신/의사소통’4.3%, ‘참정권’4.3%, ‘성’4.3% 등의 순이었다⁹⁾.

4.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 사례의 검토

가. 들어가며

앞서 살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영역별 진정 접수비율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를 다시 세분화 한 결과, (일반) 재화·용역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험·금융, 시설물과 이동·교통수단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과 관련한 판례들은 많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 중 진정 접수 비율이 높은 일반 재화·용역, 보험·금융, 시설물과 이동·교통수단 영역에서의 진정사례 및 하급심 판례 몇 개를 검토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9) 우주형 외2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입법평가. 입법평가 연구 09-16. 한국법제연구원 161-162면

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례¹⁰⁾ 및 검토

(1) 진정사례

[진정사례 1] 시각장애인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에 의한 차별사례- 시각장애인들이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용 및 법인용 점자보안카드가 필요한데, 은행에서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2010. 8. 9. 자 09진1012, 10진정396700 병합 결정).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텔레뱅킹을 통한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은행이 주장하는 개인 또는 법인용 점자보안카드 미발급 사유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진정은행에게 시각 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용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사례 2]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에 의한 차별사례- 뇌병변장애 및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를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드의 발급을 거절당한 사건이 있었다(2010. 10. 20. 자 09진차1023 결정).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 회사가 활동보조인이 진정인을 대리하여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을 불허하였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정으로 인한 것으로, 피진정 회사는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자필 작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였는지 확인하라는 취지일 뿐이고, 활동보조인 등 제3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라도 장애인의 상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구두 녹취, 거동 표시에 대한 녹화 등을 통해 신청인 본인이 신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뇌병변장애인 등 자필 작성이 어려운 사람에 한정하여 제3자 대리신청을 허용할 경우 신용카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초래할만한 사유도 없기 때문에 자필 작성이 불가한 장애인에 대해

10) 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차별시정분야 제4집(2009-20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췌·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서도 직접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해당 시행령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사례 3] 사무실 임대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센터 사무실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건물의 소유관리자가 “여기는 공동사무실이라서 장애인은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건이 있었다(2010. 8. 9. 10진정351700 결정).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 등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및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장애인이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임대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진정인에게 앞으로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구의 구청장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사례 4]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 제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 4층에 위치한 극장에 가기 위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이 설치되어 있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휠체어로 접근 및 이용하기에 불편한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한 사건이 발생하였다(2011. 12. 19. 자 11진정353900 결정).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이라도, 다른 여러 수단을 통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당해 수단의 선택에 따른 침해가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별도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시에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사례 5] 장애를 이유로 한 대출 제한-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금융회사를 방문하였는데, 대출담당자가 정신장애가 있으면 지침상 대출을 해줄 수 없다

고 한 사건이 있었다(2011. 4. 26. 자 10진정0532200 결정).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지능지수, 소통능력, 사회적 연령, 직업영역에서의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 개별 평가를 한 후 종합적으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능력 존재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제한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금융회사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여신 취급시 유의사항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과 감독기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사례 6]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남녀공용 설치로 인한 이용차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문화센터 건물에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구분하여 설치했으나,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설치한 사건이 있었다(2009. 5. 26. 자 07진차962 결정).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는 공동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에 부응해야 하고,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유독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남녀구분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진정인은 장애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책임이 있고, 화장실을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피진정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2) 검토

앞선 사례들은 모두 장애인에 대한 차별임이 인정되어 인용된 사건들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 결과를 통해 피진정인 또는 기관에 차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은 권고 건수가 가장 많은 영역에 해당하는 바, 이는 그만큼 문제제기가 될 부분이 많다는 의

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여 고무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 규정을 주된 근거로 하여 판단하고 있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진정사례의 구체적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기준으로 헌법 제11조 1항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재화의 공급·이용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15조 재화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공통적으로 들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16조 부터 제25조까지의 개별 영역에 따른 규정을 각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에서는 피진정인 은행은 점자보안카드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에서는 피진정인에 대해 문제가 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역시 고려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에서 피진정은행은 현재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용 또는 법인용 점자 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의 경우 다른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 거래한도액이 너무 커서 오티피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안에 취약하다는 등의 이유에 의한 것이고, 별도 보안매체가 확보될 경우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시각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시각장애인이 텔레뱅킹 이용시 불편 해소를 위해 2008. 10.부터 점자보안카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이 이미 각 은행에 전달된 점, ② 피진정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는 이미 점자 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점, 법인의 경우 거래한도액을 조정하는 등으로 보안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 ③보안의 취약성 등을 이유로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텔레뱅킹을 통한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피진정인 은행이 주장하는 개인 또는 법인용 점자보안카드 미발급 사유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피진정인 은행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고, 그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아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위의 사례 3에서는 피진정인이 자신은 국가 공무원이 아니고 피진정인의 회사가 국·공영기업이 아니라 영세 소기업이므로 장애인의 인권을 우선하여 주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공무원이나 국·공영기업 등에만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다. 법원 판결 사례 및 검토

(1) 판례

[판례 1] 공중목욕탕 입장거부 사건- 원고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전맹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고, 피고는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가 위 공중목욕탕에 입욕하기 위해 남성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매표소까지 왔는데, 동성의 여성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원고를 본 피고가 도와줄 사람이 함께 오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입장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대전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소122610판결).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입장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행위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피고가 동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원고의 위 목욕탕 입장을 허용하는 것

은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례 2]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한 사건- 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사건이 있었다(서울중앙지법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 사건인데, 이에 대해 법원은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그 승낙의 거절이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 판단은 결국 구체적·개별적 사안, 즉 보험청약인의 장애 정도와 종신보험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① 보험청약인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장애와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보험청약인의 기대여명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인수를 거절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면서,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급에 해당하고, 생명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 공통계약 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회사의 승낙거절은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위배된 위법한 행위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2) 검토

판례 1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이고, 판례 2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이다. 판례 2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이행청구 여부가 검토되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금지가 명시된 지금 더욱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판례 1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해 보면,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6조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제18조의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규정 및 제46조의 손해배상 규정을

판단기준이 되는 관련 규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피고의 거부행위 역시 장애를 사유로 피고를 불리하게 대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② 다른 사람의 도움은 이동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도움제공을 사인인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지울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업주나 목욕관리인에게 선의의 도움을 무제한적으로 요청할 수는 없는 점, ④ 동반보호자가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추가 인력의 고용을 목욕탕 업주인 피고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점, ⑤ 공익적 성격이 있는 장애인보호에 따른 비용이나 부담을 사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되어 그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의문이 드는 점, ⑥ 원고가 목욕탕 내에서 시설을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고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 ⑦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취지를 근거로 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동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원고의 이 사건 목욕탕 입장을 허용하는 것은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거부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판례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고, 그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는 구조에 의하고 있다. 다만, 아직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판례의 태도를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판례 2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너무 신중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피고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적극적이고 실효적 이행을 필요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5. 나가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제도적으로 법제화하고 더 나아가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벌칙 등 권리구제 수단을 실효성 있게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차별 영역을 세분화 하여 개별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 중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은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영역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 접수도 가장 많이 되고 있고, 권고 건 수 역시 가장 많다. 다만, 아직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 많다.

앞서 사례를 통해 살핀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이 있으면 피진정인에 대해서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의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의 자발적 이행이 필수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다만,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고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시정명령권을 법무부에 부여함으로써 그 이행강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면 그러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법원에 대하여도 적극적 조치를 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직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를 이행 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는 없으나, 단순한 손해배상의 청구만으로는 차별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와 같이 적극적 구제 청구의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재판절차가 길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신속한 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앞선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시정을 위한 적극적 구제 조치 및 임시조치를 인정할지는 미지수이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가해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발생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차별의 가해자를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장애차별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의 중요한 세부영역인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관련하여, 부칙 규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13. 4. 11. 부터 모든 법인에서 웹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웹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2008년부터 해마다 웹 접근성 의무 준수 대상이 확대되어 왔으며 내년부터는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법인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해 왔으나 그동안 웹접근성 대상이 아니어서 접근성이 취약했던 금융, 쇼핑, 포털, 언론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웹접근성을 갖추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은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받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차별행위 발생의 예방을 위해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인 해결 노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평가 및 제언

- 사법·행정서비스 영역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평가 및 제언

- 사법·행정서비스 영역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1.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장애인도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나아가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의 특별한 보호대상이 된다(헌법 제34조 제5항). 장애인의 이러한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제26조). 우리나라가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도 장애인이 사법절차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협약 제13조).

장애인은 그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기 쉽고,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다. 반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사법 및 행정절차에 참여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법원 등 공공시설에 접근하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행정기관의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차별은 뿌리 깊게 남아 있고, 편의제공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편의 제공이나 법적 지원이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맞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시각장애인의 사법 및 행정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조안내인,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 점자 문서, 큰 활자체, 음성안내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화통역사, 시각자료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수화를 알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도 있으므로 문자통역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법률이나 행정용어에 익숙하고 전문화된 수화통역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혼자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운 장애아동과 장애노인을 위해서는 활

동보조인이나 안내원을 지원하거나 그 눈높이에 맞는 도움이 절실하다. 사법·행정절차 및 각종 문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 안내문이나 안내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적장애인을 위해서도 그림카드 등을 활용하여 쉽게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행위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경우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 특성에 대한 무지가 작용하여 장애인은 절차상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특히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의 최후 보루이지만, 사법소극주의로 인하여 장애인은 사법기관을 자신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제정된 지 5주년을 맞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누구보다 앞서서 준수해야 할 기관이 바로 사법부와 행정부임에도, 사법 및 행정절차에서의 성취는 기대보다 높지 못하다. 사법·행정절차는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역에서의 차별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관련 조약과 법률

가. 장애인권리협약

(1) 개괄

UN은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11일 이를 비준하여, 2009년 1월 10일부터는 국내에서도 발효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2) 장애인의 법 앞에 평등 조항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의 '법 앞에 평등'(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Support)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관하여 과거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 후견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최근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제도보다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존중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피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법·행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관한 지원도 당사국의 의무에 포함된다.

제12조 법 앞에 평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그들의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한 모든 조치들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제도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제도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의 상충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의 상황에 비례하고 적합해야 하며,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 적용되어야 하며, 권한을 지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도록 보장한다. 보호제도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의 재산 소유 또는 상속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재정적 사항들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기타 재무신용에 있어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장애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 조항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는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Access to justice)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① 모든 법적 절차에서 ②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③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는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접근권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한 사법행정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장애인 사법 접근은 ‘모든 법적 절차’를 대상으로 한다. 또 장애인이 해당 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뿐 아니라 증인을 포함하여 ‘직·간접적 참가자로 참여하는 일체의 경우’를 포함한다. 사법 접근의 구체적 내용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은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procedural and age appropriate accommodations)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당한 편의’라고 규정한 것과 비교된다.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란 구체적인 사법절차와 서비스, 해당 장애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절차에 적합한 편의’는 장애의 유형과 해당 절차의 성격 등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문서, 큰 활자, 음성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 등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나이가 장애 아동과 장애 노인을 위한 활동 보조인이나 조력인 등이 ‘연령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편의제공의 범위와 내용을 판단할 때 “장애인이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과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사법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한다”(on an equal basis with others)는 점이 중요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에게 사법 접근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조항으로 장애인에게 사법접근권이라는 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첫째,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조항만으로 국민에게 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국민은 반사적 이익을 누릴 뿐이라는 견해와 둘째, 국가에게 의무가 부과된 이상 국민은 이를 권리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뉠 수 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국민은 오로지 반사적 이익만을 가지며 권리가 없다는 견해는 논리모순이라고 생각한다.

(4) 그 밖의 조항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선거권을 보장하고, 공적 활동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제9조(접근성), 제21조(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등이 사법 및 행정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

(1) 개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기관에게 차별시정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8조 제1항). 나아가 국가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제26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에서 사법 및 행정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는 광의의 개념은 아니다.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0.5.11>
-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이 조항에서는 우선 공공기관 등에 대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26조 제1항).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에게 제4조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26조 제1항). 제4조에서 정한 차별행위의 유형 중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제3호)가 빠져 있다. 제26조의 나머지 조항에서 사법·행정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나아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인신 구금·구속 상태에 있을 때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제26조 제7항).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법 및 행정절차와 서비스에서 장애인에 관한 근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3) 그 밖의 조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에게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 이용, 대피에 있어서 차별금지,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 이외에도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장(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등이 사법·행정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다. 그 밖의 법률

(1)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장애인 보호조항으로는 우선 국선변호인 조항을 들 수 있다. 피고인이 농아자이거나(제33조 제1항 제4호),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제5호)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경우’를 말하므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망라하는 개념은 아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은 장애인이 신문을 받을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범조문을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으로 줄임)을 동석하게 하고 있다. 장애인이 피해자로 증언할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신문받을 때 모두 가능하다. 다만 개별적인 요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2)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43조). 이는 사법절차상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의 기회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한 조항이다. 다만 청각,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의 통역에 관한 규정만 있고, 다른 장애에 관한 편의제공 및 보호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을 영위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만들어졌다.

법원 청사 등 시설은 편의증진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제7조 제3호, 시행령 제3조, 별표 1),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는 편의시설 뿐 아니라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4)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은 각종 행정절차의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한 법이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거나 행정지도, 행정예고 등을 할 때 어떤 절차와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 상세히 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의 어디에도 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없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심판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에서도 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국민이 국가에 청원하는 권리와 절차를 규정한 「청원법」이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없다.

앞서 본 소송법에서처럼 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장애인의 사법 및 행정서비스 접근권

가. 사법 및 행정서비스 접근권의 개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장애인이 사법 및 행정절차에서 직접, 간접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 제공은 직접 차별, 간접 차별과 함께 차별금지 영역 중 하나이지만, 별도의 항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접근권이라는 권리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¹⁾

편의증진법 제4조는 ‘접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시설과 설비,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의미한다. ‘사법 및 행정서비스 접근권’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사법부를 통하여 제공되는 사법서비스나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와 관련되어 행하는 처분, 행정지도 등 각종 절차에서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접근권의 구체적 내용

장애인에게도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

1) 차성안, 장애인의 사법(司法) 서비스 접근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법원을 중심으로

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제26조 제4항).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증인으로 참여하는데, 법정의 구조상 증인석에 들어갈 수 없다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그런데 현실에서는 증인석에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법정은 거의 없다). 어느 당사자가 낸 증거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때 시각장애인인 상대방에게 문서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가 읽을 수 없는 자료를 주고 방어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동등하게 대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동등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다.

'정당한 편의'가 무엇인지는 매우 논쟁적이다.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질적 동등성' 기준과 맞물려 있다. 다만 실질적 동등성이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편의가 ①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② 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 ③ 절차의 중대한 변질을 가져오는 경우, ④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편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경우에 당사자가 요구한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할 것이다.

당사자가 요청한 편의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대체적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안을 가정해보자. 편의증진법 시행 전에 건설된 낡은 법원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걷지 못하고 휠체어가 아니면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을 3층에 있는 법정으로 소환하였다. 물론 가능하다면 오래된 건물이라도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한 경우라면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1층에 법정을 설치하여야 한다(직원을 통해서라도 장애인을 업고 3층 법정까지 이동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장애인에게 수모를 줄 수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을 남자 직원이 업는 것은 심각한 수치심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이동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다. 사법기관의 적극적 조치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10년 5월 11일자로 개정되면서 제26조 6항이 개정되었다. 종전에는 장애인이 형사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개정 규정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장애 유무를 확인하여 적극적인 편의제공을 모색하라는 입법취지인 것이다.

개정 후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개정 전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법 및 행정 영역에서의 차별 현실

가. 사법 영역

(1) 개괄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사법절차는 어렵고, 복잡하여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힘들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권리침해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았을 때,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기 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아래 통계에서 보듯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 차별을 구제받기 위해 제기된 진정사건은 상당히 많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만도 거의 5천 건에 이른다.²⁾ 그런데 장애인들이 법원에 권리구제 청구를 한 건수는 매우 적다(장애인차별금지법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판결례는 거의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구제기구로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장관과 법원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진정을 받아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제38조, 제41조).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서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피해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제43조). 실제로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는 이제까지 단 몇 건에 불과하다. 반면 법원은 차별행위에 대하여 임시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제48조). 더욱이 이행기간을 정하고,

2) 국가인권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9배가 늘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를 보면, 지체장애인이 1,143건, 시각장애인이 729건, 내부기관 등 장애인이 532건, 지적·발달장애인이 489건, 청각장애인이 433건, 정신장애인이 174건 등이다. 차별의 유형도 매우 다양해서, 고용차별, 교육차별, 재화 및 용역 제공 차별, 행정서비스 차별 등 모든 영역에서 진정이 제기되고 있다. 조형석,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 토론회 자료집”(2012. 4. 19), 국가인권위원회

그 때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만큼 금전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법원으로 구제청구를 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장애인들이 권리구제 수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선택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³⁾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쉽다. 인권위원 중에는 장애인 단체 출신 또는 장애인 당사자가 꼭 포함되어 있다.⁴⁾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전담 부서도 있고(장애차별조사 1, 2과 등),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깊은 편이다. 장애인 단체의 단골 시위장소가 될 정도로 시설 자체의 물리적 접근도 어렵지 않다. 장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진정을 제기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만큼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직원이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절차를 지원한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시정권고를 하는 건수가 상당하다.⁵⁾ 실제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원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고, 구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비록 시정권고 권한밖에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를 찾게 된다고 한다.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 보루로서, 장애인의 헌법상·법률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하는 판결이나 결정도 많아져야 한다.

(2) 실태조사 결과

여러 실태조사⁶⁾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장애인은 사법절차에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8년의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 피의자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장애인 피의자 19명을 심층면접하고,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을 인터뷰한 내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⁷⁾ 다만 이 조사결과는 광의의 사법절차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수

3)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 및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한 특별기구인 점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법원도 인권보장과 차별시정을 위한 구제기구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4) 현재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상임대표 출신이며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한 장명숙이 상임위원으로 있고, 역대 위원 중에도 최경숙, 장향숙, 김양원 등이 장애인 단체 출신이거나 장애인 당사자였다.

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1년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시정권고를 한 회수는 164건에 이른다(조형석, 앞의 글, 59면). 장애인의 진정사건 중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한 시정권고도 17건이라고 한다.

6) 신현중 외,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0. 11. 245-249쪽.

7) 이영미·탁종연,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 피의자 차별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

사절차 및 수사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모든 형사절차상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각 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이 충분한 의사전달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법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매우 부족하였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이나 어려움을 이해받지 못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보조인, 수화통역사, 의료품 등이 제공되지 않았고 보장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장애인 피의자들은 법률적 정보를 제공해줄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 국선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선변호인들의 불성실한 변호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들은 학력수준이 낮고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에 있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피의자에게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줄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형사사법기관의 종사자 면접결과 기관의 무관심과 이로 인한 행정적, 법적 지원의 부족, 인권교육의 미비로 인한 차별적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모든 형사사법기관에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나 물적 여건이 완비되거나 설치되지 않아서 장애인 피의자들의 신체적·정신적 복지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건강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결과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 일부를 모니터링하였는데(4곳⁸⁾), 모두 수사와 행정심판 및 조사에서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문을 고지하고 있으며, 장애특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었다.⁹⁾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법·행정서비스 이용시 편리한 자료제공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사법·행정서비스 이용시 수화통역 제공에 대해서는 각각 25.0%와 75.0%로 평가결과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복지학』 제9권, 2008, 77-111쪽.

8) 모니터링을 한 4곳의 기관이 어디인지는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9) 이성기 외,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보건복지부, 2010. 6. 211쪽.

(4) 언론보도 사례

법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는 여럿 있었다.¹⁰⁾ 대체로 지적 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한편, 2005년 한 지방시민단체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원과 검찰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¹¹⁾

- 출입구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장애인들이 차가 출입하는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
-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재질이 미끄러워 위험하다.
-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문이 여닫이로 되어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비상벨도 없고,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았으며, 소변기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았다.
- 장애인전용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 장애인전용주차장은 휠체어 장애인이 차에서 내릴 공간이 없을 정도로 좁다.

(5) 판례

(가) 시각장애인에게 국선번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사건

2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은 점자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국선번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판결).

10)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곳곳이 불편 투성이”(에이블뉴스 2008. 2. 27.자 기사), “청주법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하라”(연합뉴스 2009. 1. 15.자 기사), “법조타운 장애인 편의시설에 무관심”(법률신문 2008. 4. 23.자 기사), “5cm턱도 높은 벽... 불편하고 힘겨운 하루”(강원도민일보 2010. 4. 20.자) 등

11) “힘센 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외면... 충북 설치여부 조사”(국민일보 2006. 4. 19.자 기사). 이 기사에 따르면 충북지역 공공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에 관한 조사 내용을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충북지방경찰청이 75점, 충북도청이 66점, 청주시청이 58점을 받은 반면, 청주지방법원은 41점, 청주지방검찰청은 38점으로 50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와 점자자료로 작성된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등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현행 형사소송실무 등에 비추어, 법원으로서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點字)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

(나) 청각장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사건

청각장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629판결). 대법원은 “구두변론에 의한 공판심리절차에서 자력에 의한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신문내용이나 증거조사의 결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판심리에 임하게 됨으로써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 신청을 거부한 사건

하급심 판결 중에는 청각장애인인 형사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문자 스크린 동시 통역구조신청, 신뢰관계인 동석신청,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영상녹화신청을 하였지만, 담당재판부가 이를 거부한 것을 다룬 사건이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편의제공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담당판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선행구제조치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및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면책(judicial immunity) 이론에 근거하여 청각장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08가단342442 판결).

원고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특성,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능력, 형사소송절차의 특성, 공판절차의 진행상황, 법정의 인적, 물적 설비 등 제반 사정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의 입법목적 및 해당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공판정에서의 문자, 스크린 동시

통역구조신청, 신뢰관계인 동석신청,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영상녹화신청에 대한 거부가 위 법
 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속단할 수 없으나, 청각장애를 이유로 편의제공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해당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그 장애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
 움이 없었다면 위 결론이 타당할 수도 있겠으나,¹²⁾ 절차 참여에 실질적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신
 뢰관계인의 동석을 거부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 등은 본질적 권리침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아울러 편의제공 신청을 거부했을 때 이를 다투는 이의절차가 없었던 것도 문제를 확대시켰
 을 것이라 추측된다.

나. 행정 영역

(1) 진정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법·행정·참정권 영역과 관련하여 제기된 진정건수는 지난 5년간 모두 309
 건이다. 주로 주민센터, 우체국, 경찰서, 지자체 소속 문화·체육센터, 투표소 등에서의 장애인 편의
 미제공과 관련된 사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사례1 : 장애인등록증 점자 미표기에 의한 차별

1급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장애인등록증에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인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카드와도 구별이 어렵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장애
 인등록증을 이용하여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기를 하여 관
 리를 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존재하는 등 결과적으로 중증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여지
 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장애인등록증에 점자
 표기를 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권고하였다.

12)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판부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
 다고 보아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 사례2 :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집회 참가 후 체포되어 세 차례 가랑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수사 및 심문에 있어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2) 모니터링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은 공공기관 중에는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니터링 결과보고에 따르면 여전히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기관이 많았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출입구의 안내시설, 업무시설이 2층 이상 또는 지하에 있을 경우 지체장애인을 위한 층간 이동편의시설 및 민원접수대의 경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특히, 민원자동발매기의 경우 지하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CD/ATM기기 등 민간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화 기기에서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민원자동발매기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나아가 필요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 바코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의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비율과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 보청기 등을 제공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지 않아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장애인이 스스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5. 과제

가. 장애인 또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조직 체계의 구축

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법기관의 예를 보면 상당수 주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을 위한 위원회나 미국장애인법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조지아주(Georgia) 법원행정처가 2004년에 ‘조지아 법원 접근성 및 공정성 위원회’(Georgia Commission on Access and Fairness in the Courts)를 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장애인 뿐 아니라 여성, 소수인종 등에 대한 공평한 사법접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 계층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법원의 절차 개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플로리다주(Florida)는 ‘공정성 및 다양성 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airness and Diversity)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법원 접근성 소위원회(Court Accessibility Subcommittee)를 두어 장애인 접근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뉴저지주의 미국장애인법 자문위원회(New Jersey Judiciary Advisory Committee on ADA Complaints)는 주법원의 판사, 법원 행정처 직원, 변호사 그 밖의 장애인 단체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수립해나기는데 자문을 얻고, 해당 프로그램의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지원센터’를 법원이나 공공기관에 만들 필요가 있다.¹³⁾ 아니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선적으로는 지방법원 또는 시도 단위에서 시작하여, 지원이나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게 가능한 편의제공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제공 신청을 접수하며, 관련 정보와 자원을 연결하여 장애인 지원업무를 지원, 총괄하는 실무단위가 필요하다. 특히 각 대학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만들어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이동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며, 장애에 대한 학교 및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지원을 코디네이트(coordinate)하는 전담직원이 공공기관마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전담인력은 첫째,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장애인들의 지원 요청의 창구가 되어 이를 처리하며, 셋째, 공무원들과 장애인 사이에 장애 관련 정보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넷째, 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직원들을 교육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담직원은 사법 및 행정절차와 해당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질의나 지원 요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장애인법(ADA)에 따라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ADA 이행을 위해 최소 1명 이상의 ‘ADA coordinator’를 두어야 하므로, 거의 대부분의 단위 법원에 ‘ADA

13) 초기에는 장애인·노약자 지원센터로 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노약자들도 장애인 지원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기 때문이다.

coordinator'가 있다. 예를 들어 뉴저지주(New Jersey)의 경우 주법원 법원행정처에 장애인법 관련 정책과 절차를 개발, 개선하고 ADA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임명하고 있다. 조지아주(Georgia)의 '사법 접근 및 공정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북(A Meaningful Opportunity to Participate)에서도 장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선발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장애인 지원을 위한 프로세스 마련

사법·행정절차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해당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해당 절차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지원을 해당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대한 평가 및 조사가 이루어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 뒤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 결정은 되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려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행정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 반영하고,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관련 절차를 ① 사전 안내, ② 장애 여부 확인, ③ 당사자의 편의제공 신청, ④ 편의제공에 관한 조사 및 검토, ⑤ 편의제공 여부 결정, ⑥ 편의제공, ⑦ 이의 신청의 순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1) 법률의 개정

장애인의 사법절차 참여가 차별없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소송법과 법원조직법, 행정절차법 등 사법·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권리협약 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만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을 비롯한 소송법규나 법원조직법과 같은 조직법규, 행정절차법, 청원법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들이 증인, 배심원, 판사, 혹은 변호사, 심판관 등이 되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법령, 규제, 정책 혹은 관행을 파악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이 정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애인들을 직접 참여시켜 사법·행정서비스 접근성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접근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파악하며,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2) 대법원규칙 또는 행정규칙 제정

소송법이나 행정절차법에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법원과 공공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한 편의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 제공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하위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법원규칙이나 행정규칙을 통해서 장애인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가이드라인, 매뉴얼 및 실무제요의 제정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및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가이드라인(직무지침)과 매뉴얼이 필요하다. 법원 및 공공기관의 구성원이 직무를 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차별법제,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복지법제, 인신보호 등 법제와 그에 관한 소송 및 행정절차의 특징 등을 정리하는 실무제요를 만들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라. 재판 및 행정절차에서의 적극주의 및 장애인 감수성

민사재판의 경우, 증거뿐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사실인정을 하며, 형사재판에서도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심리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분위기가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법관이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장애인에게 불리한 사실인정을 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법관이 사실인정을 할 때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장애인의 표현행위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절실하다. 행정절차에서도 마찬가지다. 처분 등을 하는 담당자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차별을 하기 쉽다.

행정 및 사법기관은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실의 일상적, 주류적 흐름을 보면 소수자 보호에 미진하며 법원 및 공공기관이 사회적 강자의 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재판이나 절차에서 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관점, 감수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장애인과 관련해서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특히 인권 감수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마무리

2011년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장애인 인권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와 공론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도가니* 사건의 실제 배경이 되었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재판 과정도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주된 논란이었지만, 영화 *도가니*에서 나오는 청각장애인인 피해자가 증언을 하는 장면, 청각장애인 방청객들이 수화통역을 요구하는 장면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청각장애인이 사법절차와 관계할 때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장애인 피해자는 섬세한 배려를 받고 있는지, 사법절차가 이중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반성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이나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구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여야 할 공공기관도 현실에서는 충분한 편의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예산과 조직은 부족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을 비롯해서 한국 사회는 장애인 인권분야에서 조금씩,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왔다. 대부분의 지하철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저상버스가 도입되었다. 자막방송이 일반화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서비스에서 장애인을 배려하게 되었다. 공공기관에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비롯해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고, 시각장애인이 판사로 임용되기도 하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는 여전히 장애인에게 멀고, 복잡하고 두려운 존재로 남아 있다. 특히 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 보루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법원을 찾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로 달려간다. 법원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장애인이 관련된 재판이나 처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일시 및 장소 : 2013. 4. 11.(목) 14:00, 광주광역시의회 3층 소회의실
- 사회 : 황정모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 좌장 : 김황용 (광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장)

제1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평가 및 전망	
구 분	내 용	시 간
개회 및 공동축사	❖ 개회선언	14:00~14:05
	❖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05~14:10
	❖ 이병록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14:10~14:15
	❖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14:15~14:20
발제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기획팀장)	14:20~14:40
	[발제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평가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14:40~15:00
	휴 식	15:00~15:20
제2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발제 및 토론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제언 차정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광주지사 취업지원부장)	15:20~15:30
	[발제2]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교육영역 평가 및 제언 김동복 (광주세광학교 교사)	15:30~15:40
	[발제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차별개선방안 권순국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과장)	15:30~15:50
	[발제4] 사법·행정서비스 및 참정권 영역 김상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15:50~16:00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00~16:40
	폐 회	16:40~17:00

제 1 부

광 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평가 및 전망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기획팀장)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평가

-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기획팀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기획팀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는 6개 지역에서 공통으로 발제하는 것이므로 자료집 6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평가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평가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다섯 돌을 맞았다. 그동안 장애인들과 관련단체, 활동가 등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차별인식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차별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입학·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시, 직장생활, 운전면허제도상(취득시), 보험제도상(계약시), 의료기관 이용시, 정보통신 이용시(방송포함), 지역사회생활 중에서 장애인이 현재의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는 ‘보험제도 계약시’가 5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49.2%), ‘초등학교 입학·전학시’가 (34.2%), ‘취업시 차별’(3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사회적 차별 경험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입학·전학	유치원 (보육시설)	24.6	28.3	13.5	28.6	13.6	40.4	40.3	49.5	0.0	0.0	0.0	0.0	-	0.0	30.5	
	초등학교	33.4	36.7	21.8	34.0	32.5	40.5	45.2	33.5	0.0	0.0	73.6	0.0	100.0	-	36.0	34.2
	중학교	27.0	33.0	19.1	28.7	53.9	35.9	47.8	46.8	40.3	0.0	0.0	-	-	-	30.6	29.8
	고등학교	23.7	32.9	16.0	33.0	62.6	39.7	27.5	57.6	0.0	0.0	0.0	-	-	-	38.2	29.3
학교생활	대학교	14.4	7.5	13.9	20.9	58.5	30.7	0.0	57.0	0.0	0.0	-	0.0	0.0	-	0.0	16.3
	교사로부터	9.4	21.8	16.7	23.7	30.8	40.2	42.1	42.4	0.0	0.0	0.0	0.0	7.7	-	6.0	21.4
	또래학생으로부터	45.8	41.1	27.4	39.7	82.5	69.0	66.5	76.1	38.7	1.6	73.6	0.0	62.9	-	44.0	49.2
결혼·취업	학부모로부터	7.2	25.4	5.7	10.9	18.4	31.1	28.5	23.4	0.0	0.0	85.5	0.0	0.0	-	15.0	15.1
	결혼	23.5	18.0	19.1	28.4	40.9	69.4	100.0	50.9	21.4	0.0	18.6	0.0	100.0	0.0	41.9	26.5
취업	31.6	42.0	27.7	30.5	75.0	62.8	5.5	59.5	24.2	34.1	28.6	27.1	95.8	6.7	43.8	34.0	

직	소득	18.7	26.4	14.7	20.7	34.7	54.6	10.9	35.8	19.2	19.0	11.7	5.6	94.2	5.3	31.2	20.7
장	동료와의	12.5	22.4	12.0	26.3	41.5	43.4	10.9	44.8	6.9	7.9	6.4	0.0	94.2	6.2	29.7	16.9
생	관계																
활	승진	11.1	17.6	10.9	18.6	36.8	36.8	10.9	25.2	19.8	13.9	0.0	16.8	94.2	7.1	33.3	14.2
	운전면허취득시	10.4	12.8	31.4	11.7	11.0	76.0	-	31.1	24.5	36.7	0.0	0.0	0.0	0.0	0.0	14.3
	보험제도계약시	52.7	64.1	40.8	39.8	65.5	78.5	74.1	60.3	82.4	55.9	40.6	86.0	100.0	38.5	71.2	53.7
	의료기관이용시	2.7	4.6	3.0	5.0	6.7	7.2	19.4	5.2	4.6	4.5	3.5	0.0	0.0	2.4	1.6	3.7
	정보통신이용시	0.3	1.2	6.6	7.3	7.3	2.0	11.3	1.1	1.5	0.0	0.0	0.0	0.0	0.3	0.6	2.0
	지역사회생활	4.8	11.0	8.1	6.9	15.0	22.6	43.1	10.0	7.1	3.5	13.9	0.0	24.6	7.6	13.1	7.8

1. 장애인차별 진정 및 권고현황과 직권조사의 효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5년 동안의 차별진정 건수나 시정권고 등을 살펴보면 상당한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장 큰 효과는 장애 차별 진정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년을 보면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사건은 4,269건 중 장애차별은 653건으로 20.4%에 지나지 않았다. 그 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첫 해, 2008년 전체 진정건수 1,111건 중 장애차별사건이 585건(52.7%)으로 절반 이상이 장애차별로 증가했으며 이 수치는 그 간 7년 동안의 진정건수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그런가 하면 2011년에는 1,804건 중 886건으로 49.1%에 해당하는 건수가 접수 되었고 2012년도에는 2,546건 중 1,339건으로 52.6%의 건수가 접수되었다. 이렇듯 장애차별건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평균 53.2%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진정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당사자들이 차별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수그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인권위원회로 향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여전히 장애인 차별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표 2〉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 2012.12.)

(단위: 건, %)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총계	2001.11.~ 2012.12.	진정건수	14,095	8,212	5,883
		비율(%)	100.0	58.3	41.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11.25.~ 2008.04.10.	진정건수	4,269	3,616	653
		비율(%)	100.0	79.6	20.4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04.11.~ 2012.12.	진정건수	9,826	4,596	5,230
		비율(%)	100.0	46.8	53.2
	2008.04.11~ 2008.12.	진정건수	1,111	526	585
		비율(%)	100.0	47.3	52.7
	2009.01.~ 2009.12.	진정건수	1,685	960	725
		비율(%)	100.0	57.0	43.0
	2010.01.~ 2010.12.	진정건수	2,680	985	1,695
		비율(%)	100.0	36.8	63.2
	2011.01.~ 2011.12.	진정건수	1,804	918	886
		비율(%)	100.0	50.9	49.1
	2012.01.~ 2012.12.	진정건수	2,546	1,207	1,339
		비율(%)	100.0	47.4	52.6

2001.11.~2012.12.의 기간 동안 차별사건은 총 14,095건이며, 이중 장애 차별로 진정된 사건접수가 총 5,883건 이었으며, 그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은 5,230건으로 전체 장애인 차별사건의 88.9%에 해당된다. 그 가운데 차별로 인정되어 권고한 사건은 총 971건이었다. 이 가운데 340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행위로 인정되어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이 또한 시정권고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진정건수가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를 통해 권고결정은 너무나 늦은 편이다. 인권의 접근성과 아울러 진정처리의 신속성이 요구된다.

〈표 3〉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2.12.)

(단위: 건)

연 도 (년 구 분)	합계	2001 (11~ 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4.1~ 4.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2008 (4.11~ 12월)	2009	2010	2011	2012	
장애 진정 건수	연도별	5,883	13	20	18	54	121	116	256	55	585	725	1,695	886	1,339
	월평균	44.2	13	1.7	1.5	4.5	10.1	9.7	21.3	13.8	73.1	60.4	141.3	73.8	111.6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접수된 사건은 5,230건이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총 4,626건(88.5%)을 처리하였다. 4,626건의 처리 사건 중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3,829건(82.8%)이었으며, 나머지 797건(17.2%)은 조사대상이 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에 따라 각하된 경우(758건, 16.4%), 조사중지된 경우(13건, 0.3%), 타 기관으로 사건이 이송된 경우(26건, 0.6%)이다. 3,829건의 '조사대상'사건 중, 권고, 조정성립, 합의종결, 조사 중 해결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된 사건은 총 3,070건(80.2%)이었고, 그 중 291건(9.5%)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해 인용(권고)되었다. 그 외, 피진정인의 자발적 수용 등을 통해 조사 중 해결된 사건이 2,612건(85.1%), 진정인과 피진정인간 합의종결된 사건이 166건(5.4%),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된 사건이 1건(0.03%)이다.

〈표 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2.12.31)

(단위: 건)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5,271	22	18	39	116	90	255	455	716	1,101	952	1,507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2006년과 2011년 인화학교성폭력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와 장애인생활시설 ****에 대한 직권조사는 우리지역의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2012년에 진행한 장애관련 직권조사는 총 7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등으로 문제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중요한 인권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직권조사 활동이 요구된다.

- ① 중증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 ② 국립특수학교 ○○학교에 대한 직권조사
- ③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 ④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 ⑤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 ⑥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 ⑦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조사중)

2.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장애인 인권교육 활성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패는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차별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 각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여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및 장애인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장애차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공고히 할 수 있다.

특별히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2013.4.11)에 확대 적용되는 사업장이나 교육기관,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며, 모니터링 활동도 확대되는 추이를 반영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시민, 공무원,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개발된 지표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친근한 신문, TV 및 라디오 공익광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언론, 기업이 뭉쳐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극대화된 인식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범위에 포함된 상시 30인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교육기관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단계적 적용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기관, 각종 기관 및 시설, 기업 등 각 사회분야에서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 행정서비스 등 전 영역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3. 지역의 장애인차별금지 입법활동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조례제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통하여 분야별 이행여부 점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광역시에는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2011년 3월 2일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은 지자체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예산을 확충하지 않는 이상 요원한 꿈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광주광역시 내의 모든 자치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해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시도에서 8곳(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 기초단체에서 35곳 등 총 43곳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2010년 5월 6일부터 2013년 3월 15일 사이에 제정되었다. 또한 부산시의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인권보장 조례를 2013.3.20 발의놓은 상태이고 이 조례는 2013.7.1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시행규칙과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때이다.

〈표 1〉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조례현황

(2013.03.28 현재)

No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12.20
2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0.24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3.02
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08.05
5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4.06
6	강원도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9.23
7	전라남도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0.05.13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06.29
9	서울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9.23
10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2012.02.15
11	서울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2.04.09
12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7.06
13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2.07.25
14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12.27
15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3.03.12
16	부산 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2.20
17	인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2.28
18	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5.18
19	광주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4.02
20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6.10
21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7.08
22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2011.02.10
23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0.05.06
24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10.14

No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25	대전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2.06.15
26	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2.21
27	울산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4.12
28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9.28
29	경기 오산시	오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2.28
30	경기 하남시	하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0.18
31	경기 가평군	가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2.29
32	경기 안산시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1.11
33	경기 평택시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3.15
34	충북 진천군	진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1.09
35	충북 아산시	아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7.16
36	충북 제천시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12.28
37	전북 김제시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2.26
38	전북 익산시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5.09
39	전남 목포시	목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0.12.27
40	전남 여수시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3.09
41	전남 순천시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7.29
42	전남 나주시	나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4.20
43	경남 거제시	거제시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12.07.20

또한 유사 시 발생하는 장애인차별 피해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대한 과제다.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 장애여성,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 및 가족 내에서의 차별을 당한 장애인 등의 경우 긴급하게 지원되어 충분한 시간과 마음의 휴식을 얻고 자신의 상황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주단기보호센터, 장기보호시설(쉼터)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인적 지원까지도 필요하다.

4. 장애관련 법령 정비 및 경과조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개인에 대한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인의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률이기에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령이나 정책 등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오랫동안 지적해온 상법 732조의 폐기, 보험과 관련된 차별조항, 장애인 운전면허의 제한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없이 실효성을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지경이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차별과 관련하여 진정할 수 있도록하여 간접차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편의증진법 인용하도록 함에 따른 편의증진법 개정은 정당한 편의의 범위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권리적 시각에서 해석하여 받아들인 것이다. 정당한 편의에는 편의시설은 물론 설비, 도구, 서비스와 조치까지 포함이 된다.

그런데 별표 1(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 제5조 관련), 별표 2(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 범위 - 제8조 관련)는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2013.4.11)까지 단계적으로 완결하게 되어있고, 별표 4(문화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적용시기 - 제16조 관련)과 별표 5(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설치 적용시기 - 제17조 관련)는 201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적용시기를 규정하여서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아직 요원하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공직선거법’상에서는 구체적인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진선미의원(현, 민주당의원)이 ‘장애인 참정권’확보를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이 개정안에는 선거공보전자문서나 후보자 정고공개자료 전자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때 큰 글씨 인쇄 형식과 음성청취 방식을 택하도록 했으며, 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고나 대담 및 토론회 방송 시 자막과 수화를 반드시 방영토록하며, 수화 화면도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제안하고 있다.

5. 장애차별 시정기구와 지역인권사무소의 인력증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축소와 인력감소는 무엇보다 장애인차별 시정기구의 역할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지금도 많은 장애인들이 진정 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보지 못하는 사정이다.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아 보겠다고 어렵게 결심하고 진정을 하였어도 해결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경과한다면 심적 피해만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차별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해결되기 어렵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여도 오랜 기간이 거쳐야만 인식개선과 더불어 법 준수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의 문제로 몇 년째 내부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행시킬 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겠다.

아울러 지역인권사무소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등에게도 더욱 필요로 한다. 현재의 지역인권사무소의 인력을 증원하고 지역사무소의 확충을 통해 인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사무소의 독립적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6. 민간 장애인차별상담전화(1577-1330) 활성화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1577-1330) 전국네트워크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주관이 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2009년 7월 15일 개통되었고, 전국적으로 60여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3개 기관(광주장애인총연합회,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인부모연대)이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차별에 적극 대응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권리 옹호를 위해 보탬이 되도록 법률가, 학자, 인권활동가 등 40여명은 장애인차별시정법률지원단의 이름으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활동에 함께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장애인들이 그 존재를 알기만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리절차도 훨씬 유연하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의 사례들은 법률의 기준이나 국가기관의 판단과 다르게 경험되고 인식되는 장애차

별의 좋은 예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장애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삶으로부터 끌어올린 현장성은 제도과 형식에서 오는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다.

참고문헌

- 허창영,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에 대한 평가와 제언”, 『인권법평론 제8호』,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2012년
-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2012년
-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일 결과 보고서』, 2012년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1년 장애인 차별 상담사례 분석 및 대응』, 2012년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 국가인권위원회, 『11-12 인권상담사례집』, 2012.12.31

제 2 부

광 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제언

- 차정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광주지사 취업지원부장)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교육영역 평가 및 제언

- 김동복 (광주세광학교 교사)

[발제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차별개선방안

- 권순국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과장)

[발제 4] 사법·행정서비스 및 참정권 영역

- 김상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제언
(고용분야를 중심으로)

차정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광주지사 취업지원부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제언 (고용분야를 중심으로)*

차정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광주지사 취업지원부장)

1. 들어가기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은 주로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며 차별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조하는 주안점만 조금씩 다를 뿐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의 주원인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설명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나운환 외, 2003a; 유동철, 2005; 이소영, 2009; 장애우권의 문제연구소, 2003; 조용만, 2003).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생산성이 같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장애인들의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는 왜곡된 선호(도) 때문에 장애인을 배제하고 비장애인을 채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차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찍부터 여러 다양한 정책·제도를 통하여 노동시장에 직접·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창출과 유지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정책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수행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시키는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있다.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을 받는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강제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사회적 통합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을 때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 내용은 남용현 외(2010). **장애인 고용차별 체크리스트 개발**의 내용의 전문 및 일부를 인용하였음.

2. 고용에서 차별에 대한 정의

차별은 평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평등에 대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평등이 요구하는 비는 곧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차별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생산성과 관련 없는 노동자의 특성에 대해 노동시장에서 가치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Arrow, 1973). 생산성과 관련 없는 노동자의 개인적 특성에 노동시장에서 가치부여를 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다.

차별의 원인에 사업주가 노동시장에서 구인을 하는 관점인 주로 노동수요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정 그룹에 대해 차별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차별로 나타낼 수 있다(나운환 외, 2002). 첫째, 사용자나 근로자 혹은 고객들이 특정한 인종이나 장애인근로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하는 개인적 선호(personal preference) 혹은 편견(prejudice)이론이다. 둘째, 불완전한 정보로 사용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개인적 특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통계적 차별이론이다. 셋째, 1차 노동시장의 독과점 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소수민족, 장애인 근로자, 여성근로자들을 제외시키는 이차 노동시장이론이다.

가. 선호차별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을 설명하는 Becker(1971)의 선호이론은 고용주나 동료근로자, 고객들이 특정인구 집단에 대해 선호 및 선입견을 가짐으로써 차별이 발생한다고 본다. 먼저 고용주에 의한 차별은 고용주의 개인적 편견으로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것을 의미하고, 고객에 의한 차별은 고객이 특정기업의 제화와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기피하는데서 발생한다. 동료근로자에 의한 차별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의식이 부정적일 경우에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를 꺼려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나. 통계적 차별

통계적 차별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 대한 불완전 정보에 직면해 있을 때 발생한다. 즉 고용주는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노력에 많은 비용이 필

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이 아닌 소속 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고용 및 임금 등의 처우를 하게 된다. 고용주의 판단근거로서의 피고용인의 집단적 특성변수로는 성(性), 인종, 학력, 장애 등이 있다.

통계적 차별은 소수 집단 내의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가 증가하게 되면 통계적 차별의 근거를 줄여주기 때문에 차별은 점차 소멸되어 간다고 하는데 이는 장애인 집단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정보의 증가는 장애인의 직접적인 고용 경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 본 고용주일수록 사용자의 학습효과(employer learning effect)로 인해 장애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본다.

다. 구조적 차별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의 거래는 노동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자유로운 이동과 임금경쟁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의 이동과 임금경쟁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시장에 동일한 수많은 직무와 직장이 있고 수많은 근로자가 있어서 서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계약 및 재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거래자들이 수요와 공급 및 임금 등에 있어서 완전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계약·재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노동시장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 직무·직장과 근로자의 이질성, 또는 불완전한 정보 상황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임금경쟁은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처럼 두개의 시장 간에 유동성의 단절이 발생하여 노동시장이 질적으로 각기 다른 두 개의 시장으로 구분되는 이중노동시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비주류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2차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고 임금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적 차별에 직면하게 된다.

3. 고용차별의 유형과 실태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차별이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장애인 노동력을 생산성이 아닌 다른 특성(장애)을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이 내재되어 있다(유동철, 2000). 먼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고용수준이나 임금과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결과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소수 집단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만으로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인식상의 태도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둘째, 차별은 체계적이고 항시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우연적인 현상이나 일시적인 사건은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고용 및 임금수준의 차이가 노동시장 외부의 생산성에 기인한 경우 이 부분을 통제된 상태에서 성별이나 장애에 의해 야기된 차이를 차별로 간주해야 한다.

가. 차별의도에 따른 고용차별

의도적 고용차별은 고용주가 장애를 이유로 고용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결과적 고용차별은 집단으로서 특정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차별적 결과를 가져오는 고용기반 내지 제도가 고용주의 차별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 차별적 고용결과를 초래한다면 결과적으로 고용차별이라고 해석한다. 즉 의도적 고용차별의 경우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사용자의 일회적 차별행위를 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결과적 고용차별은 개인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집단으로서 근로자집단에 대한 고용기준 혹은 고용제도 등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특정 근로자 집단에 대해서만 불평등하게 작용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차별시기에 따른 고용차별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현상은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동시장진입 이전 단계에서의 차별과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로 나눌 수 있다.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차별**이란 노동시장에 들어오기 전 노동력 생산과정에서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 훈련 등 사회구조적 문제, 환경적 상황에서의 차별과 사회경제적 기회의 제한, 노동시장 공급구조의 차별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은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겪게 되는 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용단계를 비롯하여 고용 이후의 인사, 직무배치, 임금, 복지혜택, 능력개발, 퇴직 및 해고 등에 이르는 차별을 모두 포함한다.

1)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고용차별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고용차별은 고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국민이나 고용주들의 태도와 인식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차별,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 차별, 교육차별을 들 수 있다(Blanck, 2000, 나운환 외, 2002 재인용).

- 사회구조적 차별 : 장애인의 고용차별과 관련하여 장애인 자신의 능력의 제한보다는 장애에 대한 사회의 태도나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하곤 한다. 고용주도 장애인들이 가진 능력에 상관

없이 고용기회의 부여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 물리적 환경 차별 : 건축물 및 물리적 장벽 뿐만 아니라 정보접근권까지 포함한다.
- 교육차별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 기술 등은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을 통해 주로 획득하는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가능성이나 취약하고 제한적일 경우 발생한다.

2)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차별

가) 인사차별

인사 혹은 인력관리란 노동시장에서 고용주가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며, 운용하는 제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인적자원계획, 모집, 선발 및 채용, 배치, 능력개발, 보상과 복지혜택, 안전성과 건강, 노·사 관계, 퇴직, 해고 등 고용 전반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Mondy et al., 1983, 김성재, 2007 재인용).

- (모집)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지체장애 2급 및 뇌병변장애 2급을 가진 응시생들이 양손이 불편하여 답안지 작성에 시간이 걸리므로, 시간 연장, 확대시험지 제공, 노트북 사용 등을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함(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 사용 여부 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응시자가 불리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공무원시험 보안을 권고함)
- (시험 및 평가)손목에 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타이핑테스트를 위해 특수키보드를 요구하였으나 테스트 당일 특수키보드를 준비하지 않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었고 결국 고용되지 못함. 이 경우 고용주가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채용을 결정하였으므로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로 간주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이 요구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채용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차별로 간주됨(영국 DRC, 장애인차별금지법 실무지침)
- (업무수행 및 의사소통)장애아동을 위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등하원용 차량을 2년간 운전해 오고 있던 지체장애 1급의 ○○○의 경우, 어린이집이 시청으로부터 운영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구청에서 지체 1급의 장애가 있어서 위기 시 대처능력이 없다며 장애를 문제 삼아 해고를 요구함(김성재 외, 2007)
- (승진)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 동 보건소장에 우선적으로 승진임용될 자격을 갖추었으나, ○○시장은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임용에서 배제시킴(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평등권 침해로 판단하여 ○○시장에게 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함)

- (해고)지체장애 6급으로 홍보대행사에 최종합격하여 수습기간(3개월) 시작하는 첫 근무를 하였으나, 회사대표는 장애사실을 알고 난 후, 회사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당일 전화로 해고를 통지함(진정인에 대한 복직조치가 필요하지만, 진정인이 복직을 원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함)

나) 직무배치 차별

직무배치는 채용된 근로자를 적절한 직무나 직급에 배치하는 과정으로 직무배치과정은 다른 요인과 마찬가지로 관련법 규정이나, 기업의 규정, 조직구조, 관리자의 능력, 동료근로자의 태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회사의 규정이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나 여성에게는 차등직급을 부여하고, 어떤 직업은 장애인은 곤란하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배치)우측 하지에 장애를 가진 근로자 ○○○는 특히 뒷걸음질을 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뒷걸음질 치는 공정으로 이동한 후에 장애가 있던 오른쪽 다리에 새로운 상병(傷病)이 발병하여 수차례 고통을 호소하였음. 고용주는 이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공정순환의 예외를 두지 않음(○○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순환 예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의 배치전환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장애인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판정함)

다) 임금 및 복지 혜택의 차별

임금은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모든 유형의 보상을 의미하며, 직접적 보수는 시간급(또는 일급), 월급(또는 주급), 보너스, 각종 수당을 의미하며, 간접적 보상은 각종 보험급여, 퇴직수당, 능력개발비 지원, 유급휴가, 병가 등의 직접적 보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간접적으로 받는 다양한 종류의 보상을 의미한다.

- (임금)일반 직원들의 경우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비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의 수습기간을 제시한 경우, 이는 비장애인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차별에 해당됨(영국 DRC, 장애인차별금지법 실무지침)

라) 능력개발

능력개발은 훈련, 교육, 그리고 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의 능력과 근로자의 능력을 개선, 발전

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훈련, 교육, 개발의 3가지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Naddler & Wiggs, 1989, 김성재, 2007 재인용). 훈련은 일반적으로 직무 혹은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과업을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교육은 근로자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과업을 포함한 새로운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은 개인과 조직적 성장을 위해 특별히 현재와 미래의 직무에 제한없이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 어떤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거나 출석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추측하여 장애인근로자를 교육에서 배제하는 경우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됨(영국 DRC, 장애인차별금지법 실무지침)

다.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차별 유형화

구 분	주요 내용
모집 및 채용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공고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문구나 신체 또는 외모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응시자격이나 기회를 제한 - 장애인의 접근성 등 장애에 적합한 시험환경의 부재 - 모집 및 채용단계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부재 - 모집 및 채용단계에서의 장애인 여부 조사를 위한 의학적 검사 실시
사업장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사업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 부재
배치 및 직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배치나 직무변경 시 정당한 편의 제공 부재 - 근로시간, 편의시설, 작업설비·공간, 출퇴근 차량 등의 배려 부재
교육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훈련 시 정당한 편의 제공 부재 - 직무 수행능력 향상과 승진 기회가 부여될 교육 및 훈련 참여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업무수행 및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근로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부재 - 비장애인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장애인근로자에게도 동등하게 전달될 수 있는 편의 제공 부재
시험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및 평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부재
임금 및 복리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의 장애인 차별
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에서의 장애인 차별 - 장애인이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 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부재
정년, 퇴직 및 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의 장애인 차별
노동조합 가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서의 장애인 차별
의학적 검사·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이후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 실시

라.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차별 실태

1) 장애인 고용 현황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실은 여전히 밝지 못하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중 15세 이상 인구는 2,376천명이며, 이중 38.5%인 915천명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점의 비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61.9%이다. 장애인경제활동인구 중 93.4%인 855천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반면 60천명이 실업상태에 있어 장애인실업률은 6.6%에 이르고 있다. 같은 시점의 비장애인 실업률 3.2%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실업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경제 활동인구〉

(2010. 5월말 기준, 단위: 천명, %)

구 분	15세이상 인구	경 제 활 동 인 구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2,376	915	855	60	1,461	38.5	6.6	36.0
전체인구	40,533	25,099	24,306	793	15,434	61.9	3.2	60.0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2010.

취업장애인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대비 단순노무직(29.4%), 농업·어업(23.5%)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전문직(2.0%), 사무직(4.2%)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취업장애인의 직업 분포〉

(단위 : %)

구분	의회의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어업	기능원·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조립원	단순 노무직
장애인	1.1	2.0	2.9	4.2	9.8	11.8	23.5	8.1	7.2	29.4
전 체	2.3	8.8	11.2	14.3	12.5	11.3	6.7	10.2	11.0	11.7

자료: 변용찬 외(2009)

장애인 고용의무를 가진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2월 31일 기준 50인

이상 민간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고용율은 의무고용율 2.5%에 못 미치는 2.28%에 이르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같은 시점 기준 장애인고용율은 2.52%로 법정 의무고용률(3.0%)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의무사업체 고용 현황〉

(기준: '11.12월 /단위: 개소, 명, %)

구 분		기관수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계		24,083	6,909,276	154,432	133,451	2.28
정부 부문	공무원	81	824,067	24,850	18,141	2.52
	근로자	293	247,550	5,542	4,857	2.35
민간 부문	공공기관	257	305,971	8,224	7,427	2.72
	민간기업	23,452	5,531,688	115,816	103,026	2.22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2)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이 취업 시 사회적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5.0%로 나타났다(변용찬 외, 2009). 특히 안면장애(66.5%)와 정신장애(62.4%)의 경우 취업 시 차별을 받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자리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9.2%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차별 경험 비율은 16.6%로서 경증장애인의 6.5%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호진 외, 2009).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고용 관련하여 주로 받았던 차별은 합당하지 못한 임금(26.2%), 응시자격 제한(12.1%), 채용과정에서의 불이익(10.8%), 업무량(시간)에 있어서의 차별(10.8), 복리후생 제공하지 않음(8.3%)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관련 차별경험 사항(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 분	1 순위				1 순위 + 2 순위			
	추정수	비율	장애정도		추정수	비율	장애정도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응시자격 제한	5,015	12.1	10.2	13.8	7,090	17.1	20.5	13.8
채용과정에서의 불이익	4,467	10.8	7.8	13.6	4,832	11.6	8.6	14.6
합당하지 못한 임금	10,868	26.2	39.6	13.4	11,563	27.9	41.7	14.7
객관적 평가 없이 상여급 미지급	1,506	3.6	3.1	4.1	2,721	6.6	3.1	9.8

구 분	1 순위				1 순위 + 2 순위			
	추정수	비율	장애정도		추정수	비율	장애정도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업무량(시간)에 있어서의 차별	4,494	10.8	3.7	17.6	5,335	12.9	7.9	17.6
능력에 맞지 않는 직무, 부서 배치	2,246	5.4	7.0	3.9	5,239	12.6	8.7	16.3
낮은 직급 부여	496	1.2	2.5	0.0	2,288	5.5	9.4	1.9
승진 누락, 제한	1,367	3.3	2.6	4.0	1,838	4.4	2.6	6.2
교육훈련, 연수 기회 제한	1,178	2.8	1.5	4.1	2,056	5.0	5.9	4.1
복리후생 제공하지 않음	3,447	8.3	13.0	3.8	4,989	12.0	17.5	6.8
기타	6,427	15.5	8.9	21.7	7,707	18.6	14.4	22.5
전 체	41,511	100.0	100.0 (20,242)	100.0 (21,269)	451,572	41,511	- (20,242)	- (21,269)

주: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자료 : 김호진 외(2009)

5. 고용차별예방 방법

가. 법

1990년대에 들어서며 미국과 유럽의 장애인정책은 소위 장애인 차별금지정책으로 수렴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1990년 미국의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하 ADA)으로 구체화된 이후 제2000-78호 유럽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 2000/78/EC)을 통하여 공고화되었다. 이러한 입법들은 장애인들의 동등한 기회를 가로막는 각종의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가 법적 구속력을 확보함에 따라, 개별 국가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보호주의로부터 근로의 증진으로, 분리로부터 통합으로, 복지로부터 시민권으로 재지향된 장애담론의 흐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이소영, 2006).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부각시킨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들을 복지의 대상에서 탈피시켜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이것은 복지국가의 지출억제정책, 즉 복지지출을 줄이는 한편 노동시장을 활성화하여 조세기반을 확보하려는 각종의 정책과 연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에는 복지의 수혜자였던 장애인들이 소득 있는 직업에 종사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활성화(activation)논리가 부각되게 되었다. 둘째, 장애의 개념

화, 혹은 장애를 보는 시각상의 변화이다.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의료적 모델로부터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는 흐름이 장애인차별을 재점화하였다. 셋째, 장애인 조직의 영향력이 커지고 정책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장애인관련 쟁점이 보다 가시성을 얻게 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장애인의 고용 관련 차별이 장애인의 직업적, 사회적인 참여와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과 사회복지 비용의 절감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하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고용차별금지가 정책적 우선순위로 부상되게 되었던 것이다.

1) 우리나라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법률 제8341호로 공포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동안 지속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큰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전까지 장애인 고용정책의 초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거한 장애인 고용의무제와 부담금제도였다. 이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는 일정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고용촉진정책과 차별금지정책 양자의 병행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당한 편의(법 제11조 제1항)**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의무 조항은 특히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2) 미국

미국은 1990년에 장애차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법(ADA)이 제정(1992년 7월 26일 시행)되었다. **장애 개념 관련하여 ADA는 의학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의 장애 뿐 아니라 과거의 장애(장애기록), 나아가 주관적 인식의 장애(perceived disability :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타인에 의해 인식되는 장애)까지 장애의 범주로 포괄하고 있다. 다만 고용차별금지의 적용대상 장애인을 ‘자신이 보유 내지 희망하는 고용지위 상의 본질적 직무를 합리적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가 제공된다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유자격 장애인, qualified individual with a disability)으로 규정하고 있다.

ADA는 장애를 이유로 하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이외에도 **‘합리적 편의 제공의 거부’를 차별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편의제공으로 기업운영에 과도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유자격 장애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한계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합리적 편의는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기존의 설비를 장애인이 손쉽게 접근·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작업조정, 파트타임 또는 작업일정 변경, 공식으로의 배치 전환, 설비·장치의 개선, 평가 또는 훈련도구·수단의 적절한 조정 내지 개선, 대독자(reader) 또는 통역자의 제공 등을 의미한다.**

3) 영국

영국의 경우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이하 DDA)은 1995년 제정되었다. DDA의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DDA의 제2장은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다루고 있는데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채용, 근로조건, 승진, 배치전환, 훈련의 기회 관련하여, 기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편의제공을 않는 경우 이를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DDA는 경찰, 군, 교도관, 소방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DDA는 차별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장애와 관련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행위(차별대우)**이다.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조정업무 불이행)**이다.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DDA 위반에 대한 진정, 소(訴) 제기, 증언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차별행위**로 본다.

DDA는 합리적 조정의 예로 ① 건물·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행하는 변경, ② 장애인 직무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에게 할당, ③ 공식으로의 배치전환, ④ 근로시간의 변경, ⑤ 작업장소의 변경, ⑥ 재활·치료를 위한 결근의 허가, ⑦ 직업훈련의 제공, ⑧ 장비(설비)의 취득 또는 개선, ⑨ 작업 지시 또는 작업지침서의 개선, ⑩ 시험 또는 평가절차의 개선, ⑪ 대독자(reader) 또는 통역자의 제공, ⑫ 감독의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독일

독일은 2000년대 들어서며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한 3가지 중요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첫째,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의 재활 및 고용에 관한 기본법인 「사회법전 제9권(Sozialgesetzbuch IX: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이하 「SGB IX」)이 제정되었다. 둘째, 장애인의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생활에 대한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등법(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이하 「BGG」)이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2006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일반동등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이하 「AGG」)이 있다.

「SGB IX」는 사용자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사용자와의 합의에 있어서, 특히 고용 및 그밖에 노동관계의 성립에 있어서, 또는 승진이나 인력배치, 해고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합의의 대상이거나 특정한 신체적 기능·정신적 능력 및 심리적 상태가 중요하고도 결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애가 차별사유가 될 수 있다. 「SGB IX」는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사용자에 하여 일자리나 장비 및 시설 등이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하도록 개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SGB IX」나 「BGG」가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배려조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 고용과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는 사업주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작업환경을 장애인의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고용된 중증장애인은 사용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첫째,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갖는다. 둘째, 직업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 내 직업교육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받을 권리를 갖는다. 셋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 밖에서의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넷째, 장애의 상황에 적합하게 작

업장에 시설을 설치·개조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여기에는 기업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장의 주변환경, 노동조직 및 작업시간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작업장에서 장애가 노동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밖에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하여 단축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축작업을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다.

5)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금지법은 「노동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프랑스는 「형법」에서 장애 등 14가지 사유에 의한 고용차별을 범죄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상의 기술적인 어려움, 장애인 채용에 대한 사용자의 반대 등으로 현실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았고, 특히 프랑스 의회가 1989년 및 1990년 법률을 통해 장애인차별을 형법상의 차별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기 때문이다(조용만, 2005).

「노동법전」은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저하된 결과 고용을 획득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실제로 감소된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L.323-10조). 프랑스의 경우 차별유형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적절한 편의조치의 불이행, 정신적 학대(괴롭힘), 보복 등이다. 노동법전 L.122-45조는 장애 등 15가지 사유를 이유로 하는 고용 영역에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법전 L.323-9-1조는 장애인에 대한 평등대우의 일환으로 적절한 편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그러한 편의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적절한 편의조치의무’는 장애인이 자신의 직업자격에 상응하는 고용접근·고용유지 또는 고용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혹은 필요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이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의미한다. 노동법전은 또한 L.122-45조 제3항을 통해 차별행위를 증언 또는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내지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 홍보(안내)

사용자로 하여 고용차별 금지에 관한 법과 제도의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안내책자, 리플렛, 표어, 공중파 홍보,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한 홈페이지, UCC(홍보동영상) 등을 통한 안내와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진, 인쇄물, 영상 등을 활용한 차별에 대한 금지에 대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매체 및 횡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당사자 및 사업주 그리고 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고용차별에 안내와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언론 등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극대화된 차별금지 지식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한 각종 행사 및 모임 등에 인식개선 홍보와 장애인 및 사업주의 차별금지 사례, 장애인 성공 취업사례 및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우수사례 홍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필요성 홍보 등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다. 모니터링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차별항목을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실시하는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에 법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이행을 독려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 교육

- 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차별 및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의 실시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질 필요가 있으며 '13년도부터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확대해야 한다.
- ② 국가기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 단체 및 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 일선에서 장애인 고용차별의 파수꾼이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제언

가.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당한 편의(법 제11조 제1항)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의 예방대책으로 사업주가 정당한 편의를 인지하고 스스로 실천하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2013. 4. 11이후 실시되는 30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판단된다.

차별예방을 위하여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이나 인쇄물을 통하여 배포하고 알리는 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예방을 위하여 법이나 홍보 등이 소극적인 예방 대책이라고 한다면 다음에서 언급할 지원제도는 좀 더 적극적인 예방제도라고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조(국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에서 “장애인의 평등을 위하여 합리적인 배려를 하는 사업주·학교·시설주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기술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등의 실제적인 지원이 진행되는지 알기 어렵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고용에 있어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사업체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등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법과 조례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모든 고용차별요소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강제하는 것은 다소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 국가 등은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차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이외에 교육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고용과 관련된 부처에서는 부처의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장애인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확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기업을 유치하는 위해 공업단지 조성을 한다. 이때,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제공이라는 물리적인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것과 기존 사업장에 물리적 환경을 개보수하는 것에

대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사업장의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을 통하여 고용에 대한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배리어 프리 사업을 참고하여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배리어 프리 건물 이외에 배리어 프리 사업장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모든 장애 유형의 장애인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부 장애유형의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이라는 인증제도를 실시해 점차 전유형의 장애인 일할 수 있다는 인증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차별금지법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일부(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를 담당하고 있다. 사업주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을 이해하고 지원여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고용에 있어 차별적인 부분을 없애고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사업을 통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항목	사업설명
통합지원서비스	장애인 신규고용을 위하여 사업장의 고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고용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서비스.
구인서비스(모집대행등)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적합인력 추천 및 모집대행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7주간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훈련기간 동안에는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작업기술, 직장예절, 직장내 의사소통 등 직장적응을 지원합니다.
현장평가	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5~12일간 직무체험을 통해 구직장애인(15세 이상)은 현장적응력 등 취업가능성을 평가하고 기업에서는 적합장애인을 탐색하는 평가프로그램.
시험고용(장애인턴제)	청년중장애인에게 사업장의 현장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직무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경험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항목	사업설명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장애대학생에게 직장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채용 전 적합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고등학교(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는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업주에게는 연수기간 동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맞춤훈련(직업능력개발)	맞춤훈련이란 교과과정 설계부터 교육생 선발, 훈련,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업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로 다. 이 때 교육훈련 실시 전에 공단과 기업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인식개선교육 등 지원	직장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고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고용관리 전문인력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

나) 금융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항목	사업설명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장애인고용시설 설치 비용 용자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 비용을 장기 저리로 용자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무상 지원	장애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 장비·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채택근무 지원	채택근무 지원이란 이동에 제한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채택근무 형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채택 근로에 따른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 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투자)를 설립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용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용자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용자하는 제도.
the 편한일터 만들기 사업	the 편한일터 만들기 사업은 공단이 편의시설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업장의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취업 장벽을 제거 하기 위한 사업.
고용관리비용 지원	고용관리비용은 장애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선임·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하는 제도.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매년 고용서비스지원사업과 금융 및 고용환경개선 사업을 수행하지만,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업주와 장애인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단은 장애인 고용분야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영역에 없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첫번째는 공무원 및 대기업 등 입사 시에 필기나 실기 시험이 차별 없이 치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유형에 따른 시험보조기기 배치 등의 업무를 및 대행 등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하기 위하여 국가 및 대기업 등이 시험 등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며 대기업의 입사시험 등을 대행해서 수행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 고용차별과 관련한 연구를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진행해야 한다. 고용차별에 방가이드 연구와 고용차별 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공단의 고용서비스지원 사업 등 사업규모 및 지원대상에 비하여 연구가 다양하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

세 번째는 공단의 각종 사업을 수행에 함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함께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개발된 고용차별 체크리스트를 연구와 연계하여 고용차별 예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당사자

우리나라 속담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백지장도 마주들면 가볍다. 그리고 마중물이라는 물을 길기 위해서는 마중을 해주는 약간의 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차법의 고용분야에 가장 가까운 장애인과 사업주 이에 대한 숙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장애인

2012년도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전국장애인 추정인구 2,611,126명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 장애인은 7.8%에 불과하다. 21.3%는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으며, 70.8%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장애 81.7%, 청각장애 79.7%, 정신장애 79.6% 순으로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대로 간장애 24.7%, 안면장애 15.3%, 간질장애 13.2% 순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나머지는 장애유형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는 실효적인 이행을 이끌어내는데 어려

움이 있으며 전파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단체나 기관 등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알리고 교육하고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장애인은 사업주와 파트너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에 많은 관심과 사업주와는 각별한 사이이다. 장애인은 공단 또는 다른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 취업을 하였던 장차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정당한 편의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어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차별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공단이나 취업알선기관의 사업 내용을 일정부분 숙지하고 취업을 할 것을 권한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작업에 필요한 장비 또는 도구 등을 사업주의 부담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 또는 장애인 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내용을 알려주고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늘 시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에 있어 차별에 대한 요소를 사업주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보다 공단이나 지자체 담당자 보다 장애인이 사업주와 더불어 사업장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장애인근로자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장애인도 회사의 발전 주체이자 주인이다. 사업체의 발전협력자로 활동이나 역할이 필요하다. 구인에 대한 정보이외에도 사업주를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도 사업체 발전에 이바지 하는 적극적인 조력자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현장에서 장애인 차별을 없애는 큰 힘일 것이다.

2)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에게 고용 차별이 발생할 경우 어려워지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업주 당사자이다. 4대 보험을 비롯한 각종 세금 등에 대해서는 학습과 교육 등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나 고용차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 고용영역을 담당하는 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한 질의와 문의 등으로 차별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발전의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학습효과가 지속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 및 고용 의무를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장차법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부담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 사업 중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숙지하여 고용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혜있는 사업주가 되어야 한다. 장차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고 부담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법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숙지와 노력을 통하여 슬기롭게 고용차별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도록 정면 돌파하는 용기를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공단 또는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고용에 있어 차별을 예방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장애인 근로자도 포함시켜 서로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직원도 회사 발전협력자로 인정해주고 이에 맞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장애인 근로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으로 회사 내 직원의 불편과 어려움을 알아내야 한다. 병이 깊지 않은 경우에는 약을 먹거나 잠시 쉬면 나을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수술이나 병가 등이 필요한 중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이후 추가적인 진단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공단 등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또는 보조공학지원 등을 지원할 때만 장애인 고용공단과 소통할 것이 아니다. 장애인 고용 및 관리, 운영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보다 발전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모집 및 해고 등 장애인 고용차별과 밀접할 경우에는 더욱 더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법 위반에 대한 점검이나 민원처리 등으로 많이 바쁘고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집행기관으로 장애인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에서는 하는 일에 대한 숙지를 통하여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기관들을 사업주 및 장애인에게 알려서 사업주 및 장애인이 관련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차별 분야별로 기관을 홈페이지에 알려 일반시민, 사업주, 장애인 등이 관련 분야에 쉽게 접근하여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매년 실시하는 모니터링도 차별 분야별로 나누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모니터링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 이를 통한 개선이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일선의 장애인 취업알선 기관 담당자에게 차별금지 관련 사업에 대하여 알리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홍보 및 안내 자료 제작 및 배포로 일선에서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고용차별 체크리스트 활용

고용차별 체크리스트는 장애인 고용차별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이에 대한 개발은 이제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개발된 체크리스트가 사업주, 장애인, 인사담당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관련 당사자 및 기관 등에 적용해 보고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자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총5종의 고용차별리스트가 개발 또는 연구되었지만, 일부만 활용되어 있다. ① “**박자경, 홍자영 (2008)의 체크리스트**”는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고찰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사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고용영역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② “**이익섭 외 (2009)의 체크리스트**”는 국내 장애인 차별실태를 점검하고 국내외의 장애인차별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차별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③ “**국가인권위원회 (2009)의 체크리스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법률 개요, 차별의 이해,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④ “**이성기 외 (2010)의 체크리스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에 기반을 두고 실제 대상기관에 적용시킬 수 있는 모니터링 영역 별 지표를 개발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영역 별 이행 및 차별개선 상황을 모니터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개발된 ⑤ “**남용현·최종철·류정진(2010) 체크리스트**”는 장애인 고용차별과 관련한 국내외의 각종 가이드와 지표·체크리스트 개발에 대한 자료를 고찰하여 먼저 고용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차별들이 주로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장애인 고용차별을 고용의 각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특징이다(별첨 참조).

고용차별 체크리스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초하여 개발되었으며 고용차별 검증에 대한 실효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예방이나 이에 활용을 통하여 확인된 통계나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개발된 체크리스트에 검증이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 이를 보완하고 더 나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사업체나 장애인, 그리고 공단 직원들에게 적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실천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면 좋은 아이디어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것과 같기 때문이다.

개발이나 연구된 체크리스트는 위에서 언급한 5종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5종을 각기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장애인고용공단의 각종 사업과 병행하거나 장애인 취업알선 기관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공동 또는 개별로 활용된 체크리스트 자료는 공동으로 분석하여 고용차별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래는 공단의 사업과 병행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실시상황서 제출시 함께 제출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는 법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아니지만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다.

둘째는 무상 또는 임대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초기 상담이나 사후관리 시에 현장실사를 통하여 사업주와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셋째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사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기간상 분기, 반기, 연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규 신청업체가 아니면 방문조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신규 및 기존업체 중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시 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할 수 있다.

넷째는 장애인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사업체 구인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서 방문하여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구인 초기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은 구인사업주에게 고용차별금지를 알리는 유효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는 공단 이외에 지자체, 고용지원센터, 상공회의소 등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수의 기관들의 참여를 통하여 체크리스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장애인 고용차별금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여섯째는 구직장애인과 장애인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구직장애인에게는 고용이전에 고용차별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주어 고용차별을 사전 예방하고, 이전의 차별에 대한 인지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근로자는 직장내 차별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직무상 필요한 편의제공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서 가능하면 사업주와 장애인근로자(구직자 포함)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 이후 차이가 있는지에 여부를 파악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부연설명 또는 장애인 근로자와 상담한 이후에 차별예방을 위한 상담과 지원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차별시정 분야**. 제3집(2007~2008).
- 김성재, 장윤주, 김광이, 김동범, 김인순, 김주영, 박종운, 배용호, 신용호, 엄형국, 정갑영, 한민교 (2007). **장애인차별실태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수탁과제.
- 김호진, 류정진, 장영석, 류기섭 (2009).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나운환, 조성열, 김동범 (2002). **장애인 고용 및 승진 실태조사: 노동시장 차별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수탁과제.
- 남용현, 최종철, 류정진 (2010). **장애인 고용차별 체크리스트 개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박자경, 홍자영 (2008). **장애인 고용차별 예방 가이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강민희, 최미영, 손창균, 오혜경 (2009).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수탁과제.
- 양수정, 최종철, 류정진, 김호진 (2011).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유동철 (2000).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 영향 분석: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소영 (2006). 유럽과 미국의 장애인 반차별법. **미국헌법연구**, 17(2), 363-395.
- 이익섭, 신은경, 이승기, 이준일, 유동철 (2009).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보건복지가족부 수탁과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3). **장애인차별 실태조사**.
- 조용만 (2003).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수탁과제.
- _(2005).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국가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제도 연구**. 노동부 수탁과제.
-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20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 2012 장애인 통계(201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Arrow, K. J. (1973). The theory of discrimination. In Aschenfelter, O. & Rees, A. (ed.), *Discrimination in labor marke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3-33.
- Becker, G. S. (1971).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2nd ed.,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부록> 장애인 고용차별 체크리스트

1. 모집 및 채용 과정

-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적으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 사용자가 법조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법조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 채용 공고 등이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2. 장애인이 모집(면접, 시험 등) 장소에 접근하기 쉽습니다.
3. 장애인이 모집(면접, 시험 등) 장소의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등)에 접근하기 쉽습니다.
4. 신체나 외모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응시를 제한·배제하지 않습니다.
5. 모집 시 연령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6. 모집 시 장애유형이나 장애등급을 표기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7.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격 요건을 구인 조건으로 제시하여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8. 모집이나 채용 시 장애를 이유로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9. 모집이나 채용 시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10. 모집이나 채용 시 장애유형에 따른 차등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11. 지원서 등의 양식은 모든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 지원서 등의 양식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지원서의 질문은, 장애나 병력(病歷)이 아닌, 지원자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직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14. 장애인을 채용하기 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신체)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15. 예외적으로 채용 이전에 의학적(신체) 검사를 실시할 경우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6.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17. 모집이나 채용 시 고용이나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18.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과정에서 확대시험지와 확대답안지를 제공합니다.
19.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과정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과정에서 음성지원프로그램이 지원되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1.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과정에서 보조공학기기 사용을 지원합니다.
22.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듣기평가를 필답고사로 대체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23.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과정에서 낭독자나 수화통역사를 지원합니다.
24.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과정에서 약물복용을 허락합니다.
25.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과정에서 휴식시간을 허락합니다.
26.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 과정에서 시험시간을 연장합니다.
27.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 과정에서 별도의 시험장소를 제공합니다.
28.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실 입·퇴실 시 보호자 동반을 허락합니다.
29.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대필자를 허락합니다.
30.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도우미를 배치합니다.
31.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 시 필요한 개인물품(점자관, 점필, 확대경 및 스탠드 등) 지참이 가능합니다.
32. 지원자의 장애에 관한 정보는 인사 기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2. 채용 이후

가. 사업장에 대한 접근성

-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 장애인 근로자가 건물에 접근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2.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 사업장의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장애인용 지정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4. 가파른 높이 변화나 계단 없이 주차 구역으로부터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가 있습니다.
5.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사로가 사용된다면 경사가 적당하며 난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6. 건물 내 모든 복도에는 몸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7. 모든 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충분히 넓습니다.
8. 복도의 손잡이에는 각 사무실의 위치와 사무실 명칭을 알려주는 점자 안내 표시가 있습니다.
9. 모든 문은 장애인들이 열기 쉽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10. 사무실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11. 사업장 내 시설(화장실, 식당, 휴게실, 체육시설, 음료대, 공중전화 등)들에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편리합니다.
12. 화장실, 식당, 휴게실, 체육시설, 음료대, 공중전화 등 사업장 내 시설들을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13. 엘리베이터는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있습니다.
1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5. 모든 신호는 (기호와 그래픽의 사용을 포함하여) 시각·청각·학습·인지 장애인에게 적절하며 접근성이 있습니다.
16. 비상경보시스템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배치 및 직무조정

-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직무를 재배치·재조정하거나 주변 업무를 재배분합니다.
2. 장애인 근로자의 재활, 기능 평가, 치료 등을 위하여 작업 일정을 변경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합니다.
3.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 방침을 적절히 조정·변경합니다.

다. 교육 및 훈련

-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1.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2.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에서 교육이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교육이나 훈련 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조 인력(낭독자, 수화통역사 등)을 제공합니다.
4. 교육이나 훈련 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조수단(점자정보단말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화면확대기 등)을 제공합니다.
5. 교육이나 훈련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라. 업무수행 및 의사소통

-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1. 작업 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의 작업시설이나 기계·장비를 장애인이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설치 또는 개조합니다.

2. 업무 관련 정보를 장애인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직무 내용 설명서에 있는 모든 과업은 그 직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4. 직무 내용 설명서는 수행되어야 할 업무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5. 장애인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작업지침서나 작업지시서를 제공합니다.
6.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인력(낭독자, 수화통역사 등)을 제공합니다.
7.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치합니다.
8.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수단(점자정보단말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화면확대기 등)을 제공합니다.

마. 시험 및 평가

-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이나 평가 시 확대시험지와 확대답안지를 제공합니다.
2.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이나 평가 시 점자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이나 평가 시 음성지원프로그램이 지원되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이나 평가 시 보조공학기기 사용을 지원합니다.
5.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듣기평가를 필답고사로 대체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6.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이나 평가 시 낭독자나 수화통역사를 지원합니다.
7.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이나 평가 시 약물복용을 허락합니다.
8.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이나 평가 시 휴식시간을 허락합니다.
9.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이나 평가 시 시험시간을 연장합니다.
10.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이나 평가 시 별도의 시험장소를 제공합니다.
11.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이나 평가 시 보호자 동반을 허락합니다.
12.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이나 평가 시 대필자를 허락합니다.
13.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이나 평가 시 도우미를 배치합니다.

14.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이나 평가 시 필요한 개인물품(점자판, 점필, 확대경 및 스탠드 등) 지참이 가능합니다.

바. 임금 및 후생복지

-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1. 임금 지급 시 장애를 이유로 기본급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2. 임금 지급 시 장애를 이유로 수당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3. 임금 지급 시 장애를 이유로 호봉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4. 각종 복리후생 제공에 있어 장애인·비장애인 근로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5. 휴가 사용 시 장애를 이유로 다른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6. 휴직 시 장애를 이유로 다른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7. 장애인 근로자가 치료나 재활 등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휴가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용 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8. 회사의 각종 행사(회식, 야유회, 체육대회 등) 시 장애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9.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회사 내 동아리 활동에 장애인 근로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 고용 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따돌림을 하지 않습니다.

사. 승진 및 징계

-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를 이유로 하여 장애인을 승진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2. 장애를 이유로 하여 승진에서 장애인에게 다른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3.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 절차에 장애인 근로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4. 장애를 이유로 하여 불리한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아. 정년, 퇴직 및 해고

-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정년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해고하지 않습니다.
3. 장애인이 업무 상 필요에 의해 보조건을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지 않습니다.
4. 장애인이 업무 상 필요에 의해 장애인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지 않습니다.

자.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1.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2.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 후 조합원의 권리·활동에 있어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3.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시 필요한 보조 인력(낭독자, 수화통역사 등)을 제공합니다.
4.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시 필요한 보조수단(점자정보단말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화면확대기 등)을 제공합니다.

차. 의학적 검사 및 기록

-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장애인차별금지법」).

1. 고용 이후의 의무적 신체검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동등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병력이나 장애에 관한 정보를 비밀히 유지·보관하고 있습니다.

3. 여성장애인근로자 관련 체크리스트

-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1. 사용자는 여성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특정한 성역할을 강요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는 동일 가치, 동일 노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낮게 책정하지 않습니다.
3. 사용자는 여성장애인 근로자가 임신, 출산, 양육 시 사용한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교육영역 평가 및 제언

김동복
(광주세광학교 교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교육영역 평가 및 제언

김동복
(광주세광학교 교사)

1. 시작하며

윤아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다.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이며, 고도 근시와 망막박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윤아는 유치원 시절 이후 내내 시각장애로 인한 불편을 겪으면서도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시각장애에 대해서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지내 왔다. 그러나 5학년이 된 이후 학습 양이 많아지면서 책 읽기가 불편하고, 친구들을 잘 알아보지 못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잦아졌다. 윤아 부모는 많은 고민 끝에 윤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하였으며,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윤아를 시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부모의 선택에 따라 윤아는 전과 같이 일반학교에 배치되었으며, 윤아가 다니던 학교의 특수교사의 지원을 받도록 조치되었다. 일반학교 특수교사는 윤아와 같은 시각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각장애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점자, 보행, 일상생활기술, 보조공학기술 등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가?

2. 교육영역 평가

(1) 교육차별 진정접수 건수 증가

교육영역의 차별 평균 진정접수 건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첫 해인 2008년을 제외하고는 2009년 49건(월 4.1건), 2010년 55건(월 4.6건), 2011년 62건(월 5.2건), 2012년 96건(월 8.0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영역에 있어서 장애차별 건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장애 운동가들의 활발한 장애 운동의 결과로 진정 접수 건수가 늘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2) 교육차별 사건별 진정 접수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간 접수된 교육차별 사건은 총 323건이었고, 그 중 ‘특수학급 설치거부’(20.1%)에 관한 사건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수업·시험평가 편의 미제공’(16.7%), ‘전·입학 거부 제한’(14.9%),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제한’(10.5%),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9.3%), ‘괴롭힘(4.6%) 등’의 순서로 많이 접수되었다.

교육차별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학생의 학교(급) 배치 문제, 물리적 접근 문제, 수업·시험 평가 조정 문제 등으로 아직도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현 실임을 알 수 있다.

(3) 교육차별 장애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교육차별에 있어서의 장애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적·발달장애인 10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각장애인 57건, 지체장애인 43건, 청각장애인 41건, 뇌병변장애 23건, 기타 45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교육차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적·발달장애인은 특수학급 설치 거부, 시각장애인은 수업·시험 편의제공, 지체장애인은 시설물 접근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교육차별 내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4) 장애인차별 사건 시정권고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적용 법률에 따른 장애차별 권고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권고사건 291건 중 교육영역에 있어서 권고 사건 수는 11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적용한 사건이 3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한 사건이 8건으로 나타났으며, 직권조사로는 시각장애 여학생에 대한 맹학교 교사의 안마 강요 직권조사, 국립특수학교 OO학교에 대한 직권조사가 있었다.

(5) 장애차별 진정사건 관련 위원회 권고현황

교육차별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학급 설치거부에 의한 장애인 차별(08진차0000116등 2건),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08진차0000623 등 2건), 시각장애인에 대한 연수교육 차별(08진차

0000104),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10진정0572400),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시 장애인 차별(09진차0000938), 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수업배제 등의 차별(10진정0710700),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10진정0175100 등 3건) 등이 있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영역 제언

- (1) 장애학생의 적절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독서회, 진로추진단,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참여사업 등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장애로 인한 차별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사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다.
- (2)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서는 학교평가시 가산점 부여, 장애학생의 시험평가 편의제공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위한 편의제공 및 평가조정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각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전담부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3)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는 적절한 교육 지원과 관련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충실한 운영과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및 스쿨존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장애학생의 교육을 지원을 위한 기타 의견
 - ① 시험평가 편의제공에 있어서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해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점자 및 확대 시험지가 제작 인력과 예산 탓으로 제작·보급 되지 않고 있으며,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장애학생을 위한 시험지 편의제공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학교에서는 시험시간 연장, 시험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학생의 시험 운영과 관리가 어려우면 어느 한 곳을 지정하여 시험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② 미래핵심역량 강화와 진로진학을 위하여 교과부와 교육청은 일반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사서실무사) 등을 지원에 아끼지 않고 있으나 특수학교에는 제외하고 있어 진로진학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행·재정적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마무리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교육영역 평가 및 제언을 살펴보았다. 교육차별에 대한 진정접수와 권고이행 내용이 아주 기본적인 영역임을 확인하였다.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 교육 분야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전에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차별개선방안

권순국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과장)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차별개선방안

권순국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 2장에서는 차별금지의 영역으로 6가지를 하고 있다. 제1절 고용(3개 조항), 제2절 교육(2개 조항),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11개 조항),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2개 조항), 제5절 모·부성권, 성 등(2개 조항),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3개 조항)이다.

그 중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은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 2장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각 조항을 살펴보면 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2조 개인정보보호, 제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가 이 영역에 해당한다.

조항 수가 많고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간 가장 많은 차별사건(전체의 63.5%)이 접수된 영역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내에서는 재화 및 용역일반이 16.3%, 시설물 접근이 14.4%,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이 12.2%, 보험·금융이 8.2%, 이동 및 교통수단이 7.4%, 문화·예술·체육이 5.0%로 높았으며, '재화 및 용역 일반' 영역은 식당이용 거부, 비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와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재화 공급 등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5년 동안 재화·용역 관련 영역의 진정은 3천여 건이 있었고, 그 중 조사 대상은 2천여 건에 달했다. 조사대상 진정사건 중 인용(권고) 조치한 사건은 240건이다. 위원회 자료의 5년간 권고현황을 보면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서 54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40건의 인용(권고)조치 사건은 54개의 유형에 대부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54개의 권고 현황 중에도 장애유형, 대상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었을 뿐,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한 사건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에 대한 시정권고와 조치 등을 통해 유사한 형태의 차별의 재발을 막는 효과가 부족했다고도 해석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조항을 하나씩 읽어보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차별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차별이 시정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이 많다. 지적된 차별은 주의를 환기하거나 시정조치의 효과를 거두었지만, 지적되지 않은 차별은 문제의식 없이 계속 존재하는 듯하다. 심지어 이미 문제가 되었던 동일한 형태의 차별이 다른 지역, 다른 기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반복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유사한 형태의 차별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쉽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2. 장애인과 시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률에 의한 처리보다는 당사자들 간의 이해와 타협을 유도하는 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장애차별 진정사건 중 권리구제 대상 사건의 85.1%가 조사 중 해결되었다는 점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때로는 차별금지법이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시켜야 할 때도 있겠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과정에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이나 결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진행되어야 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개선된 사항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재화·용역 관련 사건을 대략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용 ATM기 설치, 신용카드, 보험가입, 대출 등에서의 장애인차별시정, 공공시설물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휠체어장애인에 대한 종교시설, 상업시설 접근제한 시정, 홈페이지 등의 정보접근권,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 지원 등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차별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었고, 차별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차별진정 건수도 늘고 있기 때문에 얻어진 성과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차별을 완전하게 방지하는 역할을 스스로 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법 자체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처벌조항에 대해 논할 수는 없겠다. 다만, 처벌조항의 가지는 힘을 시민과 장애인이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것은 당사자 운동 또는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지는 수준으로 그치는 얘기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운영은 시민과 당사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극복해야 할 과제 : 정당한 사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5번 등장한다. ‘정당한 사유’는 규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을 합리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물론 법의 취지가 그렇지 않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적당한 핑계’가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답변이 예산부족이다. 일반적으로 예산부족은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는 것 같다. 그런데, 수천억 내지 수조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행정기관이 재원이 없어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예산의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당장 사용이 불가능한 문제는 수개월 내지 1년 정도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결국은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원을 장애인차별을 시정하는데 쓰고 싶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회 등이 차별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하는데에는 제약조건이 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서비스

국가기든 지방자치단체이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는 대부분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이다. 재화·용역관련 차별금지법을 보면 이동권, 정보접근권, 금융서비스 이용, 문화, 예술, 체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과 관련이 있다. 하나씩 따져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다른 영역에 해당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따로 구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전 영역을 조정할 수 있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장애인의 차별을 줄이고 이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기능을 해야 한다.

6. 다시 당사자로

한명의 장애인 자신의 장애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며 활동할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의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한 몇몇 사람들의 논의로 정답을 찾을 수는 없다. 당사자 개개인의 목소리가 더 많이 모아지고, 표출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과가 아무리 많아져도 누군가는 차별을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 그 한명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이고, 그 한명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말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힘을 주어야 한다.

그 한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노력하며 소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자체가 차별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례는 없어야 하고, 동일한 형태의 차별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강조되어 왔고, 실천해왔던 것은 당사자들의 권리인식과 문제제기 노력, 지역사회의 이해와 인식개선, 행정기관 등의 노력이었다. 느리더라도 쉬지 않고 장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꾸준히 옳은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4

사법·행정서비스 및 참정권 영역

김상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사법·행정서비스 및 참정권 영역

김상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1. 사법·행정서비스 및 참정권 영역에 관한 평가

※ 그 동안 장애 차별의 개별 사안이 시정되고 더 나아가 장애 차별을 낳았던 제도 개선이 가능했던 원동력은 결국 장차법이 적용되고 구현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결정례집¹⁾에서 사법·행정서비스 및 참정권 관련 진정 사건의 인용례를 아래에서 정리함으로써 위 영역에 관한 평가에 갈음하기로 한다.

가. 2010. 1. 15.자 09진차664 결정[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 (1) 지적장애 2급 피해자가 경찰서에 3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수사기관이 매회 변호인의 조력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지만(제1회 조사시에는 변호인의 수사접견도 있었음),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하여 조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 바 없는 사안에서,
- (2) 장차법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 (3) 위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사람들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장애인임을 인

1) 국가인권위원회는 크게 차별시정분야, 침해구제분야, 인권정책분야로 분류하여, 현재까지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각 4집의 결정례집을 발행하였다.

지한 피의자에게 장차법에 따라 보호자 등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미리 고지하는 것이야말로 장차법 제26조 제6항 후단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4) 위 결정은 형사피의자에게 ‘미란다원칙’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처럼, 장애인 관련 형사절차에서는 장차법상 장애인에게 보장된 [보호자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 ‘미란다원칙’과 함께 또 추가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2009. 8. 31.자 08진인2835, 08진차877, 08진차874(병합) 결정[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 (1)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장애인복지예산확충 관련 기자회견에 참가하려고 하고 경찰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남성경찰관에 의한 여성장애인 진압행위의 장애인차별은 인정하지 않은 반면,
- (2) 휠체어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분리행위에 대하여는, ‘전동휠체어는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전동휠체어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신체활동 불가로 인한 전동휠체어와 분리되는 경우 초래되는 심리적, 정신적 불안감, 전동휠체어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예기치 않게 생명이 위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전동휠체어와의 분리는 가능한 피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분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그 분리시간은 최단시간이어야 한다는 선행 결정을 거시한 후(06진인1851 등),
- (3) 피진정인들이 진정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이동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후, 중증장애인들로부터 휠체어를 분리하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침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 2008. 12. 3.자 08진차920 결정[선거권 행사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 (1)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은 시각장애인의 투표를 위하여 투표보조용구 2개를 미리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투표관리관이 종이로 만든 투표보조용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

2)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영미법상 원칙을 말한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의 이유와 고지)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원칙의 채용이라 할 수 있다.

당일날 기표소에 비치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바람에,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가족과 동반하여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마친 사안에서,

- (2) 피진정인이 투표 당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특수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 선거권자가 기표함에 있어 타인의 보조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면 이는 피진정인이 민주선거의 기본원칙인 비밀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고, 진정인은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라. 2008. 8. 8.자 08진차728 결정[시각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 (1) 피진정인 1.은 公社인데,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른 협의취득을 위하여 보상협의안내문 및 개별 보상금내력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우편 발송함에 있어서, 1급 시각 장애인인 진정인에 대하여 점자 인쇄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진정인이 피진정인 2. 지자체에게 위 보상협의안내문 및 개별 보상금내력을 점자 인쇄를 요구하였음에도 피진정인 2.가 거부한 사안에서,
- (2) 피진정인들이 1급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인식할 수 없는 활자 인쇄물로 송부하였을 뿐 점자 보상협의안내문을 송부하지 않은 이상, 이는 진정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진정인에게 토지보상법에 의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하였고,
- (3) 피진정인들이 구두로 설명을 대신한 것은 장차법 제2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2008. 7. 23.자 07진차838 결정[장애인등록증 점자 미표기에 의한 차별]

- (1) 보건복지가족부 및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하여 1급 시각장애인에게 교부하는 장애인등록증은 복지카드와 복지신용카드 2종이 있는데, 위 등록증은 주민등록증 및 기타 신용카드의 제질, 규격과 동일하며, 위 등록증에는 성명, 주민번호, 장애종류, 장애등급, 주소, 사진, 발급일, 발급기관, 주소변경란, 보호자 연락처, 장애인등록일 등의 정보가 표기되어 있음에도, 점자 표기로는 발급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 (2) 1급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주민등록증 및 기타 신용카드와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장애인등록증을 촉각으로 식별하는 것을 불가능하여, 중증 시각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그 내용을 인식하고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는데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결과적으로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³⁾.

바. 2007. 1. 10.자 06진차50 결정[장애를 이유로 한 복지관 이용 차별]

- (1) 안산시장은 대한주택공사 소유 종합사회복지관(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의 사용권을 인수하여 증축공사를 마쳤는데, 지상 1층은 행정사무실, 관장실, 화장실 등이고, 지상 2층은 한글교실, 수학교실, 악기교실, 컴퓨터 교실, 결식아동 석식 제공 공간, 방과후 교실, 청소년 공부방, 상담실, 어린이도서실, 강당,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1층과 2층은 경사가 급한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장애인용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 (2) 지자체에게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이 같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임을 확인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사. 2006. 12. 22.자 06진차208 결정[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서울광장 이용 차별]

- (1) 진정인들은 1급 중증장애인들인데 서울광장의 잔디광장에 있던 중 서울특별시 청원경찰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청받고 잔디광장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던 사안에서,
- (2) 진정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신체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본질적 수단인 바, 비록 100kg이 넘는 전동휠체어로 인해 서울광장의 잔디가 손상될 위험이 없지는 않지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하여 서울광장을 출입하고 공공시설을 향유하고 즐길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위한 본질적 권리에 속하는 이상,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와 대등하거나 우월한 다른 가치의 실천

3) 이는 2008. 5. 11.자 07진차665 결정[장애인복지카드상 장애종류 기재에 의한 차별]에서,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의 종류 및 등급 등 장애정보를 표기하는 것이 장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결정과 구별된다.

이 요구될 터인데 잔디손상이라는 이유는 장애인들의 서울광장 출입을 제한할 합리적 사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 2006. 11. 6.자 06진차155, 270(병합) 결정[장애인의 투표권 및 선거정보접근법 요구]

- (1) 장애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선거정보로부터 소외 등으로 투표권 행사 및 선거정보접근에 차별을 받아 왔으므로, 그 시정을 권고해 주길 바란다는 진정에 관하여,
- (2)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및 편의시설 구비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42개 편의시설 중 ① 투표보조인 지원, 투표소 1층 설치, 복도/통로의 유효폭, 출입구의 유효폭, 주출입구 접근로의 유효폭/공간 등에서 90% 이상 설치 판정을 받은 곳은 5개 편의시설에 불과하고, 나머지 39개 편의시설은 90% 미만 설치에 그쳤고, ② 계단 손잡이, 대변기 사용중 표시, 소변기 수평/수직 손잡이 등 6개 항목은 이를 설치한 투표소가 10%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조사되어, 장애인 투표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발견되었고,
- (3)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및 점역 미비의 점과 관련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제약율이 16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후보자들은 77.3%, 구청장, 시장, 군수, 시도위원 후보자들은 19% 수준이고, 점역 내용도 반드시 점역을 해야 하는 내용의 기준이 없어 후보자마다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들의 선거정보접근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 (4) 수화통역은 16개도 중 경기도, 충남, 경남, 제주 등 4개 시도는 100% 실시하지 않았고, 자막방송은 16개 시도의 실시율이 15.7%에 불과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선거정보접근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5) 위와 같은 조사 끝에, 장애인의 투표장소 접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자막방송의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자. 2005. 3. 28.자 04진기95 결정[점자선거공보 개선]

- (1) 당시 공직선거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은, 점자선거공보를 포함하여 선거공보의 규격에 대해 법은 2매로, 규칙은 길이 26cm 너비 19cm로 그 매수와 크기를 규정하고, 목자 선거공보의 무게는 100g/m² 이하, 점자선거공보는 120g/m² 이하로 제한하였는데,
- (2) 이와 같은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은, 점자의 특성과 한계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 점자 선거공

보의 경우 내용을 발췌할 수 밖에 없는 점(크기의 제한),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무게의 제한) 등의 차별해소를 바라는 진정에 관하여,

- (3) 동일 내용의 목자를 점자로 옮길 경우 점자는 일반적으로 목자의 약 3배 분량의 지면이 소요되고, 종이가 얇을 경우 글씨가 지워지는 등 가독성의 문제가 있어, 120g/m²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점자선거공보의 매수를 제한하고 무게를 120g/m²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그 타당성이 없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수제한 및 무게 제한 관련 부분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2. 사법·행정서비스 및 참정권 영역에 관한 제언

가. (성폭력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인, 진술조력인 제도

- (1) 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11048호, 시행 2012. 9. 16.)가 시행되고 있지만, 2012. 12. 18. 공포된 개정법률(법률 제11556호, 2013. 6. 19. 시행 원칙)은 법률조력인 제도(제27조)와 진술조력인 제도(제35조)를 신설하였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위 개정법률에 의한 사법적 조력이 (운영의 실질화, 내실화에 따라)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겠다.
- (2) 개정법률 제27조 규정한 법률조력인 제도(2013. 6. 19. 시행)는, 모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확대되었는데(제1항), 법률조력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 진술(제2항), 공판절차에서 출석하여 의견 진술(제3항), 소송기록에 관한 열람 등사를 할 수 있고(제4항), 검사는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제6항).
- (3) 개정법률 제35조~제39조가 규정한 진술조력인(2013. 12. 19. 시행)는,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형사절차 조력을 위한 제도인데(제35조 제1항),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선정된다(제35조 제2항).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제36조), 공판절차 및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제37조).

나. (성폭력피해 장애인에 대한) 수사 영상물의 증거능력 부여

- (1) 현행 법률에서도, 수사기관은 (성폭력피해 장애인이 동의할 경우)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녹화할 수 있고,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다.⁴⁾ 즉 현행 법률에서도, 성폭력피해 장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1회의 진술로써, 그 이후 법정에서 출석·진술하여야 할 위험(제2차 피해)이 차단할 제도적 장치는 있다.
- (2) 그러나 현실은 공판절차에서 성폭력 가해자인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진술조서, 그 진술이 녹화된 CD 등] 증거 사용에 부동의하면, 검찰은 그 증거능력 부여를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원은 직접주의, 공판중심주의, 1심중심주의 등의 이념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를 소환하는 경향이다.
- (3)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법률 하에서도, 제26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영상물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음에도, 성폭력피해 장애인에 대한 소환, 선서, 증언은 여전히 이루어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성폭력피해자(장애인)가 위와 같은 법원 소환, 선서, 증언을 성폭력피해 그 자체(제1차 피해)에 이은 제2차 피해로 느낀다면, 위와 같은 사법절차의 경향과 관행은 再考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개정법률이 영상물 녹화절차, 영상물에 관한 피해자 통제절차 등을 보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재고의 필요는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4)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검색 방식 개선(사건번호 검색 방식)

-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태도, 인권감수성 확산 등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압축되어 있고, 현대 행정절차 및 행정결과의 검색에서 웹접근성을 뺄 수 없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에 관한 인터넷 검색 환경은 정확성과 신속성이 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 (2) 위와 같은 안목에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 결정례 일반 검색 방식을 보면, 사건명, 진정요지,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례첨부파일 총 5가지 분류 下에서 임의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된 결정례를 일일이 열람함으로써 비로소 원하는 결정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① 사건명이 매우 기계적이거나 통일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사건명에 의해 검색이 가능해 보이지 않으며, ② 진정요지 및 결정요지가 검색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③ 참조조문 역시 당해 사건으로부터 적절한 결정을 검색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결정례첨부파일의 분류는 검색된 결정례를 찾은 이후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결정례 검색을 위한 기준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3) 결정례 상세검색 방식을 보아도, ① 구분란에 침해, 차별, 기타, 권고및의견표명의 4분류, ② 회의종류란에 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정책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위원회 등 10개, ③ 회의년도, ④ 검색항목, ⑤ 검색어의 분류가 있다. 그러나 구분, 회의종류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자료 편성에는 유용한 기준이 될지 몰라도, 국가인권위원회 외부에서 결정례를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 시민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분류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 다음 기준들은 일반 검색 방식에서 제기한 비난이 그대로 타당하다.
- (4)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에 관한 행정서비스 기관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검색도 장애인 차별을 극복하거나 장애인 차별을 인식할 수 있는 유력한 행정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제안하자면, 사건번호를 통한 결정례 검색이 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검색 시스템은, 이미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인권위 조사에 의한 인정사실, 그에 관한 규범적 판단 등을 좀더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도, 1회(one shot) 검색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 아마도 近似해 보일 것 같은 某某 기준을 설정해 놓고, 역시 近似한 것으로 생각되는 某某 검색어를 넣어 걸리지 다행히 걸리지 않으면 같은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할 투망식 혹은 낚시걸이식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우연에 의한 검색 방식은, 검색자를 지치게 하고, 그 의미

에서 인권 친화적이지 않아 반인권적이다. 검색자의 인권을 위해서나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나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미 대법원 판례 검색 방식으로 자리를 잡은 사건번호 검색 방식을 인권위 결정례 검색 방식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본다.

- 일시 및 장소 : 2013. 4. 16.(화) 14:00, 하나은행(대전중구 오류동 소재) 10층 강당
- 사회 :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 좌장 :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1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평가 및 전망	
구분	내용	시간
개회 및 공동축사	❖ 개회선언	14:00~14:05
	❖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14:05~14:10
	❖ 윤태희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장)	14:10~14:15
	❖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4:15~14:20
발제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이지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14:20~14:40
	[발제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책 추진 및 향후계획 전우광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14:40~15:00
	[발제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실효적 이행을 위한 평가 및 제언 두오균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15:00~15:20
	휴식	15:20~15:40
제2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발제 및 토론	[발제1]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편의제공과 접근권 향상을 위한 과제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40~15:55
	[발제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55~16:10
	[토론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성년후견제와 사회복지의 관계 김명희 (시립장애인복지관 과장)	16:10~16:20
	[토론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박흥기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16:20~16:30
	[토론3]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주시설 김순영 (대전여성연대 사무국장)	16:30~16:40
	[토론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및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제도의 장애인차별 이종준 (합동법률사무소 행복 변호사)	16:40~16:50
	[토론5]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과 성년후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조금주 (상명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6:50~17:00
	[토론6]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편의제공과 접근권 향상을 위한 과제 김다현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17:00~17:10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10~17:25
	폐회	17:25~17:30

제 1 부

대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평가 및 전망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 이지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발제 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책 추진 및 향후계획

- 전우광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발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실효적 이행을 위한 평가 및 제언

- 두오균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이지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이지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는 6개 지역에서 공통으로 발제하는 것이므로 자료집 6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책 추진 및 향후계획

전우광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책 추진 및 향후계획

전우광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I. 들어가며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으면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규정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주를 점차 확대해왔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미흡했던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왔다.

장애인복지의 목적 또한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 4. 10제정되고 2008. 4. 11부터 시행됨으로써 금년이 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이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

정 이후 장애인복지정책이 ‘권리’의 관점에서 탈시설화,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생활과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에 있다.

그동안 대전시는 장애인차별이 없는 정책목표하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 「통합사회」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다.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2011. 8)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 인권증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본 계획이 수립되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장애유형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책비전을 ‘국민 100% 행복사회’로 정하고 ‘모두가 함께 가는 사회통합’ 목표하에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지원」이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리시에서도 중앙부처 복지흐름에 맞춰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계획이며, 본 발제문에서는 대전시의 장애인복지 일반현황과 그동안 추진해온 장애인인권에 관련한 주요사업들을 소개하면서 앞으로의 장애인복지시책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대전광역시의 복지환경 변화 및 성과

1. 등록 장애인 수 증가

2012. 12. 31 현재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575,600세대에 1,524,583명이며 이중 등록장애인은 71,647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장애인의 년도별 변동 추이를 보면 장애

인등록자 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장애인등록 변화를 보면 2008년말 현재와 2012년도를 비교해 볼 때 11,648명이 증가하여 11.3%가 증가하였다.

〈표 1〉 장애인 등록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명)

계	지체장애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호흡기등 기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			
71,647	36,707	4,968	676	7,905	7,166	8,018	6,207

〈표 2〉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수(명)	64,348	68,835	71,164	71,626	71,647
비율(%)		7.0%	3.4%	0.6	0.03

※ 최근 장애인등록 재심사 등 등록기준 강화로 증가추세 변동이 작은 것으로 분석됨

장애인 전체 인구가 전체 시민의 4.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은 수치가 아닌만큼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데 앞장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지체장애인 등 15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주로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 이어서 발달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이 있다.

2. 장애인복지예산 증가

장애인복지과 신설(2008. 7)과 함께 장애인복지예산도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시 전체예산 3조 3,375억원의 3.07%인 1천 348억원 이다. 이는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시의 2008년도 대비 2배가 넘는 130%가 증가하였으며,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10.3%가 증가한것으로 대전광역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장애인복지과 소관예산만 등재한 것으로 타 부서의 장애인복지관련예산 포함시 이보다 훨씬 높음)

〈표 3〉 년도별 장애인복지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예산액	44,870	53,188	64,813	82,164	93,835	103,483
증가율(%)	23	18.5	21.8	26.7	14.2	10.3

위의 〈표 3〉과 같이 매년 예산이 대폭 늘어난데에는 최근 우리시가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로 중점방향을 설정하고 차별이 없는 복지, 균형있는 복지를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이토록 예산이 매년 증가한 원인을 보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 확충, 장애인평생교육사업 추진, 충청권 최고 규모의 대전 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건립, 장애인복지공장 건립 및 운영, 농아인복지관 건립 추진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시설 증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있어서도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8년 77개소에서 2012년말 현재 119개소로 최근 5년간 55%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애별 특성을 고려하고, 보호자 부담경감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확충,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 등을 다양하게 늘려나간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 년도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시설수	77	83	99	107	119	
증가율(%)		7.8	19.2	8.1	11.2	

〈표 5〉 장애인시설 종류별 분류

계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재활시설
	소 계	유형별 거주등	단기 거주	공동 생활	계	복지관	주간 보호	체육 시설	심부름 센터	수화 통역	점자 도서관			
119	57	18	9	30	45	5	30	3	1	5	1	14	1	2

〈표 6〉 대전시 관내 지역별 시설분표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계		119	28	18	26	21	26
거주 시설	소계	57	15	9	13	7	13
	유형별거주등	18	2	1	10	1	4
	단기거주	9	1	2	1	2	3
	공동생활	30	12	6	2	4	6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소계	45	11	8	8	9	9
	복 지 관	5	1	1		2	1
	주간보호	30	8	5	6	5	6
	체육시설	3			1	1	1
	심부름센터	1		1			
	수화통역센터	5	1	1	1	1	1
	점자도서관	1	1				
직업재활시설		14	2	1	5	2	4
생산품 판매시설		1				1	
의료재활시설		2				2	

4. 장애인복지·인권 최우수 도시

우리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 4월 제정되고 2008. 4월 시행됨을 계기로 하여 기존의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소속되었던 장애인계(직원 3명)를 2008. 7월 전국에서 서울, 경기도에 이어 3번째로 장애인복지과(직원 12명)로 조직을 개편하여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및 국회가 공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비교연구’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사회복지사업, 특히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실제 지역간의 장애인복지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떠한가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1년도 및 2012년도 전국 시·도별 비교연구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전국 장애인복지·인권 최 우수 도시로 대전이 선정된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사항으로 1)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분야, 2)보건 및 자립지원 분야, 3)복지서비스 지원 분야, 4)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분야, 5)복지행정 및 예산 분야 등 5개 영역의 50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이다.

II.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주요시책 추진현황

□ 장애인 차별금지 영역에 대한 고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차별금지영역을 보면 주로 1)고용 2)교육 3)재화와 용역의 제공 4)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5)모·부성권, 성 등 6)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7) 장애여성·장애아동·정신적 장애 등에 차별금지 사항을 정하고 있고, 이에 차별을 당했을 때 1차적으로는 장애인인권단체에서,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를 통해 시정권고 등 처리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우리 대전시 나름대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장애인 인권단체 지원은 물론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이는 대전광역시의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정책이 시혜 관점이 아닌 권리 관점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처럼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차별금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한 우리시의 주요시책들을 정리하였으며 앞으로 추진할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대전시의 주요사업 추진현황

1.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틀마련

가.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2010. 12. 31)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를 2010. 12. 31 제정하였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① 주간·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운영 ② 평생교육사업 ③ 일자리사업 ④ 재활치료사업 ⑤ 가족지원사업 ⑥ 당사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⑦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기존 지원내용을 활성화 시키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 (2011. 8. 5)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4. 행정·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또한 2011. 10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11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2012. 2월과 2013. 1월에 정기회를 개최하여 발전방안토의를 가진바 있다. 현재 대전복지재단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2013. 2월에 기본계획수립 공청회

를 개최한바 있고, 4월중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주요사업 추진현황

가.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장애인의 차별금지 예방을 위해 「대전장애인인권센터」에 2011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에 위탁·운영토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12년 주요활동을 보면 인권상담 280여건, 초·중학교대상 1,010명 교육, 인권지킴이교육 등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에 많은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나. 시 및 자치구 주관 공무원대상 인식개선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1년도에는 시 및 구청에서 690여명을 교육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인재개발원(공무원교육원)에 장애인 인식개선과목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가고 있다.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

대전시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우선 순위 역시 장애인평생교육에 우선을 두고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원 건립·운영, 장애인직업교육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서구 가수원동에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병행하여 장애인평생교육원 건립을 추진하여 2012. 12월 준공, 2013. 2. 12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대전시는 발달장애인 등 지적장애인 위주의 특성화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대표적인 지원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2011. 3월부터)

- 교육인원 : 18세 이상 30세 이하 발달장애인 45명, 농아장애인 60명
- 교육기관 : 사회복지법인 밀알 등 3개단체
- 교육내용 : 생활공예, 제과제빵훈련, 바리스타 교육, 정보화교육 등

② 대학과 협력, 장애인직업교육과정 운영('11부터)

지적·자폐성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식과 기술이 접목된 직업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해 자립역량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대학과 협력사업으로 대전보건대학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2011년부터 20 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 교육인원 : 20명 / 대전보건대학교 협조(시 지원 63백만원)
- 교육내용 : 직업기술능력, 전문자격증 취득, 현장실습 등 / 1년과정
- 추진성과 : 자격증 취득 / 바리스타 8명, ITQ아래아 한글 3명

③ 장애인평생교육원 운영

현재 개원초기 시작단계이나 대학과정과 정보화교육 등 여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머지않아 좋은 성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남부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평생교육원 운영('13. 2. 12 개관식)
- 위치 : 서구 가수원동 / 부지 6,607m², 건물 : 6,303.85m²(지하1, 지상3)
- 용도 : 복지관 4,280m² + 평생교육원 2,024m²(2층 / 상담실, 정보화실, 교육실 등)
- 조 직 : 장애인복지관내 평생교육팀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평생교육원

라. 장애인가족 지원 등 장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복지 추진

장애인을 돌보는 어려움 등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2개소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복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장애인인권센터 등은 2011년부터 시작한 시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들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는 구별 1개소씩 확보, 5개소를 운영중으로 이 는 타 시·도에 비하여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② 장애인재활지원센터 ③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④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지원 센터(2개소) ⑤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⑥ 장애인인권센터 ⑦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⑧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⑨ 지체장애인 편의지원센터

마. 장애인시설 인권실태 조사 강화 및 체험홈 운영

장애인 시설의 인권실태조사를 2010년 8월에 대전발전연구원 및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특히 지난해 영화 도가니 상영이후 인권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해당 시설장들과 간담회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대책 회의(2011. 10. 4)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장애인 다수 입소시설에 대하여 공동조사(2011.11.8.~11.9) 등 인권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최근 2012. 11월에는 장애인거주시설 18개소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한 바 있으며, 대전복지재단 연구팀을 중심으로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에 대하여는 시설종사자까지 조사를 한 바 있다. 이처럼 시설안전관리 및 거주자 인권에 저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시에서는 2011년도 하반기부터 탈 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체험홈」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등 탈 시설정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체험홈 5개소에 11명이 입주하고 있다.

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주관 체험홈 설치 운영

- 설 치 : 3개소(정원 8명, 현원 7명) / 주거형태 : 아파트
- 입주대상 : 생활시설 및 재가 중증장애인중 희망자
- 체험기간 : 6개월~2년까지
- 운영기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한밭, 보문)

구 분	위 치	규 모	성 별	정 원	입 주 자	비 고 (전거주지)
계		3개소		8	7	
한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용문동 한마음(아)	14평	여	2	2	시설
		17평	남	2	2	재가
보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판암동 주공(아)	25평	여	4	3	시설

- '13년 사업비 : 95,000천원('12년 지원 : 38,700천원)

② 시설운영 주관 체험홈 설치 운영

- 설 치 : 2개소(정원 8명, 현원 8명) / 주거형태 : 아파트 및 개인주택
- 입주대상 :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중 희망자
- 체험기간 : 3년(필요시 1년 단위로 추가연장 가능)
- 운영기관 : 한마음의 집, 온달의 집

구 분	위 치	규모(㎡)	주거형태	이용자	성별	비 고 (전거주지)
계		2개소		8		
한마음의집	서구 정림동 삼정하이츠	124(37평)	아파트	4	남	시설
온달의집	대덕구 대화동	88.12(27평)	개인주택	4	여	시설

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통해 장애인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되는 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데 2013년 목표인원은 2,768명으로 21,80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중에 있다.

이밖에도 우리시에서는 활동지원의 부족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활동보조를 증가시켜 왔는데 이는 타 도시에 비하여 많은 편이지만 장애인관련단체 등에서는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신청자격 확대 : 장애1급 → 1~2급

- 1급 : 개인별 특성에 따라 20~80시간 차등지원
- 2급 :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중 18세 미만 아동, 독거·임산부·부부장애인 40시간 지원

사.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가장 중요한 사업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들 수 있다.

(저상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965대 중 50%를 저상버스 교체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2012년말 현재 136대를 확보하여 전체버스의 14.1%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 목표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비 50%부담하에 버스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차량 1대당 2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국비가 매년 확대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1,2급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시에서는 현재 90대를 확보(리프트 장착 35대, 임차택시 55대)하고 있어 이미 법정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지체1급~2급, 뇌병변 장애인이 6,972명이므로 리프트장착 차량 35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승합차량 35대를 포함하여 총 90대를 확보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승합차량 5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활유도

우리시의 정책목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활유도」와 비장애 및 장애구별 없는 「통합사회 실현」이라는 2가지의 큰 흐름에서 추진되고 있다. 바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우리시의 장애인 정책목표중에 가장 우선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장애인고용 수범도시 육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① 장애인 무지개 복지공장 건립 및 운영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대덕구 문평동 77-5번지 9,682.8㎡ 부지에 지하1층·지상 2층, 연면적 4,057.43㎡(2개동)의 규모로 2009. 8. 18 착공, 2010. 9월 준공하였으며, 총소요사업비는 6,680백만원으로 국비 595백만원, 복권기금 2,251백만원, 시비 3,834백만원이 투입되었다.

무지개복지공장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 직영체계인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동에는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이 운영되고, 근로동에는 70~80명의 장애인고용을 목표로 핸드타올, 복사용지, 제과제빵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61명(근로작업장 38, 보호작업장 23)이 일하고 있다.

- 장애인근로사업장(공장동) : 근로자 정원 50명 / 현원 38명
 - 월평균 임금액 : 850천원(실수령액 790천원) / 중증장애인(1~2급)이 80%
 - 생산품목 : 복사용지, 점보롤 화장지, 핸드타올, 제과제빵 등
 - ※ 2012년도 매출액 : 15억원
- 장애인보호작업장(복지동) : 정원 30명 / 현원 23명
 - 월평균 임금액 : 100~150천원(작업능력에 따른 차등지원)
 - 근로내용 : 단순 입가공(자동차 라지에이터 사상작업, 치간칫솔 포장작업)

②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및 계획

우리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발굴한 몇가지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한 밧데리 충전장소(일명 행복충전소)에 장애인을 배치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준 사례라든가, 장애인이 생산한 제빵과 장애인이 커피를 파는 「건강카페」 사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도 장애인 일자리 추진》

- 발달장애인 등 복지일자리 제공 : '11년 458명 → '12년 1,033명
 - 발달장애인 등 **복지일자리** 제공 : **460명**
 - ※ 행정도우미 88, 안마사업단 50, 복지일자리 292, 행복충전소 30
 -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12. 10) : **51명** 취업
 - 무지개복지공장 등 직업재활시설 운영 : 14개소 **483명**
 - 건강카페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 **39명** / 10개소 설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건강카페」 설치 : 최초 시청점(1호)을 비롯해서 10호점 설치하였으며 고용창출면에서 볼 때 장애인 39명, 비장애인 10명 고용창출은 물론 주요성가로 장애인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탈 수급자 탄생 등 자립생활기반을 제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카페 현황

- ① 시청점, ② 하나은행점, ③ 평생교육문화센터점, ④ 한밭수목원점, ⑤ 한밭도서관점, ⑥ 국민생활관점, ⑦ 서구청점, ⑧ 동구청점, ⑨ 시립장애인복지관점, ⑩ 유성구장애인복지관점

《2013년도 장애인 일자리 추진 계획》

- 발달장애인 등 복지일자리 제공 : '12년 1,033명 → '13년 1,085명으로 확대
 - 발달장애인 등 복지일자리(327명), 주민센터내 행정도우미 (88명)
 - 행복충전소 관리(30명), 건강카페(50명), 채용박람회(50명)
 - 직업재활시설 14개소(49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업단(50명)
 - ※ 저소득장애인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원 : 19,838명 18,840백만원

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재활병원) 운영

국책사업인 권역별재활병원과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센터 건립을 2008. 5월부터 충남대학교 병원과 협의하여 유치를 확정하고 중구 문화동 6번지 95,352㎡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건축연면적은 40,725㎡로 2010. 4. 1 착공하여 '12. 8월에 준공하고 '12. 12월부터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다.

재활병원은 152병상,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질환전문센터는 157병상으로 충청권 최대의 규모로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이며 그동안 서울권에 집중되던 장애인 의료재활이 지방에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 장애없는 생활환경인증(BF) 획득 및 편의시설 확충

대전시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시설물 확충을 추진하여 시청사의 경우 2008. 12. 31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없는 생활환경인증(BF1등급 본인증)을 1호로 받은 바 있으며, 2012년말 현재 본인증을 받은 현황을 보면 전국 51개소중에 대전이 31개소로 전국에서 제일 높게 인증을 받아 장애인 등 노약자들이 편안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결과를 기본으로 제3차 편의증진 종합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200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 조사결과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물 동수는 3,035동에 편의시설 설치율이 74.5%였으나 매년 점차적으로 확충하여 2014년도에는 90%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표 7〉 제3차 편의증진 종합 5개년 계획수립 추진계획

대상건물수	2008년설치율	목표 설치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035동	74.5%	75%	81.0%	85.0%	88.0%	90.0%

또한, 최근 건축되고 있는 모든 대상 건물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제도를 활성화하여 장애인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1998년 이후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5,000개소로 추정되는 건물에 대하여 장애인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매개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 민간기관(편의시설시민추진단, 편의시설설치 지원센터 등)과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늦어도 11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Ⅲ. 앞으로의 주요시책 추진방향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추진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에 근거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포함할 예정이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행정·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조달 방안
-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장애인복지관 및 평생교육원 내실운영

장애인평생교육이 우선 필요한 20세~30세에 해당하는 성인장애인 3,349명중에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1,407명에 해당된다. 매년 특수학교(학급) 졸업하는 장애인은 150여명 이상이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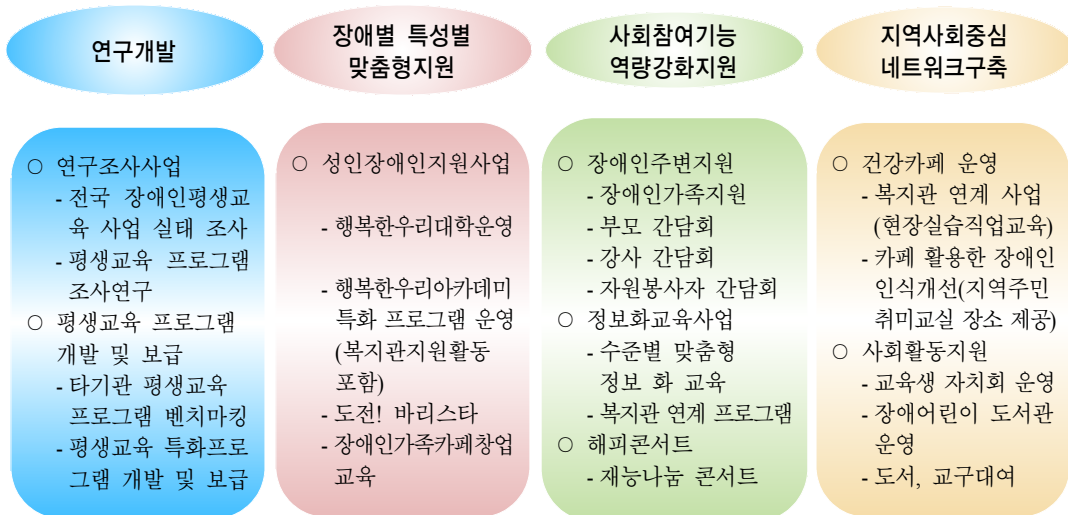
과정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은 확대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는 결국 장애인당사자의 재활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의 보호부담이 경감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 8〉 20~30대 장애유형별 현황

구 분	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언어	기 타
20~30세	3,349	1,266	141	225	185	1,532

서구 가수원동에 장애인복지관(행복한 우리복지관)과 장애인평생교육원을 건립하여 2012. 12월 준공함으로써 현재 대전시에는 6개의 장애인복지관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특히, 최근 건립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평생교육원의 운영은 복지관이 장애아동의 조기재활치료 및 보호위주의 기능인 반면 장애인평생교육원은 성인위주의 다양한 교육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이 삶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여건조성과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목표로 장애인평생교육의 시범 모델로 육성 추진할 계획이다.

〈표 9〉 주요 장애인평생교육사업 현황



□ 청각·언어장애인지원관 건립

우천시 6개 장애인복지관중에 중구 소재 시립산성종합복지관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종합복지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전문성 부족 등 이용에 어려운 실정으로 「청각·언어장애인지원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어 8천여명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2011년도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자자심사 및 지방재정계획 등을 반영하였으며 2012. 12월 착공하여 2014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동구 원동 85-5 / 규모 : 부지 550m², 건물 2,911m²(지하2,지상7) • 사업비 : 63억원 (국비 3, 특별교부세 10, 시비 50) ⇨ 추진목표 : 착공('12. 12) → 준공('14. 6) → 개원('14. 하반기)
----------------	---

□ 여성장애인 성폭력예방 시설 건립

도가니 사건이후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관심증대와 함께 장애인단체 등 시민단체에서도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해왔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설 건립비 지원 요청결과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현재 건립중에 있으며, 2013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있다.

- 사업위치 : 대덕구 대화동 35-601
- 규 모 : 부지 212m², 연면적 297m² / 정원 20명 규모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제 운영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제는 법원의 심판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제도로 2013.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의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 혼인·이혼 등 신분결정의 동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부모사후 권리보호 등 실질적 국가보호체계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과 민간기관이 후견인 양성 및 교육, 지원을 담당하고,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 및 권한설정, 후견인 등기 등을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년후견비용을 지원 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보호체계가 확립되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IV. 맺으면서

□ 차별이 없는 통합사회 실현을 위해

현재 우리 대전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7만여명으로 시 인구의 4.7%에 해당하는데 이는 인구 100명중 5명은 장애인으로 이들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차별적 요인을 스스로 없애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법령의 준수여부를 떠나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대전시의 장애인복지목표를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에 구별이 없는 즉, 차별이 없는 통합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장애인복지 수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것도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수립중에 있는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역시 장애인복지정책이 시혜 관점이 아닌 권리 관점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의 불편함을 최소화함은 물론 인권보장에 대한 체감도 역시 향상될 수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서의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장애인차별금지 실천방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는 사회 각계각층의 비장애인이 솔선하여 실천하여야 할 과제다. 역설

적으로 말하면 비장애인들을 위한 규범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더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천적인 장애가 발생되어 우리 앞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각 분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했으면 한다.

막상 차별을 구분함에 있어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영역들을 보더라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에서의 차별금지(교육, 승진, 배치 등)

교육에서의 차별금지(입학거부, 전학강요, 통학불편 등),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의 불편 등 제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제한(관람석 불편, 위생시설 등), 참정권 보장 등 우리 일상생활과 연계한 모든 기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 만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생각하고 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의식의 전환과 함께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가슴으로 소통할 때 우리사회는 밝고 아름다운 삶의 질이 향상된 복지사회가 될 것이다.

□ 생애주기별 차별성을 고려한 정책

장애연령에 따라, 장애상태에 따라 각자 필요한 욕구사항이 다르고 이에 맞는 보호시책 또한 신속하게 변하고 있다. 최근들어 장애아동지원법이 제정되고, 발달장애인지원법도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그 만큼 장애별, 생애주기별 보호나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시행 5주년을 맞은 지금 그동안의 우리사회는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여러분야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의 예를 보더라도 영화 관람에 출입이 어렵다거나 자막처리가 되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은 국내 영화를 보기 어렵다거나 하는 불편이 아직도 많다는 것은 법이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이해가 전제된 교육과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 기업체 등 각 분야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장애인들이 불편해 하는 요인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장애인들과 대화하면서 개선해 나갈 때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환경 불편에 앞서 마음의 불편부터 해소가 될 것으로 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실효적 이행을 위한 평가 및 제언

두오균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실효적 이행을 위한 평가 및 제언

두오균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장애인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장애인단체들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이 5년이 지나가고 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천부적 인권인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세계인권선언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동권리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이 공통적으로 명시하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헌법 제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짓고 있으며 또한 헌법 제 11조 제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34조 제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짓고 있다. “라고 규정짓고 있는 등 우리나라 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특별히 규정짓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법 조항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동은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한 한 개인의 고유기능이며, 사회는 각 개인의 이동과 이동에 다른 제반 활동에 의하여 유지된다. 따라서 이동의 권한을 확보하고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개인이 갖는 고유의 권한을 확보함은 물론 사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경우 장애인은 오랫동안 이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왔다. 도로 및 건물은 장애인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시설 구조로 방치되어 왔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은 장애인의 승·하차와 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되고 운영되어 왔다. 이렇듯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형태의 생활안전¹⁾(이재은·유현정, 2007: 3)의 하나인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장애인의 생활안전에 치명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 및 편의 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기회차원이 아닌 권리 차원에서 평등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권의 문제는 어떤 의미로 장애인 및 생활안전의 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 만큼 기본적인 문제이며, 이것의 실천과 확충 없이는 결코 살기 좋은 복지사회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권의 문제는 법제정이 결론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실천과 지속적인 보완이 뒤따라야만 한다. 또한 이 범주 안에 속한 교통약자들,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실체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임태욱, 2005.) 본고에서는 이동권의 위험상황이 돌발했을 때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생활안전문제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과 그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장애인 생활안전 실태

국민생활의 위기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민생활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서, 정부의 대부분의 규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민생활 안전 보장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일반 성인에게는 위협으로 인지 되지 않는 요인이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같은 취약소비자에게는 심각한 위

1) 국민생활안전 위기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국민 생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 위협 요소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에 대해 대규모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재은은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위기를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하고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즉 장애인의 생활안전도 이제는 국가위기관리의 시스템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신체적 기능이 완전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소비자의 경우 안전사고에 노출될 빈도가 높으며 안전사고를 경험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일반성인보다 현저히 떨어져 취약소비자의 생활 안전에 대한 위해관리는 일반 성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국민생활안전관리는 계층별 특성에 따라 위해의 수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층별 안전관리 체계가 분리되어 적용되어야 한다(유현정 외, 2007: 22-25).

최근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06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들이 추가되거나 정비되어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표 3>계시된 바와 같이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통약자의 인구구성 비율이 총인구 대비 24.26%를 차지하고 교통약자 내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8%로 나타남으로써 장애인들을 배려한 교통 환경의 개선이 절실하다.

〈표 1〉 교통약자의 비율 (2007)

(단위: 천명)

구분	계	장애인 ²⁾	고령자	임산부 ³⁾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인구	11,955	1,379	4,810	470	2,991	2,305
총인구 대비	24.26%	2.80%	9.76%	0.95%	6.07%	4.86%
교통약자 대비	100%	11.54%	40.24%	3.93%	25.02%	19.28%

자료: 장애인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수, 2007./ 고령자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65세 이상/ 임산부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출생아수/어린이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5-9세/ 영 유아를 동반한 자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0-4세

2) 교통약자인구의 중복산정을 피하기 위해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 제외.
3) 출생인구에서 쌍태아 이상의 출생인구를 고려하여 추정.

1. 장애인 실태조사⁴⁾

〈표 2〉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불편하다	11.2	37.8	13.8	8.3	4.3	19.5	37.9	5.4	15.4	6.5	37.0	9.0	23.0	18.7	14.7	14.6
약간 불편하다	25.1	37.8	25.2	20.4	23.9	23.1	35.9	25.5	25.7	32.8	29.2	50.9	54.9	35.2	26.6	26.1
거의 불편하지 않다	45.3	20.7	42.0	53.6	39.8	39.8	23.9	45.2	41.3	43.4	29.6	9.2	22.1	37.7	34.0	42.3
전혀 불편하지 않다	18.4	3.8	19.0	17.7	32.0	17.5	2.3	23.9	17.6	17.2	4.2	30.9	0.0	8.4	24.7	1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29,200	255,832	250,622	272,854	19,148	144,897	16,237	87,889	58,144	17,796	18,226	8,703	2,426	15,922	14,572	2,482,468

출처: 보건복지부(2011)

〈표 2〉에 따르면 사회 및 여가활동 분야에서 전 장애영역에 걸쳐서 장애인의 40.72%가 집밖 활동 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도에 비해서 4.5%가 증가된 수치이다. 장애인들이 사회참여에 불편을 느낀다면 사회통합은 요원하여 질 것이다.

4) 장애인 실태조사란은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 나라장애인과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가구조사, 장애 판별조사 및 장애인의 장애특성, 경제상태, 취업 및 직업재활, 복지욕구 등의 개별조사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것임.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매 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여덟 번째에 해당됨.

〈표 3〉 집박 활동 시 불편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관련 편의 시설부족	70.5	49.7	39.6	48.9	13.2	12.9	10.8	8.4	63.2	78.8	74.6	60.2	0.0	51.1	7.1	54.9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18.9	39.3	47.8	40.3	23.9	66.6	52.9	52.8	36.8	0.0	8.6	15.0	0.0	36.7	34.8	31.9
주위 사람들의 시선때문에	9.3	9.2	8.4	6.5	55.0	20.5	36.3	38.8	0.0	0.0	0.0	18.8	100.0	9.6	48.3	11.1
기타	1.3	1.7	4.2	4.3	7.9	.0	.0	.0	.0	21.2	16.8	6.0	.0	2.6	9.8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71,638	193,231	97,860	78,229	5,391	61,792	11,984	27,171	23,907	7,008	12,063	5,207	1,891	8,584	6,022	1,019,972

출처: 보건복지부(2011)

〈표 3〉 장애인의 집박 활동 시 불편한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서’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8년도에 비하여 7.4%나 증가된 수치이다. 특히 지체장애인은 70.57%에 달하고 있어 많은 장애인들이 집박 활동을 원하고 있지만, 생활안전에 필수적인 편의시설의 열악성과 이동권 및 접근권의 부재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 주요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년	2008년
필요	전동휠체어	3.2(31,010)	7.7(103,711)
	전동스쿠터	2.7(26,165)	6.4(85,897)
소지	전동휠체어	0.9(11,831)	3.2(43,772)
	전동스쿠터	0.8(10,686)	2.8(37,597)

출처: 보건복지부(2008)

〈표 4〉 2005년부터 건강보험(의료급여)의 급여 품목에 포함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필요 및 소지율은 각각 7.7%, 6.4%, 3.2%, 3.0%로서 2005년 조사와 비교 시 타 품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필요 및 소지율을 보이는데 반해 이들 품목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

〈표 5〉 주요 장애인보조기구 구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구가 없어서	9.7	23.6	26.6	19.9	22.9	32.9	58.0	70.2	13.4	0.0	1.2	41.8	-	21.0	48.6	17.2
별 효과가 없어서	3.9	9.3	4.8	5.2	0.0	1.8	10.1	0.0	0.0	0.0	0.0	0.0	-	2.4	0.0	5.2
사용이 불편	6.2	2.6	5.7	5.8	0.0	21.1	0.0	0.0	0.0	0.0	7.1	0.0	-	0.0	0.0	5.3
미관상 흉해서	5.6	3.0	2.7	1.9	0.0	0.0	0.0	0.0	0.0	0.0	0.0	0.0	-	0.0	0.0	3.7
구입비용 때문에	66.3	52.0	52.4	64.4	77.1	40.1	14.5	29.8	72.8	100.0	91.8	24.9	-	76.5	51.4	61.1
구입처를 몰라서	5.7	4.1	3.8	2.3	0.0	4.1	17.4	0.0	13.8	0.0	0.0	0.0	-	0.0	0.0	4.6
구입할 시간이 없어서	1.0	1.7	2.0	0.0	0.0	0.0	0.0	0.0	0.0	0.0	0.0	33.3	-	0.0	0.0	1.1
기타	1.5	3.8	2.0	0.2	0.0	0.0	0.0	0.0	0.0	0.0	0.0	0.0	-	0.0	0.0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92,989	93,401	45,913	68,807	580	6,641	3,798	1,410	6,541	323	8,221	1,171	-	3,436	747	433,978

출처: 보건복지부(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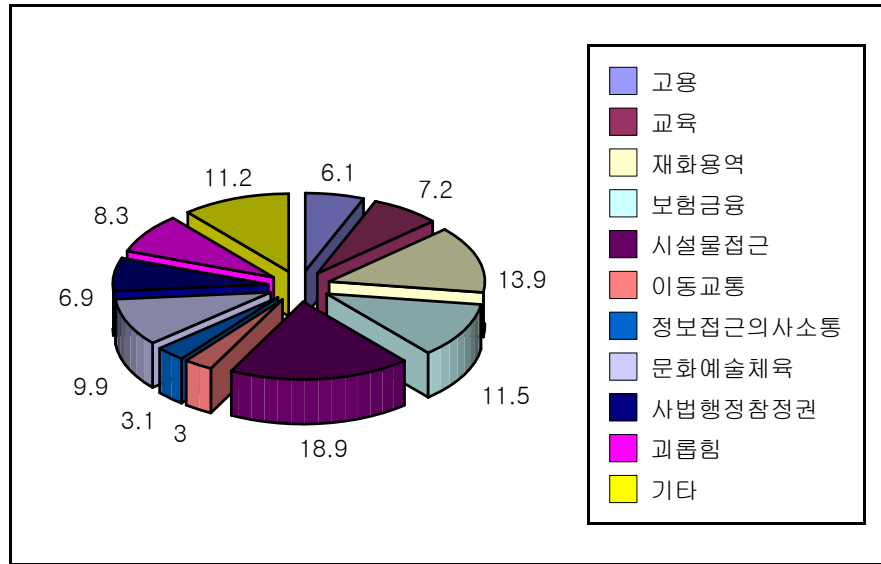
〈표 5〉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데 구입하지 않는 장애인의 61.1%는 ‘구입비용 때문에’라고 응답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에 비해서 9.5%가 증가된 수치인데 이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어려움은 더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구가 없어서가 17.2%이고 사용이 불편하여서가 5.3%, 별 효과가 없어서가 그 뒤를 이었다.

〈표 6〉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12)

(단위: 접수 → 건, 비율 → %)

구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재화 용역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교통	정보 접근 의사 소통	문화 예술 체육			
비율	100	6.1	7.2	13.9	11.5	18.9	3.0	3.1	9.9	6.9	8.3	11.2
접수	1339	82	96	186	154	252	40	42	133	93	111	15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2)



[그림 1] 장애영역별 사건 접수 현황

〈표 6〉 차별 영역별로 살펴보면, 시설물 접근권 252건(18.9%)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발급과 금융서비스 등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된 진정이 186건(13.9%), 괴롭힘 111건(8.3%),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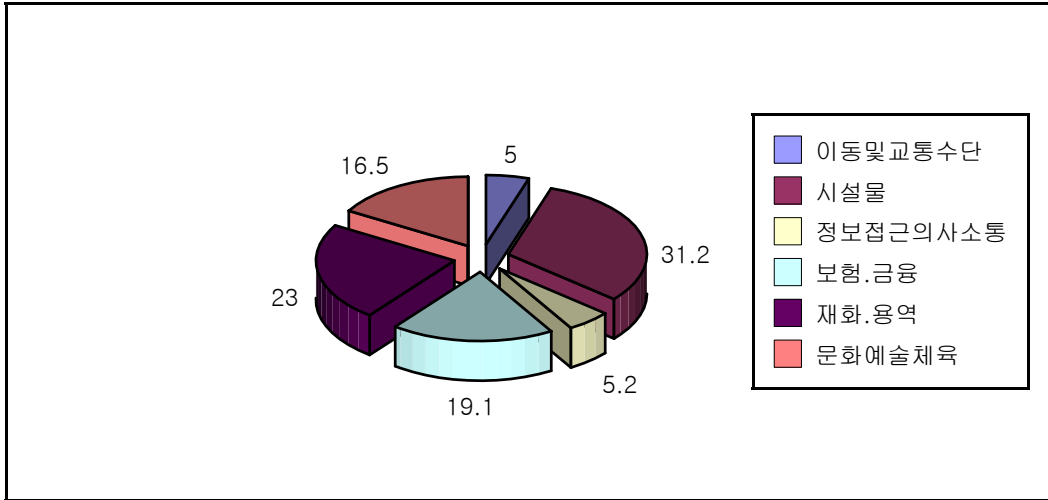
또한 2012년도에 접수된 진정사건 중 이동권에 관련된 진정사건(시설물 접근, 이동교통)은 전체의 32.4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전체 7개의 항목 중 1번째로 많은 빈도를 보이는 항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충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2012년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과 사법·행정 등에서의 진정사건 유형

(단위: 건수 → 건, 비율 → %)

구분	재화·용역							사법·행정
	합계	이동 및 교통 수단	시설물	정보 접근 의사 소통	보험·금융	재화·용역	문화·예술·체육	
합계	807	40	252	42	154	186	133	93
비율	100	5.0	31.2	5.2	19.1	23.0	16.5	1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2)⁵⁾,



[그림 2] 2012년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진정사건 유형

〈표 7〉, [그림 2] 등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과 사법행정 등의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을 제외한다면, 시설물 이용과 이동 및 교통수단에 관한 진정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다. 이는 이동권 및 접근권에 관한 내용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대형건축물 중, 대형마트의 외부 블라드가 장애인의 출입 평등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는 구조물로 전격 알려지게 되었다⁶⁾. 앞으로도 도시권 내에서 점자블록을 설치하거나,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 등 계속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계 및 정부가 같이 노력해야할 과제로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인권위는 인권정책, 차별행위, 인권침해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해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권고 형식으로 의견을 표명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인권위법은 규정하고 있다.

6) 대전일보 2012년 10월 16일 ‘대전 대형마트 15곳 중 7곳의 외부 블라드가 편법적으로 설치되어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실제 설치된 블라드의 유효폭은 0.9m 정도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 증진 보장 법률에 의하면 유효폭이 1.2m로 제정 되어있으나 이를 지키는 곳은 없었다. 지키더라도 블라드 1~2곳만 폭을 넓혀놓아 이는 한 곳이라도 1.2m이상으로 폭을 넓혀놓으면 법적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유모차)이 마트이용을 어려워 하고 있고, 이런 시설을 이용하게 되더라도 판매자 위주의 상업적 동선구조로 인한 불편함을 고스란히 이용약자들이 부담해 되는 상황이다’.

〈표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영역별 월평균 진정사건 증감 추이

(단위: 건, %)

합 계		2001.11.25. ~ 2008. 4.10.	2008. 4.11. ~ 2008.12.31.	2009. 1. 1. ~ 2009.12.31.	2010. 1. 1. ~ 2010.12.31.	2011. 1. 1. ~ 2011.12.31.	2012. 1. 1. ~ 2012.12.31.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5년 (2008. 4.~ 2012. 12.)
합계	전체건수	653	585	725	1,695	886	1,339	5,230
	월평균	8.5	67.2	80.6	188.3	98.4	148.8	92.2
고용	전체건수	153	41	69	82	64	82	338
	월평균	2	4.7	5.8	6.8	5.3	6.8	6.0
교육	전체건수	122	61	49	55	62	96	323
	월평균	1.6	7.0	4.1	4.6	5.2	8.0	5.7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전체건수	207	347	412	1,269	487	807	3,322
	월평균	2.7	39.9	34.3	105.8	40.6	67.3	58.6
사법·행정 /참정권	전체건수	-	55	42	39	80	93	309
	월평균	-	6.3	3.5	3.3	6.7	7.8	5.4
괴롭힘, 기타	전체건수	171	81	153	250	193	261	938
	월평균	2.2	9.3	12.8	20.8	16.1	21.8	16.5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과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간동안(2001.11.25.~2008.4.10.)의 사건 접수 건수를 모두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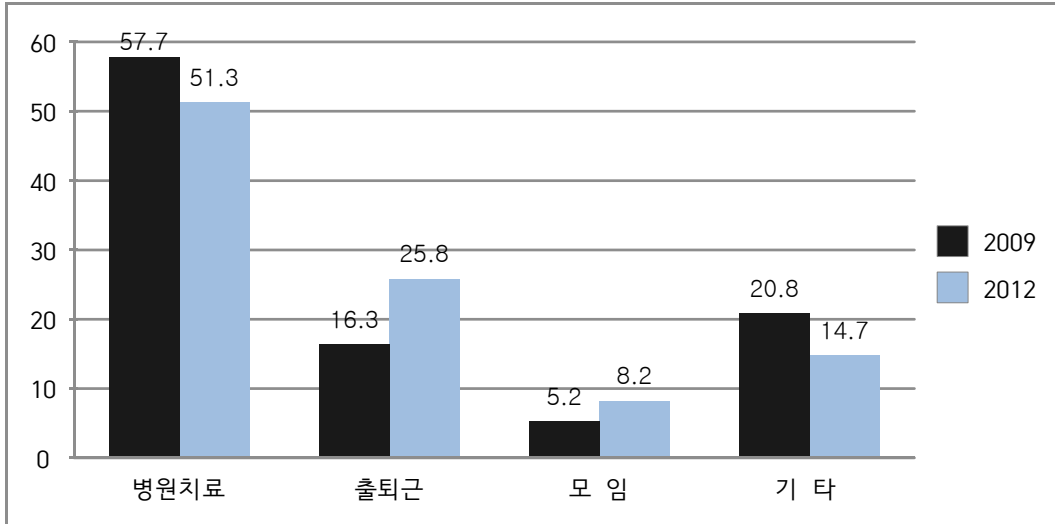
〈표 8〉 법 시행 이후 장애영역별 차별 진정사건 년평균 증가를 보면, 재화·용역, 행정·사법·참정 등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련된 항목의 진정사건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는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이다. 이를 차별영역별·월평균 사건 수로 살펴보면,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이 58.6건, ‘괴롭힘 및 기타’영역이 16.5건, ‘고용’영역이 5.9건, ‘교육’영역이 5.7건, ‘사법·행정 및 참정권’영역이 5.4건이다.

〈표 9〉 대전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2012년 12월말 기준)

(단위: 건)

	구 분	누 계	병원치료	출퇴근	모 임	기 타
2009	건 수	33,117	19,112	5,389	1,738	6,878
	비 율	100	57.7%	16.3%	5.2%	20.8%
2012	건 수	182,785	93,834	47,156	14,909	26,886
	비 율	100	51.3%	25.8%	8.2%	14.7%

자료: 대전시각장애인협회



[그림 3] 대전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운영현황

대전광역시의 콜택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한 해 총 182,785건, 365,570명이 이용하였다. 이 중 <표 9>와 같이 병원에 가기 위해 이용한 건수가 총 93,824건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하고, 생존에 필요한 직업을 위해 이용한 건수가 총 47,156건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생존을 위해 이용한 횟수가 총 140,990건, 전체의 77.1%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는 이동권이 장애인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권리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이사항은 모임항목에서 2009년에 비하여 3%로 늘어난 것은 문화향유권에 대한 갈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타 광역시 차량보유 현황(2012)

구분	법정 대수	보유 차량			법정대수대비(%)	비고	
		계	승합 차량	임차 택시	보전 택시		임차·보전 택시포함
계	1,133	1,093	731	95	267	96	
대전	80	85	30	55	-	106	‘12년 12월 5대 구입 미포함(112.5%)
서울	465	330	330	-	-	71	‘13년도 임차 택시운영구상
부산	190	300	100	-	200	157	

구분	법정대수	보유차량				법정대수대비(%)		비고
		계	승합차량	임차택시	보전택시	임차·보전택시포함		
대구	133	100	70	-	30	75		
인천	142	150	122	28	-	106		
광주	80	55	55	-	-	69	13년도 임차택시운영구상	
울산	43	73	24	12	37	170		

〈표 11〉 전국 저상버스 보급현황

(단위 : %, 대)

구분	계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시내대수	32,552	7,534	2,511	1,658	2,312	930	965	670
저상대수	3,899	1,667	182	148	184	72	111	60
보급률	12.0	22.1	7.2	8.9	8.0	7.7	11.5	9.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793	567	540	758	850	680	1,088	1,529	167
849	91	83	25	27	34	22	334	10
8.7	16.0	15.4	3.3	3.2	5.0	2.0	21.8	6.0

자료: 국토해양부, 2011말 기준

〈표 11〉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12%에 그치고 있다. 저상버스 운행 현황은 2004년 서울시 최초 도입 이후 2011년 현재 3,899대의 저상버스가 운행 중이고 서울시가 1,667대로 가장 많이 보급되었으며, 경기, 경남, 부산, 인천 등 광역시도 순으로 많이 보급 하지만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일반버스 대비 12%에 불과하고, 가장 많은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도 22%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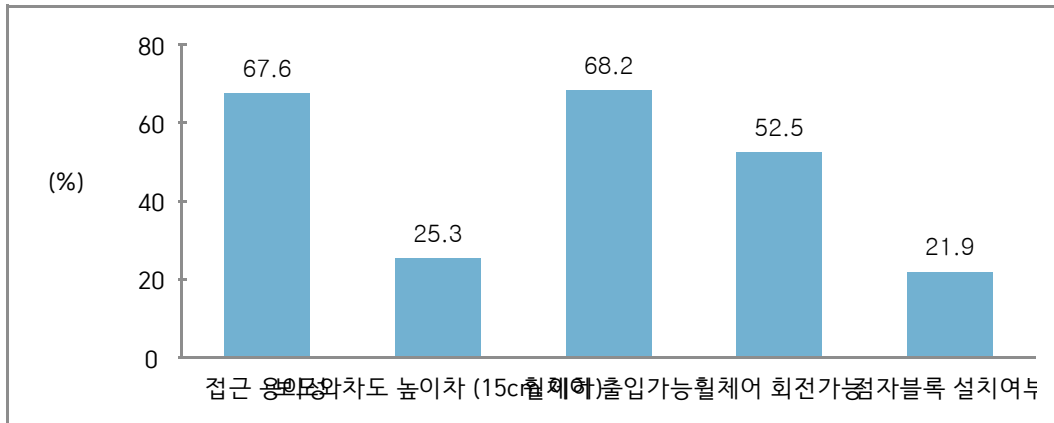
〈표 12〉 각 시·도의 일반/저상버스 배차간격 비교

시·도	버스번호	배차간격	
		일반버스	저상버스
서울	402번	5분	30분
대구	623번	10분	4시간

시·도	버스번호	배차간격	
		일반버스	저상버스
속초	66-1번	40분	1시간 20분 (주말, 휴일 운행 안함)
부산	24번	5분	1시간~2시간
인천	15번	6분	6분
원주	5-1번	16분	30분
대전	109번	20분	2시간 30분

자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자체조사, 2012

〈표 12〉 각 시·도의 일반/저상버스 배차간격 비교 일반버스에 비해 4~5배 긴 배차시간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이용을 꺼리는 문제발생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11

[그림 4] 정류장 이동 및 접근성 충족 현황

III. 결론

이동권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된 사회참여에 이동권 정책의 확대가 요구된다.

첫째,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개선에 앞서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물리적 환경의 설치에 앞서서 장벽이 없도록 의도된 설계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

들에게도 좋다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 이동권의 법·제도의 개선이 되어야 한다. 대중교통 개선방안으로 일반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버스·지하철 등에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저상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외면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노선이 한정돼 있는데 있다.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열악한 도로 사정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다. 버스 정류장 인근의 가로수, 도로에 쌓여있는 적치물, 도로와 인도 사이의 경계석 등이 저상버스의 휠체어 리프트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장애인을 외면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지나치는 버스, 일부 시민과 버스기사들의 그릇된 시선, 지나친 관심도 장애인들이 버스 이용을 꺼리는 이유다. 저상버스가 늘어나고 노선도 증가한다면 장애인들의 저상버스 이용률이 높아지겠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의 버스이용을 뒷받침 해줄 인프라가 부족하다. 현재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차량구입비용의 50%가 전부 저상버스는 일반버스 대비 연간 2,000여만원의 추가 운영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하는 지자체는 소수이다. 이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저상버스를 늘리는 것보다 대안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골목까지 차가 들어가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장애인 콜택시 보급 확대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셋째, 도로 및 교통시설에 있어서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장애(barrier free)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건설, 지하철 건설, 아파트 단지 건설 등 대규모 사업 시에 교통영향평가제도 등을 이용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연속적인 보행동선이 확보되도록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개별 건축물에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연결해줄 수 있는 이동에 장애가 많다면 건축물의 편의시설은 효과가 반감되므로, 교통시설 및 이동공간의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편의증진법 인용하도록 함에 따른 편의증진법 개정은 정당한 편의의 범위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주요 건축물 내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생활공간의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이용시설 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택 및 은행, 슈퍼마켓 등 주로 이용하는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권리적 시각에서 해석하여 받아들인 것이다. 정당한 편의에는 편의시설은 물론 설비, 도구, 서비스와 조치까지 포함이 된다.

다섯째, 장애에 대한 차별은 비단 장애인뿐 아니라 우리사회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의 논리가 일반화된 사회풍토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의식을 키우기 위한, 의무화된 교육, 정규적인 캠페인, 장애인차별금지법등의 다양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순중. 2004. 중증지체장애인 이동권 확보방안. 제주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2.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 그 성과 및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11
- 국민권익위원회. 2010. 보도자료.
- 두오균. 2009. 장애인 인권과 재난관리. ISCEM-2009. 1-20.
- 대전시각장애인협회. 2012. 장애인 콜택시 자료.
- 대전일보 2012년 10월 16일
- 박옥순. 2002.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연구.
- 박동호. 2006. 이동권이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1. 장애인 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5년도, 2008년도 장애인복지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2.,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2. 일상에서 인권 찾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3., 스물세 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는 우리의 입장.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TNS. 2003. 장애인 인권 침해에 관한 장애인 여론조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2008. 장애인 인권 교육.
- 장재완. 2002.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 장애인 이동시설 설치 실태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은·유현정. 2007.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 설정과 추진 전략. 한국위기관리논집. 3(2): 1-18.
- 이신해 외(역). 2005.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교통의 Barrier-Free.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상인. 2003.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방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 임태욱. 200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원. 200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최용진. 2005.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연구. 한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겨레 신문. 2010 4월 9일 12면, 4월 20일 10면
홍승진. 200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http://www.kscia.org/>
<http://www.kostat.go.kr/>
한국장총 2012년 vol. 273

제 2 부

대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발제 1]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편의제공과 접근권 향상을 위한 과제

-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

-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1] 김명희 (시립장애인복지관 과장)

[토론 2] 박흥기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토론 3] 김순영 (대전여성연대 사무국장)

[토론 4] 이종준 (합동법률사무소 행복 변호사)

[토론 5] 조금주 (상명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토론 6] 김다현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1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편의제공과
접근권 향상을 위한 과제
- 성년후견제의 역할에 대하여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편의제공과 접근권 향상을 위한 과제

- 성년후견제의 역할에 대하여 -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도입

유엔 총회는 2006.12월 ‘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2008년 12월 2일 국회에서 비준하여,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 중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가치는 인권모델이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기존에 시혜적 정책의 관점에서부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의 관점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은 더 이상 자원할 당의 대상이 아닌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고,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함을 의미하며, 장애인도 마땅히 자율적 선택권을 갖고 참여와 결정을 갖는 주체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다중적 차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성인지적·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협약의 전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학사, 착취의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하((q)항)”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로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s)항)”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계획’ 중 문제영역별 원칙에서도 장애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장애여성과 여아는 문맹 퇴치 및 교육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수혜대상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장애여성이 훈련 및 취업에 참여할 기회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 장애여성의 잠재력 키워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

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에서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하고,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6조 제 4항에서는 ‘사법절차상 정당한 편의의 제공과 관련해 공공기관 및 소속원은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와 장애인 인권이 제고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사회전역에서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왜곡 및 차별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민법 개정에 의한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 성년후견제의 입법배경과 목적은 이미 먼저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특별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권리옹호 차원에서 성년후견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II.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과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한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¹⁾.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은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이미 형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신체조건, 국적, 나이, 출신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지급,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차별은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직접차별이다. 이는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간접차별이다.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다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된다. 셋째, 정당한 편의제공²⁾ 거부에 의한 차별이다. 즉,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한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넷째, 광고에 의한 차별이다.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 내지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이는 광고에 의한 차별에 해당된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1).

또한 차별의 영역을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④사범·행정절차 및 급여와 참정권, ⑤모·부성권·성 등, ⑥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직접차별

직접차별이란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집단에 속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상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당 조항을 이에 대입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즉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은 장애인을 장애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
2)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제4조 제2항).

인이라는 이유로(장애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를 비장애인(비장애인에 속하는 개인)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참고로 이때 그 비교집단은 장애인 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특정 장애를 가진 개인 대 다른 특정 장애를 가진 개인이 될 수 있다.

직접차별의 정의 내용 중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라는 말은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되는 특정 집단에 소속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소속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집단이 장애인이라면 이는 장애인에 속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소속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특정 집단에 속하는 것이 다른 집단에 속하는 것에 비해 동등하지 않은, 불리한 자격·조건 등을 갖게 만든다는 객관적인 인과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말은 그러한 객관적인 인과적 사실이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법으로 보호되는 특정집단에 속하는 것 그 자체가 다른 집단에 속하는 것에 비해 유관 자격·조건에서 불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는, 특정 집단에 속하는 것이 다른 집단에 속하는 것에 비해 불리한 자격·조건 등을 갖게 만든다는 객관적인 인과적 사실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명시적 차별과 은밀한 차별

직접차별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떤 특성을 이용하겠다는 의도와 그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명시적 정책 또는 관행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이처럼 특정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은 불리한 대우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히는 경우, 그때 발생하는 차별은 “명시적 차별”이라 부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개인(들)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숨기는 경우, 그때 발생하는 차별은 “은밀한 차별”이라 부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직접차별은 모두 명시적 차별이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발굴된 법규들은 법조문으로 특정한 유형의,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 일반을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나. 간주차별과 연계차별

직접차별은 아니되 직접차별과 유사한 간주차별 및 연계차별은 직접차별의 정의 중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라는 요건은 충족시키지 않지만 “~을 이유로”라는 요건은 충족시킨다. 연계차

별(associational discrimination)은 “특정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과 연계된다는 이유로” 그 연계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간주차별은 어떤 개인이 법으로 보호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다. 다른 말로, 어떤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당 개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 간주차별이다. 예를 들어 신규 직원을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어떤 지원자가 성적 소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모를 보고 성적 소수자로 간주하고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그를 면접에서 탈락시켰다면, 그것은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에 의한 직접차별이 된다. 우리의 차별금지법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 제1항은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주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의 의미

직접차별의 정의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란 그 표적이 되는 개인의 유형·무형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대 ‘무엇을 이해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가?’와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로 훼손되어야 “상당한” 것인가?’는 합리적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이해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답하고 있다. 참고로, 이 문구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에 다소 애매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 문구에 사용된 “에 의하여”는 그 앞의 것(제한·배제·분리·거부 등)과 뒤의 것(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사이에 인과성을 함의하는 것으로, 또는 그냥 앞의 것이 뒤의 것에 포섭되는 것을 함의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가장 명료하고 적절한 것은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와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의 것이 뒤의 것에 포섭됨을 의미한다.

2. 간접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간접차별 정의 중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라는 문구는 외견상 장애와 무관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러한 기준이 그와 같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조금만 심사숙고하면 알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간접차별은 조금만 숙고하면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장애인이 어떤 기준을 ‘현저’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상당히거나 또는 특별하게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율에서 두 집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는데, 간접차별의 존재를 추정하는 데 통계학적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그 상당한 차이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말한다. 한편 간접차별의 존재를 추정하는 데 통계학적 방법만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해당 기준을 특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비통계학적인 방식으로 입증함으로써 간접차별의 존재는 추정될 수 있다. 특히 장애에 의한 간접차별의 경우, 특정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 대한 어떤 기준의 영향을 비장애인들과 비교하여 측정한 통계적 자료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어 통계학적 분석이 어렵기도 하지만 특정 장애를 가진 개인 또는 개인들 집단이 어떤 기준의 영향을 특별하게 받을 것이라는 점은 일반화된 지식 또는 법칙에 의거하여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 한편 ‘현저하게’ 또는 ‘특별하게’ 불리한 결과는 해당 기준을 ‘현저히’ 또는 ‘특별히’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것인데, 그 둘은 사실상 같은 것을 가리킨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분리된 환경이 아닌 같은 환경에서 함께 해당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여 따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그들이 함께 해당 활동을 하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차별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분리된 환경이 아닌 같은 환경에서, 즉 같은 시간과 같은 형태의 공간에서 그들이 함께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환경은 소위 “통합적” 환경이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하여 분리하여 따로 해당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때문에 비장애인과 통합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활동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라 할지라도 편의를 제공하여 가능한 한 통합적 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때 ‘가능한 한 통합적 환경을 제공’하는 편의는 “정당한” 편의라 할 수 있다.

Ⅲ. 장애차별 진정과 편의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동안 1,677건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관련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2009년도 745건에 비해 2.2배 이상 증가하였고, 진정사건의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80% 이상의 권리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들이 그동안의 기대와 억눌림을 한꺼번에 표출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장애 관련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차별영역별 접수 비율은 먼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이 5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괴롭힘 영역 11.9%와 기타 영역 9.7%,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 9%, 고용영역 7.1%, 교육영역 7.0%의 순서로 높았다. 이는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내에 재활 및 용역, 보험, 금융, 시설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을 다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재화용역이 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험·금융영역이 8%, 시설물과 이동 교통수단이 각각 7.6%로 높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의무이행기관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연도별로 2015년까지 단계적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식 및 예산부족 등으로 단계적 적용 기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표 1〉 시설물 접근·이용에서의 편의 제공 현황³⁾

기관유형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의료기관	교육기관	계
제공비율	70.4%	100%	82.1%	72.2%	84.2%	38.6%	60.8%

장애인차별금지법(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영역) 제 26조와 제 27조에서는, 공공기관과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과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 변호사, 진술보조인의 조력, 보조인력 등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 조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 2010.

1. 행정 서비스 이용에 따른 편의 제공

- * 점자자료, 인쇄물 음성출력기기 등 물적 서비스와 보조인력, 변호사, 진술 보조인 등의 인적 서비스 지원
- * 요청시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제공
- * 교정, 구금시설에서 계구 사용에 장애유형 및 상대 감안
- * 고충상담, 교도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2. 참정권 보장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형별 고려한 투표장 시설장비, 선거정보전달, 선거용 보조기구개발, 보조인력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 * 후보자 및 정당은 관련 정보에 장애인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및 홍보물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3. 사법서비스 이용에 따른 편의 제공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거부 규정과 접근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법 제 4조 제 1항 제 3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동조 제 2항에서는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이 편의제공규정에는 그 규정상의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의제공에 대한 이해, 편의제공과 간접 차별 관계 및 장애인 접근권과의 관계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IV.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한 성년후견제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2004년 성년후견추진연대가 출범하면서 우리사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과거 17대 국회에서 성년후견제에 관한 법안 발의가 시도되었으나 국회에서 공론화되지 못하였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2009년 법무부산하에 민법개정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민간단체로 구성된 성년후견추진연대와 여러 차례 정책 세미나와 법안 협의 후 2009년 12월 29일 정부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인 성년후견제 도입과 관련하여 민법 개

정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2011년 2월에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 개정에 의한 성년후견제가 시행되고 있다.

1. 성년후견제 입법 배경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역시 고령자의 증가 속도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발생률의 증가는 정신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완전하지 못함에서 발생되어지는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65세 이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2010년에 약 500만 명을 넘었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14%, 2026년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의사결정능력이 퇴화하는 치매환자의 수도 2012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 즉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표 2〉 최근 우리나라 치매노인환자의 수치 변화⁴⁾

(단위: 천 명)

구분	2008	2010	2012	2020	2030	2040
65세 이상인구	5016	5357	5,742	7,701	11,811	15,041
65세 이상 치매환자	421	469	522	750	1,135	1,685
치매유병률	8.4	8.8	9.1	9.7	9.6	11.2

현행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자발적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의무자 또는 행정기관이 강제입원을 허용할 수 있다. 2008년도 기준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정신장애인 수는 총 72, 214명이며, 이 중 본인의 자의에 의한 입원환자는 9,387명이며 나머지 80 % 이상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08).

4)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2.

〈표 3〉 최근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수치 변화⁵⁾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적장애	127,861	137,596	142,589	146,898	154,953	161,249
자폐장애	9,518	10,926	11,874	12,954	13,933	14,888
정신장애	63,642	75,058	81,961	86,624	94,776	95,821

현행 우리나라 정정보건법 제 24조의 강제입원제도는 성년후견제 시행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먼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통제 없이 가족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해 가족 간의 재산다툼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둘째,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환자는 입원기간 중 인권침해 및 각종 자유제약이 발생되었으며, 셋째, 강제입원의 수월함에 비해 퇴원은 많은 제약이 있어 정상화나 사회통합이라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신권철, 2010).

지금까지 의사결정능력이 장애가 있는 성인의 보호를 위한 법 제도로서 실시되고 있었던 행위 무능력제도는 심신상실·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는 성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선고를 함으로써 배우자·직계 또는 방계 혈족이 당연 법정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금치산자에 한정)을 보호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하의 후견인은 포괄적인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권한(금치산자의 후견인에 한정)을 가지며(민법 제949조, 제947조)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비록 자연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더라도 그가 한 모든 법률행위가 후견인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 까닭에 금치산자는 법률행위 능력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재산관리 권한도 박탈된 채 후견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고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후견인의 지시를 제어할 수 없었다.

2. 성년후견제 내용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개정민법 제9조), 한정후견은 같은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개정민법 제12조), 특정후견은 같은 사유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5)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2.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개정민법 제14조의2)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된다. 임의후견은 장차 후견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6)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수여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에 의한 후견이다.(개정민법 제959조의 14). 이러한 성년후견제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성년후견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이지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민법 제938조)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가정법원이 그 권한에 관한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 침습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건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민법 제947조의2, 제938조).

나. 한정후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보유한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할 수 있으며(동의유보), 그러한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민법 제13조) 가정법원은 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개정민법 제959조의 4)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결정은 피한정후견인의 상태가 이를 허락하는 범위에서 피한정

6) 신상보호영역은 1) 의료에 관한 사항, 2) 대면, 서신, 전화, 이메일,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과 교류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교육, 훈련, 여가활동 등, 4) 의식주를 포함하여 일상의 생활유지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의 구매에 관한 사항, 5) 기타 성질상 신상보호가 요구되는 성인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 등이다.

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지만, 피한정후견인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정법원은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개정민법 제959조의6).

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의 심판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또는 신상과 관련된 특정한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특정행위를 명하거나 부작위를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특정명령으로 피특정후견인에 조력하는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피특정후견인의 필요에 따라 특정후견인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법정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민법 제959조의8, 제959조의9,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때에는 피특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민법 제959조의12, 제920조).

라. 임의후견

임의후견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후견 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개정민법 제959조의14).



[그림 1] 우리나라 성년후견제 서비스 전달체계⁷⁾

7) 최윤영 이경준, 2013.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는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 성년후견법인, 후견감독인을 통해 후견사무를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 향후 성년후견법인, 성년후견지원센터 등 성년후견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법인과 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년후견서비스는 가정법원 중심으로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업무의 특성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내에서 후견제 서비스 제공은 피후견인의 지역사회와 시설에서의 일상생활과 계약관계, 수급비 등 신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사회복지 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후견제도 시행과 후견인 양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후견인 양성과 관련하여 비용문제와 인력공급을 정부의 지원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복지차원에서 적절한 대비가 요구된다. 독일의 경우 성년후견제의 소요 비용 절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원봉사 후견인의 양성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년후견인 양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법원, 지역사회복지단체 등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인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볼 때 적어도 인구의 1% 이상이 이용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년후견제와 타 법률과의 적합성 조율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행정부처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시에 관계 부처 간의 의견조율이 많지 않았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와 의 협조가 부족하여 제도의 시행 시에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법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조를 도모할 수 있는 법률 내지는 적어도 관계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상설화가 요구된다. 또한 성년후견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로 분화되어 시행이 예상되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다양한 방면에서 상호 협력과 재정적 지원 협력을 유도하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최윤영·이경준, 2013).

V. 나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 법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조항들, 즉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의 법적보장구조가 철저하지 못하고, 둘째, 장애차별적인 사회 환경을 시정하기 위한 편의제공이 제한적 소

극적이며, 셋째, 이법과 상충되는 법령들이 상존하여 법의 집행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넷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초이며 근간이 되어야 할 사회적 장애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 등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시정전담기구의 위상과 실천의지, 사회적 규범적 관철 능력이 실제 우리사회에서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은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사회에서 조차도 이법에 대한 인지도가 7.8%로 10%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소관 행정부처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보다 대대적인 대국민 인식홍보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자들이 확실하고 정당하게 제공해야 할 편의제공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실하게 하는 시늬에 대해 이법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미봉책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에서도 논점이 되었던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대책이 과제로 남는다.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권리옹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개정이전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인권이념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장애인의 권리옹호가 그 목적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 확보가 우선시되었던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될 성년후견제도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그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2011), '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연구.
- 보건복지부, 2012. 내부통계자료.
- 박자경·김종진(2011). “장애인가구의 소득 및 빈곤지위 변화 분석”. 제 3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신권철, 2010.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법원의 역할. 사법 제 14호.
- 서울시복지재단(2011), 제2기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
- 서울시, 2011. 장애인복지 내부통계자료.
- 염형국, 2012.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2012년 상반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연수 자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윤상용(2010),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장애 소득보장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08. 2008년 사업보고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1. 장애우정보집.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2. 장애우정보집.
- 최윤영, 2010. “성년후견제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2010년 추계 전국노인복지관 대회자료집.
- _____, 2011.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제1차 장애인정책토론회 자료집.
 장애인성년후견제 도입 의미 및 준비, 한국장애인개발원.
- _____, 2012. 사회복지적 관점의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교육 제 17집. pp 97-121.
- 최윤영 이경준, 2013.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0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자료집.
- Incheon Strategy to “Make the Right Rea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and the Pacific, 2012. UN ESCAP.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토대로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토대로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들어가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장차법 제1조). 이처럼 장차법이 우리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에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차법은 일종의 인권법으로서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에서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장애로 인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최근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인 사회적 모델, 정상화, 자립생활패러다임 및 탈시설화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 중 가장 장애로 인한 차별에 취약하면서 동시에 권익을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바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일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생활’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최소한의 인권통제부터 시작해서 어렵지 않게 신문 또는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악의적이면서 고질적인 심각한 인권침해에 이르기까지, 거주시설 장애인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일명 ‘도가니’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도가니사건에서 비취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했다. 물론 ‘도가니’사건과 같은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역할 및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몇몇 극소소의 거주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장애

인의 ‘인권’은 장애인의 ‘복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장애인의 복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력과 관련하여 보장받을 수도 또는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는 ‘채량행위’일수 있지만, 장애인의 ‘인권’은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기속행위’임과 동시에 단 한 명의 장애인의 인권침해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장차법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본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또한 의미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본 발표자는 거주시설의 특성과 거주시설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 현황에 대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현황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또한 본 토론회가 ‘대전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발표의 내용을 대전광역시에 일정부분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II. 거주시설의 특성과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

1. 거주시설의 특성

2011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¹⁾은 종래의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을 대체하는 것으로, 정원 제한이 되어 있지 않던 장애인 생활시설이 대규모화되면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의 개념을 ‘거주’의 개념으로 바꾼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박

-
- 1) 장애인거주시설에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상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개략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 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경수 외, 2012). 개정 전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지관을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로 규정된 반면,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격리, 분리되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통합된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향을 용어사용의 변화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성택, 2012).

이처럼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거주시설은 ‘시설’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집단성, 격리성, 권력불평등성 및 비선택성 4가지가 있다(유동철 외, 2010). 첫째, 격리성은 우리나라 거주시설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복지권 침해의 원인으로서, 대부분의 거주시설이 하루 일과 시간 및 취침시간을 비롯해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기준을 정해두고 있어 불가피하게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격리성은 거주시설이 지역사회와 거리상으로 격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물리적 격리와 사회적 지원과의 교류에서 격리되는 현상을 말하는 사회적 격리로 구분된다. 특히 시설이 갖는 격리성은 인권유린과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되어왔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셋째, 권력의 불평등성 문제는 시설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돌봄을 제공 받는 자의 관계가 비대칭적이라는 것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비선택성은 거주시설 정책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시설이용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입소부터 자발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타인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거주시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조치’에 따라 기초수급자 혹은 무연고자를 중심으로 입소자가 결정된다는 사실은 비선택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2.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

장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에는 다음의 제 30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도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차법 제30조에서 말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09). 장차법을 근거로 복지시설장 또는 직원은 장애인의 의사결정존중, 외모 또는 신체공개 금지, 교육·재산·사회활동참여·이동 및 거주권 존중, 자녀양육권·친권 및 면접교섭권 보장, 외부와의 소통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거주시설 장애인은 이와 같은 장차법을 근거로 시설장 또는 직원에게 장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장 및 직원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 시 적극적인 시정조치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 3)에 의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 운영자는 전항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서비스 안내 및 상담, 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능력개발, 일상생활, 개별지원, 환경, 직원관리 및 시설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3)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권장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
- 정기적 건강검진과 필요한 의료처치를 즉각적으로 받을 권리
- 화재나 재해·재정적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와 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종교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족 등 외부방문자와 자유롭게 만날 권리
- 자신의 입·퇴소에 대해 결정과 결정결과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
-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 성을 표현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
- 임신·출산·양육·가사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강요·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
-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
-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정규교육 및 평생학습을 받을 권리
-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 노동에 따른 수입과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할 권리
-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문화, 예술, 체육 등 여가활동을 보장받을 권리
- 자신의 인격과 재산보호를 위해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 시설생활 및 운영, 제공되는 서비스 과정과 결정에 참여할 권리
- 아동 장애인이 생애주기에 맞는 훈련서비스,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레이션 등을 제공받을 권리
- 정신장애인의 특정정서나 인지적 장애특성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 자기결정과 선택이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따라서 장차법에 비해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좀 더 폭넓게 장애인이 보장하여야 할 인권의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차법의 경우 차별금지라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장애인복지법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인권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현황

1. 전국 현황

2011년 12월말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은 대략 490개로 약 25,000명의 장애인이 입소해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참여 인원 870명)을 구성해 2011년 10월 28일부터 12월22일까지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5,802명)의 인권침해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39개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 59건이 발견되었으며, 위법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실태

구분	계	성폭력	성추행	폭행	체벌	학대	수치심	위생환경	회계등	미신고
	59	1	5	6	12	5	6	15	9	
형사고발	7	1	1	1				2	2	
폐쇄·전환	18					1		3		14
시설장 교체	1	1								
징계조치	2	1		1						
경고 등 교육	39	1	5	4	11	4	2	8	4	

2. 대전광역시 현황²⁾

대전광역시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이 총 57개소가 있는데, 유형별 거주시설(중증장애인시설 포함)이 18개소, 단기거주시설이 9개소, 공동생활가정이 30개소가 설립 및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57개소에 약 880명의 장애인이 입소 및 생활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살펴보면, 김정득 외(2013)에 의해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160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및 서비스

2) 대전시 현황은 김정득 외(2013).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기본계획 연구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밝힘.

육구를, 그리고 거주시설 종사자 410명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시설 장애인의 경우, 성별은 ‘남자’ 66명(41.3%), ‘여자’ 94명(58.8%)로 나타났고, 둘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9명(43.4%), ‘시각장애’가 40명(25.2%), ‘뇌병변장애’ 33명(20.8%), ‘지체장애’ 15명(9.4%), ‘정신 및 자폐성 장애’ 각각 1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등급은 1~2급 중증장애가 141명(88.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거주시설 종사자의 경우, 성별은 ‘남자’ 132명(32.3%), ‘여자’ 277명(67.7%), 둘째 직종은 ‘생활지도원’이 251명(6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재활교사’가 55명(13.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설유형은 ‘장애유형별(지적/자폐성) 거주시설’ 166명(42.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08명(27.3%), ‘장애유형별(시각장애인) 거주시설’ 36명(9.1%) 순으로 나타났다.

1) 장애인 인권실태

우선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실태의 경우 4점 척도³⁾ 상에서 평균 2.8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권실태 각 문항 별로 살펴보면, ‘나는 지난 1년 동안 시설이용자, 시설장 또는 직원 등에 의해 신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⁴⁾’이 평균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년 간 시설보호 장애인이 시설이용자나 시설장 등으로부터 학대경험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가능하다. 다음으로 ‘선거 또는 투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가 3.33점, ‘내 건강을 위해 적절한 치료와 검진을 받고 있다’가 평균 3.3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화장실이 좁거나 또는 숫자가 부족하여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가 평균 1.9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시설 입소 전에 만나질 이상 시설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가 평균 2.00점, ‘시설 입소 시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종류, 이용자의 권리 등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가 평균 2.1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3)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실태가 높음을 의미함.

4) 역문항으로 역점수화한 것으로 시설 내에서의 학대경험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음.

〈표 2〉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실태현황

내용	N	평균	표준편차
시설 입소 전에 필요한 정보(시설현황, 서비스종류,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해 시설로부터 충분히 들었다.	150	2.34	.61
시설 입소 전에 만나질 이상 시설 서비스(프로그램, 식사, 취침 등)를 제공받았다.	150	2.00	.45
시설 입소 시,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종류, 이용자의 권리 등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150	2.11	.82
자유롭게 시설 밖으로 나가 옷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160	2.72	.63
자유롭게 시설 밖으로 나가 원하는 대로 머리손질을 하거나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다.	160	2.78	.60
화장실이 좁거나 또는 숫자가 부족하여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157	1.93	.62
언제든지 자유롭게 목욕할 수 있다.	159	2.97	.62
식단을 결정할 때 나의 건강 상태나 식성, 좋아하는 음식이 반영되고 있다.	160	3.11	.50
원하는 종류의 간식을 직접 사 먹을 수 있다.	160	2.85	.51
현재 살고 있는 방은 함께 사용하는 이용자 수에 맞게 크기가 적절하다.	158	3.06	.53
내 건강을 위해 적절한 치료와 검진을 받고 있다.	160	3.32	.54
시설에 살면서 화재, 홍수 등으로부터 늘 안전하다고 느낀다.	158	3.18	.49
나는 지난 1년 동안 시설이용자, 시설장 또는 직원 등에 의해 신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역문항/역점수화합)	159	3.52	.52
시설직원은 내게 함부로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159	3.05	.83
내 소유의 개인통장과 신분증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159	2.15	.52
내가 원하는 시설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60	3.01	.37
시설장 또는 시설직원은 특정종교를 내게 강요하지 않는다.	160	3.05	.72
언제든지 자유롭게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다.	160	2.75	.54
시설장 또는 시설직원은 나의 성적행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지도한다.	160	3.06	.42
결혼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장 또는 직원은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다.	78	2.88	.53
지역사회로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시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109	3.11	.61
시설장 또는 직원은 내게 각종 장애인복지 시책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해 준다.	155	2.90	.59
시설장 또는 직원은 내가 희망하는 교육내용 및 방식(정규교육, 평생교육, 자격증 교육 등)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154	3.00	.53
시설장 또는 직원은 나의 직업능력과 욕구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149	2.99	.62
내 노동에 대해 적절한 임금을 받고 있다.	49	3.08	.93
선거 또는 투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125	3.33	.55
자유롭게 일상생활에서 문화여가 생활을 누리고 있다.	154	3.11	.55
시설운영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149	3.11	.47
자유롭게 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	149	3.12	.46
자유롭게 시설을 옮길 수 있다.	149	3.12	.43
계	160	2.88	.23

2) 종사자의 인권의식

한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을 살펴보면, 4점 척도 상⁵⁾에서 평균 2.7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수준 역시 보통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권의식 각 문항 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들은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므로 번거롭기도 하고 나가기도 싫어하므로 대체로 방에서 같이 놀아주는 것이 더 낫다’가 평균 3.36점으로 가장 높았고, ‘때로 장애인들이 가족을 보고 싶어 하지만, 시설에서는 만나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신경 쓰지 않는다’가 평균 3.29점, ‘장애인의 의복상태가 바르지 않은 경우 체벌 등을 통해 버릇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가 평균 3.2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력이 부족하다면 중증환자들을 중심으로 전문의와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와 ‘후원 기업이 제공하는 의류를 장애인들에게 입히게 하면 좋아할 것이다’가 평균 2.3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흔히 보호의무자가 장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입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 상 어쩔 수 없다’가 평균 2.38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현황

내용	N	평균	표준편차
흔히 보호의무자가 장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입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상 어쩔 수 없다.	402	2.38	.66
신체장애와 더불어 정신장애가 의심되더라도 보호자인 가족이 사회적 편견을 의식하여 치료에 반대하면 환자의 입원이나 치료는 이루어질 수 없다.	407	2.56	.76
인력이 부족하다면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전문의와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393	2.32	.61
장애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는 종사자가 다른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운 당사자들을 자의적으로 강박해야 할 때도 있다.	403	2.49	.71
후원 기업이 제공하는 의류를 장애인들에게 입히게 하면 좋아할 것이다.	402	2.32	.70
장애인들은 휠체어로 이동해야하므로 번거롭기도 하고, 나가기도 싫어하므로 대체로 방에서 같이 놀아주는 것이 더 낫다.	409	3.36	.59
시설장애인에게 친밀함의 표시로 반말을 사용할 수 있다.	408	2.90	.72
같은 방에 중증 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취침을 편하게 할 수 없더라도 단체생활이므로 어쩔 수 없다.	403	2.77	.61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장애인들의 가족들이 장애인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설은 그 가족의 거주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다.	403	2.70	.71
남자 장애인이 성장해서 자신의 성적 표현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종사자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므로 적당한 여자 장애인을 소개시켜 주어 교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398	2.82	.67

5)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모든 문항에 대해 역점수화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종사자의 인권의식이 높음을 의미함.

내용	N	평균	표준편차
장애인의 언어활동이 능숙하지 못할 때는 표정으로 아픈 지를 봐야하는 데 종사자가 못 볼 수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399	2.74	.71
선거참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인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낫다.	405	2.96	.82
특정 종교재단에서 시설을 운영할 경우 장애인이 예배 등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404	2.91	.76
시설에 후원자들이 방문하면 생활인들의 방을 방문하는 일종의 ‘라운딩’은 늘 이루어지는 일이다.	403	2.44	.79
장애인이 의복상태가 바르지 않은 경우 체벌 등을 통해 버릇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410	3.22	.63
장애인의 부모가 장애인의 재활이나 활동을 요구할 때, 시군구가 장애인의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보다 신경이 더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399	2.58	.72
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맞추어주는 게 어렵고 지금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충분하여 더 만들 필요는 없다.	409	2.95	.65
때로 장애인들이 가족을 보고 싶어 하지만, 시설에서는 만나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신경 쓰지 않는다.	408	3.29	.59
장애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다보면 시설 내 다른 생활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종사자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6	2.72	.73
장애인들의 개인적인 돈은 종사자가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407	2.59	.81
계	410	2.75	.36

IV.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현황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침해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현행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차법을 통한 인권보호

장차법(제3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 진정함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 의무로 되어 있으며, 일차적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경우 시설 내에서 시설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진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차법(제 49조)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악의적’이라 함은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일명 ‘도가니법’을 통한 인권보호

지난 2011년 12월 일명 ‘도가니법⁶⁾’이라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동 개정 법률은 법인과 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 추천 이사 도입(소위 공익이사), 감사의 자격 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다. 또한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해당 법인의 취소 및 시설의 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은 기존에 거주시설 비리와 인권침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던 시설의 폐쇄성과 가족과 친지로 소위 족벌 체제 경영을 종식시키고 거주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임을 알 수 있다. ‘도가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정수의 3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2.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함.
 4.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5.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6.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7.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운영자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

6) 또 하나의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본 토론에서는 논외로 함.

3.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인권보호

대규모 시설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거주시설 내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을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장애인복지법을 최근에 개정하였다(제 59조). 이는 대규모 시설이 인권침해의 고질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신고된 거주시설의 경우 아직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아 본 조항은 그 효력에 있어서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 4)에 의해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해야 한다(제61조). 따라서 해당 거주시설의 시·군·구청장은 연초 관할 장애인거주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인권침해사례, 일상생활에서 사생활보호, 서비스과정에서 자기결정권보호, 야간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점검하며, 시설 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를 인지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은 즉시 해당 거주시설에 대한 관련 사항의 진위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가 인정될 시 사안에 따라 인권침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또는 관련 행정조치(시설장 또는 가해 종사자 교체, 전원·분리조치 등)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3).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내에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되었다. 인권지킴이단은 시설이용자, 직원, 부모 및 이용자 가족, 장애인 인권 전문가 등으로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인권옹호활동과 사후활동을 수행한다. 인권옹호활동에는 인권교육, 인권인식개선 및 인권점검 정례화가, 사후활동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확인 및 인권침해 사실 진정 및 고발, 인권침해에 따른 행정조치 및 법적 조치 권고 등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3). 하지만 이와 같은 인권지킴이단의 역할 및 운영은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이다. 박경수 외(2012)에 의하면,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시설의 약 25%가 담당자만 있거나 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없는 시설이 20%, 사업계획서가 없는 시설이 33%, 예산확보가 안 된 시설이 48%, 전담직원이 없는 시설이 18%로 나타나 인권지킴이단의 운영이 아직까지는 많이 미진함을 알 수 있다.

4.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통한 인권보호

상기조례를 근거로 대전광역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광역시 조례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별도 조례제정 또는 상기 조례에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 개정할 필요가 있다.

V. 나가며: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지금까지 장차법과 관련법 및 제도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현황을 살펴 보았다. 장차법의 경우 근본적으로 사후적·구체적 차원에서의 소극적 입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장차법만으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장차법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지침에 비해 차별금지 행위의 범주가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우선 일차적으로 향후 장차법 개정을 통해 장차법에서 금지하는 거주시설 내에서의 차별행위에 대해 좀 더 세분화·구체화시켜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장차법의 경우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에서 거주시설에서의 차별금지를 가족·가정과 함께 다루고 있는 데 향후 복지시설에서의 차별금지라는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 후에 아무리 훌륭한 사후구제방안으로 회복시킨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적으로 침해받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거주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은 사후적·구체적 측면의 입법보다 사전적·예방적 측면의 입법과 정책이 훨씬 중요하며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장차법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전적·예방적 차원에서의 관련 입법 및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권리옹호시스템(P&A: Protection and Advocacy)의 도입이다. P&A 기관은 미국의 모든 주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동안 인권침해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개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민간단체로서, 조사권 및 접근권, 조사이

후의 조치 및 사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P&A기관들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유기, 또는 권리침해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는데, P&A은 학대나 방임사건이 발생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해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임의조사권만 부여하되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를 제재하는 방안, 임의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거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한 P&A기관들은 피해당사자들을 격리, 보호하거나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 등의 여러 사후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임성택, 2012).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물리적, 거리적 제한이 크기 때문에 미국처럼 각 시도마다 또는 넓게는 시군구 마다 P&A기관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인권지킴이단에 대한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인권지킴이단의 경우 의무사항이지만 대부분의 거주시설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가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국가 및 지자체가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인권지킴이단에 대한 인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 개정에 앞서 우선적으로 대전시의 경우 별로 조례제정을 통해서 대전시 소재 거주지역의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김정득 외(2013)에서도 나타났듯이 인권수준이 보통정도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교육이 집합식 교육임과 동시에 전문적인 강사인력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인력 풀(pool) 구성과 함께 다양한 교육교재, 방법, 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단계적으로 실행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전에 설립 및 운영되었던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을 확정지어 중앙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공간의 재활용도 문제화될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시설에서는 그 특성 상 인권침해가 소규모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의 범위를 탈시설까지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비선택성’이 특징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본인이 살아갈 집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장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 자립생활패러다임이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탈시설화 정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향후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의 범위 안에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도 포함시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시도에서 자체예산으로 체험홈 운영 및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체험홈 운영 및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이 정책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득·이영미·김동기·임재현, 2013.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대전복지재단.
- 박경수·장혜경·백은령·김동기·허곤·김지선, 2012. 인권지킴이단 운영방안 및 이용자 인권보장 상황점검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보건복지부,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분야별 안내.
- 보건복지부, 2013.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유동철 외, 2010.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보장 방안 마련 연구: 이용자 인권실 태 및 장애인 거주시설 내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마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임성택, 2012.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그 현황과 대책. 저스티스, 128, 7-59.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성년후견제와 사회복지의 관계

김명희
(시립장애인복지관 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성년후견제와 사회복지의 관계

김명희

(시립장애인복지관 과장)

I. 머리말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 아직은 낯 설은 개념과 제도이고 후견인양성, 주민홍보, 전문가 양성 등 시행을 눈앞에 두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년후견제는 「약자보호」라는 종전의 법제도에서 나아가 자기 결정과 선택을 최대한 존중한 「인권존중」의 제도라고 한마디로 정의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보호라는 소극적이고 수직적 관계에서 존중이라는 적극적이고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성년후견제와 사회복지의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해 여기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성년후견제, 사회복지의 공통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 주체, 옹호와 대변(advocacy), 권한부여(empowerment)라는 3개의 접점에서 간략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계약의 주체로서 당사자(본인)를 자리 매김

복지 서비스의 계약부분에 성년후견제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가 계약의 주체임을 내세울 수 있다. 이것은 성년후견제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커다란 공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의 사회복지정책에서도 복지 서비스의 공급 방식이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당사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계약을 맺는 계약중심의 복지서비스제공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행위가 어려운 사람을 둘러싼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년후견제에 근거한 법정 대리인의 존재(성년후견인)는 복지 서비스의 새로운 전개에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계약제도의 도입으로 계약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매우 큰 테마에 직면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즉, 지금까지는 인지능력과 계약능력이 미흡·미숙하다는 점에서 주위가 보호라는 명목으로 관여하게 된 결과, 예를 들어 “부모·가족이기 때문에”라든가 “본인을 위해”라는 표면적인 이유로서 적당히 가족과 친지 등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의 후견인 등의 존재는 계약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본인임을 명시하고 본인을 중심으로 계약이 성립될 것이다. 이는 당연한 일이면서도 지금까지 사회복지실천에서 소홀히 되어왔던 부분이 성년후견제의 도입에 의하여 제 자리를 찾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실천과 성년후견제의 접점 : 옹호와 대변(advocacy)

성년후견제의 시행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옹호와 대변(advocacy)”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성년후견제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응용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재산관리와 신상감호라는 성년후견제의 양측을 구축하는 후견사무에 필연적으로 옹호와 대변(advocacy)이라는 성격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따라서 성년후견제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복지가 갖는 본래의 기능에 자극을 주고 또한 이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1968년에 NASW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옹호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이듬해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대변인(advocate)로서의 사회복지사 : 사회적 희생자에 대한 대변인”이 나오고 이후 옹호와 대변(advocacy)이 사회복지의 중요한 기능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옹호가 복지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복지 영역에서 옹호의 개념은 그것에 선행하는 Normalization의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Normalization개념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비장애인과 전혀 구별 없이 사회로의 완전한 참가를 의미한다면 장애인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변화해야하는 것은 사회이고 그러한 사회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성년후견인 등은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담당하고 그 활동에는 반드시 본인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됐다하더라도 그 성년

후견인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약하고 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합법적인”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성년후견제의 활용 시, 성년후견감독인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옹호의 노력이 자칫 잘못하면 침해에 가담해 버리는 위험을 암시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대변인(advocate)”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파악하고 그것을 대변하는 옹호와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

옹호에서 중요한 관점은 침해에 대응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의 의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학대와 경제적 착취, 인권침해와 기회의 박탈, 차별 등으로부터 본인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의 기본 욕구의 충족은 옹호와 대변(advocacy)활동의 핵심이다. 옹호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권리가 침해되는 상태가 아닌, 본인의 삶을 존중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자기실현」을 위한 노력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성년후견제를 지원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즉 성년후견제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 혹은 사회복지사가 성년후견인 등과의 연계·협력하여, 사회복지의 “가치”에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3. 권한부여(empowerment)의 확대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이용자의 사회기능수행능력의 향상인데,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기능과 연결되어 이용자의 역량강화 및 권한부여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권한부여란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는 것, 혹은 힘을 부여하는 것, 능력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개인적 이유이든 혹은 사회구조적인 이유이든 또는 개인과 사회 환경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그들의 권리, 기회, 자원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켜 주려는 노력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계약의 주체로서 당사자(본인)를 자리 매김하는 것이 사회복지실천과 성년후견제의 접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사회복지실천에서는 본인을 보호하고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환경을 스스로 변화해 가는 주체자로서 본인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즉, 성년후견제를 활용한 사회복지실천은 당사자에 대한 권한부여(empowerment)를 포함하고 있다. 즉, 당사자 인 본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환경과 사회관계를 스스로 바

꾸어가는 적극적이고 주체적 존재이며,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권한부여(empowerment)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권한부여(empowerment)의 주인공은 이용자 본인이며, 성년후견인은 그 과정에 직업으로 최선을 다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성년후견관계의 시작단계에서 이용자가 의존적이거나 권리가 침해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에 관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당사자(본인)를 계약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복지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본인의 요구와 희망을 스스로 선택·결정할 수 있는 것도 권한부여(empowerment)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본인의 자존심과 존재 가치에 접근, 자기결정에 대한 지원, 협상과정에 대한 지원 등 본인의 주체화를 향한 적극적인 권한부여(empowerment)가 요구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제의 시행과 발전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의 목적인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맺음말

이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성년후견제, 사회복지는 당사자 주체, 옹호와 대변(advocacy), 권한부여(empowerment)라는 3개의 접점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간략하게 고찰해 보았다. 현대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사회복지도 예외일 수는 없다. 새로운 제도와 가치관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보호」라는 소극적이고 수직적 관계에서, 「존중」이라는 적극적이고 수평적 관계로의 변화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 성년후견제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아라이마코토교수초청 한·일국제심포지엄
2009.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성년후견추진연대
- *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2009. 법무부
- * 성년후견제 사회복지분야 지원방안 연구 변용찬, 강민희, 이송희, 전광석.
2009.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성년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연구.
우주형·조성열·최윤영·박세용, 2009. 법무부.
- * 사회복지실천론 권구영 외5인 창지사 2009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박흥기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박흥기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도가니 영화 이후로 시설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나빠졌다. 그래서 일부는 시설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이든 세우는 일은 어렵고 부수는 일은 쉽다. 부수는 것은 쉽지만, 대안은 무엇일까? 대안(alternatives)이 없는 구호는 공허하다. 세상은 모 아니면 도 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이분법(Dualism)은 무의미(meaningless)하다.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도 다양하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생김새도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데, 이것 아니면 저것 식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탈시설화, 정상화는 주장되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탈시설화, 정상화를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현존하는 시설을 폐지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여전히 시설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시설을 폐지하고 이들은 내 쫓는 것이 주장의 본질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결론은 이것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은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시설을 폐지해도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시설은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면 더 비합리적이고 더 불법적인 시설인 음성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그저 시설을 폐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역사

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사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도 만들고,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에 대한 법률도 제정하고, 나아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도 만들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수많은 법들이 제정되고 있다.

그런데 그 법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이 법들만이라도 생명력을 가지면, 지역사회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 법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법제정에만 그치지 말고, 법이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을 적용되도록 더욱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 중에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

탈시설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설을 폐지하지는 운동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실질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거주시설이 지역사회 안에 일반인들과 더불어살아갈 수 있는 거주시설의 사회화를 주장해야 한다. 거주시설의 실질적인 소규모화와 이를 확산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주거시설내의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하게해야 한다.

만일 시설폐지만 주장하고, 거주 시설 내의 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시설폐지론자는 그들의 주장에 있어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가?

결국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를 위한다면 시설폐지와 아울러 폐지 되기 전까지 시설 내의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설 안에 인권지킴이단이 마련되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고, 인권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인권의 보장은 용이한 것이 아니다

일반인들이 25평 아파트에 3명이 살고 있지 않은가? 많으면 4명이 살고.. 어떤 사람은 32평 아파트에 4명이 살고 어떤 사람은 44평 아파트에 4명이 살고 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사는가? 바로 삶의 질의 문제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탈시설화, 정상화, 자립생활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환경에 기초한 자기결정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될려면 먼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장애인 인권의 핵심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시설폐지, 탈시설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탈시설화의 바람이 분다. 탈시설화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정상화(Normalization)의 다른 짝이다.

정상화란 간단히 정의하면 일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말한다.

그렇다고 일반 사람들의 삶이 모두 정상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설은 탈시설화의 대상이다. 비정상화의 대상이다.

비록 시설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설이 존재할 수 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한 것임을 안다. 빈곤하고 어려웠던 시설에 정부가 혹은 제도권에서 할 수 있었던 당시의 최선이 바로 제도요, 시설이다.

무엇이든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하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사회 전반에 높여져 있는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은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다룬 것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인권문제를 다루었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일자리 부분에서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일상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인권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 전 분야에서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노력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법률들이 이 사회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제정되었어도 법이 생명력을 가지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했던 것 이상으로 법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노력 역시 쉬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 3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주시설

김순영

(대전여성연대 사무국장)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주시설

김순영

(대전여성연대 사무국장)

장애인 문제를 생각할 때 장애인 당사자의 상황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이고 이제 그 가족, 그리고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정신적인 장애인들과 중증의 장애인,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일상생활과 거주에 대한 문제는 다른 것보다 특별히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주변에서 중증의 장애인, 특히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가정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간절하게 바라며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 자녀, 또는 식구들을 어디로든 보낼 곳이 있는지 있으면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다. 장애가족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은 장애인들과 1년 365일,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 정말 함께하는 것에 지치고 지겨워서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중증장애인과 함께 사는 것은 가족이라기보다는 전생애 죄를 지어서 내게 없어진 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나게 다가오기도 한다.

이런 일들을 대할 때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를 낳고 중도에 장애인이 되면 집안 전체가 축대밭이 된다는 표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일부 특권층들처럼 충분히 장애를 안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장애로 인한 가족 전체의 어려움은 당연히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가족전체의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은 당연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장애시설도 노인요양시설이나 양로원처럼 인식되어져서 가족들에게 장애인이 짐이 되거나 시설 앞에 버리고 방치되도록 하지않고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발제에서 대전광역시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이 총 57개소가 있는데, 유형별 거주시설(중증장애인시설 포함)이 18개소, 단기거주시설이 9개소, 공동생활가정이 30개소가 설립 및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57개소에 약 880명의 장애인이 입소 및 생활하고 있다고 되어있다. 대전시의 등록장애인가가 71,647명(2012. 12. 31 현재)이며 이중 1, 2급 장애인이 15,893명이고 이중 다른 장애유형의 중증의 장애인은 제외하고 1급의 정신적인 장애인만을 생각해도 1,895명이다. 이 숫자로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소수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그냥 집에서 가족과 전쟁을 치르며 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장애가족들은 함께 사는 장애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인가족들이 마음놓고 장애인들을 맡길 수 있는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하자면 대규모 생활시설보다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에 따른 30명 미만의 소규모 거주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정신적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30명 미만이라고 규정된 것 보다 더 적은 수의 장애인들이 생활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일반가정의 경우 매달 지불해야하는 거주시설의 비용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될 지경임에도 할 수없이 함께 지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기초생활수급권과 상관없이 입소비용이 없거나 적어야한다고 본다.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거주시설 뿐 아니라 상황에 따른 거주시설도 설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성폭력에 노출되거나 성매매에 노출된 여성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이 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도록 할 수는 없다. 이들이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위험상황에서 격리되기 위해서 쉼터에 잠시 있게 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게 되어있고 폭력의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도 따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거주시설에 대한 다양한 조건과 방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늘어나면 장애가족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가족에게서 버려지는 장애인들이 적어질 것이다. 거주시설에서 불거지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문제들은 가족이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 이라고 본다. 가족과 주거시설이 연계되고 소통하며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사소하고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며 주거시설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이

런 일들은 교과서적이고 이론적인 것이라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거주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최근 실제로 장애인시설의 인권실태조사에 참가해본 경험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본 발제문의 연구조사의 통계에 의문이 든다. 당연히 조사방법,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정도, 거주시설이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주시설의 의·식·주, 일상생활의 문화, 자유 등 다양한 면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 주거시설의 인권문제에 있어서 평균이상의 점수를 줄 수는 없다. 물론 예전에 소문으로만 들던 거주시설의 인권문제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수치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내볼 필요도 없이) 아직도 다수의 시설장애인들이 종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식사와 의복, 외출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자립을 하기 원하는 것에 대한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적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은 오갈 곳이 없으니 참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자신이 어떤 차별이나 침해를 받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내는 경우가 허다함을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것은 가족, 사회가 함께 풀어야만 하는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고 본다. 따라서 가정의 파탄을 막고 그로인한 사회의 손실을 막으려면 중증의 장애인들이 기거할 주거시설이 많이 마련되어서 가정과 연계되어 소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거주시설과 장애가족이 소통할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권지킴이단 활동이나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 이전에 불미스러운 인권운운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및 장애인 집단지주시설제도의 장애인차별

이종준

(합동법률사무소 행복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및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제도의 장애인차별

이종준

(합동법률사무소 행복 변호사)

1. 머리글

우리 사회의 많은 장애인차별이라는 야만적인 상황 중에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집단거주시설에 관한 발제자님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깨우침의 시간이었습니다.

본 토론자는 발제와 관련한 내용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및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제도 그 자체의 장애인차별성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가.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상당한 사람들, 특히 아이를 포태하여 태아의 모습을 전자사진으로 본 사람들은 ‘낙태는 나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낙태를 한 사람, 낙태를 도와 준 의사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낙태죄로 처벌되는 예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형법의 낙태죄 규정은 사문화(법규정은 있으나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규정)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나.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장애인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나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인간

의 기본적 양심이 비추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반윤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명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4년이 넘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차별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사회여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인차별이 횡행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낙태죄마냥 사문화된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시각장애인이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하자 업주가 거부한 사건이 법원에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법원에 차별을 받았다고 호소하였고, 업주는 시각장애인이 넘어져 다치면 자신이 손해본다고 변명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차별은 맞지만 차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업주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 내용을 제2심 법원은 그대로 인용하고 대법원은 입욕거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상고심절차특례법을 원용하며 판결 분량이 5줄도 안되는 내용으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심 판결내용이 위 사건 판결의 전부였습니다.

1심 판결은, 업주가 항변하지도 않은 말(업주는 시각장애인이 넘어져 다치면 배상해야한다고만 항변하였습.)까지 동원해서 차별을 정당화시켰는데, 그 중 가장 가관이었던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목욕탕이 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1800년대말에 흑인에 대해 ‘격리하되 동등하게’라는 원칙에 따라 열차차량 중 흑인차량과 백인차량을 나누고, 식당, 휴게소, 나아가 학교까지 흑인전용, 백인전용으로 나누어, 흑인전용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흑인이 백인시설을 이용하면 처벌하던 그런 야만적인 차별이, 오늘 21세기 우리 법원의 인식인 것입니다. 더 어이없는 일은 위 1심 판결이 법원 내부에서는 모범적인 판결의 예로 선정되어 교육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의 시각이 이렇게 차별적인데, 일반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연쇄살인범, 가정과괴범의 인권은 충실하게 보호하려고,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 선고된 사형은 집행되면 안된다’고 외치면서, 타인을 해롭게 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 상시 차별적 처우에 노출되어 있는 나약한 장애인의 인권보호에는 왜 이리 무심한 지 안타깝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이제 혼자 목욕탕도 못 갑니다.

3.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제도의 장애인 차별

- 가. 발제자님의 말씀대로,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은 보통 사회와 동떨어진 으스스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의 비자발적 의사로 입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직접적 차별은 물론, 앞서 본 목욕탕 입욕거부처럼, 사회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제한, 배제, 분리, 거부도 불법인 것입니다.
- 다. 국가가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제도를 운영하며 거기에 보조금 갖다 안겨 주는 것으로 장애인 보호를 위해 할 일은 다했다고 편하게 행정하는 동안 장애인은 집단거주 시설 내에서 착취와 폭행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 라. 격리된 집단거주시설은 그 자체가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4명 단위의 소규모로 사회 내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아예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자체를 운영하지 말고 개별 장애인을 사회 내에서 1:1로 보호해 주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신에 따른 차별해소라고 생각합니다.

4. 맺음말

발제자님의 말씀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소극적인 형태의 보호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보호에 비해 최소한의 보호로서, 차별행위만큼은 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지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애인복지법과는 달리 차별에 대한 형사제재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외국의 1800년대 수준의 미개한 인식으로, 차별을 하면서도 차별인지 모르는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집단거주시설제도가 격리가 아닌, 우리 사회 내에 통합된 형태로 해석,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 5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과
성년후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조금주

(상명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과 성년후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조금주

(상명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 이 논문이 갖는 의미

2006년 12월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1월부터 이 협약이 발효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시혜적 차원이 아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인정되었음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인권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일반 사회속에서도 여전히 지속되어 왔으며, 입법부 및 사법부를 비롯한 법제도속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존재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7월부터 민법 개정에 의해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는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점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여겨지며, 특히 성년후견제에 대해 살펴본 점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2.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과제

이 논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4가지 유형, 즉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가운데 정당한 편의에 의한 차별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장애인들에게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관련 진정사건이 전년도에 비해 2.2배 늘었다는 사실은 법적 조항의 신설만이 능사이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80% 이상의 권리구제율을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령을 2015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려 한다고는 했지만, 단계적 적용 기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율이 <표 1>에서 보여지는 바처럼 저조한 것은 현실에서의 실현이 그만큼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시설물 접근 이용에서의 편의 제공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100%를 기록한 것은 다행이다. 또 의료기관 84.2%, 공공기관 82.1%, 지방공사 및 공단 72.2%, 정부기관이 70.4%로 이들 기관들은 70%를 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관만은 38.6%로 이들 기관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기관은 미래의 주역들을 길러내는 기관임을 상기할 때, 앞으로의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어느 기관보다 준수해야 할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나 감독기관은 교육기관들이 장애인들이 시설물 이용 시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이를 지키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어길 시 엄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성년후견제 성공을 위한 과제

정신장애인을 인권을 위한 성년후견제의 실시 또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다양하게 시행되어질 성년후견제는 노령인구의 증가 속에 적어도 인구의 1%가 이용할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후견인의 양성은 무엇보다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지적하고 있는 바처럼 후견인 양성에 관한 인력공급과 비용문제를 정부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시 부처 간의 불협화음 등 출발선에서부터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양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법원, 지역사회 복지단체 등과의 유기적 연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부터간의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상설화 방안 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위에서 서술한 바처럼 이 논문에서 다룬 내용들이 사전에 검토되고 준비되어 올 7월부터 시행될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 6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편의제공과 접근권 향상을 위한 과제

- 성년후견제의 역할에 대하여 -

김다현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편의제공과 접근권 향상을 위한 과제

- 성년후견제의 역할에 대하여 -

김다현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 근대 민법 형성과 더불어 민법전에 규정된 행위능력에 관한 여러 조항은 그 조항의 영향력을 예상하지 못하고 도입된 후 지속
- 기존 행위 무능력제도의 문제점 : ① 사람의 민사생활은 법률행위와 비법률행위 영역 전반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무능력제도는 법률행위 영역, 특히 재산거래 중심으로 규율 ② 재산거래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 특히 신상보호영역에서는 행위무능력자가 방치되는 결과 초래 ③ 개인의 의사 결정이 필요한 영역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의 자를 보호하는 것은 현행 행위무능력제도에 포섭되지 않음(예: 응급치료, 식물인간상태에서의 치료, 장기이식, 정신질환으로 인한 수용 등) ④ 행위무능력제도를 이용하는 자에게 낙인효과 발생. 이로 인해 그들의 재활을 도외시 하는 상황 발생
- 19070년대 유럽에서 일어난 행위무능력제도의 재조망은 인간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법적 고찰을 이끌어 내었고 이것이 성년후견제도 수립에 많은 영향을 줌
- 성년 후견법제의 기본 이념: ①존존 능력의 존중 - 피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이 가능한 한 존중. 만약 제한한다 하더라도 전면적 박탈 금지 ②능력개념의 상대화 ③ 필요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
- 성년후견제도는 공법·사회법인가? 사법으로 보아야 하는가? 성년후견제도는 민법개정안으로 도입되었지만 그 이념상 헌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려는 영역에 포섭되는 제도로서 단순히 개인의 영역으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시스템 완비가 매우 중요하고 국가는 이를 위한 책무가 있다고 여겨짐(특히 가정법원의 역할과 물질·인적 준비, 후견등기절차의 상세화 등의 준비 등)

- 성년후견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보호자의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의 상세화. 법률과 제도의 완비와 더불어 후견자들의 자격 상세화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 완비 필요.
- 특히 임의후견의 경우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 보다시피 임의후견의 활성화가 안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임의후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특히 임의후견 지정 시 임의후견계약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제도 이용이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

- 일시 및 장소 : 2013. 4. 17(수) 14:00, 대구경북디자인센터 5층 컨벤션홀
- 사회 : 김용국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 좌장 :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평가 및 전망		
구 분	내 용	시 간
개회 및 공동축사	❖ 개회선언	14:00~14:05
	❖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05~14:10
	❖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대표)	14:10~14:15
영상상영	❖ 기념영상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에 부쳐	14:15~14:30
발제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최재경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장)	14:35~14:55
	휴 식	14:55~15:10
발제 및 토론	[발제2]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정남수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 복지정책관실 정책관)	15:10~15:30
	[토론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의 평가와 제언 김시형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활동가)	15:30~15:45
	[토론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간의 이행 현황 평가 임은자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45~16:00
	휴 식	16:00~16:15
제2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발제 및 토론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연구 최승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권익증진연구부장)	16:15~16:35
	[토론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논의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제언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학대학 학장)	16:35~16:45
	[토론2] 법 개정 논의에 대한 당사자 관점의 평가 및 제언 1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16:45~16:55
	[토론3] 법 개정 논의에 대한 당사자 관점의 평가 및 제언 2 서준호 (대구장애인연맹 사무국장)	16:55~17:05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05~17:25
	폐 회	17:25~17:30

제 1 부

대 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평가 및 전망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 최재경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장)

[발제 2]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 정남수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 복지정책관실 정책관)

[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의 평가와 제언

- 김시형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활동가)

[토론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간의 이행 현황 평가

- 임은자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최재경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최재경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는 6개 지역에서 공통으로 발제하는 것이므로 자료집 6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2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정남수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 복지정책관실 정책관)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정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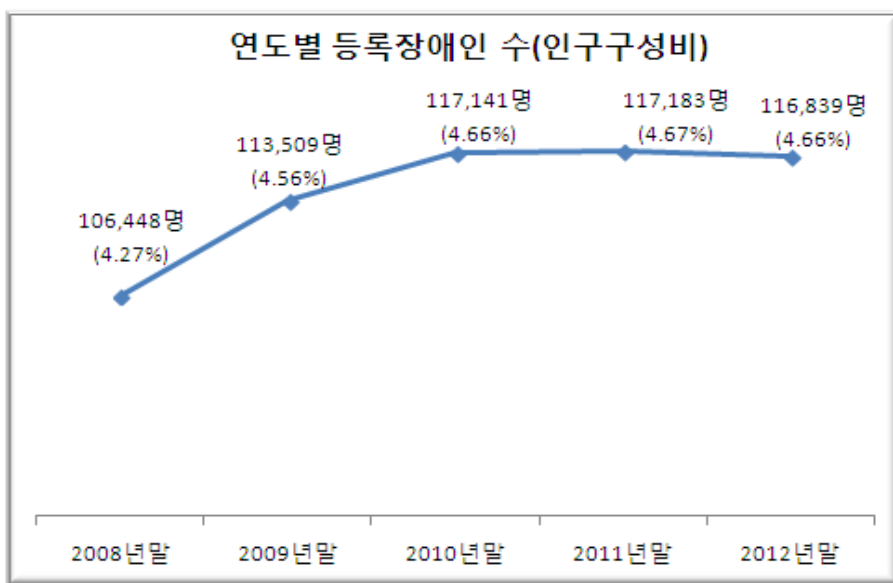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 복지정책관실 정책관)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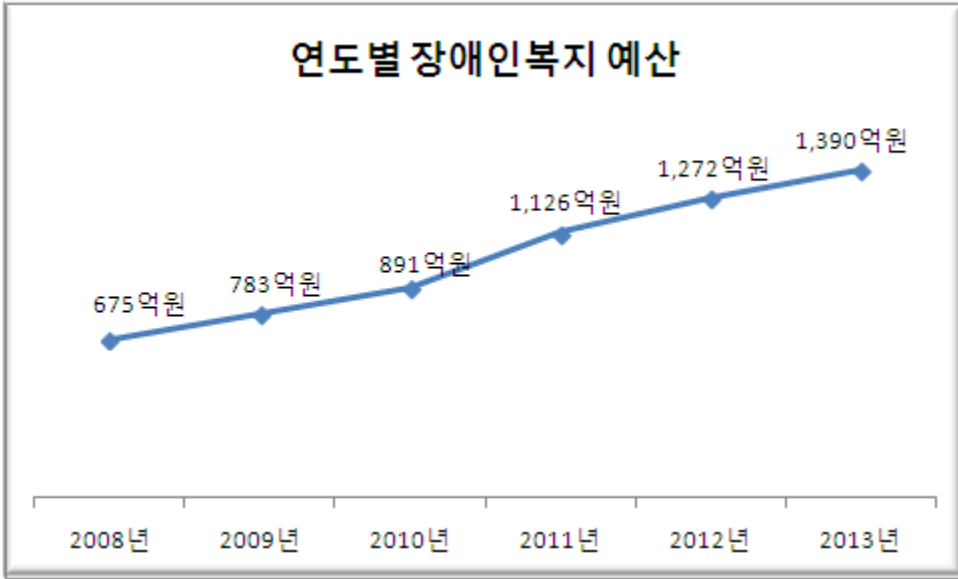
□ 인구 및 예산 (2013년)

- 장애인 : 116,839명(대구시 인구의 4.66%)
- 전체예산 : 5조9,085억원 (일반회계 4조2,200억원, 특별회계 1조6,885억원)
 - 사회복지예산 : 1조 2,060억원 (일반회계의 28.57%)
 - 장애인복지예산 : 1,390억원 (사회복지예산의 1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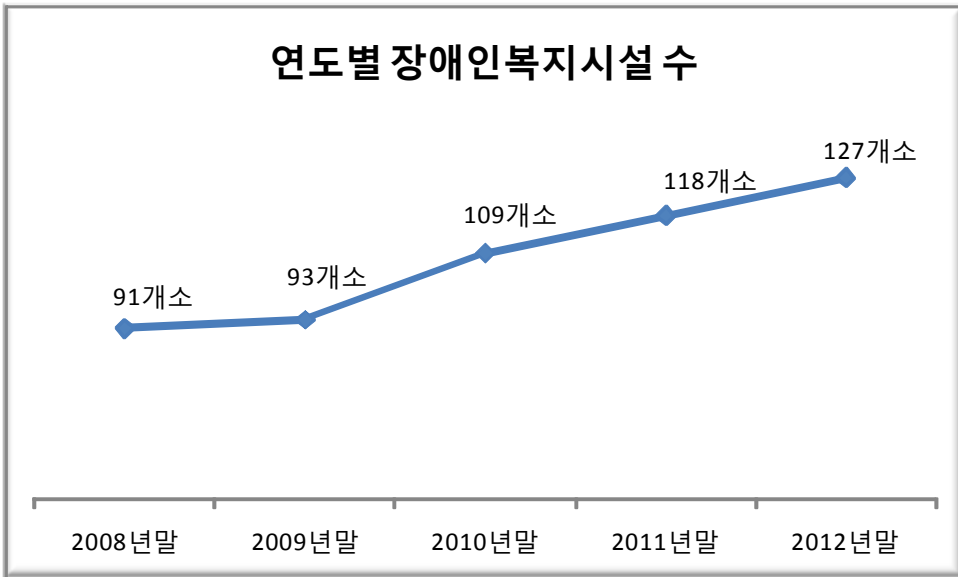
□ 연도별 등록장애인



□ 연도별 장애인 복지예산



□ 장애인 복지시설



2. 주요시책 추진성과

□ 조례제정

-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내용 :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 실시
 - 제정/시행 : 2008.09.10 / 2009.01.01.

-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 내용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장 설치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 제정/시행 : 2010.04.20 / 2010.04.20.

-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내용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운영
 - 제정/시행 : 2011.05.30 / 2012.01.01.

-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 내용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장애동료간 상담 지원,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개선 등
 - 제정/시행 : 2012.03.20 / 2012.03.20.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 운영

- 추진배경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촉진하고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상담, 홍보·교육 등으로 적정한 편의시설 유지관리
 - ※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지원사업

-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 9개소 (시 1, 구·군 8)
-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 1개소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설계도면 사전점검, 사용승인 전 현장점검, 기술적 자문

〈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대상 〉	
구·군 협의 대상	대구광역시 협의대상
공원(자연공원, 도시공원, 공원시설),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 이용),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아파트, 기숙사(30인 이상), 연립주택(10세대 이상) 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	편의시설 설치대상 중 연면적 100,000㎡ 이상 또는 21층 이상 300세대 이상 연립주택, 경제자유구역내 건물·시설물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

○ 사업비 : 435백만원 (2012년)

○ 추진실적

-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점검, 사용승인 전 현장점검 : 1,444건 (2012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 1,521건 (2012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사업내용

- 공공기관(시청사, 구·군청사,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검
- 다중 이용시설(체육관, 영화관, 공원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행정지도 강화

○ 추진실적

- 편의시설 설치대상 전수조사(매 5년마다 실시) : 2008. 5. ~ 10.

- ※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추진중 : 2013.3. ~ 9.
- 문화예술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시정조치(5개소) : 2010. 8.
 - 대상 : 중구 봉산문화회관, 동구 문화체육회관, 북구 문화예술회관, 수성아트피아, 달서구 첨단문화회관
 - 개선사항 : 출입구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유도신호장치 및 계단, 화장실, 승강기, 웹사이트 접근성 등
- 공원시설 모니터링 결과 시정조치 : 2010. 9.
 - 시정대상 : 앞산공원 대구스타디움공원, 두류공원, 수목원, 대구체육공원, 경상감영공원, 2.28기념공원, 국채보상기념공원, 감삼공원, 침산공원, 들샘공원, 망우당공원, 봉무공원, 수성유원지, 월곡역사공원, 월광수변공원
 - 개선사항 : 장애인화장실, 휠체어 장애인 불편, 안내시설, 점자블럭, 전용주차공간 음성안내장치, 점자표시 미설치, 경사로가 법적 기준 미달 등
- 영화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미비사항 행정조치(12개소) : 2011. 12.
- 전국체전 경기장 66개소 편의시설 점검 : 2012.4 ~ 5.
- 시산하 사업소 20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 2012. 8 ~ 9.

□ 장애인용 택시 나드리콜 운영

○ 사업내용

- 운영주체 : 시설관리공단 ('08.11.18 위·수탁 협약)
- 사업비 : 4,876백만원 (2012년)
- 운영전담기구 : 이동지원센터(운전원 82명, 상담원 11명, 관리직 4명)
- 운영시간 : 연중무휴, 24시간제/일

○ 추진실적

- 운영대수 : 110대 (특장차 80대, 콜택시 30대)

(신규/누계, 단위: 대)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0/0	30/30	30/60	40/100	10/110
특 장 차	0/0	30/30	30/60	10/70	10/80
콜택시	0/0	0/0	0/0	30/30	0/30

※ 업무협약 체결 콜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

- 연간 이용자 수 : 333,204명 (특장차 266,331 콜택시 66,873)

□ 저상버스 운행

○ 사업내용

-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 운영 (2004년부터 계속)
-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도입
- 사업비 : 2,500백만원 (2012년)

○ 추진실적

- 운행대수 : 171대 (전체 시내버스 1,561대의 11%)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자체차량 운행 : 64대 (버스 18, 승합 46)
-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운행 : 2대 (버스 1, 승합차 1)

○ 추진실적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편의 제공 : 연인원 10만명 정도
 - 장애인종합복지관 : 7개소 30대 운행
 - 장애인거주시설 : 13개소 34대 운행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 2대 운행, 이용 연인원 11,634명 (2012년)

□ 도로시설물 정비

○ 사업내용

-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 등을 통한 장애인, 노약자의 이동불편 해소
- 정비 대상 : 4,289개소
 - 턱 높이 2cm이상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미설치
 -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주요간선도로(도로 폭 20m 이상 도로)
 - 주요 관문도로 및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도로
- 사업기간 : 1999년 ~ 2015년
- 사업비 : 3,345백만원

○ 추진실적

- 정비실적 : 2,728개소 (전체 4,289개소의 63.6%)

□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개선

○ 사업내용

- 1호선 도시철도역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음성유도기를 설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복지증진
- 사업량 : 1호선 30개역
(엘리베이터 98대, 에스컬레이터 49대, 음성유도기 687대)
- 사업기간 : 2005년 ~ 2015년
- 사업비 : 832억원 (국비 327억, 지방비 505억)
- 시행주체 : 대구도시철도공사

○ 추진실적

- 개선실적 : 564대 (67.6%)

(신규/누계, 단위: 대)

구 분	2008년 이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3/13	34/47	223/270	141/411	153/564
엘리베이터	13/13	6/19	26/45	21/66	22/88
에스컬레이터	0/0	0/0	5/5	0/5	0/5
음성유도기	0/0	28/28	192/220	120/340	131/471

〈도시철도 2호선 이동편의시설 현황〉

- 26개역 엘리베이터 69대, 에스컬레이터 208대 설치
- 경산 연장구간 이동편의시설 설치 (2012년 9월 개통)
 - 사업량 : 3개역 엘리베이터 12대, 에스컬레이터 27대
 - 사업비 : 44억

〈도시철도 3호선 이동편의시설 설치계획〉

- 30개역 엘리베이터 102대, 에스컬레이터 163대
- 사업비 : 256억
- 준공예정 : 2014년 6월

□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활동

○ 사업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교육
 - ※ 대상 : 일반시민, 공무원,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홍보
 - 홍보자료 배포 및 반상회를 통한 인쇄물홍보
 - 대구시 홈페이지, 시정홍보 전광판, 시내버스 문자안내판을 이용한 영상홍보
-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 대구광역시, 구·군 홈페이지 WA 인증마크 획득, 장애인 전용 웹사이트 운용
- 인권실태조사 :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1대 1 면담조사 실시

※ 민관합동조사팀 : 팀별 5명 (장애인단체, 인권활동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

○ 추진실적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교육 : 3,013명 (2012년)
- 홍보물 10,000부, 홍보동영상 1편 제작 홍보실시 (2012년)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 2009년 : 장애인거주시설 13개소 전수조사
 - 2011년 :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조사(정보재활원, 선명요육원, 자유재활원, 셋돌삶터)
 - 2012년 :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조사(글라리의 집, 청구재활원, 대구안식원, 인제요양원)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 : 2012년 9월 (18개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3,045명 (만6~64세 등록 장애인(1급)으로 “인정조사표”에 의해 220점 이상인 자, 2~3급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개별 여건에 따라 월 42~243시간 지원(시 자체 추가지원 포함)
- 지원기관 : 36개소(활동보조 3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3) / 교육기관 3
- 활동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바우처 사업)

○ 추진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원인원	1,058	1,798	2,023	2,249	3,045
사 업 비	5,899	12,074	13,204	17,107	21,782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사업내용

- 시설수(2012년) : 31개소(종사자 82명, 근로장애인 754명)
- 주요 생산품 : 복사용지, 종량제봉투, 제과제빵, 천연비누, 재생화장지 등
- 근로장애인 임금현황

구 분	계	10만원 미만	10 ~ 30만원	30 ~ 50만원	50 ~ 70만원	70 ~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상
근로 장애인수	754명	248명 (33%)	324명 (43%)	63명 (8%)	12명 (2%)	46명 (6%)	61명 (8%)

○ 추진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설수	22	22	27	30	31
근로자 수	477	505	604	708	754
운영비 지원	1,279	2,104	2,825	4,107	4,825

3. 2013년 주요 추진계획

○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 조사기간 : 2013. 3. ~ 9. (매 5년 주기 전수조사)
- 조사자 : 34명 (구·군별 조사요원 선발)
- 조사대상 :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일(1998.4.11.)이후 건축행위 건물
 - ※ 공공시설물(국가·지방청사, 복지시설, 학교 등)은 건축연도와 관계없이 포함
- 조사항목 : 건축허가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5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월) 대비

경기장 편의시설 점검 : 2013. 3. ~ 4.

○ 장애인 인권 옹호활동

- 장애인종합지원계획 수립 : 장애인 인권기본계획 및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 성년후견제 관련 세미나 개최, 성년후견인 서비스 이용자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 : 4개소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 정기적인 회의 개최, 운영비 지원
- 장애인 인식개선 운동 확대 : 일반시민,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 교육계획 : 4,000명 (대구광역시, 구·군)
 - 홍보계획 : 시정홍보전광판, 청내 홍보용 TV를 통한 영상홍보 등

○ 장애인 일자리 사업

- 직업재활시설·다수고용사업장 운영 : 31개소 754명, 6,163백만원
-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지원 : 487명 4,107백만원
 - 행정도우미 : 171명
 - 시각장애인 안마사 : 45명
 - 복지일자리(청소도우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등) : 271명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의 평가와 제언

-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김시형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활동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의 평가와 제언 -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김시형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활동가)

1. 들어가며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을 맞으며

- 2008년 4월 11일 장애인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제정한 ‘한국 최초의 인권법’이라 불리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침해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 금융, 가정, 시설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 영역을 포괄하는 법률 안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지긋지긋한 장애인차별의 예방과 해소, 답답하기만 했던 권리구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생겨났다는 데에서 한국사회에 큰 의의를 가진 법률.
- 그러나 현실에서의 법 적용은 장애계의 염원보다 속도가 더디고, 체감이 어려운 상황.
 - 여전히 장애인의 80.7%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라고 느끼고 있으며, 39.9%는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항상 내지는 가끔 받고 있다’고 말함. 그러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익을 구제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단 7.8%만이 ‘알고 있다’¹⁾.
 - 최근 불거진 대학생 ‘JM’문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적 책임, 충분한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이야기 하지 않고, 대학생 개인들의 문화에 대해 윤리적인 비판만을 가하며 근본의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 올해 4월 11일부터 사업장(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원 및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의무화되며, 모든 법인으로 웹접근성 준수 대상이 확대될 예정.
 - 그러나 올해 초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결과, 수만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사이트의

1) 보고서 ‘2011년 장애인 차별·폭력 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30%만이 웹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힘²⁾.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2.0)’라는 기준조차 사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기본적인 정보접근성에 대한 이해와 장애감수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형식·기술적인 인증마크 반기에 매몰되는가 하면, 공공기관의 낮은 이행율과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들로 인해 웹접근성은 말 그대로 ‘발등의 불’이 됨.

- 물론, 5년을 맞이하는 시행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의 각종 다양한 발전적 연구들과 권고, 제언들, 대구인권사무소의 교육·홍보에서의 노력들이 있어왔으며, 민간 장애인단체 차원에서의 차별상담과 대응, 인권교육 등 역시도 점차 확산되고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 긍정적인 면들이 있음.
-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하위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지역사회에 대두되고 있다는 점들은 고무적임.
-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차별은 뿌리깊게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차별진정을 제기하는 직접적 주체인 장애인당사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벌써 사문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
- 이에 본 토론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인권위와 대구시의 발제문 현황을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재분석하고, 앞으로의 5년, 10년, 그 이후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제언들을 간략히 하고자 함.

2. 평가 : 5년간의 국가인권위와 대구시의 현황에 대해

- 먼저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국가정책과 예산수반, 법률 정비와 조정 등 실효성과 직결되는 현황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별도의 발제자료를 사전에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유감임.
-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장애인차별진정현황과 결과, 과정에서의 대구인권사무소의 개입과정과 역할 등에 대해서도 추 후에는 파악하고 지역성이 녹아들어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

2) 기사 ‘장차법 시행 코앞, 갈 길 먼 ‘웹접근성’, ZDNetKorea 뉴스(2013.03.20.)

1) 국가인권위원회 발제에 따른 토론

(1) 장애차별사건 접수현황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11.25.) 이 후 2012년 말까지 접수된 차별사건 14,095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이 5,883건(41.7%)라는 점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이 후 20.4%였던 장애차별사건 비중이 53.2%로 급격하게 늘어난 점은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적법한 '무기'가 생겨났다는 점과 절차적인 '창구'가 마련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인식하며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의식이 향상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반영.
- 장애유형별 현황에서, 지체장애인에서 시각장애인, 지적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순으로 사건 접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며, 사건의 접수는 법의 인지, 권리의식, 직접적 정당한 편의제공에서의 단계적 확대, 정보접근의 확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언어장애인의 경우, 전체 등록 장애인구와 중복장애로 인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 비중이 낮은 점을 볼 때 상담 및 진정접수 과정에서의 장애감수성과 접근성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진 않은지 인권위 차원에서의 확인과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문맹의 언어장애인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 문자상담, 접수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등에 대한 확인 필요.
-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낙인과 편견이 상당히 심하고, 정신병원 및 요양원 등 실질적으로 구금·격리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당사자 간의 소통 거리를 물리적·심리적·정서적으로 좁혀나갈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
 - 사례: 대구 모 정신병원으로 강제입원된 정신장애인이 퇴원 및 처우개선 신청, 인권상담 신청 등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에 의해 차단당한 사례.
- 장애인차별의 영역별 현황에 있어, 5년 간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이 주로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63.5%)인 점은 법의 많은 내용과 장애인의 현실적인 일상생활에서의 범주가 재화용역 이용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나, 고용, 교육, 사법행정 등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위의 역할이 그만큼의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함.
- 노동(노동법 등), 학교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등에서의 별도의 법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간한 차별진정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현실에서는 더 많으며, 진정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사업체, 사립학교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소극적인 것이

사실.

- 사례 : 일반학교의 지체장애 중학생이 학급 반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다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진정에 대해 당사자부모가 효과성과 기간, 구제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상담단체와 학교와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해결.
- 사례 : 복지관 캠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지적장애자녀가 폭행을 당한 것을 인지한 부모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보다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가해자를 고소.
- 또한, 사법·행정·참정권의 경우, 기본적인 조직 내의 보수성과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해 진정사건이 차별이 아닌 경우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당사자들이 문제해결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낮은 현실. 더불어 사법·행정·참정권 등의 경우, 경찰조사 시, 재판 시, 민원제기 시, 투표 시 등과 같이 문제가 발생됨과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으나, 현재 구조는 긴급한 처리가 힘들어 차별을 당한 후에 진정하는 방법 외엔 없음.
- 사례 : 2012년 총선 시, 대구 모 투표소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짐짝처럼 들려 올려져 투표를 한 것을 차별로 진정하였으나 기각됨. 이미 투표를 진행한 상태에서 앞으로 선관위에서 투표소 접근성 개선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 진정을 기각 처리한 것.
- 한편, 재화용역 이용 부분 다음으로 높은 ‘괴롭힘 등’의 영역(10.3% 비중)에서의 차별은 사실상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진정주체의 억울함과 진술보다 조사주체의 인권감수성과 장애이해 정도가 접수와 진행과정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임.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사건의 해석과 결론이 달라지는 일정정도 모호함이 존재하기 때문. 즉, 괴롭힘 등의 영역은 장애인당사자와의 심리·정서적 거리감, 감수성의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앞으로 인권위의 노력으로 많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보임.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총 227건의 진정 중 81건(35.7%)이 괴롭힘 등에 대한 접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나가야 할 필요. 괴롭힘 등의 영역은 가시적인 차별보다 비가시적인 차별들이 더욱 많아지는 추세를 감안할 시, 추 후 진정접수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2) 장애차별사건 처리현황

- 차별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대한 것은 장애인차별 진정을 접수하는 주체들에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효성과 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인지하는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음. 인권위의 장애차별사건의 처리현황이 실질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

-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운동하고, 차별상담 및 대응을 하고 있는 하나의 민간단체로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당사자 중의 한 명으로서 현재의 차별사건 처리현황은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전의 차별사건은 차치하고서라도, 법 시행 이 후 지난 5년 간 접수된 차별사건 5,230건 중 604여건(11.5%)이 여전히 미해결 또는 미처리과제로 남아있고, 처리된 4,626건(88.5%) 중에서도 단 9.5%(291건)만이 권고조치가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수밖에 없음.
- 국·내외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는 이명박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및 인력감축, 낙하산 인사³⁾에 따른 문제들은 예견대로 장애인차별시정에 대한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역할로서의 인권위 기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
-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구조적 조건의 변화를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장애계 현장에서 바라본 인권위는 여전히 소극적이며, 사무적이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장애인차별에 대한 대응과 처리에 있어서 관성화되고 있다는 지적.
- 국가인권위원회는 발제를 통해 전체 사건 중 80.2%(3,070건)가 권리구제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되는 것 중 실제로 85.1%(2,612건)는 조사 중 취하, 혹은 기각된 사건임. 즉, 인권위가 ‘권리구제 대상’으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내용이므로 실질적으로 권리구제 처리 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
- 따라서 이를 제외한 권고율 9.5%와 합의종결 5.4%(166건)만이 실제 권리구제의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 즉, 실제로는 전체 차별사건 5,230건 중 457건(8.7%)만이 차별에 따라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는 말. 이렇게 본다면 연간 평균 100건도 채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가 권리구제 조치를 취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장애인차별상담 및 대응 현장에서 별도의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장애인단체의 경우, 직접 개입하여 민(대응주체)-민(피대응주체), 혹은 민-관의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그 진정 처리과정에서 장애감수성에

3)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25일 10주년을 환영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독립성과 신뢰를 일부 잃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2011.11.29., 노컷뉴스)’ 고 밝히기도 함.

기반한 입장들에 많은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됨. 진정사건에 대해 진정인과의 충분한 소통 및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무적으로 처리하거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합의 종결 및 취하 등을 중용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함.

- 사례 : 대구 모 대규모 음식점체의 경사로 미설치로 인해 장애인당사자가 진정을 접수하였으나, 출입문에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장애인일 경우, 연락하라는 공지문을 설치하였으므로 해당 진정 건을 기각한다고 인권위가 진정인에게 일방적 통보.
- 사례 : 대구시의원 모 후보가 선거유세 중 장애인당사자에게 장애비하 및 모욕적인 언사를 함으로 인해 진정을 접수하였으나, 인권위 조사관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진정인의 전화번호를 가해자에게 알려주어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이 다시 옴으로써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초래. 이후 조사관이 연락이 왔었는지,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면 사건을 합의종결할 것을 중용.
-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된 국제마라톤대회 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주최 측의 참가 거부에 관해 별도의 심도 있는 조사과정 없이 기각처리.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서도 밝히고 있듯 비교적 가시적인 재화용역 영역에 대한 권고율은 240건(전체 권고건수의 82.5%)이나 기각 및 각하율이 가장 높은 사건으로 '괴롭힘 등'영역이 꼽힘. 5년 동안 '괴롭힘 등' 영역에서 938건(17.9%)의 진정이 접수되었지만 권고조치가 단 10건에 그침. 이는 물적 증거와 정황들을 확보하기 힘든 비가시적인 '괴롭힘 등'영역의 특성상 인권위가 적극적인 조사과정을 충분히 밟고 있지 못하다는 점.

(3) 직권조사

-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주요한 역할로서 인권위는 별도의 차별진정이 접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직권 조사는 인권위가 지니는 차별시정의 역할 중 매우 중요한 것으로 공적인 차별시정기구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기능이기도 함.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 후, 직권조사는 총 13건에 불과하며, 장애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나 TV, 신문,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해 어느 정도 그 사실이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되거나 입증된 것들이 많음. 이는 제보의 수준에 따라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하는 직권조사가 많지 않으며, 직권조사의 실시에도 있어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것. 실제로 장애인단체들에서 시설, 병원, 공장 등에 대한 목격과 증언 등을 토대로 직권조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활동가가 이미 입증할만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기하지 못하는 이상 거부되는 경우가 허다함. 그러나 별도의 권한을 지니지 못한 민간 활동가가 이러한 자료들을 이미 확보한 뒤 인권위에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위에 직권조사 기능이 중요하게 부여된 것이기도 함.

(4)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역인권사무소의 교육·홍보·방문면담 및 조사 등에 있어 지역 내 차별상담 및 대응기관과의 연계와 협조 등을 통해 피해자 대응에 관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다면 지역적 특성을 살린 효과적인 대응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는 지역인권사무소의 현실적 인력문제의 단기적 해소와 사건에 대한 밀도 있는 진행, 피해당사자가 분리되어 차별상담 및 대응을 밟아가는 과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 장애인단체의 경우에도 일정정도의 권한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인권침해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 더불어 국가인권위 차별사건접수 및 처리에 대한 중앙집중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각 종 과제 등의 연구에 있어서도 지역인권사무소의 발전과 권한 및 역할의 조정, 지역사회 협력방안 등에 대한 연구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

2) 대구광역시 발제에 따른 토론

- (2012년 자료발제가 없는 관계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대구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진정만 200여건에 달함. 그러나 대구시에는 현재 장애인의 인권침해 발생 시 이를 구제하고 긴급지원이 가능한 공간은 물론, 어떠한 지원체계도 전무한 상황.
- 2008년 모방송사에 방영된 장애인인권침해사건, 2010년 1월 사설치료실에서 감금되어 사망한 장애아동사건, 정신병원 내에서 일어난 정신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 등 대구시 장애인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대구시는 이에 대해 방관.

(1) 자치법규 및 관련 계획 수립 등

- ‘인권’이라는 영역의 특성상 자립생활, 노동, 사회참여 등에 대한 부분을 분리하여 사고하기는 힘들다, 발제한 장애인 관련 조례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상위법으로 규정하는 조례는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2011.05.30.)(이하 인권증진조례)〉임. 이 외 조례의 경우, 편의증진법 및 건축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의 성과로 모두 함축하여 정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조례의 경우, 2010년부터 지역 장애계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의 꾸준한 논의를 통해 구성되어 오고 있던 조례안을 김의식, 김대성 시의원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함에 따라 상당부분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 조례이며, 그 내용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교육, 홍보 중심으로 다시 언급하는 정도와 위원회 설치, 계획마련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담지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당시 조례제정추진단 멤버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지역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인권센터 등) 마련 △긴급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공익소송 지원방안 마련 △장애인차별시정담당관 배치 △생활시설 및 정신병원 등 장애인 거주 생활형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청각/시각/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 취약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 △공무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시간 확대 및 정례화 계획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인권증진조례 제정에 따라 2013년 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지역 장애인종합계획(5년 간)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나, 본 조례를 통해 마련된 인권증진 기본 5개년 계획 예산에 명목상 자립생활이지만 실제로는 활동보조수요조사 등을 섞어 진행할 예정에 있어, 예산대비 추진과정에서의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음.
- 또한, 김범일 대구시장의 핵심적인 장애인복지 공약이기도 했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경우,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대구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턱 없이 미치지 못하는 40만 3천원(2011년 기준)이라는 전국에서도 최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과 더불어 운영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한 대표적인 형식적인 장애인 고용사업⁴⁾.

4)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80% 이상,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은 90만 2880원으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72만 2304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제석근로사업장’의 경우도 기준에 못 미치는 62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대구드림텍’은 40만 3000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무용지물’, 복지TV뉴스(2012.10.11.)

(2) 이동권(저상버스, 도시철도, 특별교통수단, 도로정비 등)

- 2012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통상적인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24.4%이며 연평균 1.2%로 지속 증가할 추세로 판단하고 있음.
- 대구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에 의거 2011년까지 (전국)전체버스의 31.5%를, 2013년도까지는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지만, 2012년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에서 201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를 40%로 후퇴시키는가 하면, 특별교통수단(특장차) 도입 역시 2016년까지 141대로 그 도입시기를 연장시킴.
- 현재 전국적으로 2004년부터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2009년 978대, 2010년 838대, 2011년 693대가 도입되는 등 2011년 기준 3,899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운행 중. 현재 대구시는 11%라는 부끄러운 도입수준을 보이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김범일 대구시장은 자신의 공약이행상황에서 50%가 달성되어야 할 2013년이 지나야 나머지 615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시하고 있어, 임기종료 후 실제로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
- 대구시가 스스로 세운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2013년까지 대구시에는 총 343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어야 하며, 현재 80대의 특별교통수단은 18대가 증차된 98대가 운행되어야 함. 그러나 대구시는 현재 저상버스 30대, 특별교통수단 10대 도입예산만을 책정하여 애초 계획과 예산이 따로 굴러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현재 대구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의지를 갖고 펼쳐지지 않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특별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기임.

3. 장애인과 더불어 살기편한 도시 구현(4)

1 장애인 이동권 확대 저상버스(781대 도입) & 나드리콜(141대 도입) ▶

주요추진내용	향후계획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 ~ '11 : 146대 - '12.6월말 현재 : 2대 추가도입 • 현 운행대수 : 56개노선 148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 20대 도입 • 13년 이후 : 615대 도입 예정 	정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12 : 8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하반기 : 나드리콜 5대 • 13년 이후 : 나드리콜 56대 • ※ 13년이후 복권기금으로 운영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중 김범일 시장 공약사항 부문>

〈대구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중 저상버스 도입계획〉

구 분		기 준	단 기					중장기 (~2031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저상버스 도입대수(대)	계 획	-	89	109	110	109	62	479
	누 적	145	234	343	453	562	624	781
	도입률	8.7%	15%	22%	29%	36%	40%	50%
비 고		-	CNG저상버스 도입		전기저상버스 도입			

〈대구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중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대)	계 획	-	14	14	14	14	15
	누 적	70	84	98	112	126	141
	도입률	49.6%	59.6%	69.5%	79.4%	89.4%	100.0%
개인택시 시범운영대수(대)	계 획	-	20	시범 운영 후 도입효과 분석을 통하여 확대 구축 검토			
	누 적	30	50				

- 또한, 편의시설 설치 및 도로 정비 등에 있어 대구의 대표적인 근린생활시설 공간영역인 시내 동성로만 본다 하더라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사 기간 중 장애인의 접근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이동하지 못하는 구간들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공사 후에는 기존에 민간업체에서 자의로 설치해 놓은 경사로를 오히려 철거하고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음.
- 더불어 지자체 담당부서 간의 충분한 연계와 소통이 없이 경사로 등을 설치하고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물(예: 경사로)이 불법철거물이라고 하여, 설치하면 설치하는 족족 구청 건설 및 건축 담당과에서는 철거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2013년 경사로 보급사업을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나, 이 역시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장애인에 대한 교통 이동권 현황이 저조한 대구시의 경우, 지하철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대중교통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3호선은 벌써부터 많은 우려점들을 낳고 있음. 대구 공식 부채 2조 4천억원 중 대부분이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품도시를 구현한다며 장애인접근성에 대한 토론과 논의에 앞서 인도구간을 통상 블록보다 2배 비싼 화강판석으로 하는가 하면, 지하철 화재사고의 경험이 있는 지역, 모노레일

인 점을 감안할 때에 안전상 대피 및 응급책 등에 있어 관리인력이 기본적인에도 철도 전체를 무인화 운영할 계획에 있어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음.

(3) 활동보조 및 자립생활 등

- 2010년 말 등록장애인구는 2,517,000명으로 2005년 1,669,000명에 비해 848,000명 증가한 추세를 보임. 대구시의 등록장애인구는 117,183명이며, 이 중 1~2급 중증장애인이 26,535명(전체 장애인 중 22.6%)으로 7대 대도시 중 서울과 함께 중증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음.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 활동지원제도는 신변처리,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의 대부분에 타인의 도움과 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말 그대로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
- 2011년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시 27.5%의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이 84.2%로 여전히 가족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활동보조인을 통해 보조를 받는 경우는 단 1.7%대에 그침.
- 최근 자택에서 활동보조인 퇴근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사망한 김주영씨의 죽음 이후,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존현실이 드러나며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음.
- 중앙정부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시행되는 국비사업을 제외하면 대구시의 경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의 요구로 인해 만들어진 자체적인 추가지원제도를 갖고 있으나, 2013년 예산을 전년 17억원 대비 약 3억원만을 소폭 증액하여 급여수가 증가, 대상자 증가, 시간 증가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예산을 책정. 객관적인 기준과 당사자 필요도가 아닌 전체 예산총량에 따라 서비스 기준이 달라지는 한계를 드러냄.
- 또한, 적은 예산으로 인해 신규 시비 추가지원 대상자 자격을 1급(인정점수 380점 이상) 중에서도 다시 400점 또는 436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국한시키고 있음.
-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하루 24시간의 활동지원이 사실상 필요 하지만 예산을 이유로 이번 정부 급여시간변동으로 활동보조 받는 시간이 올라가는 대상자에 대해 시비지원을 중단하고, 하락되는 이에 대해 금년에만 추가지원으로 기존 시간을 보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많은 죽음과 사회적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활동보조 시간을 보장받기 힘들 것으로 보임.

- 대구시 등록 장애인의 경우, 현재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2012년 기준(당시 1급 장애인만 대상) 7,020명 중 2,206명에 불과하며, 이 중 대구시 추가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고작 362명(1급 220, 2-3급 125, 긴급 17)에 머물고 있어 아주 극소수의 장애인만이 활동지원제도와 시비추가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 발제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2012년 대구시는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2012년 9월 대구시 최초로 수립된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방안’연구결과에서는 자발적 입소가 7.3%에 불과한가 하면, 시설 입소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이 되는 비율이 7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30년 이상 21.4%). 또한, 활동보조인 및 주거지원 시 70.5%가 탈시설을 희망한다고 밝힘.
- 그러나 현재 대구시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금 500만원 지원정책 외, 주거 및 활동보조, 소득,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어떠한 지원체계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탈시설 의향이 있음에도 여전히 수 많은 장애인당사자가 생활시설에서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 실정.

3. 평가에 따른 제언 : 지역사회 중심으로

1)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

- 장애인 권리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결국 예산의 문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제도와 예산투여를 통해서 기초가 마련되어야 하는 문제.
- 이와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정의를 보다 사회적 의미를 포괄하고(예: 단기 및 일시적 장애를 포괄하는 것 등),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준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성의 확대(기존 편의증진법에서의 기준을 넘는 것)하며, 단순 권고를 넘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권한 강화하고, 입증책임의 배분을 전환으로 바꾸는 것 등 본 법의 개정과 더불어 보험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상법 732조의 폐지하고, 상충되는 다양한 법률들을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노력들이 필요함. 이 외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인력 확충, 법의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이에 대해서는 대구지역 토론인만큼 본 토론회의 2부 발제자 및 토론자와 서울 등의 토론사에서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며 생략함.

2) 지자체 및 지역사회 자원

(1) 대구광역시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무엇보다 현재 대구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장애인종합지원계획(5개년)은 장애인인권증진조례에 근거하여 마련된 예산이며, 이미 불충분한 예산으로 책정된 계획이므로, 인권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민·관의 적절한 토론과정과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어야만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은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구시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 그러나 대구시의 발제문에도 파악되지 않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단계별 조치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어느 영역에서 얼마만큼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것은 상당한 문제.
- 대구의 대표적인 지역은행에서조차 웹접근성 및 장애인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동성로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은 접근하지 못함. 지자체는 교육, 홍보를 넘어 직접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에 따른 민·관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과 강제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시기.
- 차별유형은 소송, 직접 개입, 즉각적인 (물리적 공간의)분리조치 등을 요구하며 복합적이고 어려워지고 있음. 대구지역의 경우만 하더라도, 타이어공장에서 지적장애인이 강제노동 및 임금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나, 분리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적인 공간 및 인력 등의 문제로 한계에 부딪힌 경우가 있으며, 정신병원에서의 종사자에 의한 지속적인 성폭력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도 나오고 있음. 더불어 일상적으로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종사자에 의한 차별사례,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융사기 등의 문제가 접수되고 있으나 적절한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진행에 차질이 많음.
- 장애인 인권옹호 업무는 그 특성상 장애인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피해자 동료로서의 동질감과 감수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대구시에는 현재 이를 위한 공적 체계가 전무한 현실이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있으나, 모든 인권문제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에서의 현실적인 한계가 상당함.
- 따라서 지역사회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밀착 처리할 수 있는 전문시스템이 필요 시 되어 현재 서울, 부산, 경기도 등에서 (가칭)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 준비 중에 있음. 전문적인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인 P&A(Protection & Advocacy)는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대변한다는 의미로, 미국에서는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2012년 대구광역시 김대성의원, 이재화의원 및 장애인단체⁵⁾가 마련한 장애인권리옹호체계 지역사회 제언대회를 통해 대구지역에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적극적인 권리옹호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민간으로서의 독립성과 역동성, 공적 시스템으로서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동시에 지니는 반관반민성격의 P&A기관의 필요성이 화두가 된 바 있음.
- 이에 필요한 장애인권증진조례의 개정으로 민간의 역동성과 공공의 안정성, 상호 간의 독립성이 전제된 권한 있는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대응 기관이 절실히 필요. 이미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6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되는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할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관련 조례의 제정과 인권센터 및 피해자 쉼터 설치 등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음. 이 외 경남, 충북, 서울 등에서도 인권센터의 방향과 역할에 관한 안을 잡아가고 있어 대구시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지고 있음.

(2)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 : 지역인권사무소의 권한강화 및 민/관협력체계 강화

- 중앙정부차원으로 제기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싼 핵심적인 요구는 시정기구 역할로서의 위상 강화와 권한 확대, 인력의 현실적인 증원, 지역사무소의 확대와 연계강화 등이며,
-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는 장애인단체의 그리 새롭지 않은 요구들로는 △확대된 홍보 및 교육 △피진정인(기관)에 대한 조치 후 자체적인 관리감독 체계(특히, 사적 기관) △다양한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법 이해 및 전달방법의 개발 △당사자적 장애인권감수성으로의 사건 접근과 해결과정에서의 심도있는 노력 △방문상담 및 조사 등에서의 당사자단체 연계지원 △지역인권사무소의 홍보·교육을 넘어선 직접적인 권한 강화와 인력 확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임. 5년 간 주기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사실 전혀 새롭지 않은 요구들임.
- 대구인권사무소의 경우, 부족한 인력과 지원일 것임에도 정례적이고 사안에 따른 민/관 협력 테이블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교육, 조례 제·개정, 모니터링단 운영, 인권순회상담, 인권창안포럼 등 전반적인 인권향상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사업들을 진행해

5) 2012년 11월 27일, 장애인권리옹호체계 마련과 인권증진조례 개정을 위한 지역사회제언대회. 대구광역시 김대성의원, 이재화의원,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가 주최. 대구시에 P&A성격의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필요한 배경과 현재 민간단체의 시스템에 관해 토론.

오고 있음은 고무적임.

- 다만 지역 내 장애인 차별 사건에 관한 민간 합동으로의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예를 들어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상담하여 지원해 오고 있던 경우, 분절된 형식이 아닌 지역인권사무소와의 연계를 통해 공동의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
- 장애인차별상담과 더불어 장애인권교육에 관해서도 평등한 입장에서의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포괄적 장애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장애계 : ‘장애산업’이라는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장애인 대중의 인권보호에 힘써야

- 복지전달체계가 많은 부분 사유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복지, 인권에 관한 부분 역시 민간 장애인단체 영역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로 때로는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인해 하나의 보조금사업 형식으로 좋지 않은 모델을 만들고 있는 현실. 이는 국가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장애인 복지와 인권에 관한 책임들을 민간 비영리 장애인단체의 불안정한 재정적 여건들을 이용하여 떠넘기고 있는 것이기도 함. 결국 위탁운영의 경우 운영주체의 소위 ‘마인드’에 따라 그 결과 양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듯 장애인복지에서 비판받는 ‘스핀지효과’(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 형식으로서 중간 전달체계에서 장애인 당사자 개개인이 아닌 많은 예산 부분이 흡수되어 버린다는 점)가 장애인 인권 영역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이에 장애계는 다시 한 번 현재의 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하고, 진단하는 자세가 필요. 또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의 운영과 역동적인 민간 장애인단체의 장점을 극대화한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시스템을 체계화 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대구 전 지역을 포괄하는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자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견제·추동하고, 때론 협력하며, 상호 장애인단체가 인권에 관한 영양분을 서로 주고받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나가며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애인당사자가 주체가 된 장애인권리옹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된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매년 4월 11일경 대구지

역 내 존재하는 많은 장애인차별들을 모아 집단진정, 기획진정해 오고 있음.

- 그러나 해가 지나갈수록 장애인당사자들의 참여와 관심은 투명스러워 지는 것이 사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해 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순적이게도 진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거나 비판적으로 여김. 그 이유는 대다수 같은 맥락. ‘진정서 접수하고 몇 개월이나 지나서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더라’, ‘실제로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안타까운 위치.
- 7년여의 피땀 어린 장애대중의 투쟁으로 만들어 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기로에 놓임. 시행 5년을 맞이하는 지금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분은 마냥 가볍지 못함.
-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법이 얼마나 가슴 저린 법안인지 잘 알고 있음. 위기인 지금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당사자단체와 국가, 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스스로의 역할을 찾고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십분 발휘되어야만 하는 때.
- 평생 시설과 가족보호아래, 숨은 사회적 차별에 숨 죽여야 했던 장애인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며, 그리고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건 차별이야’, ‘이건 나의 권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에서 동기를 찾으며, 앞으로의 법의 실효성을 위해, 가치와 정신의 확장을 위해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함.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간의 이행 현황 평가

임은자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간의 이행 현황 평가

임은자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간은 누구나 나이와 성별, 그리고 종교, 인종, 신분, 장애를 떠나서 인권의 주체로 차별받지 않고 법 앞에서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듯이 인권이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절대적 가치이다.

지금까지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은 진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인권수준은 선진 외국에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우리’가 아닌 ‘그들’의 문제로 머물러 있으며 ‘우리’가 아닌 ‘그들’에 대한 다른 처우는 아직도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장애인의 차별이 해소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인권의식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더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의 성과와 평가를 위한 오늘 이 토론회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 진정접수건수가 10배정도 증가했으며, 접수된 사건의 처리현황도 해마다 증가하여, 89.6%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의 관심과 욕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향상되어 가고 있으며, 이 법을 통한 장애인 개인 및 단체의 시정요구의 움직임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본 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이행현황과 대구시의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고찰을 통해, 발제문의 내용에 추가하여 제시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제시함으로써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정책 구상시 장애유형별 인권현황을 고려

대구지역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해 나갈 때, 장애유형별 접수영역을 고려한 지역복지서비스를 구상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장차법시행 이후 이행 현황보고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사건영역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재화·용역 영역'이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 수단,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이용,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서비스 이용 등이 가장 높았으며, 이 중 '재화·용역일반'이 25.6%로 사건 접수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시설물 접근'이 22.7%,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이 19.3%, '보험·금융'이 12.9%의 순서로 높았다. 장애유형별 영역으로는 '시설물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시각 및 청각장애인은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영역, 지적·발달장애인은 '문화·예술·체육'영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구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실태조사, 및 설치 등의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지체장애인의 측면에서는 시설물 접근권과 이동권 교통수단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현행 사업에 더하여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사업이,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문화, 예술, 체육영역에서의 사업들의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장애인의 인권과 장차법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주력

현행 대구시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교육이 2012년 3,013명이었으며, 2013년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다. 또한 홍보물(10,000부)과 홍보동영상도 1편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6월말 현재 대구의 인구 2,531,767명, 세대수는 936,991세대로 이에 비하면 교육대상과 홍보의 수준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장애인 인권교육과 장차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고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대상 또한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확대와 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것이며, 홍보 또한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확보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법과 정책의 시행과 병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를 위한 노력이라

고 할 수 있듯이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차별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방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 각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여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에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활동을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장애인복지 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대구시의 경우,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장애동료간 상담 지원,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인권적 관점에서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은 자립생활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대구시의 노력도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자립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되는 지원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통합적 관점에서의 인권과 장애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인권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장애인도 함께 향유하는 것으로 사회로부터 배제 당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으로 인해 장애인은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이는 개인에 따라 단순하게 친숙하지 않음에서 불안을 느낄 수도 있으며, 개인마다 특성의 차이로 다름의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다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하며, 이를 통해 낯설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일상이건, 언론매체에서건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왜곡된 의식이 자리잡게 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대나 정보접근성 제고, 의사소통방법모색 등 사회환경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통합적인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자체의 장애여성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제정 및 서비스 개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 제3조 4항과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차별행위가 나타나는 곳은 지역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성인지적 정책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장애인 성별분리 통계자료수집 및 예산 계획 및 집행이 필요하며, 장애여성의 차별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여성의 독특한 욕구에 맞는 정책 및 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남성과 다른 여성으로서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여성의 연령과 결혼, 출산 및 육아 등의 주요사건과 관련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장애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건강권과 관련한 의료적 지원, 직업과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직종개발 등의 장애여성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끝으로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도 스스로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위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조단체의 활동과 지원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이영미(201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여성의 인권, 사회과학연구 제19집. 1호 pp.17-28.
 임은자(2004), 여성장애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천과제, 사회복지연구 제26집. pp.183-210.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2008), 사회복지와 인권. 양서원.

제 2 부 대 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연구

- 최승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권익증진연구부장)

[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논의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제언

-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학대학 학장)

[토론 2] 법 개정 논의에 대한 당사자 관점의 평가 및 제언 1

-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토론 3] 법 개정 논의에 대한 당사자 관점의 평가 및 제언 2

- 서준호 (대구장애인연맹 사무국장)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연구

최승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권익증진연구부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연구*

최승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권익증진연구부장)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조항의 불합리성이나 불명확성을 조사하고 법 개정이나 올바른 해석을 통해 이를 개선, 법 집행의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함.
- 장애인 권리의 완전 구현을 위해 그간 개선된 개정 요구를 조사·분석하고 그 중 적절한 요구는 수용, 법 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 중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범조항을 조사.
- 문제 있는 것으로 조사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에 대해 법 개정안을 제안하되, 법 구조상 개정이 어려운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대신 올바른 법 해석을 제시.
- 그간 장애계 등이 주장해 온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내용을 조사하고, 그 중 합리적인 요구는 법 개정에 반영.

* 이 글은 2012년 보건복지부 용역연구 결과보고서의 일부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는 최승철(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부 부장), 박종운(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우주형(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II.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별 검토

1. 제1조: 금지하는 장애 차별의 범주

- 법 제1조가 금지하는 장애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문언으로 보건대 직접차별에 한정되어 있음. 동법이 금지하는 모든 차별이 포함되도록 해당 문구를 장애 차별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3조 제1호 : 광고

- 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상업광고에 한정되어 있음. 옥외광고 매체를 통한 상업광고도 장애 차별이 금지되는 광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1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상업적 목적의 상품 및 용역광고를 말한다.

3. 제3조 제20호, 제4조 제1항, 제32조 : 괴롭힘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차별사건만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사건을 다룰 권한이 없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임. 차제에 괴롭힘을 법 제4조의 차별행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표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7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장애인, 장애인 관련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제4조 제2항 : ‘정당한 편의’ 개념 정의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 개념은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즉 물리적 수단만을 가리키고 있어 정책과 같은 비물리적인 편의를 배제하고 있음.
- 외국의 모든 장애차별금지법의 편의 개념에는 정책과 같은 비물리적 편의가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11조 제2항에서 고용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할 편의에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이라는, 정책 변경에 해당하는 비물리적 편의를 포함시키고 있음. 따라서 정당한 편의 개념에 비 물리적 편의를 의미하는 ‘정책’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

〈표 4〉 장애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 신규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차별행위) ① (생 략)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 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 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정책 등 인적·물적· <u>정책적</u>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5. 제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문언은 동법의 장애 차별 금지 조항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장애 차별 금지 조항을 배제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반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위반이 되는 차별행위가 존재할 수 있는바, 장애 차별과 관련해서 이 두 법은 양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법 제9조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나아가 다른 법상의 장애 차별 금지 조항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

〈표 5〉 장애차별금지법 제9조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는 이 법률 적용을 원 칙으로 하되,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다른 법령 에 장애인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6. 제11조 제1항: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는 고용 영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의 문언은 정당한 편의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채용되기 이전 단계인 모집 및 채용

- 단계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이러한 해석은 모집·채용 단계에서도 장애 차별을 금지한 동법 제10조 제1항과 배치되고, 그 단계에서도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외국 장애차별금지법의 경향에서 벗어나는 것임. 동조항은 모집·채용 단계에서도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되어야 함.
 - 한편, 동조항의 문언은 직무 수행이 아닌 근로조건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정당한 편의가 직무 수행 등에도 동등하게 참여하게 하는 데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표 6〉 장애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 신규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u>모집 및 채용 과정에, 그리고 해당 직무의 수행이나 근로조건의 향유 등의 고용 영역에 장애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u>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제11조 제1항: 정당한 편의 목록의 성격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나열된 정당한 편의의 목록이 예시인지 아니면 열거인지가 문제가 됨. 동조항의 문언을 놓고 보자면 그 목록은 열거로 간주될 소지가 큼.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의 장애차별금지법은 편의의 목록을 나열할 때 그것이 열거 아닌 예시임을 밝힘.
-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의 개념을 보자면, 편의는 해당 장애인의 각각각색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할 “제반” 수단 및 조치인바, 그러한 다양한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편의의 목록은 당연히 한정될 수 없을뿐더러 ‘제반’이라는 의미가 ‘모든’을 의미하는 용어임을 고려할 때 동 개념은 정당한 편의의 목록을 열어놓고 있는 것을 봐야 함. 따라서 법 제11조 제1항의 문언은 동조항에 나열된 편의의 목록이 열거 아닌 예시임을 명백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이는 편의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 동법의 다른 조항 및 동법 시행령의 조항에도 해당하는 사항임.

〈표 7〉 장애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모집 및 채용 과정에, 그리고 해당 직무의 수행이나 근로조건외의 향유 등의 고용 영역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시행령 제5조: 정당한 편의 목록의 성격

- 상기와 같은 이유로 개정이 필요.

〈표 8〉 장애차별금지법 시행령 제5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9. 제11조 제1항 제6호: 낭독자, 수화통역사의 자격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수화통역사, 낭독자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이들의 서비스의 질임. 만약 이들의 질이 떨어져서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보조는 정당한 편의가 아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장애인법」은 이들 편의의 질을 강조하기 위해 ‘유자격(qualified)’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유자격 수화통역사’라고 언급하고 있음.
-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들이 유자격자이어야 함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비전문적 인력이라는 뉘앙스를 지니는 ‘보조인’ 또는 ‘보조인력’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유자격 요건을 더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음.
- 단, 미국처럼 ‘낭독자’, ‘수화통역사’ 앞에 ‘유자격’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해당 조항

을 개정할 경우 다른 유사한 인적 편의인 ‘체육지도자’,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등에도 이를 추가해야 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그 전문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자격증 제도가 없어 그 추가가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유자격’이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법 개정보다는 적절한 관련 해석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해석이란 ‘수화통역사 등 인적 편의는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격을 갖춘 한에서 정당한 편의를 간주해야 한다’는 것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그 시행령의 정당한 편의 항목에 나오는 ‘보조인’ 또는 ‘보조인력’은 전문적인 인력과 비전문적인 인력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임.

10. 제11조 제2항: 정당한 편의로서 직무 재배치

- 법 제11조가 정당한 편의에 관한 조항인 이상 직무 재배치에 관한 동조 제2항도 정당한 편의와 관한 조항이어야 함. 그러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 조항의 문언 중 무엇이 정당한 편의인지가 불분명함. 이는 본 문언에서 방점이 ‘직무 재배치’가 아닌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에 찍혀 있어 가중되는데, 일반적으로 직무 재배치는 정당한 편의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정당한 편의에 속하지 않음.
- 동조항의 입법 취지가 모호한바, 이에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대신 이를 최대한 의미가 통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함. 이 조항은 ‘해당 직무 재배치가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 장애인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경우, 사용자는 그 직무 재배치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해석될 수 있겠음.
- 한편 동조항에서 언급된 ‘장애인의 의사 존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겠음. 즉, ‘정당한 편의 개념에 따라 편의 제공 의무자와 해당 장애인은 협의 절차를 통해 정당한 편의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때 편의 제공 의무자는 장애인의 선호 또는 요구를 존중해야 하지만, 만약 효과적인 편의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최종 선택권은 편의 제공자에게 있다’고 봐야 함.

11. 제2절(교육) 제13조: 장애인 차별 금지 교육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교육 의무를 여러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여성 등 특정 장애인 집단에 관한 교육에 편중되어 있고 그러한 교육 의무의 효과가 가장 클 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 등, 차별 금지 교육 조항이 불충분함.
- 장애인 차별 금지 교육의 효과가 큰 당해 교육의 주체와 객체는 제도권의 초·중·고교와 학생 임. 학생은 해당 연령대의 거의 모든 인구를 망라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전 국민을 교육시키는 것이 됨. 또한 학교라는 교육 주체는 어떤 주체보다도 안정된 교육 환경과 뛰어난 교육 스킬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초·중·고 학교에 대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교육을 시킬 의무를 부과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바, 관련 조항의 신설을 제안함.

<표 9> 장애차별금지법 제13조 신규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차별금지) ①~⑧ (생략) <신설>	제13조(차별금지) ①~⑧ (현행과 같음) 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2. 제3절: 재화·용역의 범위와 금지되는 차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절에서 재화와 용역의 범위 또는 범주가 불분명함. 동절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범위는 제16조의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제17조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19조의 '이동 및 교통수단', 제24조의 '문화·예술활동', 제25조의 '체육활동'뿐이고, 통상적인 서비스업의 범주들, 예를 들면 숙박업, 요식업, 판매업, 오락시설, 사회복지시설, 공회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그렇다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재화와 용역'을 정의하고 있지도 않음.
- 그렇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이 금지되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가 명시된 범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외국의 장애차별금지법에서도 없는 사례임.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가 모법의 위임을 받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준용하여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를 설치하게 한 대상 시설의 범위가 아주 넓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좁은 해석은 적절하지 않음. 차제에 법 제3조에서 재화 및 용역을 개념 정의하여 그 범위를 분명히 해두고 또한 제3절에서의 차별 금지를 아우르는 조항인 제15조에 그 범위를 ‘모든’ 재화 및 용역 제공자로 한다는 문구의 삽입을 통해 이를 좀 더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음.

〈표 10〉 장애차별금지법 제3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신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현행과 같음) 8. “재화·용역”이라 함은 공중 또는 일단의 공중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직접 제공되는 물자나 장소 또는 인적 서비스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정보”라

〈표 11〉 장애차별금지법 제15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모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절의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절과는 달리 그 첫 하위 조항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모든 차별이 해당 절의 영역에서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임. 제3절의 첫 하

위 조항인 제15조의 제1항은 그 문언에 ‘장애를 이유로’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서 직접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제15조 제2항은 특별히 어떤 유형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문언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구는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모든 차별을 포괄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토지·건물의 매매 및 임대와 금융서비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제16조 및 제17조의 문언이 직접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차별 일반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표 12〉 장애차별금지법 제16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u>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u>장애인에 대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표 13〉 장애차별금지법 제17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u>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u>장애인에 대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13. 제21조 제1항: 정보의 생산·배포의 의미

- 제21조 제1항의 문언의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서 ‘생산·배포’의 의미가 불명확함. 당해 문구에 있는 가운데 점은 ‘그리고’가 아닌 ‘또는’으로 읽힘. 결국 이 조항은 해당 기관이 정보를 생산하였으되 그 성격상 이를 널리 배포하지 않고 대신 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제공할 때 필요한 경우 편의를 제공하는 의무도 규정한다고 봐야 함.

- 제21조 제1항의 이러한 내용의 규정은 고용, 교육 등 영역별로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 조항에도 들어 있어서 서로 중복이 되는 한편, 그 제공 절차가 제21조 제1항과 영역별 편의 제공 조항 사이에서 상충된다는 문제가 발생함. 제21조 제1항의 편의 제공 절차의 구체적 내용을 위임받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장애인이 해당 정보에 대해 접근·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영역별 정당한 편의 제공 조항은 이러한 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 후자에서 제공 시한은 ‘요청받은 시점부터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가장 빠른 시간 또는 시일 내’가 될 것이고, 일부 정당한 편의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한 편의 제공이 긴급하게 또는 빈번히 요청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사전에 구비 또는 준비하여 즉시 제공’하는 것이 될 것임.
- 이러한 중복 및 상충의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 방안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정보가 그 성격상 널리 배포할 수 없고 대신 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제21조 제1항에서 제외시키도록 ‘생산·배포’라는 문구를 수정하는 것임.

〈표 14〉 장애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하여 배포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14. 제49조 제2항 : 악의적 차별 판단 기준

- 법 제49조 제2항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악의적 차별 판단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당해 조항에 열거된 네 가지 판단 기준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악의적 차별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판단 항목 모두를 충족시켜야만 악의적 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사실 그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시켜도 충분히 악의적인 차별임. 따라서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시켜도 악의적 차별이 성립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표 15〉 장애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호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차별행위)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제49조(차별행위)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15. 용어 등의 간략한 개정

가. 제3조 제5호: 사용자 정의

- 제32조 제5호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문언에서 ‘그 밖의 근로자’라는 문구는 ‘가타 근로자’를 의미하여 이 조항의 본래 의도와 어긋남. 그 본래 의도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리고 이들 이외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임. 따라서 ‘그 밖의’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이외에’를 가리키는 ‘그 밖’으로 대체되어야 함.

〈표 16〉 장애차별금지법 제3조 제5호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4. (생 략)</p> <p>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u>그 밖의</u>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u>그 밖에</u>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p>

나. 제3조 제14호: 복지시설의 정의

- 제3조 제14호에서 ‘복지시설’을 정의할 때, 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생활시설 뿐만 아니라 이용시설도 포함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문구를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바꿀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사항을 고려할 때,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은 ‘장애인 1인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로 바꿀 필요가 있음.

〈표 17〉 장애차별금지법 제3조 제14호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13. (생 략)</p> <p>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u>생활하고</u>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u>이상</u>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13. (현행과 같음)</p> <p>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u>생활하거나 이용하고</u>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u>이상</u>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p>

다. 제4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2항 포함):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등

-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20조 제2항의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서 ‘장애인을 동행’이라는 말은 조사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므로 당해 문구는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장애인과 동행’으로 바뀌어야 함. 또한 제4조 제1항 제5호의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에서 ‘그 밖에’ 앞에 쉼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함.

〈표 18〉 장애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차별행위) ① (생략) 1~4. (생략)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제4조(차별행위)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u>대리하거나 장애인과 동행하는</u>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u>그 밖에</u> ,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Ⅲ. 법 개정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

1.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한 조항

-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보장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는 영화 ‘도가니’를 많은 청각장애인 등이 관람하지 못하면서 더욱 커짐. 장애계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한국영화 상영에 대해 한글 자막 및 화면해설 서비스를 의무화하라는 것과 영화상영관 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성을 보장하라는 것임.
- 영화상영관 등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주요 조항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를 준용하여 영화상영관 등 각종 시설이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중

류와 기준, 설치 의무의 단계적 적용 시점 등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와 일부 상충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먼저 가능하다면 이를 해석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편의시설 설치 의무의 단계적 적용 시점에서 상기 두 조항 간에 상충이 있음. 시행령 제11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보장법”이라 함) 제7조의 대상 기관(영화상영관 포함)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기관에 한해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함. 이것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별표4가 2015년 4월 1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상충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해석은,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개·증축한 영화상영관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영화관 등 공연장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해당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2015년 4월 11일 이후에는 해당 영화관은 모두,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개·증축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음.
 -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되는 영화상영관의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4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준용된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다름. 전자에서는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이지만 후자에서는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임.
 -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준용된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다름. 전자에서의 편의시설은 매개시설(주출입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기타시설(관람석, 매표소·판매기·음료대)임. 후자에서는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인바, 전자에 비해 일부 편의시설이 빠져 있고 무대단상이 추가되어 있음.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상기의 편의시설을 나열하면서 그 끝에 ‘등’을 포함시켰으므로, 일부 빠진 다른 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람석, 특히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이 세부 설치 기준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

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나와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이러한 세부기준이 없어 이 기준이 동법 하에서도 사용될 것이나 이는 주로 긴급 상황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어서 휠체어사용자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함. 그 보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영화나 공연 등을 관람하기 적절한 또는 용이한 위치에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설치하는 것임. 또한 휠체어사용자가 함께 온 관람자와 분리되지 않고 나란히 함께 앉아 관람할 수 있게 조치하는 것도 중요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가 이러한 조치를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표 1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신구조문대비표문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생략)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p>	<p>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아니한다.</p> <p>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u>접근·이용이 가능한</u>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의 설치 (<u>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장애인이 영화나 공연 등을 관람하기 적절한 위치에, 그리고 동행한 사람과 나란히 앉을 수 있게 설치</u>)</p>

* 제15조 제2항의 개정은 앞서 제안된 것임.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증진을 위해 영화영상물에 대한 자막·화면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세부 사항들에 대해 장애계, 영화사업자, 그리고 정부 삼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요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음. 그 세부 사항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한국영화에 대한 자막·화면해설 제작 의무를 제작업자와 배급업자 중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

- 동 제작 의무를 지배적인 사업자에게만 부과할 것인지, 부과한다면 어떤 단계로 부과할 것 인지의 문제
- 한국영화에 대한 자막·화면해설 제작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등을 활용한 재정 지원 문제
- 한글영화의 자막·화면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한 영화상영관(단관 극장)에 대한 지원 문제
- 한글자막·화면해설 제공 전문 기관의 구축 및 한글자막·화면해설 표준 구축 문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실태조사 근거 조항

-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에 대해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없어 대상 기관의 조사 협조를 받기 어려웠고, 두 기관의 당해 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두 기관의 실태 조사의 중복 문제를 정리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수행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실태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그 대상으로 삼는 점에서 유사함. 또한 두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그러나 두 실태조사는 아래와 같이 여러 점에서 서로 다름.
 -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는 가능하다면 단계적 적용 대상 기관의 전수를 조사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대상 기관만 조사함.
 -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이외에 다른 차별 금지 의무의 이행도 조사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이행에 초점을 맞춤.
 -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은 법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이행을 제고할 전략 또는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는 모니터링 결과를 진정사건, 정책 권고의 도출 등에 활용함.
 -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는 그 범위나 목적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업에 비해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실태조사 쪽으로 지향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기능을 고려할 때 두 기관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실태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동 실태조사가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에

서 동법의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지 파악하고 이를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한, 이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제1항 제5호의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이라는 장애인정책국의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4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위원회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기초 정책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상의 다른 업무인 사건조사, 정책 권고 등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두 기관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할 법적 권한이 있지만, 정책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차원의 포괄적 성격의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실태조사에 더 가깝고, 두 기관의 현행의 실태조사가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포괄적 성격의 실태조사의 법적 주관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보다는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음.
- 장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항목 또는 내용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음.
 - 우리 사회의 장애 차별의 정도에 대한 인식,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 장애 차별에 대한 이해도
 -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사법·행정절차 등의 영역에서 이행되고 있는 실태, 그 이행을 위한 기본 조치의 이행, 이행이 미진한 경우 그 사유
 -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 실태
 -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 실태
 - 장애인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실태
- 실태조사의 주기는 그 규모나 유의미한 변화가 측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할 것인바, 3~4년 정도가 적절함. 실태조사의 주기, 규모, 방법 등은 기술적인 사항이고 법 이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를 주어야 할 부분이므로 그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고, 실태조사의 내용도 시행령에 위임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실태조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조사 협조를 얻거나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 주관 기관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출 요구 자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자료, 장애인 채용, 승진 및 해고 등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 장애학생 입학 및 진학 자료,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입증 자료 등이 있을 수 있음.

〈표 20〉 장애차별금지법 제8조의1 신규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8조의1(법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표 21〉 장애차별금지법 시행령 제4조의1 신규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4조의1(실태조사) ① 법 제8조의1에 따라 실태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등 장애 차별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 2. 사회영역별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이행 상황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4.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규칙, 관행 등의 실태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 이행 실태 6. 장애를 가진 근로자, 학생, 고객, 민원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차별 경험 및 관련 욕구 7. 이 법의 이행과 관련한 기타 사항 <p>②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방법은 표본조사로 하되 조사 내용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p>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논의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제언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학대학 학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논의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제언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학대학 학장)

I.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검토 기본방향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논의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명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입법개정안의 제시방향이 현행법에 대한 제한적 개정 수요를 반영하는 부분개정안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이며 체계적인 개정을 추진하는 전부개정안을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더 나아가 장애인의 권리가 완전하게 구현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체계로서 장애특성에 따른 입법안의 제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제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요구되며 법 구조상 개정이 어려운 조항에 대한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
 - 법률의 조문구성은 경제성, 명확성, 간결성 등이 담보되어야 함.
 - 법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제시하기보다 전문적이며 장애인의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법 적용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II.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검토

1. 제1조: 금지하는 장애 차별의 범주

- 법 제1조가 금지하는 장애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문언으로 보건대 직접차별에 한정되어 있음. 동법이 금지하는 모든 차별이 포함되도록 해당 문구를 장애 차별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문구 수정 대안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든 생활영역에서”에서 차별의 문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의 인적 대상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율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임.

2. 제3조 제20호, 제4조 제1항, 제32조 : 괴롭힘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차별사건만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사건을 다룰 권한이 없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임. 차체에 괴롭힘을 법 제4조의 차별행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괴롭힘 사건은 형사상의 범죄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기에는 부적절한 사건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32조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임.

3. 제4조 제2항 : ‘정당한 편의’ 개념 정의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 개념은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즉 물리적 수단만을 가리키고 있어 정책과 같은 비물리적인 편의를 배제하고 있음.
 - 발표내용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2항에서 고용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할 편의에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행법을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정책 등 인적·물적·정책적 제반 수단과 조치”로 개정하는 것은 정책을 다른 사안들과 대등하게 나열하는데 있어 개념

적 성격과 범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4. 제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나아가 다른 법상의 장애 차별 금지 조항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발표자는 현행법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대한 개정안으로 “이 법률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다른 법령에 장애인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법률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리고 ‘장애인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를 포함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우선적용의 순위에 관한 법적인 판단의 대상임.

5. 제11조 제1항: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는 고용 영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의 문언에 대한 개정안은 문장이 영어식 표현으로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조문 수정이 필요함. 또한 나열된 정당한 편의의 목록이 예시임을 밝히기 위한 조문의 구성으로는 호의 신설을 제안함.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모집 및 채용 과정에, 그리고 해당 직무의 수행이나 근로조건의 향유 등의 고용 영역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모집·채용 과정과 해당 직무의 수행이나 근로조건의 향유 등 고용 영역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7. 기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

- 시행령 제5조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방안을 제시함.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 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 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u>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아니한다.</u>

6. 제3절: 재화·용역의 범위와 금지되는 차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절에서 재화와 용역의 범위 또는 범주가 불분명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 제3조에서 재화 및 용역을 개념 정의하여 그 범위를 분명히 해두고 또한 제3절에서의 차별 금지를 아우르는 조항인 제15조에 그 범위를 ‘모든’ 재화 및 용역 제공자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대단히 포괄적인 ‘모든’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제49조 제2항 : 악의적 차별 판단 기준

- 법 제49조 제2항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악의적 차별 판단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당해 조항의 “전부”라는 표현을 통해 열거된 네 가지 판단 기준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악의적 차별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보다 네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8.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한 조항

-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는데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령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개정을 통해 매우 기술적이며 지엽말단적인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음. 하위의 시행규칙이나 시행규칙이 정하는 지침정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있을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생략)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p>	<p>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아니한다.</p> <p>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접근·이용이 가능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의 설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장애인이 영화나 공연 등을 관람하기 적절한 위치에, 그리고 동행한 사람과 나란히 앉을 수 있게 설치)</p>

* 제15조 제2항의 개정은 앞서 제안된 것임.

-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률을 통해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증진을 위한 영화영상물에 대한 자막·화면해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련 세부 사항들에 대해 장애계, 영화사업자, 그리고 정부 삼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요하는 사안이라는데 동의함. 다만, 법정 의무화하기 이전이라도 관련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 형식으로 법률에 장애인 영화관람권 증진노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제언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정에게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정을 위한 의견의 수렴 및 분석을 통해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입법개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입법학적 측면에서 기술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존재함.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의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와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개선이 요구됨.
 - 동 법령은 전면적인 장애인방송이 아닌 특정방송내용에 대하여만 의무규정을 두고 나머지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화통역을 비롯한 장애인 방송의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권리협약」과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 2

법 개정 논의에 대한 당사자 관점의 평가 및 제언 1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법 개정 논의에 대한 당사자 관점의 평가 및 제언 1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I. 토론을 시작하며 : 한국 장차법의 특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장애평등법, 장애차별법, 반차별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반차별법(anti-discrimination law)은 별도의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대신 보편적인 인권법 안에 장애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들을 포함시킨 것이다. 캐나다의 인권법이나 지금 한국에서 논의 중인 사회적차별금지법이 여기에 속한다.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law)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보편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공적·사적 생활의 특정 영역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법률이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 이미 장애로 인한 차별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역은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미권의 장애차별금지법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장애평등법(disability-equality)은 성-평등법처럼 실체적인 장애 차별뿐 아니라 장애 관련 쟁점들, 가령 장애인의 안전, 접근성,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 문제 연구, 장애 예방과 조기 발견, 고용과 교육의 평등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률이다. 인도의 장애인법과 코스타리카의 장애인평등법이 여기에 속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유형인가? 토론자가 볼 때, 우리 법률은 장애차별법과 장애평등법의 특성을 모두 가진 것 같다. 한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된 복지 쟁점들을 배제했다는 점에서는 장애차별법적 성격을 띠지만,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법, 교통약자법 등 개별 법률에 이미 규정된 차별 영역들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장애평등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장차법의 특이성은 역사적 배경 때문일 것이다. 인권 선진국들의 경우 보편적인 인권법을 제정한 다음에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 별도의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

인 경로였다. 이를 테면, 미국의 경우 1964년 시민권법이 제정되었으나 여기에 장애차별금지 조항이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1980년대부터 별도의 장차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장애인들의 거센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1990년 미국장애인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경우는 보편적인 인권법은 없지만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법은 있는 상황에서 장차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다보니 복지쟁점들은 과감하게 배제된 반면 일반적인 인권 쟁점들은 과도하게 포함된 측면이 있다.

II. 발제문에 대한 몇 가지 토론

1. ‘장애인’ 차별금지법인가, ‘장애’차별금지법인가?

한국 장차법의 명칭은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장애’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차별의 대상이 장애인의 한 속성인 ‘장애’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 그 자체, 즉 ‘장애인’이란 말이다.

한 개인은 장애(disability), 성별(gender), 문화(ethnic), 연령(age) 등 다양한 소수자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장차법은 그 개인의 모든 속성들(즉, 그 사람 자체)이 아니라 ‘장애’만을 법적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소수자 이론에서 보면 노인 차별, 여자 차별, 환자 차별, 흑인/유색인 차별 대신 연령(age) 차별, 성별(gender/sex) 차별, 질병(illness) 차별, 피부색(color) 차별 따위로 표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복지의 측면에서 보면, ‘장애복지법’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이 맞다. 복지의 대상은 사람 그 자체여야 하지 그 사람의 한 가지 속성에 국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즉, 장애를 가진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차별)은 인식론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장애 차별(즉,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법률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의 문제일 것이다.

아울러 ‘장애’와 ‘장애인’이란 언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에서 ‘장애인’이란 말은 그 사람 자체를 장애라는 하나의 속성으로 특징지운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어 조어법상 ‘장애’라는 하나의 속성이 ‘사람(人)’과 결합되어 ‘장애인’이라는 고유하고 고정적인 개념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영국의 disabled people은 ‘(사회에 의해) 무능력해진 사람’이란 의미를, 그리고 미국의 people with disabilities는 ‘장애를 (부차적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의미를 함축한다. 즉, 장애와 사람을 하나의 명사로 보지 않고 분리된 개념으로 봄으로써 (사회적) 장애의 문제

는 차별의 문제로,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문제는 복지 또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다. 또 한국에서는 ‘장애인 인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외국에서는 ‘장애권(disability)’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장애권, 즉 (사회적) 장애로부터 해방될 권리는 현재적 장애인의 권리이자 모든 잠재적 장애인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노동권’이 현재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이자 장차 노동에 참여할 사람들의 권리이기도 한 것과 같은 이치다.)

장차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인 이상 이론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차별의 근거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2.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장애인 차별”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주장의 근거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직접 차별을 의미할 뿐이고, 따라서 간접 차별까지 포함하려면 “장애인 차별”이 적절한 표현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직접차별이든 간접차별이든 모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차별(direct discrimination/adverse treatment)과 간접차별(indirect discrimination/adverse impact)을 나누는 기준은 차별 효과가 직접적인가 아니면 간접적인가 여부이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장애인 차별”을 나누는 기준은 아닐 것이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직접차별)’든 ‘장애가 이유로 된 차별적 결과(간접차별)’든 영어로 표현하면 둘 다 discrimination due to disability다.

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장애인 차별(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ople)”보다 이론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법이다. 장애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성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장애인 차별”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축자적으로만 보면, 전자는 차별의 근거가 장애를 가진 사람 그 자체이고 후자는 그 사람의 일부 속성으로서의 장애/손상이 된다. 이를 테면, 선거 공보물에 점자가 없어서 어떤 시각장애인이 차별을 받았다면, 그는 인격(즉, 그 사람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시각 손상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티븐 호킹이 호텔방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는 인격 때문이 아니라 신체 손상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장애인 차별 금지가 장애 차별 금지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인간적인 개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장애인 차별”은 모호할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도 아니다.

3. '괴롭힘'을 차별 행위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대하여

발제자는 '괴롭힘'이 현행 장차법에서 차별행위가 아니라 차별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괴롭힘을 당한 장애인이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 토론자는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앞서 제기했다시피 한국의 장차법이 장애평등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법은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실체법적 성격과 아울러 '차별'을 금지하는 선언적, 윤리적 규정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법률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제7조), 개인정보보호(제22조), 성에서의 차별금지(제29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제30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제31조), 괴롭힘 등의 금지(제32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제33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제35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제37조) 등은 평등권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을 모두 차별 행위에 포함시키고 위반시 처벌 규정까지 둔다면,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괴롭힘'은 너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어서 모호할 뿐 아니라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입증하기 쉽지가 않다. 가령,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통제하는 행위, 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장애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통제를 가하는 행위, 비장애인 친구들의 장난 따위가 모두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괴롭힘 금지 조항을 차별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전문을 별도로 만들어 이 조항을 비롯하여 여러 선언적 조항들을 그 속에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다.

4. 낭독자, 수화통역사 등을 유자격자로 해석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는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대해 발제자는 보조인력, 수화통역, 대독 등 인적 편의제공자를 '유자격자'로 '해석'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언어 및 청력 손상 장애인 당사자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의사소통 보조인력의 유자격 여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선택권일 것이다.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고 평소 당사자와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 가령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보조인력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면 될 것이다. 특히,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보조인은 공인 자격을 갖출 수가 없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의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를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5. 악의적 차별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하여

장차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의적 차별의 기준은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네 가지다. 현행법은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악의적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제자는 이를 완화하여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시켜도 악의적 차별이 성립되게 개정하자”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 토론자의 심정을 솔직히 말하면 이런 조항 자체가 ‘악의적(?)’이다. 악의성 조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초안에는 없던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정부 또는 의회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규정은 국내 절차법이나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악의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더구나 ‘모두’라는 단서까지 붙인 것은 이 법에 의한 차별에 대한 법률적 구제를 어렵게 할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한국의 장차법이 장애평등법에 가깝다고 주장했는데, 이 조항에서도 그런 측면이 잘 나타난다. 현행 법률은 차별(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놓았지만 차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정작 법률적 구제는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장차법이 시행된 지 이미 5년이나 지났는데도 장차법을 근거로 한 판례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악의성 조항에서 보듯이 이 법률이 소송에 의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 행정적 해결이나 사전 합의를 통한 해결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일부 개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발제자의 주장처럼 단서 조항인 ‘모두’를 빼자는 것은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지는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 굳이 그런 조항들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실무에서는 이미 양형 기준을 감안하여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Ⅲ. 토론의 마치며

토론자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제자 주장의 요지는 장애 차별의 범위를 대폭 확대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하지는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반길만한 주장일 것이다. 그럼에도 토론자가 보기에 발제자의 주장은 구체적 법 적용 과정에서 비롯된 개정 요구라기보다 다분히 법 기술적 또는 아카데미즘적 차원의 개정 요구라는 생각이 든다. 법률적 다툼의 과정이나 차별 구제의 실무적 경험에서 비롯된 개정 요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인권법의 특성상 입법을 하기 전에 다수 집단의 양보와 이해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그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성숙도를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토론문은 그런 과정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가령, 정당한 편의를 모집과 채용 단계에서도 제공하지는 주장, 재화 및 용역의 범위를 ‘모든’ 재화 및 용역 제공자로 확대하는 주장, 편의제공의 목록을 열거주의가 아닌 예시주의로 개정하지는 주장 등) 어떤 법이든 완전한 형식과 내용을 갖출 수가 없고,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하나씩 개정해가야지 ‘개정을 위한 개정’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을 둘러싼 법제는 크게 보편적 인권법, 장애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평등권을 비롯한 보편적 인권 목록은 사회적 차별금지법에, 복지 목록은 지금처럼 장애인복지법에, 그리고 장차법에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구체적 차별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차별 행위는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분되어야 하고 법률적, 행정적 차별 구제에 대한 접근성(특히,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은 지금보다 더 용이해야 한다.

셋째, 장차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범위가 지금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장차법의 장애 정의는 1981년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기반한다. 다시 말해, WHO가 1980년에 최초로 제출한 장애 개념인 ICIDH에 기반한 것이고, 이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롭게 제출된 장애 개념인 ICIDH-2(1997년) 또는 ICF(2001년)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 결과, AIDS/HIV 양성반응자, 암과 당뇨병을 비롯한 중증 또는 만성 질환자, 고도비만자 등은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되지만 우리 장차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다. 장차법이 인권법의 일종인 이상, 차별의 대상자와 복지의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 3

법 개정 논의에 대한 당사자 관점의 평가 및 제언 2

서준호
(대구장애인연맹 사무국장)



법 개정 논의에 대한 당사자 관점의 평가 및 제언 2

서준호

(대구장애인연맹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된지 5년의 시간동안 장애인차별진정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시정 속도는 장애인당사자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의 축소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이유와 차별을 권고하는데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만으로 시정할 수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과 시정의 엇박자로 차별을 진정을 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의 확대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2006년 6월 “한국철도공사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열차는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해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후 2007년 3월 인권위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한국 철도공사는 공익을 중시해야 하는 기관이자 공공철도교통사업을 독점 운영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점에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차별을 인정하고 철도공사를 상대로 시정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2008년4월 대구역 네거리의 지난 1978년에 건설된 지하보도가 있으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고 2009년 7월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역 네거리 횡단보도 미설치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횡단보도 설치를 권고했다.

철도공사는 앞으로 휠체어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열차 내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밝혔고 대구시 역시 횡단보도 설치에 노력을 기울인다 하였지만 개선은 소극적인데 현실이다 1)

1) 철도공사 : 무궁화호는 점진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그리고 새마을호는 폐기되는 열차로 새로 설계되는 열차에 탑승에는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힘.
대구시 : 대구역 횡단보도는 2012년 12월 횡단보도 개통 완료됨.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서 앞의 사례처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첫째, 차후에 다른 이유로 차별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별예방교육, 두 번째로 차별이 발생된 사안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그러며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 강제조항 혹은 벌칙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별 진정내용과 관련된 관계 법률과 상충된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차별진정 사례로 언급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열차는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해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약’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원이 동대구역 현장에서 직접 열차를 타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법 제정 전의 사항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보니 차별 권고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정을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적용되기 위해 진정을 한 것인지 관계 법령과 비교하여 그 법을 준용하려 한다면 과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미가 있을까? 결과는 철도공사를 상대로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 법령과의 충돌이 벌어진다면 차별 여부 결정을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인가, 그리고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본다.

차별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이 있기에 진정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령을 우선해서 장애인당사자의 차별 현실을 이해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가 조사권을 부여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시정이 이뤄진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빛을 더할 것이다.

아무쪼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인 당사자에게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

- 일시 및 장소 : 2013. 4. 18.(목) 14:00, 부산광역시청 대회의실
- 사회 : 이광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 좌장 : 이경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제1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구 분	내 용	시 간
개회 및 공동축사	❖ 개회선언	14:00~14:05
	❖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05~14:10
	❖ 이영활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14:10~14:15
	❖ 변경택 ((사)열린네트워크 대표)	14:15~14:20
발제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14:20~14:40
	[발제2]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 김호상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14:40~14:55
	[발제3] 장차법의 실효적이행을 위한 법개정방향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55~15:10
	휴 식	15:10~15:25
제2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발제 및 토론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이경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15:25~15:30
	사법·행정절차 영역의 장애인 차별 송정문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대표)	15:30~15:40
	교육영역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대하여 임애정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전임연구원)	15:40~15:50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신수현 ((사)열린네트워크 부산지부장)	15:50~16:00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00~16:25
	폐 회	16:25~16:30

제 1 부

부 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발제 2]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

- 김호상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발제 3] 장차법의 실효적이행을 위한 법개정방향

-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는 6개 지역에서 공통으로 발제하는 것이므로 자료집 6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2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

김호상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

김호상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들어가는 말

지난해는 장애인 인권 부분에 있어 분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태에서 중증 장애인이었던 김주영(33세·뇌병변 1급)씨가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화재를 피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동생을 구하려다 화재 속에서 운명을 같이한 박지우(13세), 박모(11세·뇌병변 1급) 남매 사건, 어디 이뿐이라 올해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사건처럼 더 ‘은밀’하고 ‘조용’하게, 장애인생활시설 속 인권침해, 폭력, 감금, 노동문제, 방임·방치,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들의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생계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관공서와 기업의 의무채용 비율이라도 지켜져서 취업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거리가 멀어 관공서나 기업들은 이를 외면하는 현실은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또 다른 좌절이다. 또한 어렵게 취업을 해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난 5월 박모(여·뇌병변 1급)씨가 대학원을 졸업한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홀대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편견은 정부 정책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인권 의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들이 차별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과 3자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어느 때 보다 장애인들이 당사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찾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장애인도 똑 같이 할 수 있다는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장애인 의식 수준의 재고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과는 달리 지난 정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아예 폐지하려다 시민사회의 강한 저항에 밀려 정원과 조직을 21.2% 줄이는 등 힘없는 서민들에게 패악 질을 가했다.

계속되는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속에서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때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는 단순히 조직 축소가 아닌 이 땅에서 ‘인권’이 설 자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I. 장애인차별금지법 제도의 한계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직면하고 있던 숏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우리 역사상 최초로 공식화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지난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의 목적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제38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가 있다(제39조)“는 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존재목적에 어울리는 독자적인 인권규범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인권위의 요청은 헌법의 기본권 요청과 상당부분 중첩된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루는 사안들을 인권의 논리가 아니라 헌법의 논리로 접근하기 쉽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국가 밖에서 혹은 국가를 넘어서는 지위에서 인권을 보장하고자 설립한 기구가 국가의 헌법논리에 함몰되어 오히려 국가 안으로 끌려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과 조사 등을 총괄하고 있는 마당에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된 차별사건을 처리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고, 본부와 3개의 지역사무소의 구조로는 지역별로도 접근성이 떨어지며, 차별에 대한 판단을 매우 보수적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이루어 가고 있는 장애인인권 이 꽃이 피기 전에 떨어지고 있다.

축소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사무소를 최소 광역단위 1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당사자 전담 직원을 충원 배치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를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I. 장차법은 “구제법”이 아닌 “조치법”

장차법은 시정명령에 대한 요구를 하고 나면 시정 전의 차별에 대한 처벌은 없다. 즉 후속조치를 하는 법이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조치 즉, 차별의 정지, 원상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중 재발방지 조치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은 없다. 재발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벌금을 부여할 수도 있고, 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차별예방교육을 하고, 차별을 정지하였으나 전보나 해고 합의금 등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다시 시정명령으로 재촉할 수 있으나, 인사 조치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냐는 애매하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재발방지가 필요한 조치라 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고는 있으나, 그 한계는 애매한 것이다. 그리고 권고이므로 강제성이 있는가도 애매하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음으로 사실상 권고는 명령의 의미를 가진다. 다만 그러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만 연장되어 피해자의 상처만 깊어질 뿐이다.

또한 차별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 분리, 배제, 거부, 제한의 정의가 없고 기준이 없다. 7조에서 언급한 “자기결정권”은 선언만 있고 구체적 내용으로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별을 당한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하는 입증책임이 있어 입증하기 어려운 하위적 입장에 있는 경우는 매우 불리하고,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이상 손해를 물을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장차법을 통한 개인의 권리구제는 비단 개인의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바꿀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III. 인권조례제정의 “붐”

몇 년 사이 각지자체 마다 인권조례제정을 앞 다투어 제정하는 붐이 일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런 현상은 인권의식의 확산이라기보다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의 반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장애인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으려면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 외에 조례 제정이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형 인권도시는 예외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인권조례의 제정현황이 곧 인권도시 추진현황이나 다름 없다. 인권조례는 크게 ‘인권기본조례’와 ‘주제별 조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인권기본조례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면, 주제별 조례는 장애인, 학생, 아동, 교통약

자, 여성, 노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말한다. 이 중 본격적으로 인권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것은 바로 지자체의 전반적인 인권이행기구와 제도를 담고 있는 ‘인권기본조례’이다. 인권기본조례는 지자체 별로 그 이름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데, 총 244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 16개, 기초 228개)에서 1)인권기본조례라고 분류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표 1-1〉 인권기본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례명(제정일)
광역시 지방자치단체 (9곳)	2)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07, 2012) 경상남도 인권증진조례 (2010)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10)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2012)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2012)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 전라남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2012)
기초 지방자치단체 (12곳)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조례 (20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증진조례 (2010) 경기도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2011)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 (2011) 울산광역시 동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 경상남도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 경상남도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 경상북도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 광주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기본 조례 (2012)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 조례 (20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2012)
입법예고된 인권조례 (8곳)	강원도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안) 경상남도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안)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안)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안) 전라남도 완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안) 충청남도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안)

1) 2012년 11월 11일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활용
2)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2007)가 개정된 것이며, 인권기본

문제는 조례 제정 이후의 이행 실태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11년 한국인권재단이 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7, 기초10)의 인권조례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³⁾

인권기본계획은 17개 지자체의 조례에서 모두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수립한 곳은 광주, 경남, 부산수영구, 울산동구 등 4곳에 불과했고, 2012년 또는 2013년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곳은 부산, 서울 성북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 북구, 광주 남구 등 5곳이었다. 한편, 인권지수를 개발하도록 되어있는 지자체 8곳 중 1곳(광주)만이 개발을 완료했고, 다른 지자체는 예정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인권백서 또는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 지자체 8곳 중 실제로 보고서를 발간한 곳은 한 곳도 없었고, 예정되어 있는 곳 역시 광주 1곳에 불과했다.

인권조례는 그 자체로 많은 가능성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과정이나 이행실태를 보면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된 것 자체는 중요한 성과지만, 그 이후의 이행 현실은 매우 지지부진하며, 결과적으로 본래 인권조례가 추구했던 이념적 목표의 실현은 난망한 상황이다.

이제 일종의 '2기 인권조례운동'이 필요하다. 1기가 조례의 제정을 해 기본적인 물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규범을 만드는데 집중했다면, 2기는 인권조례가 각 지방 주민들의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살아 숨 쉬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 지방사무소 등 인권관련 단체들이 나서서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압박해야 한다. 그것은 의회를 통해서든 지역 주민들이 조직적인 압력을 행사해서든 조례가 사문화되는 일을 막는 일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연구와 활동, 조례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리기 위한 활동,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와 센터의 설치 등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를 만들었으면 활용하고 적용해야 한다.

기본인권조례의 제정과 실행은 그 자체로 인권 지형의 큰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신호다. 국가의 중앙 차원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삶에까지 인권의 가치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자유와 평등, 연대라는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공동체가 출현한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으며, 그런 지역 인권공동체의 힘으로 중앙의 잘못된 반인권구조도 바꾸어낼

조례의 성격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2012년 개정된 조례
3) 조사방법은 각 지자체의 인권담당자에게 설문조사지를 보내서 답변을 받는 방식이었으며, 총 16개 지자체에서 답변을 보내왔고, 그 내용을 조사결과에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총 17개 지자체의 인권조례 이행실태를 조사

수 있다. 그러기에 기본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이 시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권리옹호체계의 법률화 방안의 고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여전히 낮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인권 교육이나 장애인 관련 교육이 제도 개혁에 선행해야 장애인 차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약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해도 시정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고 과정이 길고 복잡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장애인도 상당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도가니 사건 이후 최근 발생한 '원주 사랑의 집 사건'은 장애인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접수와 조사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인권침해 그리고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에 있어서 그 영역도 대단히 제한적이고 조사권에 있어서도 실제로 서면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지, 출석여부도 서면으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별도로 장애인권리옹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사회 곳곳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권리옹호 제도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P&A는 'Protection and Advocacy'의 약자이며 우리말로 '보호와 옹호'를 뜻한다. 실제로 미국의 P&A시스템은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광범위한 조사권, 긴급구제조치에 관한 권한, 질문검사권, 인권옹호업무방해죄 등 형법에 의한 보호 등 P&A기관보다도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P&A 기관들은,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의회는 이것을 하도록 P&A 기관들에게 독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는데, 이들 권한과 책임은 여러 가지 특별한 점에서 전통적인 법무법인들의 권한과 책임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지방 일부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그나마도 조직축소의 논란 속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인권문제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고, 장애인 인권옹호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과 예산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장애인 관련 진정사

건의 처리속도가 매우 늦고, 빈발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동성 있게 관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 인권옹호업무는 그 특성상 장애인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장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자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방화, 소규모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민간기관의 헌신성과 역동성, 서비스 마인드, 전문성과 활동경험이 권리옹호활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미국의 P&A 기관은 '민간조직'의 역동성과 자발성, 서비스 마인드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장점이 결합된 조직이다. 따라서 반관반민기구의 성격을 갖는 권리옹호체계야말로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직형식이다. 따라서 한국의 장애인권리옹호체계도 민간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반관반민의 형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P&A 시스템은 장애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하는 가장 규모가 큰 전국적 단체이다. P&A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권한을 가진다.

- ① 의심되는 학대와 방임을 조사하고,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사법절차를 진행한다.
- ② 학대와 방임, 거주자에 대한 처우 및 안전을 감시하기 위해 조사를 위해 필요로 한 기록과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 ③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법 주법에 근거한 그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④ 서비스를 받을 자격에 관한 정보, 그 외의 법률적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기관을 안내한다.
- ⑤ 장애인과 관련된 입법 및 서비스에 관한 개혁에 관해 정책입안자들을 교육한다.

모든 P&A 기관들은 정신질환자, 발달장애인, 그외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을 감시하고, 조사하며 부당한 조건이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많은 일은 상당한 자원을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 재정적 지원확보 프로그램, 건강보험, 접근가능한 주거권, 생산적인 고용기회에 관한 충분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일이다. 또한 학대와 방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의 P&A는 197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꾸준히 만들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P&A 도입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단계를 도입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P&A 제정 배경 발달장애인 시설인권문제가 큰 배경이었고 시설을 폐지한 주 추동력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시설을 해체할 수 있는 무기로 작동할 수 있느냐가 미국 P&A 기능 가운데 어디에 맞출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집중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맺음 말

최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당시 당사자들의 크고 많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다 담지 못했던 상황을 우리는 지금 또 다시 체험을 하고 있다. 만약 그때 요구안을 다 담을 수 있었다면 지금 장애인계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지난 몇 년 국가인권위원회 기구가 정치적 바람에 의해 난기류를 만난 이후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인권활동가들에 의해 포괄적 인권조례와 장애인 차별조례 제정에 몰두하다 미국의 P&A제도에 대한 담론이 재 점화되면서 이제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처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입법을 위한 활동을 할 때도 법안의 수위와 소관부처를 정하는 일을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정 되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선택되었다. 지금 P&A를 두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선택은 너무나 옳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소관부처를 그 어디의 정부 조직에 두었더라도 그나마 독립성을 갖춘 인권위보다 나왔을 거란 짐작을 미루어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소비심리처럼 너무 쉽게 선택하고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아직도 장애인 당사자조차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인권위 기구를 모르는 이가 많다. 털 뽀뽀 상상해진 기구를 내 던지고 또 다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소관부처를 정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인권은 합법적으로 유린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리의 과제는 법을 똑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 제정을 매개로 사회운동을 해야 하고 운동 속에 결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신 그 열망으로 법제정 그 이상의 것을 이루어야 한다.

참고문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우리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현황과 대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외.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조한진. “미국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현황과 그 함의”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들. “인권조례 이대로 좋은가?”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3

장차법의 실효적이행을 위한 법개정방향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차법의 실효적이행을 위한 법개정방향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는 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¹⁾(이하 “장차법”이라 함)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인권분야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킴으로써 제도와 문화를 놀랍도록 바꿔놓았으며,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률과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개정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더불어, 최근 몇 년 사이 각 지역별로 장애인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장애인인권보장 전반에 관한 획기적인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국제적인 장애인인권규약 등이 국내법으로 승인됨에 따라 장차법과의 관계정립시도도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최근에 일고 있는 장애인권리옹호체계(P&A)의 국내법도입주장과 관련하여 장애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포괄적인 장애인인권기본법(가칭)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라 최근 들어 장차법은 지금까지의 험악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소외받고 있는 느낌들이 정도이다. 장차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장차법을 둘러싼 다양한 현실적·입법적인 환경변화를 다시 되새기면서 장차법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장차법을 둘러싼 다양한 법령제개정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장차법을 둘러싼 다양한 움직임을 살펴본 후 장차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2008년 4월 11일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장차법 제1조)하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차별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및 권리구제 절차 마련을 통해 장애인인권보장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2. 장차법관련 법령개정운동의 역사

가. 법령차원에서의 접근²⁾³⁾

우선, 첫 번째 일어났던 법령개정운동은 장차법제정에 따라서 이와 상충되는 내용을 지닌 기존의 법령들에 대한 개정검토작업이었다.

우선 장차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⁴⁾과의 상충이 발생하게 되었다.⁵⁾ 인권위원회법이 포괄적인 ‘인권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조직법’으로서 출발하게 됨으로써 지닐 수 밖에 없었던 한계로 인해 개별적인 인권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제정, 특히 장차법의 등장으로 인해 두 법 사이에 체계적인 정합성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며, 이는 향후 장애인인권기본법 또는 포괄적인 인권기본법의 제정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장차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존의 장애인복지관련법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작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주제를 다룬 관련논문⁶⁾에서는 장차법과 상충되는 대표적인 법률로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등을 들었고, 이러한 상충의 근거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관련 법률의 용어 및 내용상의 괴리는 장애 및 장애인, 장애문제에 대한 접근 패러다임의 상이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며, 과거 수용적·의료적 모델을 근거로 제정된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은 사회적 모델 입장에서 재검토 되어야 하며, 점검을 통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은 실제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그러한 위와 같은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논의에 기초하여 실제 입법과정에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다수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서 부터라 할 것이다.⁷⁾

2) 변용찬외 5,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의하위법령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3)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법령정비 및 편의증진법 하위법령개정연구,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2011. 2)

4) 2001. 5. 24. 제정되어 2001. 11. 25.시행됨(법률 제6481호)

5) 이숙진, 차별금지 관련 법률의 부정합성- 인권위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84호, 2009.12, 230-25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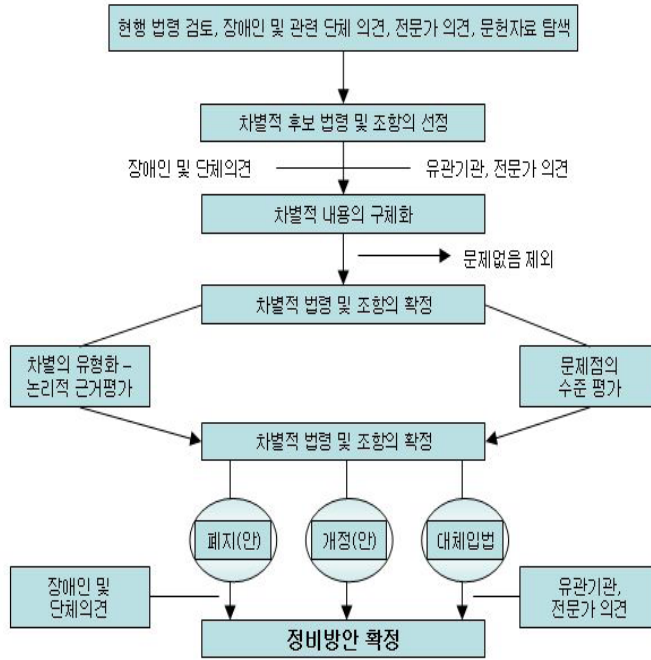
6) 임성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2009. 4.1), 월간 복지동향 제126호, 2009.4, 13-16면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박은수 의원을 비롯해 스물두 명의 의원⁸⁾이 공동 발의한 장차법 개정안⁹⁾은 ①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의 제 조항을 구체화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②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관련해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가 있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않은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 하며, ③제45조의 2(장애인차별 시정 추진단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복지부에 “장애인차별 시정 추진단”을 두도록 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정안 내용이 모두 입법에 반영된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개정안의 일부내용이 반영된 장차법 개정법률이 2010년 5월에 신설되게 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 후에도 장차법과 상충되는 법령들에 대한 개정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2011년에 이르러서는 같은 박은수 의원이 장차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건 개정안을 대표 발의¹⁰⁾함으로써, 본격적인 법개정작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끝으로, 장차법을 기준으로 관련법령의 제개정작업을 위한 작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¹¹⁾

-
- 7) 18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박은수의원이 있었고, 새누리당 정하균의원등 총 8명이 있었다. 박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18대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18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장애인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명의 활동보조인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장애후보를 많이 낸 정당이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 8) 그 중 장애인국회의원은, 곽정숙, 박은수, 윤석용, 이상민, 이정선, 임두성, 정하균 의원등이었다.
 - 9) 장차법 21조, 26조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가 2007년 4월 장차법 시행령 제정 당시 입법예고안에 있던 장차법 26조에 따른 ‘사법 행정절차상의 정당한 편의제공’내용을 장애에 의견수렴 없이 삭제하고, 지난 6월에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출판 영상물에 관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부분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장차법 21조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
 - 10) 성인지 예,결산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지 예결산서 작성의 의무화(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시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토론에 자막이나 수화 방송의 의무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장애인 차별 철폐 및 권익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11) 장애인차별법령발굴 및 정비방안, 법제처, 한국정책기획평가원(2007.10.)



나. 조례차원에서의 접근

장차법제정과 개정, 그리고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례제정운동이 시작되었다. 2010년 4월 최초로 전라남도의회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을 시작으로 2013. 3. 현재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및 전라남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르기까지 총 63곳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또는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¹²⁾

부산시의 경우도 2008년 부산대학교 조소영교수가 수행한 사회적 약자·소수자 관련 조례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¹³⁾, 2011년 6월에는 ‘부산 장애인조례 제·개정 추진연대’가 발족하여 장애인인권조례제정운동을 이끌었으며¹⁴⁾, 이후 장애인당사자그룹과 다양

12)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장애인’, ‘차별’등의 용어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2013. 3. 26. 방문)

13) 조소영,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提言) - 부산광역시의 소수자·사회적 약자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法學研究 第50卷 第1號 通卷 第61號, 2009.6, 1-26면 참조.

14) 추진연대(집행위원장 김호상)측은 장애인 차별적 요소가 담긴 조례, 법규 146개를 부산시와 기초의원들과 협의해 올해 안으로 개정작업을 펼치는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가

한 전문가들이 연합하여 장애인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행하였으며, 이윽고 지난 3월 22일에 이경혜위원의 발의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장애인인권관련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¹⁵⁾ 더구나, 이 조례는 타 지자체와 달리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구체화기능을 담보하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¹⁶⁾

3. 장차법을 둘러싼 다양한 움직임

가. 국제적인 흐름

정출산지원금, 장애인인권조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한 장애인조례 제정운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15)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2010년 10월에 장애인당사자들과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전남, 광주 등 앞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관계자들을 초빙하여 간담회를 가졌고, 2012년 7월에 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포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합회, 여성장애인연대 등 당사자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인 유동철 교수, 동아대 로스쿨의 송시섭 교수, 최창용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조례제정시민추진단과 TF팀을 결성하였으며, 그 후 국가인권위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미나 개최, 10여 차례의 회의, 또 집행부와의 논의를 거쳐 김수근, 배종웅, 박인대, 박재본, 이정운 의원과 공동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경혜의원실 보도자료 참고)

16) 예를 들어,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다 구체적인 센터의 업무로서 장애인인권침해사례를 접수하게 하거나, 쉼터 등을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인권침해의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했다는 점 등이다. 타 시도의 조례에서도 장애인인권센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성격이 상담기관에 그치는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에는 법률구조활동등 권리옹호기구로서의 역할을 일정부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제17조(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접수, 상담 및 관련자료 수집 활동
2.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의뢰 지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현장지도·감독에 참여
4.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옹호,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개발 연구
7. 차별 및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분리 등 임시보호를 위한 필요한 서비스 연계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옹호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장차법의 제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¹⁷⁾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총체적, 통합적 국제조약으로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2007년 3월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장애 관련법체계 정비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인권과 기본권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¹⁸⁾ 그 대표적인 것이 2007년 4월 10일 제정되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차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준당시 ‘보험 가입 차별 금지 조항’의 기준을 ‘유보’하였는데, 협약은 ‘건강보험의 제공, 그리고 국내법이 생명보험을 허가하는 경우에…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그러한 보험을 공평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제공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 상법 제732조는 ‘15살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였다.¹⁹⁾ 또한, 정부는 나아가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국제적 구제절차를 정한 선

17) 2006년 12월 13일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 존엄을 보장·증진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UN 192 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관한 보편적 규범성과 함께 장애문제의 특수성과 장애인 인권영역의 독자성을 반영한 고유한 규범내용을 지니는 새로운 인권규약의 필요성에 국제사회가 이해를 같이 한 것으로, 이로써 전 세계의 장애인은 모든 사람들과 동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효과적 장치를 갖게 되었다.

18)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9집 (2012. 6) 517~542면.: 그리고 2007년 4월과 10월에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 있었고, 같은 해 5월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하는 법률로 새롭게 제정되어 장애인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2008년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장애인이 참여하는 기업의 생산품이 장려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2010년 장애인연금법의 시행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기초소득을 보장하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2011년 1월에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10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11년 8월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정부가 제출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입법조치도 예산조치도 필요 없다고 명시했지만, 장애인계는 고쳐야할 법과 제도가 수두룩하다고 맞서고 있다.

19) 2007년 10월에는 지적장애인이 일반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생명보험이 거절된 사례와 정신장애인이 신경계 약물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단번에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사례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소송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유발하고 있는 상법 제 732조에 대한 첫 소송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최초의 장애인차

택의정서의 기준을 유보했다. 피해 당사자 등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조사·제안·권고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선택의정서 기준은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이후 2011. 6.에 이르러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장애인당사자들은, 이전에 한국 DPI가 제안하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이 함께 활동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링연대²⁰⁾를 중심으로, 정부가 마련한 국가보고서를 토대로 민간보고서 작성을 추진하여 왔고, 최근에는 4개단체(장총과 장총련, 코큰과 모니터링연대) 대표들이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회의를 하였는데, 새로운 연대체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 보고서연대를 출범하기로 하고, 4개 단체가 공동제안하여 많은 단체들에게 참여를 권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국제장애인 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작성 소그룹을 9개로 나누었다. ①일반 원칙 ②비차별 ③장애여성 ④장애아동 ⑤접근성 ⑥자유권 ⑦자립생활 ⑧사회권 ⑨국가의무가 그것이다. 권리협약 33조까지의 26가지 권리를 9개 분류 소그룹에서 이행 정도를 정리하여 보고서가 준비되면, 2014년 가을이나 2015년 봄 제네바에서 국가보고서와 함께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열린네트워크 변경택대표가 2012년 10월 인천송도에서 개최된 UN세계장애대회에서 아태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²¹⁾ 초대 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장애인인권영역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이

별을 구제하기 위한 청구소송이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월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보험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보험 관련 의학·통계적 연구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정부는 2013년 2월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다.

- 20) 이 연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에 기여하였고, 국내 기준을 촉구하였고, 기준을 먼저 할 것인가, 완전한 기준이 아니면 보류해야 할 것인가, 상충되는 법 정비가 먼저인가, 기준이 먼저인가 등 많은 정책방향을 놓고 난상토론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해 기준 2년 내에 각국 정부는 당사국의 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하여 국가보고서를 유엔 권리협약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단체들은 국가보고서에 대한 민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원회는 매년 봄과 가을로 2주일 정도 심의기간을 정하여 제출된 문건들을 심사하고 각국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하기도 한다.
- 21) 아시아태평양 장애포럼(Asia Pacific Disability Forum)은 유엔 에스캅(UN ESCAP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2003년 기존의 ‘지역 NGO 네트워크 (Regional NGO Network)’서 개편되어 새로이 조직된 민간기구로

더욱 필요한 단계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국내에서의 움직임

(1) 장애인권리옹호체계(P&A)에 대한 관심증대

이전 학계를 중심으로 조명을 받아온 미국의 장애인권리옹호체계(Protection & Advocacy, 이하 P&A라 함)에 대한 의견들이 2010년도 무렵부터 공식화되기 시작하였다.²²⁾ 그 후 여러 차례의 다양한 공개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다.²³⁾ 더구나 작년 말에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에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비롯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여러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선에 앞서 입법방안을 논의하고 제안하기 위해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지역에서도 P&A에 대한 관심이 높아, 2012년 11월 ‘대구시의회’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마련과 인권증진조례 개정’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더불어, 현 장차법으로 위와 같은 P&A를 답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장애인인권기본법’을 제정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위 법의 핵심 내용은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장애등급제를 전면적으로 폐지 하고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탈시설-자립생활 보장(탈시설화 선언 및 탈시설 전환서비스 제도화, 자립생활 권리 보장 및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개편(대통령 산하 상설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구축), 권리옹호제도 도입(장애인권리옹호 제도 및 기구 마련) 등을 들고 있다.

서, 현재 국제 장애기구인 국제재활기구(Rehabilitation International: RI)와 국제장애인연맹(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PI)을 비롯하여 총 24개국 61개 단체(준회원 포함)로 구성되어 정부간 협의체인 유엔 에스캅의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 대표단체의 협력을 주선하고 있다.

- 22) 2010년 8월 25일, 박은수 국회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및 탈시설정책위원회등이 주최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동의대 유동철교수의 ‘우리나라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현황과 문제점’, 대구대 조한진교수의 ‘미국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현황과 그 함의’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임성택변호사의 ‘한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도입에 관하여’등 깊이 있는 글들이 발표되었다.
- 23)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주최로, 2012년 12월에 “장애인권리옹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의회실에서 열렸고,

(2) 장애인 인권기본계획수립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의 첫 번째 과제인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다양한 기준설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²⁴⁾²⁵⁾ 장애인인권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중에 하나도 장차법과 상충되는 법령의 개정작업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장차법의 중요성은 장애인인권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더욱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장차법의 새로운 자리매김에 대한 향후전망

가. 장차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작업 지속

(1) 장차법의 개정

장차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장애의 개념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제약’등의 조건을 삭제하자는 의견, 지적장애인에 대한 규정의 흡결,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소위원회의 강화와 역할증대, 모니터링시스템의 법제화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지적사항이외에 보다 근본적인 개정방향을 몇 가지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로, 차별금지사유와 진정대상의 일치다. 예를 들어 장차법상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등’의 행위는 장차법상 ‘차별행위’로 볼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고 (장차법 제3조 제20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참조), 만약 법이 괴롭힘등의 행위는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인권위원회법상 진정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교육영역에서의 장차법의 실효성은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인권위로부터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장차법내에 두는 방안이다. 제정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였으나 현재의 인권위의 진정처리능력의 한계를 보면 다시 한 번 장차법 독자의 기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현재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셋째로는, P&A와 관련된 근거조문을 규정하는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P&A를 조례등에서 규정하고자 할 경우 근거법률이 부재하여 조례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불완전한 P&A로서 그 모습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장차법을 개정하여 그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24)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2. 1. 17.

25)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안)참고

(2) 자치법규의 정비

위에서 소개한 바 있는 전라남도 장애인인권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10년 6월 현재 전라남도 전체에는 총 8,626개의 자치법규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이중 전라남도 본청에만 555개의 자치법규가 있고, 이들 자치법규 중에는 ‘불구’ ‘폐질’ ‘정신병’ 등 장애 비하 또는 차별적인 표현이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으며, ‘적극적 조치’의 결여로 인해 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도 존재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7개에 불과한 바, 광주시와 제주시가 12개의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전남도의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차원의 입법정책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고, 특히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 동권 보장 및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조례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따라서,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자치법규에 존재하는 장애차별적, 장애비하적인 표현의 개정, ‘적극적 조치’가 결여된 자치법규의 개선, 장애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및 제정, 장애 관련 정책 결정에 장애인의 참여 보장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한다.

5. 맺는 말

결국, 장차법 제정이후의 5년간의 시간은 장차법과 상충되는 법령개정작업의 역사이고, 급변하는 장애인인권분야에서 그 독자적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인권의 국제화경향과 국내적으로 지역적인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교차하면서 던져진 P&A라는 과제를 장차법이 독자적으로 수용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낀다. 이제 5살배기 어린 아이와 같은 장차법을 더욱 살찌우고 튼튼하게 자라게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장애인인권기본법으로의 성급한 관점이동은 어린아이 ‘장차법’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유기행위와 같다는 점을 끝으로 지적하고 싶다.

제 2 부

부 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이경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사법·행정절차 영역의 장애인 차별

- 송정문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대표)

교육영역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대하여

- 임애정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전임연구원)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신수현 ((사)열린네트워크 부산지부장)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2013. 7. 1. 시행 예정 -

이경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2013. 7. 1. 시행 예정 -

이경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① 목적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

② 시의 책무

-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 방지 및 해소
- 정책 결정 및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등의 의견 수렴 및 참여 보장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기본계획 내용】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시책 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3.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향,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4.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5.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

【시행계획 내용】

1. 신체적, 정신적 장애유형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3. 컴퓨터 등 임시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권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 구성

- 총 15인 이내 구성(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하되 장애인 비율 과반수 이상 (여성 장애인 포함)
- 인권관련 기관, 부산광역시의회,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 임기 2년 (두번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 ※ 부산광역시 장애인인권업무담당과장이 간사 역할을 함.

- 기본계획·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정기회의 연 2회 개최, 임시회의 소집 가능

5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및 수행 업무

- 수행 업무

1. 장애인 차별행위·인권침해에 대한 사례접수, 상담 및 관련자료 수집 활동
2. 장애인 차별행위·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의뢰 지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현장지도·감독에 참여
4.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차별금지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인권보장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개발 연구
6. 차별 및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분리 등 임시보호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지원

- 시장은 위의 업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6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인권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구·군 또는 관련기관에 개선조치, 차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대상 교육 매년 실시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법인,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 교육 및 홍보가 실시되도록 권장
-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음.

붙임.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붙임】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등의 권리를 구제하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시책 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3.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4.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5.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유형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3. 컴퓨터 등 임시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권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및 구·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구·군 또는 관련기관에 개선조치 또는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1.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장애인과 관련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장애인등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인권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접수, 상담 및 관련자료 수집 활동
2.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의뢰 지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현장지도·감독에 참여
4.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옹호,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개발 연구
7. 차별 및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분리 등 임시보호를 위한 필요한 서비스 연계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옹호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센터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제외한다.

②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2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단체·법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실시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등)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사법·행정절차 영역의 장애인 차별

송정문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대표)



사법·행정절차 영역의 장애인 차별

송정문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대표)

요즘 영화관에서는 영화 ‘7번방의 선물(감독 이환경)’로 인해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차법)」에 근거하여 줄거리를 살펴보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이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와 의사소통에 필요한 조치¹⁾를 받지 못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주인공이 사형까지 당한다는 것은 픽션 이기에 가능한 설정이겠지만, 영화 속 주인공의 조사과정은 실제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이다.

지난 해, 본 단체에 접수된 사건 하나도 이와 매우 흡사했는데, 사건 해결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진술조사 과정이 실제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영화같은 실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법·행정 절차상의 문제점과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1. 절차상의 문제

지난 해 3월 26일, 11살의 지적장애1급 아동 성폭력 사건이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로 접수되었는데, 피해자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 전문성폭력상담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게 된 사건이었다.

1)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원스톱지원센터의 부적절한 피해 지원

사건이 접수된 당시, 본 단체에는 본인을 포함한 상담원 1명이 성폭력전문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가 인정한 공신력있는 성폭력전문상담소의 지원이 더 나올 것 같아, 해당 상담소를 추천해 드리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우리를 매우 놀라게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해당 사건이 '강간'인데도 현재 법정에서는 '강제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남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상담을 하는 동안 성추행이 뭔지, 성희롱이 뭔지, 성폭행이 뭔지 법적 의미를 몰라서 구체적인 설명은 성기삽입, 즉 강간으로 하였지만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가 '성추행'이었다고 한다. 상담과정에서 피해자 또한 성기가 삽입되었음을 설명했다. 그런데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아버지가 성추행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강간부분은 제외한 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사건을 넘겼고, 피해자아버지가 산부인과검사를 의뢰하였음에도 강제추행 사건이라는 이유로 검사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설마 그런 일이...' 싶던 중에 피해자 아버지가 증거자료로 보여준 상담기록은 피해자 아버지의 말과 같았다.

경남원스톱지원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니, '피해자 아버지가 계속 성추행 당했다고 말했다기 때문에 성추행사건으로 접수했다'는 답변을 했다. 황당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법적용어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 특히 자녀가 강간당한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있는 가족은 정신적으로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다. 또한 피해아동이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했다. 그런데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조차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법적용어를 명확히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 어떤 사건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아 발생한 사건이었다.

(2)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진술조사 과정

해당 사건의 재조사를 의뢰하자, 원스톱지원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관에 의해 진술조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 아버지의 요청으로 본 단체 상담사가 신뢰관계자로 참여하였다.

경남원스톱지원센터에는 진술실이 있었는데, 매우 협소할 뿐 아니라 방음도 되지 않아 진술실 밖으로 대화내용이 다 들리는 구조였다. 게다가 낮은 환경과 낮은 사람에게 적응시간이 필요한 지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할만한 정서적 안정을 꾀하는 조치도 없이 진술조사가 시작되었다. 경

찰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기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사진 한 장 준비하지 않았고, 지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어떠한 도구도 준비한 것이 없었다.

불안한 환경에서 시작한 진술조사로 인해 결국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은 담당경사의 질문에 집중하지 못했고, 불안감은 극도에 치달아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담당경사는 대답을 하지 않는 장애아동에게 계속해서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지만 다그치듯 물었고, 피해자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어제 꿈을 꿨는데 내 꿈에 호랑이와 토끼가 나왔어요...”

그러자 지켜보던 경남원스톱센터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전문가’는 진술조사를 중단시키더니, 피해자를 복도로 불러 강압적인 태도로 “그런 말 하지마! 꿈 얘기 하지마!”라며 명령하듯 말을 한 후, 다시 진술실로 들여보냈다. 신뢰관계자로 참석한 본 단체 상담사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으나, 신뢰관계자는 진술조사 과정을 볼 수는 있으나 개입할 수 없다하여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했다. 더욱 주눅이 든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다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모든 진술조사가 끝나 버렸다.

진술조사 후, 조사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우리에게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전문가’의 답변은 더욱 가관이었다.

“제가 이 일을 오래해 왔는데 지적장애인은 진술을 못해요. 작년에 거주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지적장애인 두 명도 진술이 만나와서 모두 돌려보냈어요. 어쩔 수 없어.”

성폭행이 있었음을 말한 시설거주인, 그것도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해 진술조사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해당 시설로 돌려보내다니, 설사 성폭행 사건이 없었다 치더라도 다시 있던 시설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거짓말을 했다하여 지목된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황당한 조치를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전문가’라는 사람이 했다하니 말문이 막혔다.

귀찮아서일까, 아니면 몰라도 너무 몰라서일까... 경찰과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전문가’에 의한 지적장애인 진술조사 과정은 강압과 지시적 태도, 경직된 분위기로 이뤄지고 있었다.

(3) 장차법이 제정된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우리가 직접 목격한 진술조사 과정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었다. 이에 피해자 가족과 함께 기자회견, 시정요구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언론을 통해 진술조사 과정에서의 차별

문제가 벌어지자, 사건 해결을 위한 관계자간담회가 마련되었다. 경찰청 관계자 뿐 아니라, 경남원 스톱센터의 운영을 책임지는 경상남도 여성정책관실 계장도 참석했다. 시정요청 내용을 설명해달 라고 하여, 조목조목 설명하던 우리에게 경상남도 여성정책관실 계장은 도통 알아듣지 못하고는 ‘그게 왜 우리 책임이냐’,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는 등 엉뚱한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해당 과 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장애인 차별도 법에 명시되어 있음을 이해한 계장의 한마디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잘못된 게 맞네요.”

법이 있든 없든 누군가가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그 차별로 피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사법·행정기관 소속원의 모습이겠지만, 이상적인 모습은 갖추지 못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법의 대략적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텐데 경상남도에서 계장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4) 사법·행정절차상의 차별금지

장차법 제26조²⁾에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7조³⁾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이용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 사법기관 소속원은 피해자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항 :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하지도 않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끊임없이 장애유형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조사 중이니 말하지 말라’, ‘조사가 한번 끝나면 다시 할 수 없다’는 등 일반적인 절차만을 강조했다.

게다가 진술조사를 하는 경남원스톱지원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또한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50도 가량의 형식상의 경사로, 전동휠체어가 통과할 수 없는 문 쪽은 이를 잘 설명해 주었다. 장차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 사건은 장애인차별전문기관이 직접 개입을 했기에 밝혀진 사건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시설거주인의 성폭력진술 사건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법·행정절차상 억울하게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을까. 어찌되었던 이러한 일로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책이 필요하다.

2. 사법·행정기관의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에서는 지난 2010년 동안 경상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⁴⁾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제공 평균이행률’이 34.4%로, 턱없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1]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 평균 이행률

(단위:%)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주출입구	복도	작업대	화장실	기타시설	정당한 편의	평균
49.8	34.2	16.2	62.9	27.9	32.0	43.6	33.9	8.7	34.4

*자료 : 2010년 공공기관 대상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4) 조사대상이 된 공공기관 (총1,012곳) : ▶ 행정기관(도청,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의회, 주민센터, 세무서, 차량등록사업소,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시설관리공단, 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촉진공단, 산업인력공단 등), ▶ 사법기관(법원, 경찰청, 검찰청, 경찰서, 파출소,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등), ▶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공공이용시설(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시·군민회관, 복지관, 공원) ▶ 우체국

이 중에서도 기관별 이행률에 있어 사법기관과 우체국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특히 대한민국의 3대 국가기관 중 하나인 사법기관의 이행률이 21.1%로 가장 낮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시사한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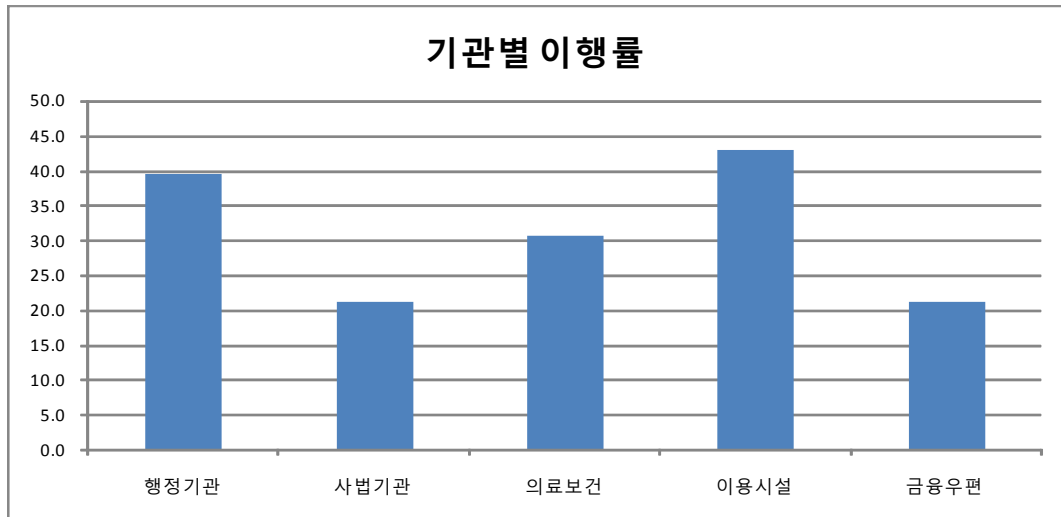
[표-2] 경상남도 기관별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 평균 이행률

(단위:%)

	행정기관	사법기관	의료보건	이용시설	금융우편
이행률	39.6	21.1	30.7	42.9	21.1

*자료 : 2010년 공공기관 대상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단위:%)



*자료 : 2010년 공공기관 대상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도표-1] 경남 공공기관 기관별 '편의시설 설치' 이행률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이는 '사법기관 시설물별 이행률'을 살펴보면, 기타시설과 정당한 편의제공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주석참조). 그 다음으로는 엘리베이터이다. 4층 건물은 건축법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공기관은 다르다. 그런데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법기관이 여전히 많다. 예를 들어, 경남지방경찰청의 경우 엘리베이터는 고사하고 층간경사로조차 없을 뿐더러, 경찰청 정문 출입구 경사로는 경사각이 너무 높아 누군가의 도움없이 출입조차 불가하다. 법원의 경우에는 공판실의 피고인석, 증인석이 좁아 사실상 편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사법기관의 접수대, 작업대는 휠체어장애인의 이용에 필요한 높이의 접수대나 작업대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파출소에는 실제 이용가능한 장애인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곳이 거의 없었다.

불법을 행한 사람에게 벌을 명령하거나 법률에 따른 판단을 하는 사법기관으로서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표-3] 경상남도 사법기관의 '시설물별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 평균 이행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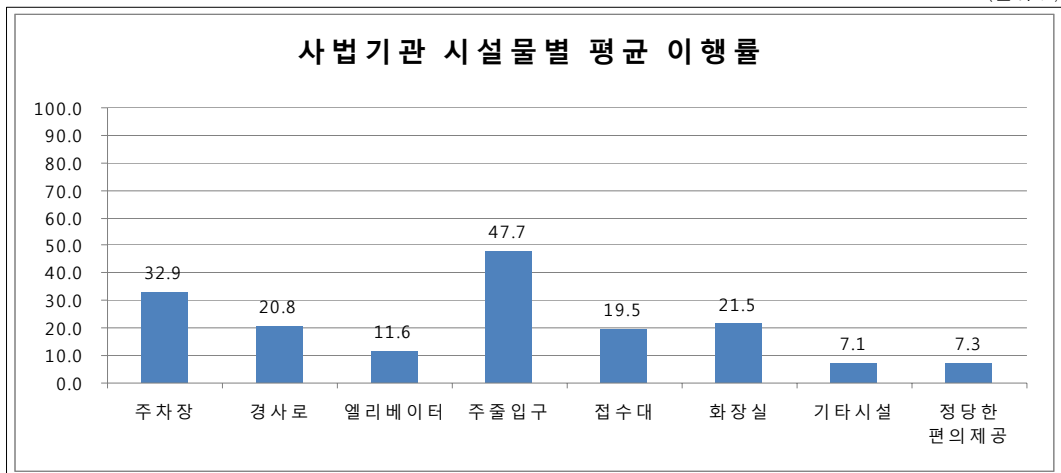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주출입구	접수대·작업대	화장실	기타시설 ⁵⁾	정당한 편의제공 ⁶⁾	평균
32.9	20.8	11.6	47.7	19.5	21.5	7.1	7.3	21.1

*경남지역 사법기관 중 146곳의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 제공내용을 조사한 결과임.

*사법기관 시설물 조사에서는 복도영역을 제외하였다. 이는 파출소, 법률구조공단, 등기소 등의 경우 '복도'가 '해당없음'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자료 : 2010년 공공기관 대상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단위:%)



*자료 : 2010년 공공기관 대상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도표-2] 경남 사법기관 '시설물별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 평균 이행률

5) 기타시설물 : 공중전화기의 높이, 예비용 휠체어, 점자안내판 등.

6) 정당한 편의제공 : 홈페이지의 시각장애인 이용을 위한 대체 텍스트, 영상자료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비상벨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상경보등, 점자정보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기, 수화통역사, 화상전화기, 점자자료,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림자료 등.

사법·행정기관은 장차법 제26조 4항⁷⁾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위 모니터링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정당한 편의 뿐 아니라, 편의시설 이행률이 평균 30%가 채 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할 방안 및 예산확보가 급선무라 판단된다.

3. 제언

사법·행정절차에서의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 소속원의 장차법 이해와 장애이해는 기본일 것이며,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원방안 및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늘상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제대로 실행되는 못하는 것 같다. 그렇기에 법상, 제도상 필요한 조치들을 명시하거나 장차법의 위상을 높여 사법·행정기관 소속원들이 업무를 할 때 상시 고려하도록 만들거나, 지역 인권사무소를 통한 모니터링과 정기적 조사 및 개선 권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면 어떨까.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듯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공공영역의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법에서 조목조목 뭘 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 나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구조이고 소속원의 입장이라는 것을, 차별사건으로 해당 소속원을 만날 때마다 늘상 듣곤 하기에 더욱 법적 강제성이 필요함을 느낀다. 따라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 개정 부분을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1) 형법과 행정절차법 속에 ‘장애특성에 따른 정당한 편의 및 필요한 조치’ 명시

앞서 설명한 원스톱지원센터 사건은 기자회견을 한지 4개월여 만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지원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남원스톱센터에서 피해자 상담 시 활용할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의사소통 도구 구비, ▲낮선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비상근 임상심리치료사 배치, ▲경남원스톱의 전 직원 대상 장애유형별 이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경남원스톱센터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서와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림안내서 제작 비치,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공사,

7) 제26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유형별 성폭력피해자 지원매뉴얼 개발,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가 위촉, ▲수사 담당 경찰관 문책, ▲장애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진술분석전문가 활용, ▲장애인의 성폭력 사건 시 솔루션위원회 개최 등이다.

하지만 이것은 해당지역 내에서의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장차법, 특히 사법·행정절차상의 장애인 차별금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법과 행정절차법 속에 장차법을 언급하고, 장애특성에 따른 정당한 편의나 필요한 조치를 설명한 구체적인 조항을 삽입하는 등 장차법을 근거로 한 형법 및 행정절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법은 관심 밖에 놓일 때 쓸모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장차법의 특별법화 추진

장차법은 특별법이 되지 못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걸쳐 적용하는 법이지만, 일반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상법 732조와의 우선순위의 문제도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반해 성폭력특별법은 모든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다 보니 언제나 형법보다도 우선하여 법률 간 해석상의 논란이 없다.

이렇듯 장차법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를 놓고 논쟁하는 동안 장차법상 차별로 규정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별행위자는 차별을 행하고도 범망을 피해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장차법은 실제 시행되고 있는 것일까, 아닐까. 장차법 시행 5주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장차법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졌는지와 함께 장차법의 지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진 장애인단체들이 처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제정한 유일한 법이기도 한 장차법. 그만큼 장애인들은 차별받고 살아가는 현실을 바꾸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다고 본다. 그 간절함으로 제정한 장차법이 실효성을 갖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중 하나로서 장차법 특별법화 추진을 제안해 본다. 각 분야 다양한 사람들의 동의도 필요할 것이다. 각 분야 다양한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장차법의 특별법화 논의를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장차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3)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지원강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중에서도 사법기관의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률’이

21.1%로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영역에 비해 편의시설은 예산의 투입없이 개선이 불가능하다.

사법·행정절차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법·행정기관의 접근성 확보 및 정당한 편의를 제대로 제공하는 일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인권사무소의 확대 및 조사권 부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현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위원과 조사국에게만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 인권사무소 소속원도 사실상의 조사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 인권사무소까지 다 합쳐도 총 4곳에 불과하고, 인력도 맡은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로 인해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가 진행되는 데 까지 6개월이 훌쩍 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찾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본 단체 한 곳에 접수되는 차별사건만도 연간 400건이 넘는다.⁹⁾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기억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진행되는 시일만도 이렇게 길 경우, 조사원이 조사에 착수했을 때에는 제대로 사건을 기억내지 못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전국에 4곳에만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그 중에서 조사권을 가진 서울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에 살고 있는 다수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지만 소외와 배제에 익숙해 있는 장애인들의 경험은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 따라서 현 시스템은 장애인 차별 사건을 조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조사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고용노동부 지역청’처럼 지역 인권사무

8)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제11조(인권사무소) ③항을 통해 허락된 조사사항(조사의 제한규정)

3. 긴급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조사 지원

5. 관할구역 내에 있는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한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

9)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에 접수된 사건 : 2012년도 - 444건 , 2011년도 - 584건

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인권사무소 조사원에게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이 갖고 있는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신속한 행정절차가 시대의 요구 중 하나여서 다양한 분야의 행정절차들이 간소화되는 등 신속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차별문제에 개입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스템은 너무나 구시대적인 것 같다.

일각에서는 지역 인권사무소 조사원의 전문성을 문제삼아 조사권 부여를 반대하기도 하지만, 이는 다른 방식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성을 문제삼아 조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전문성은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을까. 경찰공무원 시험점수로 담보가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원도 그러한 절차를 갖추면 될 것이다. 방법은 다양하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인권사무소의 확대와 조사권 부여에 관한 사안은 정부가 국민의 차별과 인권침해에 적극 나서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국가가 치관에 달려있다고 본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교육영역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대하여

임애정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전임연구원)



교육영역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대하여

임애정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전임연구원)

1. 교육, ‘인간 조건짓기 장’을 넘어, ‘인간의 살만한 삶 조건짓기 장’으로

“우리에게 교육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교육이란 ‘인간의 삶을 조건짓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¹⁾ 그런 까닭에 익히 우리는 교육이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인간의 활동이라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활동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livable life)’²⁾의 조건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 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매사에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여야 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교육활동이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그저 전달하고 습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식과 정보가 어떻게 생산되고 전달되고 습득되어지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까지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한지’를 매사에 진단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저 인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인간으로서의 삶의 조건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살만한 삶의 조건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루어내고 향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임애정, 「대학공간에 대한 권리와 여성」, 여성학연구 제21권 제2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1, 46면; 임애정, 「대학에서의 숨은 그림 찾기, ‘공간-여성-권리-정치」, 여성의 논으로 본 대학사회에 젠더정치, 오름, 2012, 48면 참고.

2) 임애정, 「살만한 삶과 법의 지배」, 부산법학 제6권, 부산법학회, 2012, 2-3면 참고.

이제껏 우리는 교육이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인적 인간변화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활동’이라 여겨 왔다. 물론 이 역시도, 교육의 목적은 교육권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권리,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같은 정당한 교육과정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고 있으며,³⁾ 이에 학습자의 자율과 학습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교육하여야 함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교육이 ‘바람직한 인간변화를 꾀하는 의도적인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자칫 교육 활동이란 한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몫으로 여겨지게 하는 면이 있다. 다시 말해, 다수가 취하고 있는 인간상을 마치 한 개인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유일한 인간상으로 여겨지게 하고, 그 결과, 다수가 취하고 있는 인간상을 습득하고 답습하기 위한 삶의 조건을 한 개인이 견비하는 것에 급급한 것이 교육활동의 전부인 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활동은 ‘바람직한 인간의 조건을 알고 논하는 활동’에 머물 뿐,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조건을 알고 논하는 활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의 장에서는 간혹 실은 빈번하게 ‘교육활동에 적합한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을 조건짓고 구별짓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심지어는 이로 인해 교육활동에서 낙오되거나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속출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이런 교육에 적합한 인간의 조건짓기에 따른 구별짓기’는 「대한민국헌법」⁴⁾과 「교육기본법」⁵⁾에서 명시된 ‘능력과 적성에 따른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법규범 또한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

이처럼 교육의 이념과 관련 법 규범의 목적에 대한 배반은 교육의 장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목격되어지는데, 그중 가장 선명한 예로 장애인 교육활동과 관련 법⁶⁾ 간의 어긋남을 들 수 있다.

3) 조화태 외, 인간과 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2, 44-45면.

4)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교육기본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전문개정 2007.12.21]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6) 2013년 4월 14일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는 장애인 교육 관련 법령 으로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직업교

2. ‘한 사람 때문에’ 할 수 없다 가 아닌, ‘할 수 있어야-하는’ 으로

얼마 전, 장애인 생활시설의 종사자 1명과 장애인의 부모 2명을 만났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⁷⁾

1) A의 이야기

‘**순회교육 운영에 있어, 학급설치와 교원배치 등 교육계획**’

장차법 설명회와 인권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다.

생활시설에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다.⁸⁾ 이 학급은 유치원과정으로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설치

육훈련 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들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교육기본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민건강보험법」, 「2011 특수교육통계」,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2013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 「2011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교원자격검정령」 등이 관련됨.

7) 여기에 제시된 ‘A의 이야기’, ‘B의 이야기’, ‘C의 이야기’는 각 인터뷰 내용을 간추려 옮긴 것임. 해당 인터뷰는 2013년 3월 20일에서 23일에 걸쳐, 1:1 만남의 내러티브 방식으로 각 1회씩 진행함. 인터뷰 참여자 A, B, C와의 인터뷰 개요는 아래와 같음.

- A는 생활시설 종사자로, 시설이용 장애인의 영유아 교육활동과 순회교육 등에 관하여 이야기 나눔.
- B는 부모로, 정신지체인의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의무과정 이후 평생교육 등에 관하여 이야기 나눔.
- C는 부모로, 지적장애인의 일반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편의제공, 상담 및 치료와 같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이용 등에 관하여 이야기 나눔.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5조(순회교육 등)

-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다. 이전에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달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생활시설과 같은 관할의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게 되어, 영아반과 유아반을 설치·운영하는 학교가 같은 곳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진학할 아이들의 상태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것이 무엇 인지를 잘 알 수 있어, 아이들의 진학 계획 등 교육전반에 대해 잘 논의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종전처럼 두 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달랐을 때는 상급반으로 진학할 아이들의 상태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것들을 잘 알 수 없다. 그래서 간혹 계획된 유아반 정원이 적을 경우, 진학할 영아반 아이들 중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이 진학을 늦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두 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같아지니, 진학할 아이들의 상태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것들을 잘 알 수 있어, 미리 학생과 교사 정원과 학급 배치⁹⁾ 등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영아반 아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 개정]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 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③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교육대상자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

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들 모두가 진학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학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여기서 눈여겨 볼 사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회교육의 운영’과 동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과건학급설치 및 교원배치’에 관한 것이다. 이 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복지시설 등에 과건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의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지시설 내 과건된 영아반과 유아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동일하여 어느 때보다 더 잘 장애인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계적이고 지속적인 순회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운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주의할 것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여부가 복지시설 내에 과건된 상급반과 하급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동일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전적으로 달려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 ‘운영학교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그저 형식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면, 이는 오히려 장애인의 교육의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교육의 받을 권리는 ‘장애인의 능력과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고 이것이 연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교육계획이 작성되고 운영되고 있느냐, 이와 동시에 학습권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이 이렇함에도,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명시된 ‘①입학과 배치 등의 거절금지, ②편의 제공 거절 금지, ③모든 교내외 활동에의 참여 제한 등 금지, ④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과 정보제공, ⑤장애인 등에 대한 모욕과 비하 금지, ⑥입학시 부당한 서류 등 요구 금지’만으로는 장애인의 진학에 있어, 특히 순회교육 운영시 학급설치와 교원 배치 등에서 일어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사실상 비단 순회교육의 진학에서만이 아니라, 각급학교에서의 입학, 전학, 진학 등을 하고자 할 때도 학급설치와 교원배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2) B의 이야기,

‘통합교육과 개별화교육’

‘특수학교 시설 노후화 개선’,

‘졸업 후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시설 마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요구와 만족도 조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아이가 정신지체이다. 아이의 사교성이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많은 것을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장애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보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당시, 집 근처의 초등학교 3곳에 입학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중 가장 친절했던 곳을 선택하여 입학하였다. 아이가 초등학교 1년을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 교육활동을 하였는데, 모든 교육과정에 비장애아동과 동일하게 참여한 편이었다. 체험활동 등이 있을 때는 부모나 바우처 선생님과 함께 참여하였다. 단, 시험과 같이 평가가 있어 비장애 아동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바우처 선생님과 함께 다른 교육활동을 하였다. 아무래도 지적 장애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장애아동과 함께 교육활동하는 것은 무리라 여겨져 특수학교로 전학하였다.

현재 아이는 통근차량을 이용해 특수학교에 다니고, 바우처를 활용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바우처 이용시간이 예전에는 50여 시간이었던 것이 현재 96시간으로 늘어나 아이와 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작년부터 장애인의 부모가 바우처 선생님이로 자신의 자녀가 아닌 장애아동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장애아동과 부모들 간에 서로 도움이 되어 좋다. 그러나 방과후 바우처 이용시간은 맞벌이 부모에게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여 바우처 선생님 말고도 또 다른 돌봄도우미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바우처 이용시간이 매월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어 학기 중에는 바우처 시간이 남는 반면, 방학 중에는 바우처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내용이 조정될 때, 이용자의 필요성 내지 만족도 등의 조사 없이 매번 일괄 조정되어 일방적으로 통보¹⁰⁾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혜택이 늘어난다고 해도 본인부담금과 관계가 있는 터라 어느 정도 그 필요성과 실효성 등을 확인하였으면 싶고¹¹⁾, 선택할 수 있다면 좋겠다.

10) 장애인복지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아이가 다니는 특수학교의 시설이 노후되어 있다는 것과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1년 뿐인 전공과¹²⁾를 마치고 난 뒤에도, 편히 다닐 평생교육 내지 직업훈련 시설이 있었으면¹³⁾ 하는 것이다. 최근 새로 생긴 특수학교의 쾌적한 환경과 최첨단 시설을 보면 그곳에 보내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제8조(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에 따라 실태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현황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특수교육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③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④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고 싶지만 이미 아이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것들에 익숙해져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단지 새로 생긴 학교시설에 대한 욕심만으로 아이를 전학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가 정규과정¹⁴⁾을 마치고 취미 내지 여가를 겸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저 먼 이야기 같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등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 입학하고 전학함으로써, 일상적으로 교내의 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바우처 등 교육관련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활동을 보장받고 있다. 그럼에도 입학하기 전, 사전에 장애인을 가장 반겨주는 학교가 어디인지를 알아봐야 하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왜냐하면, 그나마 ‘친절히’ 반겨주는 곳이 있어서 일반학교 입학을 감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특수학교를 택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학교 입학 후,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장애학생과 교육받는 것이 무리라서 특수학교로 전학을 하였다는데, 이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와 제22조에 명시된 ‘통합교육’과 ‘개별화교육’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교육과 개별화교육이기 때문이다.

바우처와 같이 장애인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시간이 증가하여 유용하다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변경 등과 같이 장애인 교육 정책의 수립과 그 실시가 일방적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장애인 교육정책 등을 마련할 때,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등에게 그 요구와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면 하였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과 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과 같은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수요와 만족도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다소 무리이다. 더욱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1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요구와 만족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래야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금지하고, 필요한 편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와 제33조에서는 장애인들의 진로와 직업교육을 위하여 ‘각급학교 장은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계속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각급학교 장과 평생교육기관의 장은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법정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과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은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터라, 사실상 이야기에서 말한 것처럼, 장애인이 의무과정을 마치고 학교를 졸업한 뒤 계속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게다가 특수학교의 1년 이상의 전공과 설치·운영 또한 <2011년 특수교육통계>의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을 보면, 1년차 뿐인 경우가 다수이며, 심지어 부산지역은 경우, 설치학교 13개 모두 1년차만 설치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계속교육의 기회보장은 열악하다 할 수 있다.

3) C의 이야기

‘교육활동에 필요한 편의제공의 거부’

‘지역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나홀로 요구라서, 내가 좀 별나다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그 내용은 모른다.

아이가 지체장애로 이동이 불편하다. 그러나 아이가 친구들과 잘 사귀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차량으로 등하교시킬 것을 감수하고 비탈에 위치한 집근처의 초등학교를 선택¹⁵⁾하였다.

입학 후, 교내 이동을 위한¹⁶⁾ 엘리베이터 설치와 화장실 사용을 위한 비데기 설치를 요구하였지만, 비용이 든다며, 그리고 이 아이 한 명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 대신 교육보조인력¹⁷⁾을 활용하여 아이의 교내 활동을 돕겠다고 했지만 그 인력의 배치가 곤란하다 하였다. 심

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1조(통합교육)

-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1조(편의제공 등)

-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 3. 취학편의 지원
 - 4. 정보접근 지원
 -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제25조(보조인력)

지어 장애학생지원담당자는 설문지에 적힌 아이의 장애 유형과 정도, 수술 상황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 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아이가 오히려 담당자를 신뢰하지 않고 도움을 마다하는 상황이 되었다. 관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안내¹⁸⁾에 있어서도 부모가 먼저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야 하고, 문의하더라도 모르거나 안된다는 식이었다. 예를 들어, 통학지원¹⁹⁾의 경우, 부모가 요구하자 지원 안될거라고 답하길래, 여러 번 다시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의 채용·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보조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3.4.5>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 2013.10.6.]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제27조(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잘 알아봐 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알아보고는 지원되지만 신청시기가 지났다 하여, 그 다음 학기에 겨우 지원받게 되었다.

아이가 이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²⁰⁾, 한번은 운동회 참여종목을 배정받지 못해 아예 참석하지 못한 채, 가정학습을 신청하고 가족과 함께 며칠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 한번은 아이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반 전체가 교외현장체험을 가버린 탓에 몇 교시 동안 혼자 교실에 남겨져 있었던 적도 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이는 잠시라도 혼자 있는 것을 불안해한다.

학교 측과 몇 차례 상담을 가진 적이 있다. 한번은 학교측에서 먼저 상담자리를 마련하였기에 이런저런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였더니, 좀 유별나다는 말만 듣게 되었다. 또 한번은 부모가 먼저 상담을 요청을 하였는데, 정작 그날 상담이 잡혀 있음을 아예 모르고 있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상담이 흐지부지되기도 하였고, 재차 편의제공을 요구하면 지난 번에 다 끝난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 하여 또 유별나다는 말²¹⁾을 들었다. 그 후로 학교 측과 상담하거나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포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의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2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인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인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기²²)하게 되었다.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이가 치료지원²³⁾을 받고 있다. 근데, 당초 신청한 날짜, 시간, 장소, 사람에게서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아이가 부산 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 에서 수술을 받아 그 지역에서 치료지원을 받고 싶어도 부산이 아니어서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병원지원을 받고 싶어도, 아이가 다니는 병원이 지정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으며, 게다가 지정병원이 접근처 관할구에는 없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절차를 까다롭게 한 듯하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사람에게는 그것을 편히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²⁴⁾고 생각한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내용 등이 지자체 마다, 담당자에 따라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부산 외 다른 지역에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수술비 지원도 있다고 하나 부산은 그렇지 않다. 또한 교육 관련서비스의 안내와 지원 상황이 교육책임자를 비롯하여 관련자들의 성향과 마음가짐에 따라 많이 달라져, 어떤 경우는 지원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제24조(치료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2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등 제각각이다.

이 사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의 ‘통합교육’과 이를 위한 제28조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와 제31조의 ‘편의 제공 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특히, 동 시행령 제24조의 ‘치료지원’, 제25조의 ‘보조인력’, 제27조의 ‘통학지원’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장애인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교내 이동 내지 화장실 사용에 필요로 하는 편의 제공과 보조인력의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장애학생지원 담당자를 비롯하여 교육책임자 등이 적절한 교육관련 서비스의 안내와 제공을 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모든 교내의 활동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더욱이 상담에 있어서조차도 형식적이거나 무성의하였다. 그 결과, 장애학생은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보호자가 교육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을 볼 수 있다. 혹자는 이럴 경우, 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러한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동법 제4조의 ‘차별의 금지’를 위반한 ‘부당한 차별’을 이유로, 동법 제36조의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에 해당하는 ‘의의가 있을 때의 심사청구’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하면 될 것을 그러지 않은 것을 탓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그 특성상 어떤 요구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매번 당사자 1인이 홀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번 장애인 1인 혹은 그 보호자 만이 그 노고와 실망스러움을 홀로 감내해야 한다. 그런 탓에 심사청구를 통한 이의제기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더욱이 이러한 실랑이는 ‘학교 장의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라가 보다는 교육 관련자 개개인의 행위에 대한 불만으로 치부되어져 이의제기를 곤란하게 하는 경향도 있다. 비록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제49조에서 차별행위를 한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생과 보호자가 이를 인정받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치료지원 등과 같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지원내용과 지원여부가 제각각이며, 지원받더라도 그 이용이 까다로워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눈여겨 볼 사안이다.

특히, 치료지원의 제공 방법은 각 시·도의 여건(예산 규모, 치료사 현황, 도시 및 농어촌 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마다 담당자에 따라 제각각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장애 등으로 인해 수술후 치료지원을 타지역에서 받아야 한 다든지, 수술을 위해 거주지역을 떠나 생활을 해야 할 경우, 관련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고, 타지역과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고 한다.(심한 경우 ‘내가 정작 못살아도, 사람은 역시 잘사는 동네에서 살아야, 그나마 더 복지혜택을 받나’ 싶은 박탈감마저 들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2013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2008년부터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은 지방비로 수행되므로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도록 되어 있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홍보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특수교육보조원 고용·훈련·활용·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특수교육보조원 배치학교의 학교장(감)·교사 대상연수를 강화’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특수교육보조원제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될 경우 장애당사자는 지원에 있어 지역적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여학생지원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남학생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보조가 필요한 여성장애학생의 경우 여성 유급 내지 자원 특수교육보조원이 아닌 경우 지원받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사례중, 타지역에는 장애학생이 수술 후, 이동 보조를 받기 위해 몇 달간 공익근무요원이 보조인력으로 배치된 것을 보고 부산지역 장애학생이 수술 후, 이와 동일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아예 그런 지원자체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교육책임자 내지 교육관련자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대한 인식에 따라 그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관해서는, 「2013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르면, ‘2013년도에는 신규 임용 교장 대상 장애이해연수를 처음으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설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신규 임용교장 연수대상자 추천협조 요청’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된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를 우선하여 이수토록’ 한다든지, ‘국립특수교육원의 일반학교 유치·중·고등학교 교사교감 및 교장 연수과정에 참여 적극 권장’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 교사의 의식에 따라 교육이수 여부가 결정되므로 얼마나 교육에 참여하고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2013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범죄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을 설치·운영하여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기능 및 상시 관리체제 확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운영 내용이 다음과 같다.

-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해 활동
- 장애학생의 자기관리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지원
- 장애학생의 범죄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기능 수행

-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장애학생 피해 최소화
- 특수기타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장애학생 대상 범죄(성범죄 포함)

비록 ‘매월 최소 1회 이상 지역내 학교(특수학교 및 일반학교)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운영 내용이 장애학생 대상의 범죄예방 및 장애인 학생이 자기관리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 자칫 학교폭력 등과 같이 가시적인 것만을 모니터링할 우려가 있다. 그럴 경우, 교육책임자를 비롯하여 관련자로 인해 일어나는 장애인 교육권 침해 상황과 같이 비가시적인 침해 상황에 대해 실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나마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을 두도록 지도’하고 ‘각급학교에 장애학생이 학교운영과 관련해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것을 정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도 교육책임자의 의지와 판단에 의존하는 것인지라 실효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을 개선하고자,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는 하지만, 정작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성교육,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 년 2회 이상을 실시할 것과 같이, ‘모든 일반학생 및 학부모 중심’의 장애인식개선 도모에 중점을 두고 있어, ‘모든 교사’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도모는 여전히 직무연수 등을 독려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로 ‘교육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육권 보장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제13조(차별금지)와 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3조(차별금지)

-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6.7.>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5.11.>
-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5.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조구의 대여 및 수리
 -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낮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²⁵⁾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²⁶⁾으로 정한다.

2008년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흘렀다. 앞서 장애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힘써 온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한 ① 입학, ②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 ③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의 참여 ④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실태가 어떠한지와 이것으로 충분한지를 관련 사례와 관련 법들과 연관 지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시설이용 장애인을 위해 순회교육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관할 학교가 일치할 경우, 진학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교육활동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을 받을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등에 따르기 보다는 순회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장 내지 관할 교육감의 판단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지적장애인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보조 인력 및 바우처를 활용하여 모든 교내외 활동과 방과후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장애유형과 정도 및 그 밖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방과후 바우처 등과 같은 교육복지서비스가 일괄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타법개정]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타법개정]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적 장애인이 이용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시설노후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무과정과 전공과정이 이후, 평생교육 내지는 직업훈련 등을 편히 받을 시설이 여전히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 지체장애인이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 교육활동을 받을 경우, 아직도 교육 책임자를 비롯한 교육관련자들이 ‘한 명 이기 때문에 편의 제공할 수 없다’라는 의식이 여전히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 상담 등 관련서비스는 바로 ‘한 사람이라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대한 이해가 없음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껏 교육이 온전히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한 조건을 논하는 장이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활동을 통해 삶을 살만하다 여기며 살고 있을 터이다. 왜냐하면 특정한 교육활동을 교육활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 교육활동에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안합지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여러 교육활동 중 이 특정한 교육활동이 적합한지 안합지를 보는 방식으로 나아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하였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다시 말해 교육영역에서 지금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인간에 대한 구별짓기’를 행했던 것과는 달리,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활동에 대한 구별짓기’가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고심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으리라 상상하여 본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과 방법이 전도되지 않은 채, 우리가 교육활동의 도구가 되지 않은 채, 무수히 많은 교육활동들이 고스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위한 조건들을 논하는 실천적 활동이 되었으리라 여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위한 교육권의 보장’이라 여긴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신수현

((사)열린네트워크 부산지부장)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신수현

((사)열린네트워크 부산지부장)

1. 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장애인 노동권의 내용 및 이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협약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이 협약을 비준했다(협약 제25조 마호의 생명보험과 관련된 규정을 상법 제732조와 충돌된다는 이유로 선택의정서 서명을 유보하고 있음). 비준한 국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협약이행과 장애인권리보장의 평가를 위한 국가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정부는 2011년 첫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체결 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협약에 상응하는 국내법이 흠결될 경우 협약의 규정들이 직접 적용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에, 협약을 비준한 우리 정부도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여기서 협약에 규정된 장애인의 노동권 관련 조문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법률과 제도에서는 장애인의 노동 및 고용에 대한 협약의 내용 및 이념이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실행 정도가 어느 정도에 달하고 있는지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협약 제27조(노동과 고용)는 고용부문에서의 장애인 차별·차취의 심각성과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의 노동권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 시장·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노동에 의하여 생활비를 얻을 기회에 대한 권리”로 노동권의 의미를 규정함으로써, 노동 시장·환경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해 장애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온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을 막는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고

용 중에 장애를 얻은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p>제27조(노동과 고용)</p> <p>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 시장·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노동에 의하여 생활비를 얻을 기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한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고용 중에 장애를 얻은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증진해야 한다</p> <p>(a) 모집, 고용, 고용의 지속, 승진 등의 조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 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고용 형태에 관한 모든 사항에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p> <p>(b)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호의적인 노동 조건,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 조건, 고충거리의 시정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p> <p>(c)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노동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p> <p>(d) 장애인 일반적인 기술·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p> <p>(e) 일자리를 찾고 얻고 유지하며 일자리에 복귀하는 등에 있어서의 원조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증진한다</p> <p>(f) 자영·기업경영의 기회, 협동조합 개발 및 창업의 기회 등을 증진한다</p> <p>(g)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p> <p>(h)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 장려책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한다.</p> <p>(i) 작업장에서 ‘정당한 편의’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한다</p> <p>(j) 개방된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이 노동 경험을 습득하도록 증진한다.</p> <p>(k)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 등을 증진한다.</p> <p>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p>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
<p>제2조(정의)</p> <p>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p> <p>“의사소통”은 문자 언어, 소리 언어, 보통말, 낭독자,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적이고 대체 가능한 의사소통의 형태, 방법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문자의 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큰 활자 인쇄, 접근 가능한 대중매체 등을 포함한다.</p> <p>“언어”는 구어와 수화 그리고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들을 포함한다.</p> <p>“장애로 인한 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간 및 기타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모든 인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정,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약화시키거나 무효화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당한 편의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p> <p>“정당한 편의”는, 특별한 사례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행사하도록 장애인에게 보장하기 위한, 과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필수적이고 적절한 변경 및 조정을 의미한다.</p> <p>“유니버설 디자인(보편적 설계)”은 개조 혹은 특수 설계할 필요 없이, 가능한 최대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생산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설계를 의미한다. “보편적 설계”는 필요한 경우에 특정 집단의 장애인을 위한 보조장치를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p>

2. 우리나라 법률 및 제도에서 드러난 문제점

장애인의 노동과 고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법률적 조치들은 다양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의 특수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등을 통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전한 노동권의 실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협약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내법에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 협약 (b)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노동 조건에 대한 명시적인 국내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e)호의 이전 일자리 복귀를 위한 조치나 해고 및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 조치에 대한 언급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조치들도 한계가 드러나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편의제공 의무의 단서조항으로 제11조 제1항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무관련 규정이라는 조건부과를 하고 있다. 또한 제4조 제3항 제1호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부여하고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의 예외가 될 소지가 있다.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이나 곤란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법을 집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 등이 아직 결정을 내린 바는 없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결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편의 제공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만이 쉽게 고용되어 중증장애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지적 장애인 및 중증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현저히 떨어진 의사소통능력으로, 걷는 것이 불편한 장애여성의 경우 심부름을 못하는 이유로, 안면장애인의 경우 혐오감 유발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취업을 못하거나 해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러한 법령 및 제도의 미비는 채용과정에서의 장애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사건들과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인권침해사례 :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P씨(뇌병변장애 2급)는 2012년 5월 ‘소통 2012’ 교육 대상자에 선정돼 3개월간 소통교육을 받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8월 31일 직위해제되고, 9월 25일 투신자살.

- ‘소통2012’는 수원시가 도입한 공무원 업무평가 프로그램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조직에 해를 끼치는 공무원들을 선정해 일정기간 교육한 뒤 다시 재배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원시는 동년 5월 소통대상자 38명을 선정해 2달간 교육을 진행, 교육 이후 재평가를 통해 10명을 동년 8월 31일 직위해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에서 장애인차별을 해서는 안되는 주체로 사용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포함)와 노동조합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d)호에서 언급한 ‘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소개소 및 직업알선기관, ‘기술·직업 지도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설 직업 훈련·교육기관 등이 제외되어 있다.
- 많은 곳에서 장애인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인권센터)에 노동권 침해 시 조사권과 소송권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노동 및 고용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제5조와 같이 사업주의 일반적인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 취업촉진 정책의 경우 표준사업장에 용자 및 지원 시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우대하는 조치만 있을 뿐, 일반적인 여성장애인 취업촉진 정책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 고용부담금 납부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대체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대기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율이 저조하고, 고용부담금이 제외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특히 사용자가 의무고용율을 지키고 나면 유능한 장애인 구직자를 취직시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장애인고용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다. 고용할당제의 이러한 한계는 의무고용 장애인의 대부분이 경증장애인(81%)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제한받고 있는데서,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의 실업률,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에서도 명확하게 반영되고 있다.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단위: %)

구분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인구	3.2	60.0	61.9
장애인	6.6	36.0	38.5
중증장애인	11.8	17.8	20.2
장애남성	6.1	45.4	48.4
장애여성	7.8	22.7	24.6

주 1) 2010년 5월 기준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단,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장애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도 인정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2010. ※자료: 2010.5.

- 전체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실업률은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은 남성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나 실업률은 1.7%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에서도, ‘단순노무종사자’ 27.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7.5%, ‘판매종사자’ 11.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4조(차별행위)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제5조(사업주의 책임) ①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절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안 모색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촉진고용 및 직업재활법, 노동 관련 국내법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명시
- ‘정당한 편의제공’이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한다. 다양한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 그림이나 만화 등의 대체의사소통수단의 보조·지원을 통해 노동 및 고용에 관련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등 재정적, 기술적 지원체계 구비
 - 미국의 경우처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고시 ⇨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 정당한 편의제공 필요성 제시 ⇨ 편의제공 요청자와의 논의 ⇨ 직무분석과 가능한 편의제공 방법 리스트 작성 ⇨ 과도한 부담에 대한 조사 ⇨ 편의제공 결정 ⇨ 편의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절차가 명시된 지침 마련
 - ‘과도한 부담’과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의 ‘과도한 부담’에 대한 세부적인 인적,물적,재정적 지원책 수립
- 전체 취업장애인의 47.5%가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사업체 근무장애인이거나 해당 사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2012.12.) 취업장애인의 정규직(상용근로자) 비율이 25.9%에 불과해 향후에는 취업장애인의 정규직(상용직)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증가시킬 대책 수립
- 실업장애인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직장(일)을 그만두는 이유’로 ‘장애로 인해서(장애상태악화)’가 2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2012.12.) 정부에서는 기존 취업장애인의 장애상태 악화방지를 위한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관련 법제를 마련
-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상태로 있게 된 이유(1순위)’가 ‘장애인차별과 선입견’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8.2%로 가장 많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2012.12.) 대국민 장애인식개선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수립

- 비경제활동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4주내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움'이 2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2012.12.) 근로지원인, 보조공학이나 첨단기술 등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책 수립
- 발달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직업상담원, 직무지도원, 의사소통 조력자 등 다양한 인력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전문적 직업훈련 지원을 위하여 영역별(농업, 공업, 서비스, 문화예술, 전문인력, 기타 등)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지원고용 및 보호고용에 대한 지원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 본부와 3개의 지역사무소의 구조로는 지역별로도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해 줄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소중함. '장애인권리옹호기관'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차별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장애인 노동권 침해에 대한 실지조사권, 장애인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주체 및 관련기록에 대한 접근권, 차별받는 장애인의 진정이나 소송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옹호기관' 스스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등이 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
-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고, 개인별 장애인 노동생산력 지표를 개발하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장애인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

붙임1.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단위 : 명, %)

구분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수	고용률
1991년	2,427,301	26,128	10,462	0.43
1992년	2,432,231	38,959	10,735	0.44
1993년	2,294,250	44,639	11,024	0.48
1994년	2,371,854	46,153	11,406	0.48
1995년	2,529,815	49,299	12,147	0.48
1996년	2,549,774	50,145	12,742	0.50
1997년	2,546,410	49,484	13,634	0.54
1998년	2,229,501	43,645	14,038	0.63
1999년	2,230,987	44,283	17,588	0.79
2000년	2,251,698	44,975	18,499	0.82
2001년	2,292,414	44,804	22,060	0.96
2002년	2,378,485	46,490	25,385	1.07
2003년	2,390,768	46,801	28,139	1.18
2004년	3,847,875	69,108	52,753	1.37
2005년	4,000,662	71,875	61,862	1.55
2006년	5,801,788	107,369	79,480	1.37
2007년	5,807,665	107,012	89,546	1.54
2008년	6,035,950	111,043	104,132	1.73
2009년	6,091,555	120,277	114,053	1.87
2010년	6,511,624	145,535	145,981(126,416)	2.24(1.94)
2011년	6,909,276	154,432	157,468(133,451)	2.28(1.93)

- 주 1)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를 모두 포함
 2) 장애인고용의무대상이 월평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 사업주에서 2004년부터는 50인 이상으로 확대
 ※ 고용의무율: 1%(1991년)→1.6%(1992년)→2%(1993년)→2.3%(2010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3%)
 3) 2006년부터 정부부문 고용의무적용직종 확대 및 민간부문 업종별적용제외율 폐지 적용
 4) 2003년부터 산재장해자 10~14급 제외, 2009년부터 산재장해자 제외
 5) 1999년, 2000년 산재경증을 제외하여 고용률 재산정, 2001,2002년 고용률은 2004년에 재산정
 6)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 ()는 2배수 산정제 미적용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의무현황」, 각년도.

○ 정부부문,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한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11년 2.28%로 5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06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직종 확대와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66%에서 2011년 2.48%로 약 4배 증가,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0%에서 2011년 2.24%로 5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11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대상사업체	상시근로자	장애인수	고용률		
				중증2배수 미적용	중증2배수 적용	
전 체	24,083	6,909,276	133,451	1.93(1.94)	2.28(2.24)	
정부부문	소계	374	1,071,617	22,998	2.15(2.08)	2.48(2.39)
	공무원	81	824,067	18,141	2.20(2.09)	2.52(2.40)
	비공무원	293	247,550	4,857	1.96(2.02)	2.35(2.36)
민간부문	소계	23,709	5,837,659	110,453	1.89(1.92)	2.24(2.21)
	공공기관	257	305,971	7,427	2.43(2.30)	2.72(2.56)
	민간기업	23,452	5,531,688	103,026	1.86(1.89)	2.22(2.19)

주 1) 대상사업체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의무의 주체단위를 말함

2) 2011년 12월 말 기준이며, ()는2010년12월말기준임

3) 장애인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를 미반영한 수치임

4) 2010년부터 정부부문에 고용된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의무제 시행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장애인고용의무현황」, 2012.

○ 2011년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은 133,451명이며, 고용률은 2.28%로 전년대비 7,035명, 0.04%p 증가함

- 부문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2.72%, ‘공무원’ 2.52%, ‘정부부문’ 2.48%로 나타남

○ 2012년 6월 기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경우 824개소(장애인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전체 1,887개소의 43.7%)로 나타남.

1)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기관수	적용대상	장애인수	고용률		
				중증2배수 미적용	중증2배수 적용	
전 체	374	1,071,617	22,998	2.15(2.08)	2.48(2.39)	
공무원	소계	81	824,067	18,141	2.20(2.09)	2.52(2.40)
	중앙행정기관	45	168,146	4,665	2.77(2.61)	3.20(3.01)
	헌 법 기 관	4	22,446	464	2.07(1.91)	2.29(2.13)
	시 · 도	16	245,925	8,128	3.31(3.21)	3.78(3.68)
	교 육 청	16	387,550	4,884	1.26(1.16)	1.44(1.33)
비공무원	소계	293	247,550	4,857	1.96(2.02)	2.35(2.36)
	중앙행정기관	30	39,689	757	1.91(1.65)	2.39(2.09)
	헌 법 기 관	3	938	25	2.67(2.40)	3.94(3.59)
	시 · 도	244	75,329	3,599	4.78(4.58)	5.63(5.26)
	교 육 청	16	131,594	476	0.36(0.32)	0.44(0.38)

주 1) 2009년부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를 2%에서 3%로 상향조정, 시험실시기관장은 장애인공무원이 3%에 도달시까지 신규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함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장애인고용의무현황」, 2012.

- 2011년 말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81개 기관의 장애인공무원은 18,141명, 고용률은 2.52%로 전년대비 0.12% 상승함
- 공무원 중증장애인은 2,627명이며 전체 장애인공무원의 14.5%를 차지하고, 비공무원 중증장애인은 993명으로 전체 비공무원 장애인의 20.4%를 차지하고 있음
- 공무원 여성장애인은 3,238명이며 전체 장애인공무원의 18.0%를 차지하고, 비공무원 여성장애인은 1,044명으로 전체 비공무원 장애인의 21.5%를 차지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은 18,141명이고,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는 4,857명임

- 장애인공무원 장애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67%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 12.0%, 청각·언어장애인이 4.9%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66.9%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 10.6%, 청각·언어장애인 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의무고용률(공무원 3.0%, 근로자 2.5%)을 위반한 공공부문 △특허청(0%·근로자) △한국교육개발원(0%) △인천교육청(0.28%·근로자) △경기도교육청(1.01%·공무원) △서울대병원(0.74%) △국회(1.38%·공무원) △외교통상부(1.74%·공무원) 등. ※출처: 고용노동부, 2012년 6월.

2)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대상사업체	상시근로자	장애인수	고용률		
				중증2배수 미적용	중증2배수 적용	
전 체	23,709	5,837,659	110,453	1.89(1.92)	2.24(2.21)	
공공기관	소계	257	305,971	7,427	2.43(2.30)	2.72(2.56)
	공기업	27	103,391	2,897	2.80(2.67)	3.05(2.91)
	준정부기관	82	84,947	2,619	3.08(2.91)	3.55(3.33)
	기타공공기관	148	117,633	1,911	1.62(1.68)	1.84(1.86)
민간기업	소계	23,452	5,531,688	103,026	1.86(1.89)	2.22(2.19)
	100인 미만	11,579	819,739	15,796	1.93(1.98)	2.42(2.34)
	100~299인	8,924	1,458,720	31,985	2.19(2.24)	2.63(2.60)
	300~499인	1,370	523,001	10,457	2.00(2.03)	2.38(2.37)
	500~999인	951	648,410	12,499	1.93(1.92)	2.29(2.22)
	1,000인 이상	628	2,081,818	32,289	1.55(1.57)	1.78(1.78)
	30대 기업집단	609	1,106,586	17,716	1.60(1.56)	1.80(1.69)

주 1) 30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소속 회사 중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정함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장애인고용의무현황」, 2012.

- 2011년 말 현재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의무사업주는 23,709개소,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110,45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24%로 전년대비 0.03%p 증가하여 장애인 고용률의 상승추세를 이어감
 - 기관형태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7,427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72%로 나타났고 ‘민간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103,026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은 2.22%로 나타남

- 고용의무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 8,538개소(36.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456개소(10.4%), ‘운수업’ 2,028개소(8.6%) 등으로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체 비율이 가장 많음
 - 장애인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 35,234명(31.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121명(18.2%), ‘운수업’ 12,612명(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고용의무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남성 93,211명(84.4%), 여성 17,242명(15.6%)으로 남성이 절대적인 분포를 보이고, 고용의무 사업체의 **경증장애인은 89,435명(81.0%)**, 중증장애인은 21,018(19.0%)으로 경증장애인이 절대적인 분포를 보임

- 고용의무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104,20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6,252명으로 등록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94.3%를 차지하고 있음

-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지다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산업으로는 ‘운수업’(2.7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1.88%), ‘통신업’(1.81%), ‘제조업’(1.72%) 순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0.47%), ‘건설업’(0.59%),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0.71%), ‘도매 및 소매업’(0.75%)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최다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분야로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41.2%(63,197명)를 고용하고 있음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지역별

(단위 : 개소, 명, %)

구분	대상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근로장애인수	고용률	'10년고용률
전체	23,709(100.0)	5,837,659	124,040	110,453	2.24	2.21
강원	409(1.7)	69,420	1,399	1,447(1.3)	2.51	2.54
경기	4,527(19.1)	992,396	20,863	19,189(17.4)	2.29	2.23
경남	1,732(7.3)	262,694	5,211	5,255(4.8)	2.29	2.18
경북	1,206(5.0)	199,497	4,010	3,918(3.6)	2.40	2.34
광주	509(2.2)	87,705	1,782	2,151(1.9)	3.05	3.07
대구	887(3.8)	151,515	3,054	3,439(3.1)	2.73	2.63
대전	543(2.3)	167,054	3,848	3,766(3.4)	2.57	2.54
부산	1,425(6.0)	250,090	5,070	6,164(5.5)	2.91	2.81
서울	7,461(31.5)	2,855,768	62,753	47,433(42.9)	1.97	1.97
울산	709(3.0)	124,621	2,528	2,878(2.6)	2.65	2.57
인천	1,058(4.5)	199,093	4,099	5,143(4.7)	3.03	3.03
전남	646(2.7)	86,787	1,681	1,746(1.6)	2.23	2.35
전북	603(2.5)	87,045	1,711	1,993(1.8)	2.65	2.75
제주	168(0.7)	26,058	516	579(0.5)	2.88	2.81
충남	1,092(4.6)	168,886	3,357	3,056(2.8)	2.21	2.14
충북	734(3.1)	109,030	2,158	2,296(2.1)	2.72	2.56

주 1) 2011년 12월 말 기준

2) 장애인 고용률에는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가 반영된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장애인고용의무현황』, 2012.

- 고용의무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7,461개소(31.5%), '경기' 4,527개소(19.1%) 등으로 전체 사업체의 50.6%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본사를 둔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음
 - 장애인근로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47,433명(42.9%), '경기' 19,189명(17.4%) 등으로 전체 근로자의 60.3%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근무하고 있음
 - 지역별 장애인 고용률은 '광주' 3.05%, '인천' 3.03%, '부산' 2.91% 순으로 고용의무를 초과 달성한 반면, 고용의무사업체 수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서울'은 1.97%로 상대적으로 낮음

- 일시 및 장소 : 2013. 4. 25.(목) 14:00, 제주시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다목적실
- 사회 : 최재경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 좌장 : 최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1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평가 및 전망	
구 분	내 용	시 간
개회 및 공동축사	❖ 개회선언	14:00~14:05
	❖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14:05~14:10
	❖ 강승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14:10~14:15
	❖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14:15~14:20
발제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14:20~14:40
	[발제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정책 및 성과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14:40~15:00
	휴 식	15:00~15:20
제2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제정 성과와 과제	
쟁점 토론	[토론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인권조례를 통해 본 장애인인권 보장 제도적 개선책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15:20~15:35
	[토론2] 제주지역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15:35~15:50
	[토론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 강기탁 (변호사)	15:50~16:05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05~16:35
	폐 회	16:35~16:40

제 1 부

제 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평가 및 전망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발제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정책 및 성과

-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는 6개 지역에서 공통으로 발제하는 것이므로 자료집 6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발제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정책 및 성과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I. 일반 현황

장애인등록 현황

구 분	2012년				2011년		
	등 록 장애인	전체인구	비율 (%)	전년도 비교	등 록 장애인	전체인구	비율 (%)
계(명)	32,405	583,713	5.55	증410	31,995	576,156	5.55
제 주 시	22,270	429,656	5.18	증349	21,921	422,790	5.18
서귀포시	10,135	154,057	6.58	증61	10,074	153,366	6.57

※ 전국 장애인 인구 : 2,511,159명(전국인구 50,948,272명의 4.92%)

장애 유형 · 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 장애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계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지적장애	정신	언어	자폐성	기타
32,405	14,397 [44.5]	4,292 [13.3]	4,200 [13]	3,375 [10.4]	2,698 [8.3]	1,131 [3.5]	293 [0.9]	304 [0.9]	1,715 [5.2]

※ 기타 :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애 등

● 장애 등급별 현황

구분	등록 장애인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연월	32,405	3,362	4,276	5,823	5,275	6,280	7,389
비율	100	10.4	13.2	18	16.3	19.3	22.8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 노숙인 시설		주간보호 시설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 복지관	
	개소	임소 인원	개소	임소 인원	개소	임소 인원	개소	임소 인원	개소	임소 인원	개소	이용 인원
계	31	944	12	473	3	374	13	219	12	48	5	1,942
제주시	23	735	9	367	2	287	10	165	8	32	4	1,642
서귀포시	8	209	3	106	1	87	3	54	4	16	1	300

2013년 장애인 복지 예산 현황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국비	도비
계	69,649(100)	34,035(48.8)	35,614(51.2)
도	15,542(22.3)	8,516	7,026
제주시	38,942(55.9)	18,259	20,683
서귀포시	15,165(21.8)	7,260	7,905

※ 제주도 전체 예산 (3,366,685백만원)의 2% 수준

세부사업별 현황

제주권역재활병원	1개소 5,564백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71개소 26,525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4개사업 5,092백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6개소 5,594백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1,460명 5,528백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643명 7,268백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890명 1,825백만원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4,693명 6,939백만원
장애인단체육성 및 편의증진지원	16개 단체 1,105백만원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222백만원
기타사업	3,989백만원

II. 장애인 정책 환경과 방향

장애인 정책 환경과 방향

장애인 환경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다양한 일자리 제공 한계 • 중증장애인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확대 필요 • 중증장애인 생산물 우선구매제도 시행 미흡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제한(1급) •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대상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강화 •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지원 수준 및 지원범위 확대 •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확대 • 신청자격 2급으로 확대, 월 한도액 기준 개선 → 급여량 확대 • 돌봄 서비스 수요에 맞춰 연간 지원 대상 확대

III.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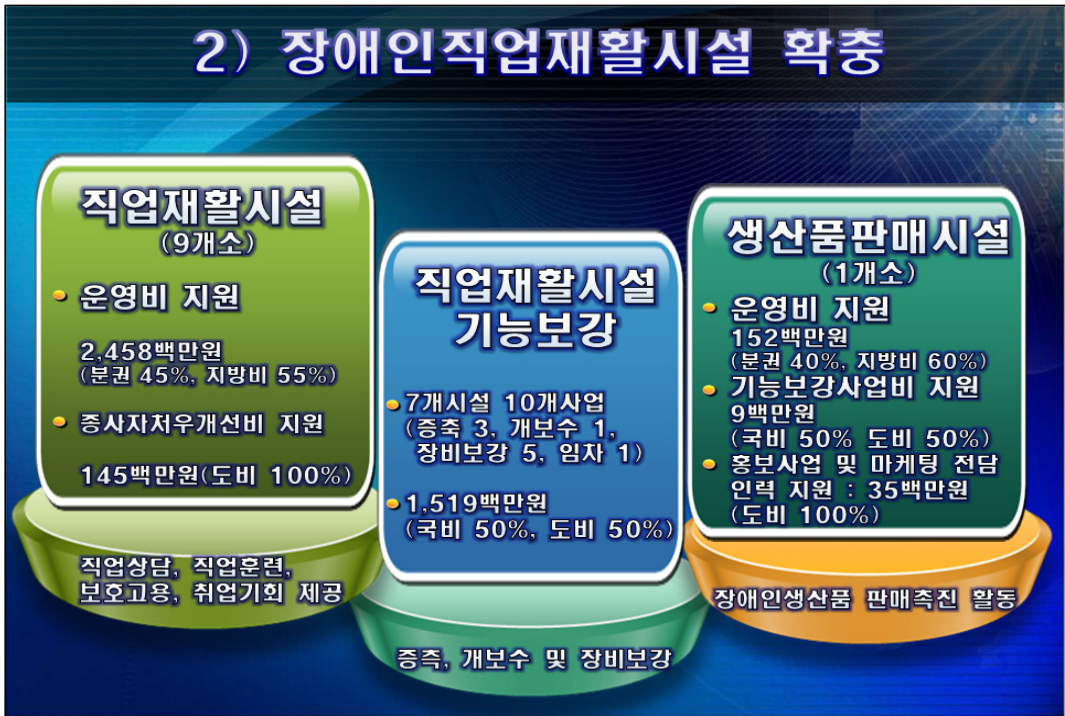
장애인 정책 주요 성과 ①

핵심과제	2012년	2013년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	1개소
장애인 일자리	1,338명	1,460명
장애인활동 지원	1급	1~2급
장애인보조기구대여/ 보조공학센터	1개소	2개소
장애인 연금	4,656명	4,924명

장애인 정책 주요 성과 ②

핵심과제	2012년	2013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630명 1,596백만원	650명 1,950백만원
직업재활시설 및 다수 고용 사업장 운영	297명 1,979백만원	320명 2,603백만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90가구 237백만원	103가구 274백만원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453가구	490가구
장애인 특별운송이동 편의 제공	10,172명	1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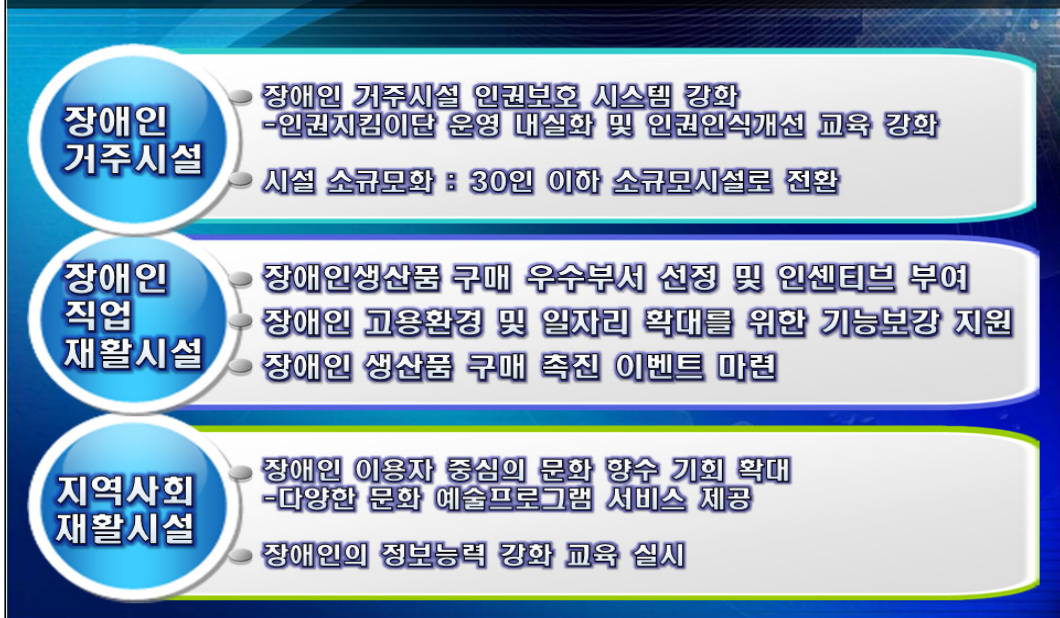
IV.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 시책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확충



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2. 장애인복지 건강 서비스 확대

1)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일환으로 전국 6개 권역별로 독립적인 재활 센터 건립 사업 추진 - 경기권(05), 강원권(06), 제주권(07), 충청, 호남, 영남권(08)

- 위 지 : 서귀포시 서귀동 284-1(구 서귀여중)
- 사업기간 : 2009년 3월 ~ 2013년 12월
- 건립규모 : 지상 7층, 지하 2층(부지 5,979㎡, 건축 연면적 19,019㎡)
- 주요시설 : 150병상(재활치료, 특수치료, 입원실 등)
- 사 업 비 : 362억원(국비 135, 도비 177, 복권기금 50)

2) 제주권역재활병원 건립 추진상황

추진 상황

- *05. 12월 : 정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일환, 전국 6개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추진
- *07. 1.16 : 재활병원 건립 확정
- *07. 7.12 : 기본계획 용역(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9. 3.11 : 공사 착공
- *12.11. 1 : 제주권역재활병원 수탁자 모집공고
- *12.11.20 : 수탁기관 신청·접수(2법인, 1의료원)
- *12.11.22 : 건물 준공
- *12.12.27 : 수탁자 선정심의 선정(서귀포의료원)
- *13. 1.24~25 : 국립재활원,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벤치마킹
- *13. 1.30~31 : 호남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벤치마킹
- *13. 3. 8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의료원 **협약체결**
- *13. 3.22 : 재활병원장 공개모집 (4.1임용예정)

3) 제주권역재활병원 향후 로드맵

제주도

협약체결
3월 8일

서귀포의료원

- 적자 최소화 및 정상 운영방안 마련(4월)
- 의료 전산 장비 구입 (4월~8월)
- 개원준비(9월~10월)
- 개원(11월 예정)

- 개원준비 T/F팀, 추진위원회 구성(4월)
- 전문의 및 직원채용(4~5월)
- 개설허가 및 사업자 등록(4월)
- 시험가동 및 오픈(8월~9월)
- 개원준비(9월~10월)
- 개원(11월 예정)

4) 건강관리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

1 의료비 지원 : 1,687명 / 923백만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본인 부담금의 50%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전액

2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206명 / 56백만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 17개 품목

3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 890명 / 1,825백만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5) 여성장애인 지원 및 자립생활지원

1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지원

- 지원대상 :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지원내용 : 출산시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2 자립생활지원 강화

- 운영개소 : 2개소(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귀포시장에인자립생활센터)
- 운영내용 : 활동보조서비스, 동료상담사업, 자립생활아카데미사업, 자조모임 운영

3. 장애인 경제자립 기반 강화 1)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 장애인 연금지원 : 4,693명 / 6,939백만원

- 지원대상 : 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80천원, 부부가구 928천원
- 지원내용 : 기초급여 96,800원, 부가급여 20,000원~170,000원

2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지원 : 5,221명 / 2,427백만원

- 지원대상 :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 18세이상 3~6급 등록장애인
<장애아동수당>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 18세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수당 2~3만원, 장애아동수당 10~20만원 차등 지원

3 자녀학비 지원 : 138명 / 47백만원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 중 고교생 자녀
- 지원내용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등

2) 가족돌봄 부담완화

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634명 / 7,268백만원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만 65세미만 등록 1~2급 장애인(4,937명)
- 사업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
- 급여월한도액 : 월 919천원(107시간, 1등급) ~ 월 374천원(43시간, 4등급)

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 1개소 / 274백만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3급 장애아동
- 지원인원 : 103명
- 사업내용 : 아동 돌보미 파견, 부모 휴식 지원 프로그램

3) 장애인 일자리 확대

1 장애인 일자리

- '12년 708명 / 2,262백만원 → '13년 790명 / 3,578백만원

2 고용 장려금

- '12년 630명 / 1,596백만원 → '13년 650명 / 1,950백만원

구 분	1급	2급	3~6급	비고
여성	50만원	40만원	30만원	
남성	40만원	30만원	20만원	

3 직업재활시설 및 다수공용 사업장 운영

- '12년 297명 / 1,979백만원 → '13년 320명 / 2,603백만원

▶ **맞춤형 일자리 확충 : 1635명 → 1,760명**
 ※ 1인당 월 273~1,112천원 소득 창출

4)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 시설현황

- 10개소(장애인 생산시설 9개소, 판매시설 1개소)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에 대한 지원 등

4.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1) 장애인 특별운송 서비스 지원

1 장애인 이동편의 운송 사업 : 205백만원

- 운영내용 : 장애인들의 외출보조 등 유 무형의 이동서비스 제공
- 사업주체 및 운영방법
 - <장애인총연합회> 셔틀운행과 예약 및 콜 운영 병행
 - <지체장애인협회> 예약제를 통한 운행스케줄 결정 / 리프트차량 운영

2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및 시민족진단 운영

- 운영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 운영내용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지원, 편의시설 설치관련 설계도 확인 및 업무지원

2) 장애인을 위한 기타 시책

3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운영 : 49.5백만원(국 80%, 도 20%)

- 사업기관 : 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운영내용 : <기초학습교육> 한글, 영어, 정보화 교육
 <인문교육> 역사, 철학, 일반예술 등
 <사회 및 체험교육> 지역사회 탐방, 직업탐색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성교육, 육아 및 건강관리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추진

- 운영내용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 3,200여개소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우수시설 무장애 인증, 장애인편의시설 홍보

3)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 개인운영시설, 비영리단체 등

● 지원액 : 보조 90%, 자부담 10%

- 자본보조 : 1사업당 15백만원 범위
- 사회복지보조 : 1사업당 10백만원 범위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참여 활동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추진 시책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 670명 · 1,950백만원
 - 지원인원 : 1개사업체당 40명 범위 지원
 - 지원대상 : 2003. 4. 1이후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5~50인 미만 사업체
 - 지원기준 : 성별 및 장애등급별로 차등 지원(20만원 ~ 50만원)
- ※ 11년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 : 2.87%(전국평균 2.25%, 4위)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1~2급 등록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
- 지원기준 : 1인 월 25,000원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시설입소자, 무료이동차량이용자
 - ※ 무료이동차량 : 제주시,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운행하는 차량
- 교통비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월까지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설치근거 및 지원사업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제7조(설치 및 위탁)
 - 예산 : 271백만원
 - 운영법인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사)한국장애인부모회서귀포시지부
 - 지원사업 :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등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 ⊙ 지원대상 : 1~3급 만15세이상 등록 장애인
- ⊙ 보험종류 : 상해보험
- ⊙ 지원방법 : 행정시에서 대상자 일괄 추출 가입

● 청각·언어 장애인 영상전화사용료 지원

-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둔 청각·언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 ⊙ 지원기준(한도) : 월33,300원 — 정액제로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1급 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1급 등록장애인
- ⊙ 지원기준 : 1인당 월2만원 추가 지급,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 일 때 각각 지급

●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 지원대상 : 도내 전체 등록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 ⊙ 지원기준
 운전면허 제1,2종 보통 : 1인당 500천원 이내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350천원 이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1급 중증장애인의료비 지원

-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1급 등록 장애인
- Ⓞ 지원기준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투석 받고 있는 등록된 신장장애인
- Ⓞ 지원기준 : 투석 실시 후 해당 장애인의 총투석비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 임신 6개월 이상 임신부로서 신생아 출생(사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주 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증(4~6급)여성장애인
- Ⓞ 쌍둥이 출산 및 임신 6개월 이후 사산 중증(1~3급)여성장애인
- 지원금액 : 1,000천원(단, 쌍둥이 출산인 경우 신생아 1인당 1,000천원 지급)

장애인 활동 보조 추가지원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신청자격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 장애인 중에서 인정등급 2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 추가시간 지원기준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등
- 지원방법 : 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20세이하 중증장애자녀를 둔 가정
- 지원내용
 - 장애아동의 치료교육 시 이동 지원,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및 부모상담 등
- 지원기준 : 도우미 활동비 및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 서비스 이용자(장애인부모) 부담수준 : 42,000~56,000원/월
 - 가정도우미 수당 지급 수준 : 활동비 5,500원/시간, 교통비 5,000원/월 기준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

- 이동편의제공(특별운송 등) : 5개사업 · 1,915백만원
 - 장애인 중연합회 및 지체장애인협회 특송 운송(무료) 등 : 리프트 차량 등 17대
 -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축진단 운영(1개소)
 -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1개소)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대운영 : 특별운송차량 12대 → 22대
-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4~11월) : 173백만원 (3,200개소)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

- 보조공학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삼다
 - 소재지 : 제주시 월평동(시각장애인복지관)
 - 사업내용 : 장애인보조기구 대여, 수리, 상담, 정보제공, 사례관리, 체험, 조사연구, 홍보
-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운영
 - 운영주체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소재지 : 제주시 삼도2동
 - 사업내용 : 보장구 수리 및 대여, 홍보, 만족도 조사 등

보조기구 대여소 설치

- 소재지 : 서귀포시 소재
- 시설규모 : 165㎡(50평)
- 운영자 선정 : 2013. 상반기 중 확정
- 사업비 : 17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장애인보조기구 대여, 수리, 상담, 정보제공, 사례관리, 체험, 조사연구, 홍보

V. 향후 계획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 1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무장애 사회 건설
 - 무장애 인증 건물 및 장애인 특장차량 확대
- 2 시설 소규모화 : 30인 이하 소규모시설로 전환
 - 탈 시설화 유도 → 자립지원센터로 전환
- 3 장애인이 제감하고 만족하는 정책 추진
 - 장애등록 단계부터 적극적인 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계 시스템 구축
- 4 서귀포의료원 + 제주권역재활병원 + 제주헬스케어타운 시너지 효과 유발 → 서귀포 의료 관광 중심도시로 특화



제 2 부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제정 성과와 과제

[토론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인권조례를 통해 본
장애인인권보장 제도적 개선책

-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토론 2] 제주지역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토론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강기탁 (변호사)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인권조례를 통해 본 장애인인권보장 제도적 개선책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인권조례를 통해 본 장애인인권보장 제도적 개선책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1. 들어가며

-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장차법의 제정은 장애인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만들고 정부, 국회등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에 한정하는 데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국가차원의 인권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분명히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장차법 시행이전인 2001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장애차별 진정사건이 630건에서 2011년 12월까지 3,818건으로 약 6배 이상 증가를 보면 장차법이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데 있어서 일정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0년 전라남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역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40여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 제주지역의 경우 2011년 6월 29일 의원입법의 형태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관한 조례(이하 장애인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어지고 있음. 하지만 현재 조례는 실효성을 전혀 갖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의 핵심이었던 상담과 조사 기능을 수행할 가칭 '장애인인권센터'가 제정과정에서 삭제되고 장애인차별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가칭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자 함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관한 조례」의 문제점

- 장애인인권조례는 총칙,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보칙등 총 4개 장과 16조로 구성되어 있음. 제주도의회 윤두호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조항이 삭제되고 인권보장위원회의 신설이 아닌 기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수정·의결함.
 - 제주도는 조례제정과정에서부터 장애인권센터 설치에 부정적이었는데 그이유로 첫째, 장애인단체들이 설립목적이 장애인의 권리회복으로 애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인권센터를 두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둘째, 전국적으로 선례가 없으며,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상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제주도의 이런 주장은 제주지역 장애인인권침해에 대해 도내 장애인단체들이 시스템(법률지원인력의 조력, 상담전문가의 투입과 개입, 사례관리, 기본적 재정운영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지하더라도 회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주도의 (장애)인권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함. 동시에 지적할 것은 특정장애인단체가 이 사업을 가져가려 하고 있다는 소문으로 인해 관심을 갖고 있던 제주도의회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장애인인권조례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인 ‘복지’에 대한 의견개진 기구로 ‘인권’을 구제하는 접근방법과 자원의 활용방식이 전혀 다름. 즉 복지(모델)는 장애인재활을 위한 전문가의 상담과 보호, 재활, 지역사회 참여라는 서비스구조를 갖는 반면 인권(모델)은 인간으로 생존하고 생활하기 위해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자기결정권과 당사자성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소송과 쟁의를 필요로 하기에 그 접근 방식이 전혀 다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 역시 인권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하겠음. 양보하여 시행결과를 보더라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인권관련 회의는 전무함

〈별표 1〉

구분	복지모델	시민권 모델
문제의 소재	개인적 문제(손상)	사회적 문제(차별)
해결책	개별적 치료	사회적 행동
기본적 시각	분리, 보호	통합, 권리
해결방안	개별적인 적용	사회변화
서비스주체	전문적 권위자	집합적 사회
장애인의 역할	통제대상	선택주체
권리구제방법	행정규제	개별소송

* 자료: oliver(1996) 재구성:유동철(2002). 장애인시민권 모델구축을 위한 시론 : 장애차별금지법, 사회복지연구 제19호, p192재인용

- 장애인인권조례 시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정책개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등 조례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그 집행은 전무하다고 할 것임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관한 조례」 제도적 개선안

가. 인권보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필수적.

- 인권센터는 장애인인권보장을 전담할 기구로서 현실적으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설기구로서 인권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장애인인권센터는 단순 상담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조사권’과 ‘권고’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인권센터 조사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1)인권센터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민간에 조사권을 부여할 근거의 문제와 2)지자체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그에 저촉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데(지방자치법 제22조) 인권센터에 조사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조례만으로 가능한지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

1) 의 경우 인권센터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한다면 민간인에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행 규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강

제조사는 민간에 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민간 위탁 방식이든 또는 반민 반관의 형식이든 조사권 부여를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2)의 경우 행정기관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수인의무의 부과가 따르는데 이러한 작용이 따르는 조사권 부여의 근거로 조례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법률의 위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법령에 의한 조사권 부여가 필요하며 그 상위 법령으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복지'를 규정하고 있고 '인권'은 복지와 개입 방법이 다름(복지는 전달체계상 서비스를 통한 클라이언트의 권리증진 개념이며 인권은 제조소와 쟁의에 방점)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는 가정, 복지시설, 단체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민간위탁이 아닌 인권센터 자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인권센터는 장애인당사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강력한 조사와 권고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관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으로 인권센터는 현재의 감사위원회와 같이 자치단체의 기관이면서 동시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실질적인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임.

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기능 대행 삭제

법조인, 인권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당사자(단체)가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인권보장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인권침해사안에 대해 부의하고 조사권 발동을 명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 존재해야 함.

4.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제정에 대해

-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시행예정임.
이 조례에는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접수·조사·권고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옴부즈맨'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 핵심을 더 살펴보면 인권옴부즈맨

은 7인 이내로 '합의제'로 운영하며 상임옴부즈맨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6인은 비상임옴부즈맨으로 하고 있음. 옴부즈맨의 직무범위는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시가 출자·출연한 공기업과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시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상담, 조사, 개선을 권고하며 그 권한은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원조사인력(공무원)3명의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의 인권조례를 예를 들어 제주지역에서 제주도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침해와 차별사태에 대해 직권 조사와 개선권고를 시행할 수 있는 옴부즈퍼선제도-여기서는 평등적 의미의 옴부즈퍼선(person)이라 칭함-도입의 제도적 장치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준비기를 거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인권약자에 대해 자치단체와 도민의 발전된 인권인식을 보여 주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임.
- 다만 '장애인인권센터'가 별도로 필요할지 아니면 이 기능을 '옴부즈퍼선제도'에서 흡수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함. 현장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옴부즈퍼선으로 참여하여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함-광주의 경우 직업공무원이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토론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임-.이 경우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방향이 합리적인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참고자료]

〈별표 2〉장애인권(차별금지)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 현황

연번	조례명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설치	내용없음
2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	설치	위원회 별도 구성
3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미설치	위원회 별도 구성
4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	미설치	위원회 별도 구성
5	부산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	설치	위원회 별도 구성
6	광주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	설치	위원회 별도 구성
7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	설치	위원회 별도 구성
8	강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	미설치	내용없음
9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설치	위원회 별도 구성
1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미설치	대행(장애인복지위원회)

〈별표 3〉인권(차별금지)보장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 현황

연번	조례명	인권센터	인권보장위원회
1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설치	내용없음
2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조례	설치	위원회 별도 구성
3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미설치	위원회 별도 구성
4	울산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	설치	위원회 별도 구성
5	충청남도 도민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설치	위원회 별도 구성
6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설치	위원회 별도 구성
7	전라남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미설치	위원회 별도 구성
8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미설치	위원회 별도 구성

〈별표 4〉인권(차별금지)조례 및 장애인인권(차별금지)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 현황

연번	조례명	인권센터	인권보장위원회
1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조례 광주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	설치	위원회 별도 구성
2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미설치	위원회 별도 구성
3	전라남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인권센터 미설치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위원회 별도 구성

※ 광주지역의 경우 인권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있음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 2

제주지역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지역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시행 지체에 의한 인권보장 불충분의 문제(간결 요약: 앞 토론자와 중첩)

- 앞선 토론자께서 주지사님 바와 같이, 현행 우리도 장애인인권조례는 그 시행이 대단히 미미하며, 이런 이유로 장애인인권유린의 현실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
- 제주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일반적 사실로 인한 인권유린과 제주특수적 고충에 노출.

① 일반적 고충

- ☞ 사회문화적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 장애인 비복지 및 차별 문제의 일차적 원인
- ☞ 자본주의의 효율성 위주의 경쟁문화: 차별존속의 원인

② 제주특수적 고충

- ☞ 산업구조: 장애인고용 취약→장애인집단의 경제력 약화→종속성 강화→인권유린 개연성 높임
- ☞ 인맥 음주 위주의 공동체문화: 장애인의 기회 획득에 결정적으로 불리
- ☞ 제주 도로 및 지리적 특성: 경사면 및 굴곡, 역사적으로 장애인 배려 문화의 미성숙

- 도 행정은 현행 장애인인권조례를 특수한 사건과 사고에 적용되는 조례로 간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시정과 인권보장이 장애인을 포함한 제주 소수집단 전반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임.
- 조례시행 지체의 효과: 제주도 청각, 시각, 지적, 언어, 호흡기, 자폐성, 간질 등이 전국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것은 아동발달과정에서 예방여지가 있는 장애유형의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서, 장애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며, 조례시행 지체는 미발달한 인프라의 추가적인 부식을 가속화할 것이므로 이제라도 조례의 강도 높은 시행에 의한 인프라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 있음

2. 조례성격 재규정 문제: 평등권을 넘어 사회구조적 보상, 장애인기본조례로서의 인권조례

- 현행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평등권 및 인권의 실현을 비장애국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이런 목표는 장애인이 역사적으로나 사회구조적으로 오랫동안 구조적 차별을 받아 온 점을 고려한다면, 미흡하다 할 것임.
- 따라서, 현행조례 제1조(목적)에, 조례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장애인 관련 각종 조례에 대하여 기본조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례의 지위를 격상시켜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단순히 평등권이 아니라 역사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할 것임.

3. 현행 조례의 불충분한 내용의 문제와 개정 필요성

- 그럼에도 우리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되도록 개정하면서, 현행조례의 시행과 개정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장애인인권보장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임.
- 현행조례 개정과 확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① 제1조(목적)은 장애인차별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영역을 명시하는 후단을 신설함으로써, 조례가 갖는 지역특수성을 강화하고, 조례가 ‘지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다수문화 도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 ②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는 제4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각종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 장애인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에 준하는 장애인영향분석평가의 책무를 도입하여야 할 것임.
 - ③ 제4조(정책개발)에서는 3호에 ‘차별관행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도지사의 정책개발을 시혜적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좀더 공세적인 장애인 인권보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임.
 - ④ 제5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도민의 책무)에서는, 제1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는 장애인의 통행, 사회관계, 문화활동 등에 불리하지 않도록 조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

민의 책무에 장애인을 위한 공간조성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 ⑤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는 기본계획에 준한다’는 후단을 신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심의, 홍보 등도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⑥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는, 실태조사를 매년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며, 실태조사의 결과는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해야 할 것임.
- ⑦제13조(위원회의 기능)에서는, 호 2개를 신설하여, ‘장애인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차별관행의 폐지 및 인권유린 위험성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지문활동을 넘어서서 보다 더 포괄적이고 실효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 ⑧제14조(위원회의 구성)에서는, 현행 조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후단을 신설하여 ‘각 장애유형의 대표자가 모두 포함되도록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각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한 인권유린 위험성 및 차별발생의 소지를 선제하도록 해야 할 것임.

4.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현행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 현행 장애인 관련 조례

조례명	제정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2006년 4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2006년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07년 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장한장애인 대상 등 시상 조례	2007년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2008년 5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2008년 10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2009년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009년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조례	2010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0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1년 5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2012년 4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2012년 11월 12일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여타 장애인 관련 11개 조례의 기본조례라 간주하고, 아래와 같이 각 조례의 개정을 모색할 수 있음(선별적 예시).

조례 명칭 (‘제주특별자치도’ 생략)	개정 필요 사항	개정 이유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노인/임산부 조례는 별도 제정)	장애인 인권 조례와 더불어 장애인복지기본조례로 발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3조(구성)의 제4항(위촉위원)에서, ‘도지사가 임명이나 위촉하는 자’를 ‘공개모집 및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개정, 또한 ‘위촉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를 ‘2/3이상은’으로 개정.	-장애인복지위원 선발의 민주성 제고 -장애인복지위원 선발의 대의성 제고
공공시설내의 매장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우선권부여)의 제2항에 ‘중증장애인’을 포함 제10조(사용료 징수) 장애정도나 재산규모 등에 따른 사용료 저감 및 감면	-중증장애인 우선권 부여를 통한 장애인 자활 모색 -장애인 vs. 비장애인에 대한 형평성 제고
장한 장애인 대상 등 시상 조례	- 조례의 폐지가 필요함	-‘장하다’ 혹은 ‘장하지 않다’가 비장애인 인구 중 특정인에게 상을 주는 일반적 이유가 되지 않듯이, 장애인에게만 이런 포상을 주는 것은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구조적 및 복지국가적 관점의 확산을 방해할 수 있음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시기 및 방법)의 제2항 위축적 검사요원에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단체 전문가를 포함	-현행 전체적인 검사요원 구성에는 장애인 단체 회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각각의 개별 건축물 사전검사에 있어서도 4명의 검사요원 중 1명은 장애인편의시설 단체 전문가를 포함해야 할 것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8조(수탁자의 의무)에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유의할 의무>를 추가	-수탁자의 의무에 적극적 가치(복지증진) 뿐 아니라 소극적 가치(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금지)를 포함시켜서 복지관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사태에 대한 사전 경각심을 높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에, <동반하거나 관람당일 자원한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할인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혹은 관람당일 장애인보호자를 자청한 관람객에 대한 할인혜택에 대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피난시 장애인의 구호를 용이하게 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배려 의식을 높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에, <차별 및 인권침해에 의해 피해를 당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을 포함시킴	-현저한 차별 및 인권 침해에 의해 피해를 당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조례 명칭 (‘제주특별자치도’ 생략)	개정 필요 사항	개정 이유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제4조(장애인체육진흥계획 수립)의 제2항(포함 내용)에,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이루어 지는 체육 관련 교과목 및 각종 프로그램에 장 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	-장애인체육진흥의 범위를 일반 교육 및 사회활동에서의 비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에서도 장애인의 충분한 포함 등의 테마 로 넓히기 위함.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5조(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등)에, <2인 이 상의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족에 대한 특별지원 계획>을 포함시킴	-장애인부부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장애 인을 포함한 가족에 대한 주의깊은 실태 조사와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 기업 지원 조례	제9조(장애인기업 명부작성 및 홍보 지도)에서, <명부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를 <작성 활용 하여야 한다>로 <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 를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이 두 조항을 임의사항으로 방치하는 것 은 조례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경향이 있고, <하여야 한다>로 개정해도 의무의 담당자가 도지사이므로 민간기업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음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제3조(기금조성)에 한 호를 신설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추가	-많은 지자체에서 요식업소 지도점검 과태 료부과 세입이 위생관리기금으로 축적되 어 요식업 발전에 다시 사용되는 것처럼,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사업도 그런 식으 로 재원마련하여 복지기금에서 사용할 필 요 있음
중증장애인생산 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제3조(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서, <관청 및 공공기관 사무필수품 납품수요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시킴 <장애인생산시설의 직무배치와 근로과정이 차 별이 없고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 을 포함시킴	-관청 및 공공기관 종사의 자유로운 개인적 구매 이외에, 관청 및 공공기관 사무필수 품 납품이 특정 직업재활시설에 편중됨으 로써 발생하는 불형평성을 방지하기 위함 -직무배치와 근로과정에서의 차별과 인권 침해 등은 이 조례에서 별건으로 관리함 으로써, 시설 관리자가 장애인의 근로과 정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조 치가 필요함.

5.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들(선별적 예시)

※ 주의: 아래에 열거되는 장애인 인권 및 복지 관련 조례들은 그 제정의 필요성 및 포함시켜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아직 토론자의 충분한 숙고와 검토를 거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장애인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들의 목록을 장애인 인권 및 복지 관련 단체들과 함께 숙독하고 토론하면서 조례제정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래 제시되는 간단한 진술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지나치게 간단명료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현재 제주 중증장애인 가구 중 83% 이상이 월소득 200만원 이하로 생활(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발표)하고 있기에, 장애인연금의 비용부담을 장애인가구에 맡길 경우 장애인들은 노후생활 및 노후걱정으로 현재적 삶의 부식현상이 우려되며, 이에 따라 양 행정시는 부분적으로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사업량을 정해 놓고 장애인연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바, 장애인 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정도와 재산 및 소득 규모에 비례하여 장애인가구 전체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한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조례
 - 국비 매칭 사업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에 지방 법규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내 3대 산업부문인 관광, 농축수산, 공공부문 등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이 원천적으로 힘든 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키 위한 도 단위 연차별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 이제 막 출범한 장애인보장구 수리 및 지원 사업 및 센터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한편, 지형이 구불구불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제주에서의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및 지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좀더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고자 조례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성 재활권 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장애인 부부 혹은 연인들 사이에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즐거운 성생활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장애인 의료재활센터, 제주재활병원 및 일반병원 재활의학과 등에서 장애인 성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 지원을 해 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성적 욕구의 해소를 통하여 삶에 충분한 인권보장과 그로 인한 기회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 있음.
 - 위와 같은 조례는 장애인 의료재활 및 사회재활의 중요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장애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례명칭이나 내용의 일부가 와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며 의료재활센터에서의 집약적 노력 없이는 단기간에 실효성을 기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조례의 검토와 제정에는 의회와 장애인 당사자 단체 간에 긴밀하고 신중한 협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조례

-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가 건축물 등의 검사에 적용되고 장애인 보장구가 이동편의를 위한 기반장비에 적용되는 반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조례적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장구 지원과 건축물 관련 편의시설 검사와 더불어 이동편의 지원을 명확히 하여 3대 이동편의 조례를 완성할 필요가 있음. 이 조례를 통하여 현행 도 도시디자인 본부,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분할되어 실시되어 오던 이동편의사업을 도 단위에서 하나로 묶어주면서, 사업을 모든 장애인에게 최대한 형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진학, 취업, 육지부로의 이동, 질병의 치료 등 생애과정에서 특별히 많은 이동을 맞이하게 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도 및 도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 기획 및 집행하는 정책과 사업, 수립하는 계획 등에 있어서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영향분석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대다수의 정책, 사업, 조례, 예산편성 등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됨으로써, 장애인 관련 조례와 정책을 생산한다 해도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제주문화의 조성에는 요원한 것이 현실태임. 이에 따라, 도청 및 도의회의 조례, 정책, 사업, 계획수립 등을 통과시킬 때에는 그것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절실하여, 이에 대한 조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평등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이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덧붙여, <장애인영향분석평가>로 나아가게 되면, 조만간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영향분석평가의 기본조례라고 할 수 있는 <평등영향분석평가>로 나아갈 기반이 마련되는 것임. 즉, <평등영향분석평가>란 하나의 지역사회가 그 번영과 평화와 복지를 위하여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핵심적이라는 데 합의하면서, 특정 조례, 정책, 사업, 예산편성, 계획수립 등에 앞서서 그것이 평등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여과시키는 것을 의미함.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
-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안) -

강기탁
(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 -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안) -

강기탁
(변호사)

1. 장애인차별의 특수성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

가. 장애인 차별의 실태 및 특수성¹⁾

- 1) 노동시장 진입, 학교 수업, 공공시설 이용,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에서 차별을 받음으로써 일상생활 어려움, 그리고 가혹행위 지속적 발생 현실.
- 2) 위와 같이, 장애인 차별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및 사회 생활(생존, 고용, 교육, 이동,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사법절차, 행정절차, 참정권 행사, 모·부성권, 가정, 복지시설, 건강 등등)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다른 차별과 비교하여 특수성이 있음.

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

- 1)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의 필요성,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별도 입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주체적인 문제 제기와 활동이 이뤄짐.
- 2) 이에 따라 ①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나누고, ② 차별금지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이용, 서비스 제공과 참정권 행사,

1) 정연순(2008), 5~6쪽.

성 권리, 가정 복지 시설, 건강권 등 여섯 가지로 규정하며, ③ 차별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고,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등)를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2007. 4.)되고 시행(2008. 4.)되고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이하 '장애인인권조례'라고 함)의 제정·시행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음.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 등(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각 영역별 조항에서 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근거로, 그리고 장애인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2011. 6. 29. 조례 제748호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음.

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장애인 인권보장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제언 : 장애인권리옹호 기관(장애인인권센터)

가. 장애인 권리옹호(advocacy) 제도²⁾

권리옹호란 장애인, 노인, 아동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계층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련의 행위를 직접 대변·옹호·지지·장려하는 활동을 의미함.

장애인 권리옹호와 관련하여서는, 근래 들어 큰 진전이 있어왔음. 2001년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2005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2007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2008년에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 지원의 장 신설 등 각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법령이 제·개정되었음.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끔찍하고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나. 국가인권위원회로 충분한가? ³⁾

장애인은 그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기 쉽고,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음. 반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음.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권리구제절차에 참여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법원 등 권리구제기관에 접근하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상 요구되는 특별한 보호를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조력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임.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지방 일부에 사무소(부산·광주·대구에 지소 3곳)를 두고 있을 뿐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인권문제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어서 장애인 인권옹호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과 예산도 매우 제한되어 있음. 실제로 장애인 관련 진정사건의 처리속도가 늦고, 빈발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동성 있게 관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구제기관이므로, 그 전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조력하고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역할이 필요함. 이처럼 장애인 인권옹호업무는

2) 엄형국(2011), 1~2쪽.

3) 임성택(2012), 5쪽.

그 특성상 장애인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또한 장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자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방화, 소규모화할 필요성이 있음. 지역사회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밀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별도로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4)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5.4%, '보통이다'가 14.8%, '많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79.7%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음.

한편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냥 참는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진정·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알리기 싫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정보가 없어서' 등의 이유가 가장 많았음.

결국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높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함.

라. 참고 사례5)

1) 미국 P&A 시스템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와 시사점을 주고 있음.

P&A는 'Protection and Advocacy'의 약자인데, 우리말로로는 보호와 옹호라고 직역할 수 있음.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한다는 의미임. 미국의 P&A 시스템은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해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음.

4) 엽형국(2011), 2쪽.

5) 엽형국(2011), 2쪽; 임성택(2012), 5~10쪽.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경 학대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립되었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에 설치된 기관이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둠.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에 관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설치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인지 기초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광역 단위에서만 구성되어 있음.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23개의 시도단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만들어져 있음.

마. 제언: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안)

1) 허용되는지⁶⁾

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문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2조).

나) 그러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것이 아닌 주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조례 제정은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27조). 또한 법률 또는 시행령·시행규칙의 제·개정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권리옹호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로 먼저 도입하게 되면 그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을 건인할 수 있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도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그에 관한 조례 제정이 선행되고 법령이 이를 이어 받아 도입하게 된 경우임.

6) 엽형국(2011), 3쪽.

2) 도입 원칙⁷⁾

첫째, 서비스 제공자(시설)로부터 독립되어야 함. 독립된 공공기구로 구성되거나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적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져야 함.

둘째,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함.

셋째, 서비스 제공기관이 권리옹호제도를 인지하고 장애인(거주인)에게 입소 시 공지하고, 서면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알려줄 의무, 신고를 방해할 경우 처벌규정 등을 통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넷째, 권리구제신청이 없을 경우라도 권리침해 징후가 있을 경우 직권에 의한 조사가 가능해야 하며 이 경우 시설에서 협조하도록 해야 함. 이는 인권위의 방문조사와는 달리 사전공지 없이 조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섯째, 피해자를 피해 상황 또는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보복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쉼터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여섯째, 법에 따른 조사권한을 갖추고 있어야 함.

일곱째, 시설의 인권침해,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갖춘 인력이 필요함.

여덟째,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아홉째, 권리옹호기관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함.

3)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안)⁸⁾

가) 지역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차별 또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나) 민간 위탁

장애인 권리옹호체계는 그 특성상 장애에 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되며, 자발성과 헌신성이 필요함. 나아가 민간기관의 헌신성과 역동성, 서비스 마인드, 전문성과 활동경험이 권리옹호

7) 임성택(2012), 12~13쪽.

8) 엽형국(2011), 4-6쪽.

활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실제 미국의 P&A 기관은 ‘민간조직’의 역동성과 자발성, 서비스 마인드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장점이 결합된 조직임.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민간위탁 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은 비영리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에서 법인 형태를 갖추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인권 단체를 고려하여 비영리 법인뿐 아니라 단체도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남 장애인 인권조례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

한편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복지시설은 오히려 장애인인권센터의 중요한 활동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복지시설에 센터를 운영 위탁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다) 심사위원회의 구성

민간단체에 운영위탁을 할 때에 외부전문가 또는 당사자를 포함한 심사위원회 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전남 장애인 인권조례는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음. 일반적으로는 행정청의 자체심사와 선정보다는 외부에 개방된 위원회 방식으로 심사, 선정하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봄. 그러나 위원회 구성 권한을 행정청이 갖는 행정청의 입맛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한 후 원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그 책임을 외부에 돌리기 위해 위원회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위원회 방식을 도입할 경우 그 과반은 장애 관련 전문가, 장애인 단체, 장애인 당사자로 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라) 인권센터의 조직 및 운영

인권센터는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는 바람직함. 그리고 장애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사회나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인권센터의 원조를 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또한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이 니만큼 변호사들이 이사 및 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권리옹호기관의 이사 및 상근직원의 상당수를 변호사들이 맡고 있음.

마) 인권센터의 권한

조례는 법률이 위임한 사항 또는 자치사무에 한하여 제정될 수 있음. 이러한 조례의 한계상 센

터의 권한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음. 예컨대 조사권, 접근권,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조치권 등을 조례가 부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임. 다만 강제조사가 아닌 임의조사(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조사)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이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필요함).

한편 조사에 관하여는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라야 함. 행정조사기본법 5조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른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⁹⁾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조사권한을 민간에 위탁할 수 없음. 위탁을 금지한 조사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조사만을 뜻한다고 해석한다면 임의조사는 위임, 위탁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만일 인권센터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권한을 가진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사법기관에 의뢰하거나 그러한 권한을 가진 복지부 공무원·경찰 등을 대동하여 접근 및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맺으며

가. 장애인 차별 해소나 장애인 인권 보장의 첫 걸음은,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는 비장애인들의 의식적 혹은 인지적 행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혹은 비인지적 행위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 '낮쌌' 혹은 '다름'이 '차이'가 아니라 아무런 매개 없이 '차별'

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이어지는 사회... 사회 구성원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

나. 결국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침해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동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행태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하루의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시간(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맞닥뜨리는 공간(가정부터 일반 사회시설까지)에서 받는 불이익(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임.¹⁰⁾

10) 정연순(2008), 18~19쪽.

장애인인권센터설치 조례(안)¹¹⁾

제0조(00시도장애인인권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00시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권리 옹호, 차별 및 인권침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센터의 지부를 둘 수 있다.¹²⁾

③ 도지사는 장애인의 권리옹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조(센터의 운영위탁) 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제9조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위탁을 받으려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위탁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위탁을 받을 수 없다.

1. 3년 이상 장애인 권리옹호, 차별금지 및 인권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이 조례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설치기준과 상담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③ 도지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센터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성실히 활동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운영위탁은 5년을 기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되면 도지사는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장애단체 등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¹³⁾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비영리법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1) 임형국(2011), 7~11쪽.

12) [지부 설치 관련]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전남 장애인 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전라남도 장애인 인권센터'의 경우 "필요한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센터를 두는 방법도 있겠으나, 통일성을 위해서 시·군·구에 지부를 두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

13) [위탁기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위탁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위탁취소를 통해서만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통상 위탁취소는 요건이 엄격할 것이므로 한 번 위탁된 기관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안에서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2.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제0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접수, 상담 및 조사
2. 장애인 차별행위 신고접수, 상담 및 조사
3.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전화 운영
4.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의뢰
5. 인권침해,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조치의뢰
6. 장애인 복지시설 조사참가
7.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기타 법률구조활동
8.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차별금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9.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금지,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홍보, 실태조사
10.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금지, 인권호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11.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쉼터 운영
12. 그 밖에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

제0조(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① 센터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 당사자 및 그 보호자 또는 가해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을 포함하여 00시도 및 산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0조(접근 및 조사) ① 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현장 및 관련자들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 원칙을 준수한다.
 ② 관련자들이 센터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관할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장소 등에 출입하여, 피해자를 만나거나 상담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장애인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센터는 관계기관 등에 해당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1. 피해당사자를 격리, 보호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원조
2.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분리
3.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소송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소송 제기
4. 조사결과를 기술하고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보고서 작성
5. 인권침해, 차별행위 방지 및 개선을 위한 대안을 관련자들과 함께 개발
6. 기타 피해자 보호 및 인권침해, 차별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0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상근변호사 1명, 상담원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¹⁴⁾

② 센터의 운영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의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¹⁵⁾

③ 센터는 도지사의 비용보조 이외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모금하거나 조달할 수 있다.

제15조(쉼터의 운영) ① 센터는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설로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는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 피해자를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할 수 있다.¹⁶⁾

③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4) 장애인 권리옹호기관의 특성상 상근변호사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직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조례안에서는 두지 않았다.

15) 이사회나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권리옹호기관의 원조를 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장애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 조례안에서는 자문위원회 구성의 가능성만 규정하였다.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4호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참고문헌

- 정연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 국가인권위원회, 2008., 5~19쪽.(인용 시 정연순(2008)로 함)
- 엄형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옹호 조례의 법률적 문제, 2011. 9. 23.(인용 시 엄형국(2011)로 함)
- 임성택,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방안,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토론회(2012. 11. 16.) 자료집,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22쪽.(인용 시 임성택(2012)로 함)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 인 쇄 | 2013년 4월

| 발 행 | 2013년 4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927 | F A X | (02) 2125-984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447-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